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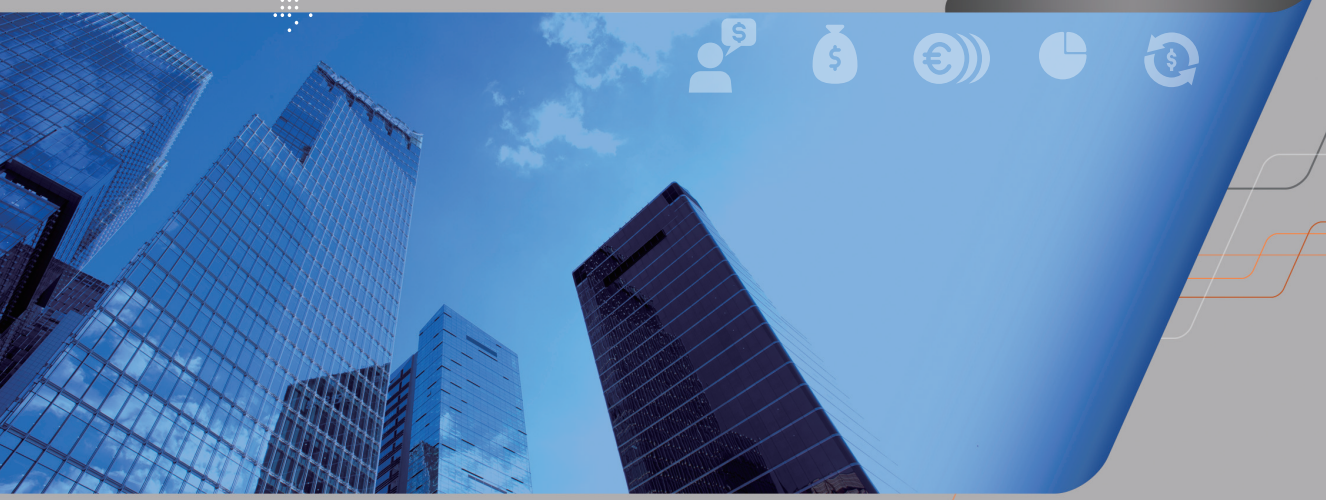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서 언

2019년 3월에 출판된『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1권에서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도를 개괄하여 숲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면, 이번에 발간하는 제2권과 다음에 발간하게 될 제3권은 주요국의 개별 소득 유형별로, 즉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2권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중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연구 · 조사하였다. 그리고 주요국의 소득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부록으로 주요국의 소득세법 주요 목차를 담았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통해 연구자, 정책입안자 등의 독자들에게 최신 자료(2018-2019년도)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조세제도 자체가 각국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는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별 국가의 최신 내용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OECD의 홈페이지, 각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요 출판물 및 관련 법령정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무열 초빙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미국편은 건양대 최정희 교수, 일본편은 요코하마시립대 국중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또한, 호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영국편은 상명대 김준현 교수가, 그리고 독일편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 프랑스편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과정 중에 있었던 최종보고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감수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교정하고 편집해준 지식정보팀에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착수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준비, 편집 등 연구보조를 해준 권선정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20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목 차

제1장 미국 ····· 1

Ⅰ. 소득세제 개관 ····· 3
1. 소득세제의 특징 ····· 3
2.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 ····· 8
3. 종합소득 종류 ····· 11
4. 세무 회계(Tax Accounting) ····· 26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 32
1. 근로소득(Salaries, Wages, and Benefits) ····· 32
2. 사업소득(Business Income) ····· 42
3. 퇴직 · 연금 소득(Retirement Plans) ····· 54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60
1.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 60
2. 인적 공제(Exemptions) ····· 62
3. 개인 소득공제(Deductions of Individuals) ····· 65
4. 세액공제(Tax Credits) ····· 73

Ⅳ. 시사점 ····· 92

• 참고문헌 ····· 93

• 부록: 미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 94

제2장 일본 ····· 96

Ⅰ. 소득세제 개관 ····· 97
1. 종합소득세제 특징 및 변천 개관 ····· 97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의 종류 ····· 103
3. 조세특별조치법의 지위 및 기능 ····· 104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 106
1. 총괄 ····· 106
2. 사업소득 ····· 109
3. 근로(급여)소득 ····· 117
4. 연금소득 ····· 128
5. 기타소득(잡소득 중 연금소득 이외) ····· 132
6. 일시소득 ····· 138
7. 퇴직소득 ····· 141
8. 산림소득 ····· 146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150
1. 소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소득공제의 종류 ····· 150
2. 가족관련 공제 ····· 153
3. 일본의 인적공제 제도 요약 ····· 160
4. 보험관련 공제 ····· 162
5. 교육관련 공제: 근로학생 공제 ····· 167
6. 기타공제 ····· 167
7. 세액공제제도 ····· 171
8. 청색신고제도 ····· 175

목 차

Ⅳ. 손익통산과 손실 ····· 180
1. 과세 총소득금액의 계산 ····· 180
2. 손익통산의 순서 ····· 181
3. 손실과 이월공제 ····· 182
4. 이월공제의 순서 ····· 183

Ⅴ. 시사점 ····· 185

• 참고문헌 ····· 188

• 부록: 일본 소득세법 주요 조문 ····· 191

제3장 호주 ····· 195

Ⅰ. 소득세제 개관 ····· 197
1. 소득세제의 특징 ····· 197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 201
3. 그 외 호주 소득세제의 특징 ····· 208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 211
1. 사업소득 ····· 211
2. 근로소득 ····· 231
3. 연금기여금과 연금소득 ····· 245
4. 그 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249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261
1. 소득공제 ····· 261
2. 세액공제 ····· 264

Ⅳ. 시사점 274

• 참고문헌 276

• 부록: 호주 소득세법 주요 조문 278

제4장 영국 281

Ⅰ. 소득세제 개관 283
1. 소득세 과세 대상 283
2. 종합소득의 구성 283
3. 종합소득 과세 단계별 개요 285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288
1. 사업소득 288
2. 근로소득 309
3. 연금소득 321
4. 퇴직소득 323
5. 기타소득 325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29
1. 소득공제 329
2. 세액공제 341

Ⅳ. 시사점 350
1. 과세대상소득 측면 350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측면 350

목 차

• 참고문헌 ····· 352

• 부록: 영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 353

제5장 독일 ····· 355

Ⅰ. 소득세제 개관 ····· 357
1. 소득세 구성체계 개관 ····· 357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 358
3. 종합소득 과세시 특칙 ····· 359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 362
1. 영업소득 ····· 362
2. 자유직업소득 ····· 375
3. 농림업소득 ····· 380
4. 근로소득 ····· 384
5. 임대소득 ····· 392
6. 기타소득 ····· 398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406
1. 독일의 소득세 계산체계 개관 ····· 406
2. 제1유형 공제항목 ····· 408
3. 제2유형 공제항목 ····· 409
4. 제3유형 공제항목 ····· 416
5. 제4유형 공제항목 ····· 418

Ⅳ. 시사점 ····· 419

• 참고문헌 ····· 421

• 부록: 독일 소득세법 주요 조문 ····· 422

제6장 프랑스 ····· 429

Ⅰ. 소득세제 개관 ····· 431
1. 소득세 특징 ····· 431
2. 과세대상소득 ····· 431
3. 기타 특징 ····· 432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 433
1. 부동산 임대소득 ····· 433
2. 산업 및 상업소득 ····· 438
3. 농업소득 ····· 464
4.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466
5. 비상업소득 ····· 475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480
1. 임대목적 부동산 투자비 공제 ····· 480
2. 기부금 공제 ····· 482
3. 장애인 부양료 공제 ····· 483
4. 학비 공제 ····· 483
5. 생명 연금 및 장애인 저축 보험료 공제 ····· 483
6. 위자료 공제 ····· 484
7. 장애인 거주 시설교체 비용 ····· 486
8. 어린 자녀 돌봄 비용 ····· 486

목 차

9. 기업인 교육비용 ····· 487
10. 노동조합 회비 ····· 487

Ⅳ. 기타 ····· 488
1. 납부면제 ····· 488
2. 납부할 소득세 납부면제 ····· 488
3. 소득세 추가공제 ····· 489
4. 소액부징수 ····· 489
5. 이월공제와 후월공제 ····· 489

Ⅴ. 시사점 ····· 490

• 참고문헌 ····· 492

• 약어표 ····· 493

• 부록: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소득세 관련 주요 조문 ····· 494

표 목 차

[제1장 미국]

〈표 Ⅰ-1〉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서식 ····· 5
〈표 Ⅰ-2〉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별지(Schedule) ····· 7

〈표 Ⅱ-1〉 근로자가 공제가능한 여행 경비 ····· 39
〈표 Ⅱ-2〉 수정가속상각법 자산의 유형과 내용연수 ····· 45
〈표 Ⅱ-3〉 수정가속상각법 자산의 보너스 상각률 ····· 46

〈표 Ⅲ-1〉 미국의 2019년 및 2020년(예정) 기초 표준 공제 ····· 60
〈표 Ⅲ-2〉 미국의 개인소득세 계산 체계 ····· 65
〈표 Ⅲ-3〉 2019년 근로소득공제 대상 조정총소득 기준액 ····· 74
〈표 Ⅲ-4〉 조정총소득에 따른 은퇴저축 세액공제 비율 ····· 79

[제2장 일본]

〈표 Ⅰ-1〉 소득세의 주요 세율 개정 추이 ····· 101
〈표 Ⅰ-2〉 소득금액 계급별 세율과 공제액 ····· 102

〈표 Ⅱ-1〉 일본 소득세법 상의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 108
〈표 Ⅱ-2〉 사회보험 진료보수와 관련된 개산(표준) 경비율 특례 ····· 115
〈표 Ⅱ-3〉 사업소득자의 상황설정 ····· 116
〈표 Ⅱ-4a〉 급여소득 공제액(2017년분~) ····· 119
〈표 Ⅱ-4b〉 급여소득 공제액(2020년분~) ····· 119
〈표 Ⅱ-5〉 급여소득 공제의 급여수입별 공제율(2017년분~) ····· 121

목 차

〈표 Ⅱ-6〉 급여수입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의 예시(2017년분~)…… 122
〈표 Ⅱ-7〉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지출의 범위…… 123
〈표 Ⅱ-8〉 연소득 700만엔 봉급생활자(부부+자녀2인)의 공제액과 과세소득…… 125
〈표 Ⅱ-9〉 급여소득자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상황 설정…… 126
〈표 Ⅱ-10〉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 절차…… 131

〈표 Ⅲ-1〉 소득세 과세최저한의 내역(급여소득자의 경우)…… 151
〈표 Ⅲ-2〉 인적공제 창설년도(소득세)와 대상자…… 160
〈표 Ⅲ-3〉 인적공제 공제액과 납세자 본인의 소득요건…… 161
〈표 Ⅲ-4〉 의료비 공제제도의 개요…… 166
〈표 Ⅲ-5〉 잡손공제 제도의 요약…… 169
〈표 Ⅲ-6〉 기부금공제 제도의 요약…… 170
〈표 Ⅲ-7〉 청색신고 공제 및 청색신고 특별공제…… 176

〈표 Ⅳ-1〉 순손실 · 잡손실 및 이월공제 절차…… 183

[제3장 호주]

〈표 Ⅰ-1〉 호주의 개인 소득세 면세자(ITAA 1997, s11-5)…… 204
〈표 Ⅰ-2〉 호주의 개인 소득 중 주요 면세소득과 관련 규정(ITAA 1997 s11-15)…… 205
〈표 Ⅰ-3〉 호주의 개인 소득 중 주요 비과세-비면세 소득 관련 규정…… 207

〈표 Ⅱ-1〉 일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의 사례…… 213
〈표 Ⅱ-2〉 교육비 공제항목의 구분…… 240
〈표 Ⅱ-3〉 호주의 연금 기여단계에서의 과세 요약…… 246
〈표 Ⅱ-4〉 호주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48

〈표 Ⅲ-1〉 사적 건강보험 세액공제율 - 최고령자가 2018-19년에 65세 미만…… 266

[제4장 영국]

〈표 Ⅱ-1〉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주요 개별 항목……292
〈표 Ⅱ-2〉 적용대상 자산 그룹 및 해당 그룹별 공제비율…… 298
〈표 Ⅱ-3〉 최초연도공제 대상 자산…… 299
〈표 Ⅱ-4〉 고용인이 지출한 비용 중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예시…… 313
〈표 Ⅱ-5〉 PAYE code Letter 구분 및 의미……319
〈표 Ⅱ-6〉 과세대상 주요 연금 항목…… 322
〈표 Ⅱ-7〉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 예시……326
〈표 Ⅱ-8〉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힌 항목…… 328

〈표 Ⅲ-1〉 연간한도 기본금액의 변천…… 335

[제5장 독일]

〈표 Ⅱ-1〉 독일 소득세법의 납세자 등급……386

〈표 Ⅲ-1〉 비통상적 부담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416

[제6장 프랑스]

〈표 Ⅰ-1〉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432

〈표 Ⅱ-1〉 부동산 필요경비 주요 항목…… 436
〈표 Ⅱ-2〉 산업 및 상업소득의 유형…… 439
〈표 Ⅱ-3〉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 447
〈표 Ⅱ-4〉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448

목 차

〈표 Ⅱ-5〉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 ····· 457
〈표 Ⅱ-6〉 정률법에 따른 배수 ····· 457
〈표 Ⅱ-7〉 정률법에 따른 상각률 ····· 457
〈표 Ⅱ-8〉 납세의무자 유형 ····· 463
〈표 Ⅱ-9〉 비과세 근로소득 내용 ····· 468
〈표 Ⅱ-10〉 근로소득세 간이세율표 ····· 474

〈표 Ⅲ-1〉 임차인의 연간 소득 상한 ····· 481
〈표 Ⅲ-2〉 기부금 항목별 필요경비 산입 ····· 482

〈표 Ⅳ-1〉 가족단위 part당 소득세 면제 한도 ····· 488

그림 목차

[제1장 미국]

[그림 Ⅱ-1] Form W-2 ····· 33

[그림 Ⅲ-1] 2019년 근로세액공제 표(일부 발췌) ····· 75

[제3장 호주]

[그림 Ⅰ-1] 호주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개념 ····· 198

[제4장 영국]

[그림 Ⅰ-1] 영국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산출 단계 ····· 287

제1장 미국

Ⅰ. 소득세제 개관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미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1장 | 미국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제의 특징

가. 포괄주의 선택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합산 대상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와 별개로 분류과세로 과세하고 있다.[1] 또한 일정한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등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한다.[2]

그러나 미국은 IRC §61(a)의 총소득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총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일정한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총소득 계산에서는 급여, 이자, 장기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한 공제를 한 후 조정총소득을 산출하고, 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단 장기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세액계산에서 분리하여 경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산출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3] 즉

1) 「소득세법」 제4조.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는 금액들은 각 소득의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의 성격이 제외된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4]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5]

전제조건
1. 납세자는 외국인 거주자인 부부이며, 자녀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2. 일방 배우자가 모든 소득을 벌고, 외국원천소득은 없다. 3. 신고유형은 부부합산신고를 한다. 4. 정규 세액이 최저한세액 보다 높다. 5. 세금 계산에 관해서는 2020년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총소득	(단위: 달러)	
급여		150,000
이자		18,500
장기양도소득(1년 이상 보유 자산)		3,000
총소득 합계		171,500
조정		0
조정총소득(AGI)		171,500
차감 - 표준소득공제	24,800	
과세표준		146,000
세액		
143,700달러의 과세표준에 부부합산신고 세율을 적용한 세액(146,700 - 3,000(장기자본소득))		23,194
3,000달러의 자본소득에 15%의 세율 적용		450
세액공제 전 세액합계		23,644
차감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1명당 2,000달러)		4,000
순세액		19,644

출처: United States Individual - Sample personal income tax calculation, PWC, 2020, https://taxsummaries.pwc.com/ID/United-States-Individual-Sample-personal-income-tax-calculation에서 이용 가능.

그러나 미국은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IRC §61상의 총소득에서 우선 ①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 ② 고용주가 지급하는 일정한 거래 및 사업비용 ③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손실 ④ 임대료와 사용료에 귀속되는 공제 ⑤ 자영업자의 연부금 이익배분제 납입분, 연부금 ⑥ 개인퇴직연금계좌납입분 ⑦ 이사비용

4)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5)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⑧ 교육비대출 이자 등 IRC §62(a)에 규정된 항목[6]을 공제하는데, 이것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한다. 조정총소득(AGI)이 산출되면, 여기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차감하고, 인적공제(2018~2025년까지는 폐지)와 부양가족공제[7]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8]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두 번의 공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산출과정과 비교할 때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총소득(AGI)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있다. 수정총소득은 조정총소득과 반대로 작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공제를 다시 삭감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정총소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조정총소득(AGI) 계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였던 개인퇴직연금계좌 납입분뿐만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용, 외국원천소득, 전체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비과세이자를 더해야 할 수도 있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식

연방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산출과 관련하여 많은 종류의 서식이 있는 것 또한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서 서식은 Form 1040(세금신고서로 지칭)이다. 그리고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서식은 아래와 같다.[9]

〈표 Ⅰ-1〉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서식

서식	제목	용도	서식 사이트
Form 1040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가 작성하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 ※ 노인(Senior)을 위해서는 Form 1040-SR이 있음	https://www.irs.gov/pub/irs-pdf/f1040.pdf

6) 이러한 공제를 영어로 "above-the-line deduc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7) 조정총소득(AGI)에서 차감되는 공제를 영어로 "below-the-line deduc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8) 미국의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미국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9) 미국 국세청(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forms-instructions에서 이용 가능.

〈표 Ⅰ-1〉의 계속

서식	제목	용도	서식 사이트
Form W-4	근로자 원천징수 공제 증명 (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	근로자 입사 시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서식	https://www.irs.gov/pub/irs-pdf/fw4.pdf
Form 1040-ES	개인 추정 소득세 (Estimated Tax for Individuals)	이 서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소득을 가진 개인이 추정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납제도	https://www.irs.gov/pub/irs-pdf/f1040es.pdf
Form W-9	납세자 식별번호와 증명서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and Certification)	수령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신고서에 작성하기 위하여 납세자 식별번호를 요청하는데 사용되는 서식 의사, 회계사와 같은 독립계약자 (dependent contractor)는 이 서식을 고용주에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주로부터 Form 1099-MISC를 교부받아 세금신고 시 제출	https://www.irs.gov/pub/irs-pdf/fw9.pdf
Form 4506-T	세금신고서 복사본 요청 (Request for Transcript of Tax Return)	세금신고서 복사본을 요청하거나 다른 신고서 정보를 무료로 요청하거나 제3자가 정보를 받도록 지정하는 데 사용	https://www.irs.gov/pub/irs-pdf/f4506t.pdf
Form 941	고용주 분기별 세금신고서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의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주분의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https://www.irs.gov/pub/irs-pdf/f941.pdf
Form W-2	급여 및 세금 명세서 (Wage and Tax Statement)	고용주가 각 근로자의 소득 및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식	https://www.irs.gov/pub/irs-pdf/fw2.pdf
Form 9465	분할납부 신청서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	세금신고서(또는 국세청 납부통지)상의 금액 전액을 납부하기 힘들 경우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는 서식	https://www.irs.gov/pub/irs-pdf/f9465.pdf
Form SS-4	고용주 식별번호 신청 (Application f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고용주 식별번호를 신청하기 위한 요청서식	https://www.irs.gov/pub/irs-pdf/fss4.pdf
Form W-7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신청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가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일 경우 연방소득세 목적상 개인납세자 식별번호를 받기 위한 요청서	https://www.irs.gov/pub/irs-pdf/fw7.pdf

출처: 미국 국세청(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forms-instructions 에서 이용 가능.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에는 별지(Schedule)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 등 세부사항을 기입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Ⅰ-2〉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별지(Schedule)

별지(Schedule) 유형	기재 내용
Schedule A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Schedule B	이자 및 통상적 배당(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s)
Schedule C	사업 이익 및 손실(개인 기업)(Profit or Loss from Business (Sole Proprietorship))
Schedule C-EZ	순 사업 이익(개인 기업)(Net Profit from Business(Sole Proprietorship)) ※ 적격 소규모 사업자와 $5,000 이하의 비용을 가지는 법정 근로자 (statutory employees)가 Schedule C 대신에 조금 더 간편한 형태로 작성
Schedule D	자본 이익 및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
Schedule E	보충적 소득 및 손실(Supplemental Income and Loss) ※ 임대소득, 사용료, 파트너십, S회사, 상속재산(estates), 신탁, REMICs의 잔여이익으로부터의 소득을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
Schedule EIC	근로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Schedule F	농업 이익 또는 손실(Profit or Loss From Farming)
Schedule H	가사근로자 고용세(Household Employment Taxes) ※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Schedule J	농업 · 어업종사자 평준화 수입(Income Averaging for Farmers and Fishermen)
Schedule R	노인 · 장애인 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Schedule SE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Schedule 8812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출처: 미국 국세청(IRS), Schedules for Form 1040 and Form 1040-SR, https://www.irs.gov/forms-pubs/schedules-for-form-1040에서 이용 가능.

2.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

가. 소득의 개념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라고 칭함) §61(a)는 총소득(gross income)의 정의에 대해서 14가지 열거된 항목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14가지 열거항목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10] IRC §61의 전신인 1913년 세법에서는 소득(income)은 어느 원천이든 그로부터 발생한 이득(gain), 이익(profit), 소득(income)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비교하여 현재 IRS §61(a)의 총소득은 훨씬 더 광범위하며, 부가급여(fringe benefits), 채무면제(cancellation of indebtedness), 이혼 위자료(alimony), 별거수당(separate maintenance payment)과 같이 소득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11]

1920년 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 판결[12]에서 소득(income)을 그것이 자산의 매매나 전환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포함한다고 이해한다면, 자본(capital), 노동(labor) 또는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gain)이라고 하였다. 그 후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이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 1955년 Commissioner v. Glenshaw Glass Co 사건에서는 무엇이 소득이 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그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그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나 이익과 소득이라는 포괄적인 언어에 그 효과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며,[13] 납세자는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는 명확하게 실현된 부인할 수 없는 부의 증가(accession)를 가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받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4]

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1913년 세법이나 현재의 IRC §61(a)에서 무엇이 소득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15] 하지만 IRC §61과 총소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14개의 항목은 특정한 항목을 총소득으로 구별하는 다른 법조항과 함께 소득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16]

10) Internal Revenue Code(이하 IRC) §61(a).
11) Burke, J. M. & Friel, M. K., *Taxation of Individual Income*, 9th edition, LexisNexis, 2010, p. 24.
12) Eisner v. Macomber, 252 U.S. 189 (1920), 207.
13) Commissioner v. Glenshaw Glass Co., 348 U.S. 426 (1955) 429-430.
14) Commissioner v. Glenshaw Glass Co., 348 U.S. 426 (1955) 431.
15) Burke, J. M. & Friel, M. K., *Taxation of Individual Income*, 9th edition, LexisNexis, 2010, p. 24.
16) Burke, J. M. & Friel, M. K., *Taxation of Individual Income*, 9th edition, LexisNexis, 2010, p. 26.

그리고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금전, 자산 또는 용역과 같은 어떤 형태로 실현된 것이어야 하므로,[17]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미실현 이익은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법에서 개별적으로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과 일정한 다른 항목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자본의 환급은 대출의 상환처럼 이전에 대손으로 공제되지 않은 한도에서는 소득이 아니다.[18] 마찬가지로 카풀을 할 때 실비로 받는 금액(reimbursements)도 단 한 사람만이 차를 제공하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아니다.[19]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제외한 개인의 신체적 부상(physical injuries)이나 육체적 질병(physical sickness)에 대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20]

여러 유형의 정부보조금(governmental assistance)은 만약 그것이 일반 복지의 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에 따라 주택도시개발과(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지급한 임차보조금과 1974년 「주택지역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 따라 지급된 이전 비용(relocation payments)은 비과세이다.[21]

증여는 총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어떤 지급이나 양도가 증여의 성격을 지니는지, 과세대상인 소득의 성격을 지니는지는 개별 사례(case-by-case basis)별로 판단되어야 한다.[22] 노동조합(labor union)으로부터 받은 파업이익은 만약 그 이익이 음식, 의복, 임차료의 형태로 지급되고, ① 조합원과 비조합원 파업자 모두에게 지급되고, ② 개별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③ 실업급여 또는 지역의 공적 부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따른 것이며, 그리고 ④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비과세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23]

---

17) Treasury Regulation(이하 Reg.로 칭함) §1.61-1.
18)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06.
19) Rev. Rul. 55-555; 카풀을 제공하는 차주가 동료로부터 받는 금전은 상호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발생하는 개인적 비용에 대한 각자의 부분을 변제한 것이므로, 그러한 금전은 차주의 총소득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을 위하여 발생한 자동차 비용은 소득세 목적상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20)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06. 그러나 직장에서의 차별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비신체적 상해에 대해서 받은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다.
21) *Id.* 그러나 개인 또는 다른 비정부단체가 지급한 금액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다. 미국 국세청(IRS) Publication(이하 Pub.로 칭함) 525.
22) Commissioner v. Duberstein, 363 U.S. 278 (1960), pp. 287-289.
23)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06.

나.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항목

1) 종합소득 항목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분류과세소득을 열거하여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와는 달리 미국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하는 포괄주의를 취하면서 1년 이상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과 같은 일부 유형의 자산양도소득(capital gain)을 제외하는 구조이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는 IRC §61(a)에 아래와 같이 14가지 유형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총소득은 이 14가지 소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14개의 열거된 소득 외 다른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① 수수료, 커미션, 부가급여(fringe benefits) 및 유사한 종류의 것을 포함하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②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소득
③ 자산 거래로부터의 이익
④ 이자
⑤ 임대료
⑥ 사용료
⑦ 배당
⑧ 연금(annuities)
⑨ 생명보험(life insurance) 및 양로보험(endowment) 계약으로부터의 소득
⑩ 연부금(pensions)
⑪ 채무 면제이익
⑫ 파트너십 총소득에서 파트너의 지분
⑬ 피상속인(decedent) 관련 소득
⑭ 상속재산(estate) 또는 신탁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소득(Capital gains)

주택, 가구와 같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자산이나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개인적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은 자산

(capital asset)이라 할 수 있다.[24]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조정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의 조정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조정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양도손실이 발생한다. 주택이나 자동차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25]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1년을 초과하여 자산을 보유할 경우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은 장기양도소득 또는 장기양도손실이 되고, 0%, 15%, 20%, 25% 또는 28%[26]의 경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이하라면, 그 소득과 손실은 단기양도소득 또는 단기양도손실이 되고, 여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소득 종류

가.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Salaries, Wages, and Benefits)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적인 인적용역(dependent personal services)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고용주로부터의 임금(wages), 성과급(commissions), 수수료(fees), 봉사료(tips), 상여금(bonuses) 등의 보상을 의미한다.[27]

자세한 것은 아래 Ⅱ. 1.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이자소득(Interest Income)

납세자는 수령하거나 발생한 이자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28] 적격 사적 사업채권(qualified private activity bonds)을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채권에서의 이자, 적격 교육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국 저축채권으로부터의 이자, 그리고 재

24) IRC §1221(a).
25) 미국 국세청(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에서 이용 가능.
26) IRC §1(h).
27) IRC §61(a)(1), Reg. §1.61-2.
28) IRC §61(a)(4), Reg. §1.61-7.

산의 환급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의 수취하는 일정한 이자에 대한 예외가 존재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Form 1040의 별표 B에 1,500달러를 초과하는 배당과 이자를 신고해야 한다.[29]

3) 배당소득(Dividend Income)

회사의 배당가능이익(earnings and profits)으로부터 지급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은 그것이 현금배당이든, 현물배당이든 주주의 총소득에 포함된다.[30]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현금액을 총소득에 포함시키면 되고, 배당이 현금과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배당액은 현금과 배당받은 비현금 자산의 시가(fair market value: FMV)이다. 20%의 회사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특별규칙이 적용된다.[31]

4) 주식 상환(Stock Redemptions)

만약 회사가 배당에 상응하는 행위로 그 주식을 취소하거나 상환한다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부터 주주가 받은 액수는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이 된다.[32] 주식의 취소 및 상환과 관련한 배분방식이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에 상응하는지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33]

5)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사업에서 발생한 총소득도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되는데, 사업에서 발생한 총소득이란 총수입액(gross receipts)이 아니라 총이익(gross profit)과 같다.[34] 총이익이란 판매로부터의 총수입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투자소득과 다른 원천에서의 소득을 더한 것이다. 대부분의 상업거래의 경우에 비용은 판매된 물품의 가액에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더한 것을 포함한다. 제조회사에서는 제조되고 판매되는 물품에 적용가능한 전체 제조원가-제조공정에 귀속될 수 있는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재료, 직접 노동력, 제조간접비-를 포함한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은 판매된 물품의 비용을 계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판매비용, 손실,

29)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13.
30) IRC §61(a)(7), §301, §316.
31) IRC §301(e).
32) Reg. §1.302-1.
33)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19.
34) IRC §61(a)(2), Reg. §1.61-3(a)).

또는 다른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뇌물, 벌금, 가산세에 지불한 금액이 차감되지 않고 결정된다. 판매된 물품의 비용은 납세자가 일관되게 사용해 온 회계방법에 따라 결정된다.[35]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래의 Ⅱ. 2.에서 상술한다.

6) 임대소득(Rents)

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거나 발생한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36] 임대인의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추가적인 임대소득으로 간주된다. 리스의 취소로 임대인이 받은 대가는 임대료를 대신하는 것이지 자본의 환급은 아니다. 리스의 취소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거래 종결(closed transaction)에 의해 확정되었을 때에만 공제가능한 손실이 된다.[37] 임대활동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활동으로 취급된다.

7) 사용료 소득(Royalties)

문학, 음악, 미술 작품의 저작권과 유사한 자산 또는 발명에 대한 특허로부터의 사용료는 총소득에 포함된다.[38] 석유, 가스, 또는 다른 광물 자산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도 총소득에 포함된다.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보유 자산에 귀속되는 비용은 개인의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할 때 공제가능하다.[39]

8) 농업소득(Farming Income)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된다. 이익 창출을 위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십 또는 회사는 주인이든지 소작인이든지 농부로 지정된다.[40] 취미나 즐거움을 위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매년 계속적인 순손실을 보는 자는 이익을 얻을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 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41]

---

35)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23.
36) IRC §61(a)(5), Reg. §1.61-8.
37) Hort v. Commissioner, 313 U.S. 28 (1941).
38) IRC §61(a)(6), Reg. §1.61-8(a).
39)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24.
40) Reg. §1.61-4(d).

9) 이혼 위자료(Alimony Payments)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서 폐지되기 전인 2019년 전에 이루어진 이혼 또는 별거약정에 따라 받은 위자료나 별거수당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42]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0) 기타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

가) 상(Prize and Awards)

상으로 받는 상금은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의 총소득에 포함된다.[43] 그러나 적격 장학금, 연구비 그리고 근로자의 공로상은 그러한 상금 비용이 고용주에게 공제되는 한도에서 받는 사람의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44]

종교, 자선, 과학, 교육, 예술, 문학적 또는 시민으로의 업적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상금은 ① 해당 대회 또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수상자 측의 어떠한 행위 없이 수상자(납세자)가 선정되었고, ② 수상자가 그 상을 수여받는 조건으로 미래에 어떠한 실질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③ 상이 지급인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은 채로 수상자가 지정한 자선단체 또는 정부기구에 이전된다면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45]

미국 올림픽위원회(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가 미국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금과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게임에서 경기에 참여하여 받은 메달의 시장가격은 그 선수 개인의 조정총소득(AGI)이 $100만(부부 개별신고의 경우에는 $50만)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선수의 총수입액에서 제외된다.[46]

나) 도박소득과 위법 소득

도박, 내기, 복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47] 밀수(bootlegging),

41)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25.
42) 구 IRC §71.
43) IRC §74(a).
44) IRC §74(c)(1).
45) IRC §74(b).
46) IRC §74(d).
47)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30.

갈취(extortion), 횡령(embezzlement), 사기(fraud)와 같은 위법한 거래로부터의 이익도 포함 가능하다.[48]

> 예시
>
> 납세자가 차를 팔고, 매수인을 위하여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 이에 보험중개인이 고객을 그에게 추천해준 것에 대해 중개인의 커미션 중 일부를 납세자에게 지급해준 경우, 납세자는 이 리베이트(kickbacks)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33.

다) 물물교환(Bartering)

물물교환된 용역의 가치는 총소득에 포함된다. 물물교환의 형태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라서 신고서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건물 주인이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대한 교환으로 아파트를 사용하게 한다면 보충적 소득인 임대소득이 되어 세금신고서의 보충적 소득에 관한 별지(Schedule) E를 작성하면 되고, 예술가는 그 아파트의 임대 시장가격을 사업소득으로 별지(Schedule) C 또는 C-EZ를 작성하면 된다.[49]

라) 채무면제(Cancelled Debt)

채무가 취소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증여나 유증이 아닌 한 면제된 채무는 총소득에 포함된다. 채무자의 채무지급이 공제 가능 비용이 아니라면, 채무면제는 소득이 되지 않는다. 또 납세자는 지급불능(insolvency), 파산(bankruptcy), 적격 농가 채무, 적격 부동산업 채무, 적격 주거주지 채무, 용역과 교환된 학자금 탕감에 대해서는 그 채무면제를 총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50]

마) 보험(Insurance)

일반적으로 보험이익은 총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계약상 지급한 총순보험료를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신고대상인 소득이다.[51]

48)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33.
49)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30.
50) *Id.*
51) *Id.*

바) 저리 대출(Below-Market Loans)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정상이자율(연방 이자율)과 비교하여 받지 못한 이자는 이자소득이 된다.

사) 동산 대여 소득(Income From the Rental of Personal Property)

개인납세자가 동산(personal property)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된다. 개인 대주는 그가 동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서(Form 1040) 별지(Schedule) C 또는 C-EZ에 동산의 대여와 관련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면 되고,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소득은 세금신고서상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고 발생한 비용은 조정총소득(AGI)에 조정사항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그 소득액을 한도로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52]

아) 기부금 세제혜택의 회수(Recapture)

기부를 하고 3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대한 기부금공제의 회수 또는 부분 지분의 기부와 관련된 기부금공제의 회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53]

자) 매장물(Treasure Trove)

매장물이나 다른 출토물은 그것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액이 된다.[54]

차)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현실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전환가능 가상화폐는 연방소득세 목적상으로는 재산처럼 취급된다. 전환가능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거래는 재산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세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전환가능 가상화폐를 받은 자는 받은 날의 미국 달러로 측정하여 그 화폐의 시장가격을

52)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31.
53) *Id.*
54) Reg. §1.61-14.

총소득에 포함시킨다. 만약 납세자가 전환가능 가상화폐를 채굴하였다면 그 화폐의 시장가격은 수령한 날에 총소득으로 포함할 수 있다.[55]

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공유경제활동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된다. 상황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제가능하다.[56]

나. 총소득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소득

1) 개요

IRC §101에서 §140까지는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특정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57] 또한 미국의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의 항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 등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아래에서는 주요 제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일정한 사망보험금(Death Benefits)

사망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험의 목적인 사망 바로 전에 보험 이익이 계약의 가치를 초과해도 그러하다.[58]

---

55) Notice 2014-21, Rev. Rul. 2019-24.

56)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31.

57) 일정한 사망보험수익(§101), 상속·증여(§102), 주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이자(§103),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104), 상해·건강보험에서 수령한 금액(§105), 상해·건강보험에 고용주 기여금(§106), 목사관 임대가치(§107), 채무면제로부터의 소득(§108), 리스에서 대주의 재산을 차주가 개량한 것(§109), 단기리스에서 적격 차주 건설충당금(construction allowances)(§110), 조세혜택을 받은 항목의 회수(§111), 일정한 군대의 주둔지 보상(§112), 주·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115), 적격 장학금(§117), 회사 출자(§118), 고용주의 편의를 도모하여 제공되는 숙식(§119), 주 거주지 매매로부터의 이익의 제외(§121), 일정한 reduced uniformed services retirement pay(§122), 일정한 생활비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123), 카페테리아 플랜(§125), 일정한 비용 분담 지급액(§126), 교육보조프로그램(§127), 피부양자 원조 프로그램(§129), 일정한 personal injury liability assignments(§130), 일정한 양육비 지급(§131), 일정한 부가급여(§132), 일정한 군인 혜택(§134), 대학교육 등록금 및 수업료에 사용되는 미국 저축채권으로부터의 소득(§135), 공익 기업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에너지 보존 보조금(§136), 입양 원조 프로그램(§137), 건강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 MSA)(§138), 재해 구호 프로그램(§139), 처방약 제도에 대한 연방보조금(§139A), 의용소방대원 및 응급의료단에게 제공되는 혜택(§139B), 미국 원주민 건강보험 혜택(§139D), 미국 원주민 복지 혜택(§139E), 불법 감금된 개인이 받는 일정한 금액(§ 139F), 알라스카 원주민 정착 신탁에 대한 배분(§139G), 거래의 인위적 구성에 근거하여 미국 국세청이 압류하고 있는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수령한 이자(§139H).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사 소유의 생명보험(company-owned life insurance: COLI) 보험금에는 제한이 있다. 만약 보험계약이 과세가능한 교환으로 가액만큼 양도되면,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은 양수인이 지불한 대가, 보험료 또는 다른 액수에 한정된다.[59]

3) 연금(Annuities)

연금계약, 저축성 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 목적인 사망 이외의 이유로 수령하는 금액은 그 계약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기초가액을 한도로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6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연금수령인의 기대수명에 고르게 분배된다. 그러나 1987년 이전에 개시되는 연금계약은 연금수령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관계없이 제외되는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연금 규칙은 납부금이 지정된 수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질 때에도 적용된다.[61]

어느 정도의 예외는 있지만 계약은 ① 계약 보유자가 연금 개시일 및 그 후에 사망하지만, 계약상 전체 이익이 분배되지 않을 경우, 계승권자가 보유자가 사망한 날에 사용된 방법에 따라 바로 분배받을 것을 그리고 ② 계약상 전체 이익이 보유자의 사망 후 5년 이내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연금계약으로 취급되지 않는다.[62]

연금의 어떤 부분이 수령자의 총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제외 비율은 각 계약에서 결정된다. 이 비율은 대개 계약상 투자를 기대수익으로 나눔으로써 결정되고,[63] 제외율은 과세연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 전체 금액에 적용된다. 제외율의 적용에 의해 결정된 부분을 넘는 초과 금액은 수령자의 총소득에 포함된다. 개인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서의 분배금 제외율은 그 개인의 총공제불가 납입금을 그 계좌의 잔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 해 동안의 모든 개인의 개인퇴직연금계좌와 분배금은 통합된다.[64]

1986년 이후 개시되는 연금의 경우 각 연금 납부금 중 일정 부분의 제외는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일단 연금계약에 따라 지급액에 대한 모든 제외액이 계약에서 투자액과 동일하게 되면, 그 이후의 지급액은 전부 총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연금수령자가 계약에서의 투자가

58) IRC §101, Reg. §1.101-1(a), §1.101-3.
59)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35.
60) IRC §72, Reg. §1.72-1.
61)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37.
62) IRC §72(s).
63) IRC §72(b), Reg. §1.72-2, §1.72-4.
64)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38.

연금 제외를 통하여 완전히 비과세로 회복되기 전에 사망하면, 회복된 투자부분과 동일한 금액이 연금수령자의 마지막 연도에 공제된다.[65]

4) 유증(Bequests) 및 증여(Gifts)

가) 유증

유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66] 그러나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으로 또는 그 재산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또 만약 유증이 재산으로부터의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 동안 유언자의 재산으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유증하면 수익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수익자는 연간 임대료를 매년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시장가격이다.[67]

상속재산(estate) 또는 신탁으로부터 특정 액수의 현금 또는 특정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에 또는 3회 이하로 분할 지급되거나 인출되면 수익자의 총수입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68] 상속재산(estate) 또는 신탁 소득에서 지급된 금액은 만약 그 금액이 소득 또는 원본으로부터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 목적상으로는 유증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estate) 또는 신탁 소득으로부터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유증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4회 미만으로 분할 지급되는 때에도 총수입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 증여

증여 가액은 총수입액에서 제외되지만 판매 이익을 포함한 증여로부터의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된다.[69] 상속재산(estate) 또는 신탁의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의 증여는 특정금액 또는 특정재산의 증여가 일시에 또는 3회 이하로 분할 지급되거나 인출되는 것을 제외하고 수익자의

65) *Id.*
66) IRC §102, Reg. §1.102-1.
67)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44.
68) IRC §663(a)(1), Reg. §1.663(a)-1.
69) IRC §102.

총수입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의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기증자가 보유한 기초가액과 동일하다.

봉사료(tips)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총소득에 포함된다. 노동조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업참여자에게 파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식품, 의류, 렌트비는 증여로 간주된다.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혜택이 노동조합원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70]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가액에 적용될 수 있는 총소득 제외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71] 그러나 고용주가 지급하는 일정한 근로자 공로 상금과 일정한 부가급여는 제외될 수 있다.[72]

5) 상해 및 장애 수당(Personal Injury and Disability Proceeds)

개인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 산업재해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과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73] 또 이는 근로자 산업재해법령에 따라 생명보험금의 성격을 가진 수익금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74]

주(state)법에 따라 고용에서 발행하는 직업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익은 그 금액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의 성격이 있다면 제외된다.[75]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득 또는 수입능력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한 승객에게 주어지는 무과실책임보험 장애수당은 총수입금에서 제외된다.[76]

만약 제외되었을 금액이 소득세 목적상 이전에 공제를 받은 의료비용의 상환이라면 그 금액은 이전에 공제받은 것을 한도로 하여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보상금의 일부가 장래에 부상과 관련된 의료비용에 구체적으로 할당된다면, 장래의 비용은 보상으로 지급된 일부에 의해서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77] 제9 순회항소법원은 장래의 의료비용에 대해서 일시불로 개인 부상 보상금의 명시적 할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78]

70) United States v. Kaiser, 363 U.S. 299 (1960).
71) IRC §102(c).
72) IRC §102(c)(2).
73) IRC §104(a)(1), Reg. §1.104-1.
74) Reg. §1.101-1(a).
75) Reg. §1.104-1(b).
76) Rev. Rul. 73-155.
77) Rev. Rul. 79-427.
78) Niles Niles v. United States, 710 F.2d 1391(1983).

개인적 신체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79] 정신적 고통의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귀속되는 의료치료에 지급된 금액 한도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취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고용차별로 인한 승진 거부에 대한 청구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은 그것이 개인의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이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므로 제외된다.[80]

개인적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보상금에 포함된 이자는 총소득에 포함된다.[81] 또 개인적 신체 부상 소송에서 발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된다.[82]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결정되고, 적용되는 주법이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83]

6) 채무면제이익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이외에 취소되거나 면제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가지게 된다.[84] 그러나 다음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 미국법 Title 11 파산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원의 관할 내에 있고, 채무면제가 법원에 의해서 수여되거나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 납세자가 파산 외의 지급불능(insolvent)일 때의 면제
- 적격 농장 채무의 면제
- 적격 부동산사업 채무의 면제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적격 주거주지 채무 면제
- 일정한 적격 학자금 대출 면제[85]

79) IRC §104(a)(2).
80) Rev. Rul. 96-65.
81) M. Brabson, CA-10, 96-1 ustc ¶50,038.
82) IRC §104(a)(2), (c).
83)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45.
84) IRC §61(a)(11), Reg. §1.61-12.
85) IRC §108.

7) 교육관련 혜택(Education and Disability Benefits)

가) 미국 저축채권(U.S. Savings Bond)

적격 고등교육(대학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적격 미국 저축채권을 현금화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총소득에서 그 채권상의 이익을 제외한다.[86] 적격 고등교육 비용이란 납세자,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납세자의 피부양자가 적격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입학할 때 필요한 등록금과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외되는 액수는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에 의해서 현금화되는 적격 미국 저축채권의 총이익이 그 해에 사용된 적격 고등교육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 제외 액수는 그 채권이 현금화되고 적격 고등교육 비용이 지급되는 연도마다 차감된다.[87] 2019년의 차감범위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121,600에서 $151,600이고, 모든 다른 신고의 경우에는 $81,100에서 $96,100이다. 2020년 차감범위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123,550에서 $153,550까지, 모든 다른 신고의 경우에는 $82,350에서 $97,350이다.

나) 장학금, 연구비, 등록금 할인

정상적으로 정규 교직원 및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교육활동이 정규적으로 수행되는 적격 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자인 개인이 적격 장학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88] 적격 장학금이란 ① 적격 교육기관에 등록 또는 입학을 위해 필요한 등록금 및 수수료, ② 그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 책, 학용품 및 장비를 포함한 적격 등록금과 관련 비용에 사용되는 한 개인이 받은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포함한다. 적격 장학금은 숙소와 기숙사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등록이나 입학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여행, 조사, 사무보조, 장비 및 다른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89]

교육기관의 근로자에게 적격 등록금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금액은 위와 마찬가지로 총소득에서 제외된다.[90] 등록금 할인은 적격 교육기관의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등록금 할인은 고용주 또는 다른 적격 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된 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근로자, 그 배우자, 그 부양자녀, 또는 근로자로 취급되는 이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된

86) IRC §135.
87) IRC §135(b)(2).
88) IRC §117, Reg. §1.117-1.
89) Prop. Reg. §1.117-6(c)(2).
90) IRC §117(d).

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원생이며, 고용주의 교수 또는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것이 아닌 한 대학원 단계 미만의 교육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적격 등록금 할인 제도에 따른 혜택은 그 프로그램이 많은 보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가 가능하다.[91]

다) Coverdell 교육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Coverdell 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이하 Coverdell ESA)는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신탁 또는 양육계좌(custodial account)인데, 설립 시 신탁이 Coverdell ESA로 지정되어야 하고 지정된 수익자는 18세 미만이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어야 한다. 개인은 지정된 수익자의 적격 교육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만 Coverdell ESA를 만들 수 있다.[92]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된 수익자, 회사, 신탁 또는 비영리 기관을 포함하여 Coverdell ESA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각 지정수익자를 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총금액은 $2,000로 제한된다. 지정 수익자를 위하여 Coverdell ESA에 $2,000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일정한 상한(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190,000~$220,000, 다른 신고는 $95,000~$110,000) 이상의 수정조정총소득(MAGI)을 가진 개인 납부자에 대해서는 차감된다.[93]

기여금은 현금으로, 그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수익자가 아니라면 수익자가 18세가 되기 전에만 납부할 수 있다. 기여금의 납부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고 기여자의 세금신고서(연장기한이 아닌)작성기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Coverdell ESA가 과세연도에 초과기여금을 받으면, 지정 수익자에게는 그 과세연도 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초과금액의 6%에 해당하는 특별세(excise tax)가 적용된다.[94]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지정 수익자가 30세가 된지 30일 이내에 또는 그 자의 사망 후에는 분배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동일한 지정수익자를 위하여 같은 연도에 Coverdell ESA와 적격 등록금 상품(qualified tuition (529) plan) 둘 다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95]

---

91)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49.
92)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50.
93) *Id.*
94) IRC §4973.
95)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51.

Coverdell 계좌로부터의 분배금은 그 분배금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연도 동안 지정 수익자에 의해 발생한 적격 교육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총소득에서 제외된다.[96]

라) 적격 등록금 상품(Qualified Tuition Programs; QTPs or 529 Plans)

개인은 선납 등록금 또는 대학저축제도를 통하여 지정 수익자의 적격 고등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 등록금 제도(QTPs 또는 529 Plans)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적격 등록금 제도는 주, 주의 기관 또는 적격 교육기관에 의해서 설립되고 관리될 수 있다.[97] 적격 등록금 제도 그 자체는 고유목적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에 부과되는 세금 외에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98]

지정 수익자를 대신하여 적격 등록금 상품에 기여금은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하고 그 상품에 따라 결정된 수익자를 위하여 필요한 적격 고등교육 비용에 한정된다. 기여금은 공제가 가능하지 않지만 차감한도가 있는 수정조정총소득(MAGI)의 대상은 아니다.

적격 등록금 상품 계좌에서 분배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지정 수익자의 적격 고등교육 비용으로 사용되는 한도에서 총소득에서 제외가 된다.[99] 수익자의 적격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분배금의 일부가 투자에 대한 환급으로 되는 계좌에 납입되고 지급되는 금액으로 되는 IRC §72의 연금 규칙에 따라 과세된다. 만약 수익자가 환급된 금액을 60일 이내에 적격 등록금 상품에 다시 기여금으로 납입을 하면 나중에 지정 수익자에게 환급되어 적격 비용으로 사용된 출금액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지정 수익자의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출금액은 10%의 부가세(addition to tax) 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100]

8) 장애인 관련 계좌(ABLE Accounts)

자격을 갖춘 개인은 적격 장애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Achieve a Better Living Experience(ABLE) 상품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01] 적격 ABLE 상품은 주, 기관 또는 주의 대행기관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다. 이 상품 자체는 고유목적과 관련 없는 수익에 부과되는

96) IRC §530(d).
97)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52.
98) IRC §529(a).
99) IRC §529(c)(3).
100) IRC §529(c)(6).
101) IRC §529A, Prop. Reg. §1.529A-2.

세금을 제외하고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 지정 수익자는 이연 또는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계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ABLE 계좌에 한정된다.[102]

ABLE 계좌의 지정수익자는 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소유자인 자격을 갖춘 개인이다. 적격자는 26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장애 또는 시각장애가 시작된 장애자 또는 맹인인 개인이다. 그 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Ⅱ에 따라 맹인 또는 장애인을 이유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거나 과세연도 동안 국세청에 장애인 증명이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납세자는 지정 수익자의 혜택을 위하여 ABLE 계좌에 공제불가능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103] 기여금은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하고 현재 이익의 완전한 증여로 취급된다. 과세연도 동안 모든 기여자로부터의 총기여금액은 해당연도의 증여세 제외한도(2019년에는 $15,000, 2020년에도 $15,000으로 예상)를 초과해서는 안된다.[104]

ABLE 계좌에서 분배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그 분배금이 지정 수익자의 적격 장애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총수입에서 제외된다.[105] 수익자의 적격비용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계좌에 분배되거나 지급된 금액을 나타내는 분배금의 일부가 투자의 환급을 나타낸다고 보아 IRC §72에 따라 연금과 유사한 규칙에 따라 총수입에 포함된다. 지정 수익자의 총소득에 포함된 분배금은 그것이 수익자의 사망 또는 사망 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10%의 부가세(addition to tax) 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106]

9) 군인급여(Military Benefits)

한 국가의 군대, 국립해양대기청(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공중위생국(Public Health Service)에서 전투관련 업무로부터 기인한 개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생활보조금, 연금 또는 유사한 지급에서, 또는 1980년 「외무공무원법」(Foreign Service Act)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연금에서 개인이 받는 금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107] 그러나 국가가 군복무를 한 자(Armed Service member)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108] 장애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장애 퇴직금은 전부 총소득에서 제외되

102)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54.
103) IRC §529A(b), Prop. Reg. §1.529A-2.
104) Rev. Proc. 2018-57.
105) IRC §529A(c), Prop. Reg. §1.529A-3.
106)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54.
107) IRC §104(a)(4), Reg. §1.104-1(e).

지만, 복무 연수와 관련하여 산출되는 장애 퇴직금은 장애비율방법(percentage-of-disability method)에 따라 사용되는 한도만 제외된다.[109]

재향군인회(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집행하는 법에 따른 퇴역군인 수익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110]

4. 세무 회계(Tax Accounting)

가. 과세연도(Tax year)

과세소득은 납세자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111] 과세연도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데 납세자가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회계연도이다. 과세연도를 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로 12월 31일로 끝나는 12개월의 역년(calendar year)을 채택하는 것이다.[112] 두 번째 방법은 12월 이외의 달의 마지막 날로 끝나는 12개월의 회계연도(fiscal year)를 선택하는 것이다.[113]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달(month)의 마지막 날이 아닌 항상 주(week)의 같은 날에 끝나는 52~53주 회계연도를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114] 축소 과세연도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특별규칙에 따라 12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을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예시
>
> A회사는 2019년 8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첫 번째 과세연도는 2020년 7월 31일보다 더 늦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세연도는 12개월보다 더 길어서는 안 되고, 52~53주 과세연도를 선택하지 않는 한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야 한다.

출처: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60.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자는 첫 세금신고 시 역년 또는 회계연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정한 납세자는 특정한 과세연도를 선택해야 한다.[115] 기존 납세자가 과세연도를

108) IRC §61(a)(10), L.G. Mitchell, Dec. 57,611, 131 TC 215.
109) Reg. §1.104-1(e).
110) IRC §140(a)(2).
111) IRC §441.
112) IRC §441(a).
113) IRC §441(e).
114) IRC §441(f).
115) Reg. §1.441-1.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지 않는 회계연도와 같은 부적합한 과세연도를 선택한다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적합한 과세연도를 채택하도록 하거나, 과세연도 변경에 국세청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116]

회계연도(fiscal year)는 납세자의 연간 회계기간으로 확정되고, 납세자가 같은 방식에 근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보관할 때에만 인식될 수 있다. 연간 회계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납세자가 적합한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현재의 과세연도가 회계연도(fiscal year)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역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한다.[117]

나. 회계방법(Accounting Methods)

1) 개요

과세소득은 고정된 회계기간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장부를 작성·보관하는 데 선택한 회계방법에 근거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118] 회계방법은 소득과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감가상각과 같은 특별항목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도 포함한다.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합적인 회계방법이 있는데, 바로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이다.

2) 현금주의 회계방법(Cash Method)

현금주의 회계방법(현금수령과 지출)은 대부분의 개인이 사용하는 회계방법이다. 소득은 그 소득이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 또는 다른 재산의 형태로 실제로 받았을 때나 간주수령한 연도에 일반적으로 신고된다. 소득의 간주수령은 그 소득이 실제로 수령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의 통제하에 있을 때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 그 소득을 받을 권리에 실질적인 한계나 제한이 있다면 간주수령이 일어나지 않는다.[119]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그러한 공제들이 감가상각이나 선급비용처럼 소득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과세기간을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지출이 실제로 지불된 연도에 이루어진다.[120]

116) Rev. Rul. 85-22.
117) Reg. §1.441-1.
118) IRC §446, Reg. §1.446-1(a).
119)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63.
120) Reg. §1.446-1(c)(1)(i).

3) 발생주의 회계방법(Accrual Method)

발생주의 회계방법에 따르면 소득은 납세자가 그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모든 사건이 발생한 때에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을 때 총수입액에 포함된다.[121] 그리고 비용은 채무의 사실을 확립하는 모든 사건이 발생하고, 금액이 상당히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그 채무와 관련한 경제적인 실행이 일어났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122] 이렇게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표현을 모든 사건 발생 테스트, 즉 "all events test"라고 한다.

> 판례
>
> United States v. Anderson, 269 U.S. 422(1926)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생주의 회계방법을 채택한 납세자는 군수품 이익에 대한 세금의 공제는 세금이 납부기한이 되고 납부된 1917년이 아니라 군수품이 판매되고 세금이 부과된 1916년에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all events test"는 이 판결에서 유래되었다. Spring City Foundry Co. v. Commissioner, 292 U.S. 182(1034) 사건에서 대법원은 "all events test"를 원장(ledger)의 소득란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방법을 채택한 납세자가 1920년에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해의 나중에 구매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납세자는 결국 판매한 물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일부만 받게 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자는 판매한 해에 전체 판매가격이 발생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all events test"에 따르면 비용 또는 납세자의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의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실행이 일어나기 전에는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수령보다는 받을 권리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또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납세자는 일정한 선지급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급금을 수령한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까지 이연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123]

4) 소득의 명확한 반영(Clearly reflect income)

납세자의 회계방법은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승인된 표준 회계방법(현금주의 회계 또는 발생주의 회계)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은 개인 장부를 작성·보관하기 위하여 하나의 회계방법을 사용하고 거래와 사업 장부를 작성·보관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24] 만약 납세자가 두 개 이상의 별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별개의 분리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면 다른 회계방법을 사

121) IRC §451(b), Reg. §1.451-1(a)(1), §1.446-1(c)(1)(ii).
122) Reg. §1.461-1(a)(2), §1.446-1(c)(ii).
123) Rev. Proc. 2018-60.
124)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65.

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여러 거래 또는 사업 간에 이익과 손실의 이전이나 가공이 있으면 여러 회계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125]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납세자는 소득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한, 두 개 이상의 회계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126]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는 현금주의를 사용하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5) 회계방법의 변경 및 조정

납세자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회계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127] 회계방법의 변경은 회계의 전체적 방법의 변경뿐 아니라, 주요한 항목의 취급상의 변경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회계방법은 그것이 일관적인 패턴의 취급이 있지 않는 한, 한 항목에 대하여 확립되지 않는다. 중요한 항목에 대한 취급의 변화란 금액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회계가 아니라 소득 또는 공제에 포함되는 시기와 연관이 있다.[128]

변경이 수용가능한 회계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납세자가 회계방법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변경에 대해서 국세청의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경감될 수 없다.[129]

과세연도 동안 회계방법을 변경하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IRC§481(a) 조정으로 불리는 소득에 대한 일정한 조정을 해야 한다.

회계방법의 변경은 ①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회계로의 변경, ②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의 변경, ③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④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방법을 장기계약방법 중 하나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변경하는 것, ⑤ 다른 특별한 방법(예를 들어 crop method)의 채택, 사용, 중지와 관련된 변경, ⑥ 법과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규정한 경우의 변경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130]

국세청의 허락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회계방법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납세자가 사용하는 회계방법이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아서 국세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회계방법을 변경하

125) Reg. §1.446-1.
126) Reg. §1.446-1(c)(1)(iv).
127) IRC §446(e), Reg. §1.446-1(e).
128)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67.
129) IRC §446(f).
130)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67.

는 납세자는 변경하는 연도에 소득에 대한 일정한 조정을 해야 한다.[131] 항목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다. 소득과 비용의 인식시기

1) 현금주의에 있어서 소득의 간주수령(Constructive receipt)

현금주의에서는 납세자가 소득이 되는 현금 또는 재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령하였다고 의제되는 소득은 마치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현금주의 납세자에게 과세된다.[132]

만약 소득이 제한 없이 납세자에게 입금되고 납세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간주취득이 성립되는데, 납세자가 그러한 자금을 그의 지배하로 가지고 올 권리에 중요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몰수 규정, 통지 의무 또는 일정한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또는 계좌에서 보너스 이자의 상실 등은 중요한 제한이 아니다.[133]

간주수령의 흔한 예는 만기가 되어 지급가능한 이자쿠폰, 저축은행예금에 입금된 이자, 주주의 요구에 따라 비적격으로 이루어진 배당을 포함한다. 그러나 만약 12월 31일에 배당이 고시되고, 회사는 다음해 1월이 되어서야 그 배당을 주주들이 받도록 수표로 배당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그 배당은 12월에 주주가 간주수령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134] 인출되지 않은 보험계약 배당에서 발생된 이자는 그 이자가 인출될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세자의 총소득이 된다.

회사 장부에서 인출된 급여는 만약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보수를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인출하는 연도에 직원에게 과세된다. 한 해의 판매에 기초하고 직원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상여금은 수령한 연도에 과세가 된다.[135] 금융기관의 실제 또는 직면한 파산 또는 지불불능 때문에 납세자가 과세연도 말에 인출할 수 없는 예금의 이자는 그 이자가 인출가능한 연도가 되어서야 예금주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136]

131) IRC §481(a), Reg. §1.481-1.
132) Reg. §1.451-2(a).
133)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68.
134) Reg. §1.451-2(b), Avery v. Commissioner, 292 U.S. 210 (1934).
135) Rev. Rul. 72-317, Rev. Rul. 75-180.
136) IRC §451(i).

간주수령이 간주지급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책임있고 지불능력이 있는 자가 급여, 이자, 임대료 등으로 양도가능한 약속어음을 지급하면, 지급할 때 시장가격을 한도로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수령자는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발행자가 역시 그때 같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37] 어음의 인도는 현금주의상 지급이 아니고, 공제는 그 어음이 지불되는 연도에만 가능하다.

2) 권리주장 원칙(Claim-of-right doctrine)

권리주장 원칙(claim-of-right doctrine)에 따르면 만약 납세자가 권리주장에 따라 제한없이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지급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138] 납세자가 나중 연도에 이전의 연도에 지급액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동일한 액수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해도 적용된다.[139] 납세자는 상환한 연도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다.

137) Unico Sales & Marketing, Inc., Dec. 53,468(M), 78 TCM 150.
138)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74.
139) United States v. Lewis, 430 U.S. 590 (1951).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근로소득(Salaries, Wages, and Benefits)

가. 근로소득의 의의

근로소득이란 지불형태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적인 인적용역(dependent personal services)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wages), 성과급(commissions), 수수료(fees), 봉사료(tips), 상여금(bonuses) 등의 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소득세,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료 납부 등을 위하여 원천징수된 금액도 원천징수를 한 연도에 총소득에 포함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적격 연금제도(qualified pension plan)에 대한 기여금은 납부 당시에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대신 주식 또는 다른 재산으로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당한 몰수(forfeiture)의 위험의 대상이 아닌 한 그 재산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FMV)을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시킨다.[140] 총소득에 포함된 시장가격은 근로자에게는 기초가액이 된다. 만약 재산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근로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지불된 금액과 재산 가액의 차액이 소득에 포함된다. 비공개회사(privately held company)의 적격 근로자는 적격 자산수여(qualified equity grant)에 귀속되는 소득액을 총소득에 포함시킬 것을 이연할 수 있다.

만약 주식 또는 다른 재산이 상당한 몰수의 위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몰수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연도가 될 때까지는 그 시장가격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몰수의 위험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예를 들어 배당)이나 그러한 재산을 사용할 권리로부터의 소득은 그것을 수취하였을 때 보수로서 소득에 포함된다.[141]

상당한 몰수의 위험이란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① 어떤 자가 미래의 일을 수행할 것을 또는 수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② 몰수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이전의 목적과 관련된 조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면 존재하게 된다. 상당한 몰수의 위험은 위의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이전의 목적과 관련된 조건 때문에 상당한 몰수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몰수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과 몰수가 집행될 가능성이 둘 다 검토되어야 한다. 재무부 규칙 §1.83-3(j) 또는 (k)를 제외하고, 양도제한은 만약 그 제한이

140) IRC §83, Reg. §1.61-2(d), Reg. §1.83-1.
141) Rev. Proc. 80-11, Rev. Proc. 83-38.

위법이라면, 그러한 위법이 재산의 몰수 또는 손해, 벌금, 부담금 책임을 발생시키더라도, 상당한 몰수의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다.[142]

나.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때 고용주로부터 받은 W-2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의 전체 소득액과 원천징수액을 나타내는 Form W-2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받은 모든 Form W-2의 모든 소득액과 원천징수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한다. 부부합산과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것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Form W-2를 앞에 첨부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Form 1040 또는 Form 1040-SR과 함께 Form 8919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43]

[그림 Ⅱ-1] Form W-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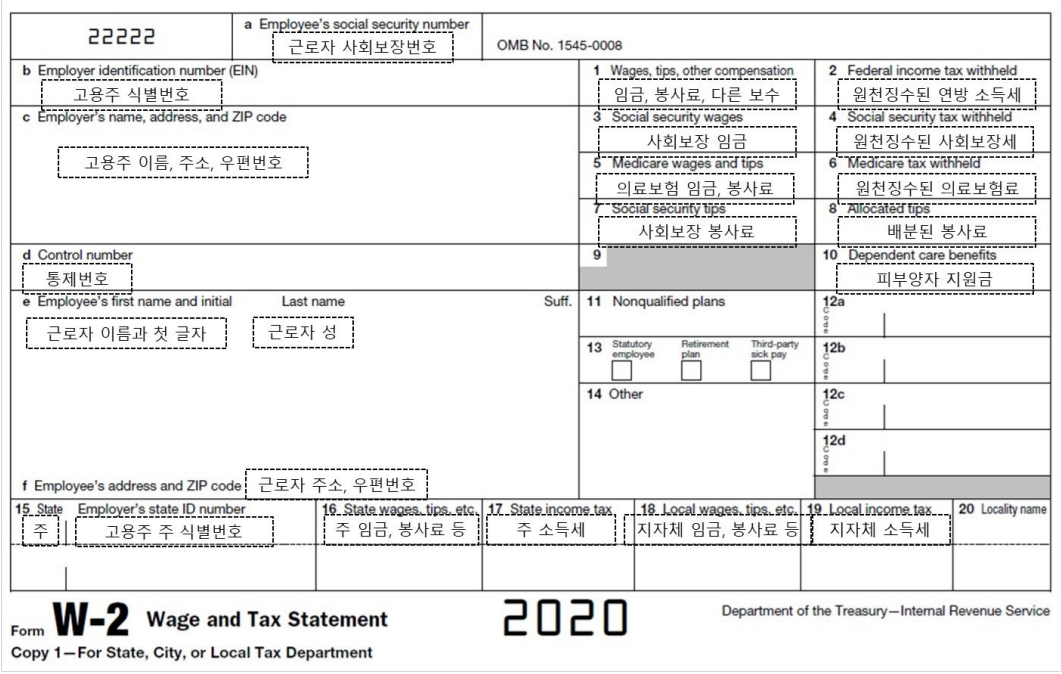

출처: 미국 국세청 사이트 https://www.irs.gov/pub/irs-pdf/fw2.pdf

142)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09.
143) IRS Pub. 525(2019), p. 3.

다. 근로소득의 세부적 유형

1) 근로소득 해당 여부

아래에는 근로자가 받는 여러 유형의 보수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설명한다.

① 선불수수료 등(advance commissions and other earning): 장래에 수행될 업무에 대해서 선불로 수수료 또는 다른 금액을 받고, 근로자가 현금주의(cash-method) 납세자일 경우에는 그것을 수취한 연도에 소득으로 금액에 포함한다. 만약 이렇게 선불로 받은 금액을 수취한 연도에 반환한다면 반환금액만큼 선불 수취액을 감소시키면 되고, 그 이후의 연도에 반환한다면 그 반환액을 항목별 공제로 공제하거나 그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44]

② 수당 및 상환(reimbursements): 여행, 교통 또는 다른 업무비용 수당 또는 상환을 받는 경우에는 총소득에 포함된다.[145]

③ 체불임금(back pay)에 대한 화해(settlement) 또는 판결(judgment)에서 수여된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한다. 여기에는 피해보상, 미지급 종신보험료, 미지급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146]

④ 상여금 및 상금: 뛰어난 업무실적에 대해서 받은 상여금(bonuses) 및 상금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Form W-2에 표기되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현금, 상품권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이외의 유형자산을 근속(length of service) 또는 안전공로(safety achievement)에 대한 상으로 받는다면 근로자는 그 가액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제외시킬 수 있는 금액은 고용주의 지출에 한정되고, 그 연도 동안 받은 모든 금액에서 $1,600(적격 계획 상금이 아닌 경우에는 $400)을 넘을 수 없다. 고용주는 그러한 상금이 적격 계획에서 지급된 것인지 비적격 계획에서 지급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위의 제외는 첫째, 5년 미만의 근무에 대해서 받거나, 그 연도 동안 또는 이전 4년 동안 또 다른 근속연한에 대해서 받는 근속 상금, 둘째, 감독자, 관리자, 일반 사무직원(clerical employee) 또는 다른 전문직 근로자가 받는 안전 공로상 또는 적격 근로자의 10% 이상이 이전에 그 연도 동안 안전공로상을 받았던 경우의 안전공로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47]

144)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3, https://www.irs.gov/pub/irs-pdf/p525.pdf에서 이용 가능.
145)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3; Pub. 463(2019).
146)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3.
147) *Id.*

예시

B는 세 개의 근로자 공로상을 받았는데 하나는 비적격 계획 상금인 $250 상당의 시계이며, 나머지 두 개는 적격 계획 상금으로 $1,000 상당의 스테레오와 $500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 적격 계획상금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각 상금들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총상금 $1,750은 $1,6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B는 차액인 $150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p. 3~4.

⑤ 해직수당(severance pay): 근로자가 받은 해직수당과 고용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직수당은 사회보장세, 의료보험료,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대상이다.

⑥ 병가 중 급여(sick pay): 근로자가 병가 중이거나 다쳤을 동안 받는 금액은 월급의 일부이다. 또 복리기금(welfare fund), 주(州)의 질병 또는 장애기금(state sickness or disability fund), 고용주 협회 또는 근로자 협회,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병가 중 급여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해보험 또는 건강보험회사로부터 그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⑦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보장보험료와 의료보험료

⑧ 주식증가차액청구권(stock appreciation right): 고용주가 부여한 주식증가차액청구권은 근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그것을 소득에 포함시킨다. 근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면 근로자는 행사날짜에 회사주식의 시장가격에서 권리 부여일의 시장가격을 차감한 현금을 받게 되고, 권리를 행사한 연도에 수취한 현금을 소득에 포함시킨다.[148]

⑨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만약 고용주가 업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화폐의 시장가격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급여로 지급된 가상화폐의 시장가격은 연방소득세 원천징수, 「연방보험료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 「연방실업기금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의 적용대상이 되며, FORM W-2에서 신고되어야 한다.[149]

148)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4.
149) 가상화폐에 대한 연방소득세법상 취급은 Notice 2014-21, 2014-16 I.R.B. 938 참조.

2) 부가급여(Fringe Benefits)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부가급여는 근로자가 그에 대한 시장가격을 지불하였거나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외할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보수로 소득에 포함한다. 부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의 가족같이 제3자에게 수여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령한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부가급여의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급여자의 피고용인(employee)이 될 필요는 없다. 수령자가 파트너, 감독자,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일 경우에도 부가급여의 수령자가 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과세대상인 비화폐성 부가급여를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를 사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다음 두 개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과세대상인 비화폐성 부가급여를 신고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역년동안 부가급여를 신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회계기간 규칙으로 역년의 마지막 2개월 동안(또는 더 짧은 기간) 공급된 급여는 다음 역년 동안 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지난해 마지막 2개월 그리고 올해 10개월 동안의 부가급여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고용주는 각 부가급여에 대해서 같은 회계기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간을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자 업무관련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급여를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기간을 사용해야 한다.

3) 상해보험(Accident or Health Plan)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상해보험 또는 의료보험료 납입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보험으로부터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때에는 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고용주가 불입한 보험료로 인하여 받은 혜택금액만 수입으로 신고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150]

150)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5, p. 17.

4) 피부양자 지원금(Dependent Care Benefits)

고용주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적격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면 근로자는 이러한 혜택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151] 피부양자 지원금이란 ① 고용주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적격 피부양자를 돌보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②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탁아시설에서의 돌봄비용의 시장가격, ③ 자녀 양육비용 계좌(dependent care FSA)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전 기여금을 포함한다.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것으로 한정된다. ① 해당 연도 동안 근로자가 받은 피부양자 지원금 총액, ②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적격 비용 총액, ③ 근로자의 소득(earned income), ④ 근로자의 배우자의 소득(earned income), ⑤ $5,000(부부 개별신고의 경우에는 $2,500)

고용주는 Form W-2에 피부양자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데, 10번 란에는 적격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동안 지급한 피부양자 지원금 총액을 기입해야 하고, 피부양자 지원금이 $5,000을 넘은 경우에는 Form W-2 1번 란의 보수에 그 초과액을 포함시켜야 한다.[152]

5) 고용주 지급 단체정기보험(Group-Term Life Insurance)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또는 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단체정기보험 보험료는 $50,000까지는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50,000이 넘는 고용주 납입 보험료는 그 보험의 구입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불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용주가 $50,000이 넘는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Form W-2의 보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체정기보험이란 ①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고, ② 근로자 단체에 제공되며, ③ 고용주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④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식에 근거하여 각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정기생명보험을 말한다.[153]

6) 퇴직연금 고용주 기여분(Retirement Plan Contributions)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적격 퇴직보험(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납입한 기여금은 불입 시에는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험에 생명보험 보장이 포함되어

151) 근로자가 피부양자 지원 혜택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Form 2441의 Part Ⅲ를 작성해야 한다.
152)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5.
153)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6.

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비적격 퇴직보험에 기여금을 납입하였다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기여금을 불입하는 과세연도에 기여금액을 보수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보험상에서 납입 당시 근로자의 수익이 양도 가능하지 않거나 상당한 몰수 위험의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가능하거나 상당한 몰수 위험이 사라진 경우에야 그 수익의 가치를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154]

라. 근로소득의 계산

1) 개관

2017년 세법개정(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으로 근로자의 업무비용공제가 변화되었다. 이전의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여행, 숙박 및 자동차 비용, 그리고 사업상 식사 및 유흥비용의 50%, 재택근무공제를 포함하여 고용주가 상환해주지 않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업무관련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만약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조정총소득(AGI)의 2% 이상이 되는 다른 잡비용과 함께 비상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비상환 근로자 업무비용을 포함한 2% 조정총소득(AGI) 제한 대상이 되는 모든 잡비용 항목별 공제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유형의 근로자[155]와 일정한 적격 교육자 비용 이외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상환받지 않는 업무비용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 신고에서는 더 이상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몇몇의 주들은 주소득세 신고 시 적격인 경우에 계속해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에는 개정 전 업무비용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공제대상 비용

공제대상이 되는 경비는 근로 업무에 꼭 필요하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다음 비용들을 포함한다. ① 일상적인 통근비용이 아닌 회사의 기구나 장비 등을 동반하여 통근하는 경우의 통근비용 ② 개인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게 하여 발생한 비용 ③ 업무와 관련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여비교통비 및 출장비 ④ 업무와 관련 있는 고객을 위한 식비, 유흥비 등의 접대비 ⑤

154)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p. 9.

155) Armed Forces reservists, qualified performing artists, fee-basis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employees with 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s; 미국 국세청(IRS) Pub. 529(2019) p. 2 참조, https://www.irs.gov/pub/irs-pdf/p529.pdf에서 이용 가능.

자택근무시의 홈 오피스 운영유지비용 ⑥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소득자 조직 단체에 내는 비용 ⑦ 기술 향상, 고용계약 유지, 연봉 인상 등을 위한 교육비용 ⑧ 새로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⑨ 영업 배상 책임보험 보험료 ⑩ 이전 고용주에게 고용 계약 위반에 기하여 지급한 손해액이다.

〈표 Ⅱ-1〉 근로자가 공제가능한 여행 경비

비용 유형	공제가능한 비용 범위
교통	집과 출장 목적지 사이의 비행기, 기차, 버스, 자동차 여행 만약 무료승차권을 사용하거나 단골고객 우대 또는 유사한 경우로 무료로 탑승하는 경우에 비용은 0이 됨
택시 · 버스 · 공항리무진	① 공항 또는 역에서 호텔까지, ② 호텔과 고객의 업무지, 업무 미팅장소, 임시 근무지까지 이용되는 교통수단과 이에 대한 요금
수하물	근로자의 원래 근무지에서 임시 근무지까지 수하물과 샘플 또는 전시물을 보내는 것
자동차	집에서 출장지까지 근로자의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실제 비용 또는 표준 주행 요금, 사업관련 톨게이트 비용과 주차료를 공제할 수 있음 만약 차를 렌트한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의 비용만 공제할 수 있음
숙박과 식사	근로자의 출장이 하루 이상이거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면 또는 휴식이 필요할 만큼 오랜 기간인 경우 숙박 및 유흥과 관계없는 식사 식사는 음식과 음료 비용, 세금, 팁(tips)을 포함함
세탁	드라이 클리닝과 세탁
전화	출장 동안의 사업상 전화로 팩스기기 또는 다른 통신 기구를 이용한 업무상 통신 포함
팁(tip)	공제가능 여행 경비와 관련하여 지불한 팁
기타	업무여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필요한 다른 유사한 비용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위한 교통비, 공공 속기사 수수료, 컴퓨터 렌트 비용, 이동주택 운행 및 관리 비용 등

출처: 미국 국세청(IRS), Pub. 463(2019), p. 5, https://www.irs.gov/pub/irs-pdf/p463.pdf에서 이용 가능.

3) 공제대상 비용의 계산

근로소득에서 업무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항목별 공제 금액과 합해서 그 공제한도가 결정된다.

필요경비와 근로소득 업무관련 비용은 기타 항목별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와 함께 그 과세연도의 조정총소득(AGI)의 2%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조정총소득(AGI)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소득상위층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와 함께 총한도 규제 규정에 의해 공제가 제한된다.

마. 종교인 과세

1) 종교인의 지위

인가받거나 위촉 또는 임명받은 성직자(minister)는 일반적으로 성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를 고용한 교회, 교파, 종파 또는 조직의 관습법상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순회 전도사(traveling evangelists)처럼 관습법상 독립적 계약자(자영업자)가 되는 일부 예외가 있다. 성직 서비스를 수행하는 성직자가 피고용인이던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직자가 결혼 주례, 세례, 장례 행사를 통해 받는 모든 소득(임금, 헌금, 수수료 포함)은 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된 비용의 취급 방식은 피고용인 지위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영업자의 지위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156]

2) 피고용인으로서의 성직자와 자영업자로서의 성직자 구분

소득세 목적상 성직자가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성직자가 상당한 재량권과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속 교회나 조직에서 그 성직자의 행동 내용과 행동 방식을 모두 통제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는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신도회(congregation)에서 급여를 제공하면서 성직자를 고용한 경우 그 성직자는 일반적으로 관습법상 신도들의 피고용인이며, 그의 급여는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상 임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결혼 주례, 세례 또는 기타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등 신도들로부터 직접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된다. 신도회로부터 받는 급여와 신도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둘 다 사회복지보장 목적상 포함될 수 있으며 모두 자영업세가 적용된다.[157]

만약 성직자가 독립적 계약자인 경우 결혼 주례, 세례, 장례 행사를 통해 받는 헌금 또는 수수료 등은 자영업 소득이다. 이러한 소득 및 관련 비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FORM 1040의 별지 C를 작성하면 된다.

3)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

인가받거나 위촉 또는 임명받은 성직자(minister)의 경우 피고용인으로서 수행하는 성직

156) 미국 국세청(IRS), Topic No. 417 Earnings for Clergy, https://www.irs.gov/taxtopics/tc417에서 이용 가능.
157) *Id.*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 제공되는 주택(사택)의 공정 임차 가액 또는 주택 수당은 만약 그것이 임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총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사택이 제공되는 성직자는 사택의 공정 임차 가액(공공요금 포함)을 총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제외되는 금액은 성직자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수당을 받는 성직자의 경우 주택 제공 비용으로 충당되는 한도 내에서 그 수당을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에는 임차료, 담보대출 이자, 공공요금 및 주택 제공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제외되는 금액이 성직자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성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전히 담보대출 이자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수당이 ① 성직자의 합리적 보상, ② 주택의 공정 임차 가액 또는 ③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관련되는 실제 비용 중에서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 수당을 총소득으로부터 제외하려면 그 성직자를 고용한 조직은 성직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주택 수당임을 명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택의 공정 임차 가액 또는 주택 수당은 소득세 목적으로만 제외할 수 있다. 사회복지보장의 목적으로는 공정 임대가 또는 주택 수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158]

4) 사회복지보장(Social Security Coverage)

종교 사역을 하면서 수행하는 서비스는 대개 사회복지보장 및 메디케어(Medicare) 적용 대상이다.[159]

5)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면제

성직자가 종교적 이유 또는 양심적 이유로 인하여 특정 공공보험에 반대할 경우 성직자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FORM 4361을 $400 이상의 자영업 순소득이 발생한 두 번째 과세연도의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한 포함)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160]

158) *Id.*
159) *Id.*

2. 사업소득(Business Income)

가. 사업소득의 의의

1)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은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소득과 사업 사이에 연관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는데, 납세자가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의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연관성이 존재하게 된다. 자영업자(self-employment individual)와 변호사 · 건축가 · 회계사 등의 독립적 전문 인적용역 제공자(professional) 등의 소득이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에 의해 설립된 1인 소유 법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소득, 파트너십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기타 도관회사의 사원으로서 간접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전업(full time)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은 발생할 수 있다. 공유승차 용역 제공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161]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판매된 재화의 비용을 차감하고, 투자소득과 다른 원천에서의 소득을 더한 총이익(gross profit)과 같은 개념이다.[162] 대부분의 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재화의 비용은 물품의 구매가격에 운반 · 보관 등의 비용을 더한 가격이다. 제조업에서는 제조 · 판매된 재화에 적용 가능한 전체 제조원가, 즉 재료, 직접노동, 제조간접비, 제조과정에 귀속되는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은 판매비용, 손실 또는 판매재화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른 항목, 사업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뇌물, 리베이트, 벌금, 과태료를 차감하지 않고 결정된다.

판매재화의 비용은 납세자가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회계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통상적인 비용, 예를 들면 인건비, 이자비용, 로열티,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0) *Id.*
161) 미국 국세청(IRS) Pub. 334(2019), p. 20.
162) IRC §61(a)(2); Reg. §1.61-3(a).

2) 사업소득의 범위

가) 재산이나 용역의 물물교환

납세자는 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령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산이나 용역의 교환으로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환 시 납세자가 수령하는 재산 또는 용역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FMV)을 총소득에 포함시킨다. 만약 납세자와 상대방과 용역을 교환하는데, 이 용역의 가치를 미리 정해 놓은 경우에는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정해진 가치가 시장가격이 된다.

나. 감가상각(Depreciation)

1) 의의

IRC §167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산 또는 소득 창출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의 소모(exhaustion) 또는 마모(wear and tear)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방법으로 감가상각을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같이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치된 과세연도에 시작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완전히 상각되는 과세연도에 끝난다.[163]

감가상각의 방법은 크게 ① 직선상각법(straight line depreciation)과 ② 가속상각법(accelerated depreciation)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세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2) 감가상각 방법

가)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

정액법은 가장 간단한 상각방법이다. 이 방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순히 자산의 비용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에는 동일한 상각이 이루어진다. 비용 또는 다른 취득가액에 추정잔존가액을 차감한 것을 내용연수 동안 동일하게 매년 공제하는 것이다.[164]

163) Reg. §1.167(a)-10.
164) Reg. §1.167(b)-1.

그러나 자산이 매년 같은 비율로 마모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과 더불어 좀 더 빠른 상각을 허용함으로써 경제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의회는 가속상각방법을 허용하게 되었다.[165]

나) 정률법(declining-balance method)

정률법은 첫해에는 감가상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다음 각 연도에는 감가상각이 점점 더 작아지는 방법이다.[166]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은 매년 감가상각공제액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200%의 또는 150%의 일률적인 정률법이 남은 잔존가액에 적용이 된다.[167] 수정가속상각법(MACRS)은 200%의 정률법은 3년, 5년, 7년, 10년 내용연수 자산에 적용되고, 150%의 정률법은 15년, 20년 자산에 적용되는 것이 정률법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연수합계법(sum-of-the-years-digits method)

연수합계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가액에 매해 바뀌는 분수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분수의 분자는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미상각연수)를 나타내고, 분모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각각의 추정 내용연수(내용연수 합계)를 나타낸다.[168]

라) 소득예측법(income forecast method)

소득예측법은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녹음, 저작권, 책, 특허권 그리고 국세청 규칙이 정하는 다른 자산에 사용된다. 소득예측법은 IRC §197에 따라 상각되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무형자산 또는 우선구입권이 주어지는 임차계약(rent-to-own)의 대상이 되는 내구 소비재를 상각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169]

이 방법은 자산의 잔존가액을 뺀 취득가액에 분수를 곱하는데, 분자는 과세연도 동안의 자산으로부터의 순소득이고 분자는 그 자산이 사용하도록 배치된 과세연도 다음 10번째의 과세연도 말이 되기 전에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순소득이다.[170]

165) Burke, J. M. & Friel, M. K., *Taxation of Individual Income,* 9th edition, LexisNexis, 2010, p. 307.
166) Reg. §1.167(b)-2.
167) Reg. §1.167(b)-2.
168) Reg. §1.167(b)-3.
169) IRC 167(g)(6); Rev. Rul. 60-358.
170)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473.

마) 수정가속상각법(Th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1986년 12월 31일 이후 배치된 대부분의 유형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수정가속상각법(MACRS)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981년에서 1986년까지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가속상각법(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이 사용되었다. 수정가속상각법은 대상이 되는 자산의 비용을 자산의 유형에 따라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율을 적용하여 3, 5, 7, 10, 15, 20, 27.5, 31.5, 39년의 기간 동안 상각을 하는 것이다.

〈표 Ⅱ-2〉 수정가속상각법 자산의 유형과 내용연수

(단위: 년)

분류	내용연수	자산의 종류
3년 자산	3	트랙터, 렌트 후에 소유할 수 있는 자산
5년 자산	5	자동차, 컴퓨터, 사무실 집기, 연구 집기, 임대자산을 위한 가전제품
7년 자산	7	사무실 가구, 기구, 농장시설 다른 분류에 맞지 않는 자산
10년 자산	10	보트, 단일목적 농장구조물
15년 자산	15	토지부속시설 (조경, 도로, 다리)
20년 자산	20	다목적 농장구조물
거주용 임대 주택	27.5	임대소득의 80%가 거주지로부터 발생할 경우 임대 부동산
비거주 임대 자산	39	사무실, 거주용 주택이 아닌 상점, 창고

출처: Bryce Warnes, What Is Depreciation? and How Do You Calculate It?, 2020, https://bench.co/blog/tax-tips/depreciation/에서 이용 가능.

3년, 5년, 7년, 10년의 자산은 200%의 정률법 자산이고, 15년과 20년 자산은 150% 정률법 자산이다. 내용연수 3년에서 20년까지의 자산에 대하여 납세자는 정률법 대신에 정액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은 매년 상각자산 종류별로 가능하다.[171] 또 내용연수 3년에서 10년까지의 자산에 대하여 납세자는 200%의 정률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150%의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은 매년 상각자산 종류별로 가능하다.[172]

171) 이정미, 『실무자를 위한 미국세법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6, p. 116.
172) 이정미, 『실무자를 위한 미국세법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6, pp. 116~117.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배치되는 적격 수정가속상각법 자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너스 상각률이 허용된다.[173]

〈표 Ⅱ-3〉 수정가속상각법 자산의 보너스 상각율

자산 분류	보너스 상각률
2017년에서 2022년까지 배치되는 자산	100%
2023년에 배치되는 자산	80%
2024년에 배치되는 자산	60%
2025년에 배치되는 자산	40%
2026년에 배치되는 자산	20%

출처: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475.

바) 수정가속상각의 대체 감가상각법(MACRS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ADS)

외국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 면세에 사용되는 자산 등 일정한 자산에 대해서는 수정가속감가상각의 대체 감가상각법을 사용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대체 감가상각법을 사용해야 하는 자산은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대체 감가상각법은 정액법과 자산의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적용가능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한다. 내용연수가 없는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12년, 2017년 이후 배치된 거주용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는 30년,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74]

대체 감가상각법은 외국회사 또는 내국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데도 사용된다.[175]

3) 일정 감가상각 사업자산에 대한 IRC §179에 따른 비용공제 선택

IRC §179는 자산이 사용을 위하여 배치될 때 일정한 자산의 비용을 자본화시키는 대신에 즉시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Tax Cuts and Jobs Act(TCJA)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최대비용공제는 $1,000,000, 차감한도는 $2,500,000로 인상되었다.[176] 그리고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는데,[177]

173) IRC §168(k).
174)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00.
175) *Id.*
176) IRC §179(b).

2020년의 경우 비용공제한도는 $1,040,000이고, 설비의 구매 총액한도는 $2,590,000이다.

IRC §179에 따라 비용공제를 할 수 있는 자산은 거래 또는 사업에서의 사용을 위해서 구매한 기계류 또는 장비 같은 유형 동산이다. 적격 부동산은 적격 개량 자산과 지붕, 난방, 통풍, 냉방, 화재경보시스템, 보안시스템과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개량(improvements)을 의미한다.[178]

다. 사업비용(Business expense)

1) 거래비용 또는 사업비용의 의의

개인, 회사, 파트너십, 신탁, 상속재산(estate)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동안 거래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총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179] 그러나 일정한 비용은 자본화되거나 상각되어야 한다. 현금주의 회계 채택 납세자는 비용이 지불될 때 공제할 수 있고, 발생주의 채택 납세자는 비용이 발생될 때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과 개인용 둘 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비용은 각각의 활동에 배분되어야 한다.

공제가능한 비용은 통상적(ordinary)이고 필수적(necessary)이어야 하는데, 이는 비용과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통상적'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 분야에서 공통적(common)이고, 수용되는(accepted) 비용이다.[180] 그리고 '필수적'이라 함은 납세자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helpful), 적절한(appropriate) 비용을 의미한다.

거래(Trade) 또는 사업(business)이란 미국 연방내국세입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익 또는 유사한 것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익추구 동기(profit motive)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일정한 형태의 경제적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어떤 활동이 영리를 추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이 고려된다.[181]

---

177) 미국 국세청(IRS), IRS issues guidance on Section 179 expenses and Section 168(g) depreciation under Tax Cuts and Jobs Act, 2018,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on-section-179-expenses-and-section-168g-depreciation-under-tax-cuts-and-jobs-act에서 이용 가능.

178) *Id.*

179) IRC §162, Reg. §1.162-1.

180) S B. Heininger, SCt, 44-1 USTC ¶9109.

181) Reg. §1.183-2(b).

2) 창업비용(Start-up Expenditures)

사업을 시작하는 납세자는 창업비용을 $5,000까지 비용으로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는 달부터 180개월 동안 남은 비용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182]

창업비용은 개업 전의 시장조사, 필요한 소모품 및 직원 교육과 관련된 비용 등이 포함된다. 창업비용은 만약 그러한 비용이 동일한 분야에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급되었다면 공제가 허용되었을 비용이어야 한다.[183]

창업비용은 채무에 대한 이자, 세금, 또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이 180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처분되면 남은 이연된 비용은 공제가능한 손실이 된다.[184]

3) 인건비

사업자는 합리적인 급여 또는 개인적 역무에 대한 다른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 이는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하다.[185]

합리적인 급여란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기업이 유사한 역무에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급여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인적 능력, 직위의 책임, 지역의 경제상황을 포함한 사실과 환경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수행된 역무에 대해 다른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급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186]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만약 그 특수관계자가 비특수관계자에 의해서 수행되었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공제는 제3자에게 지불되었을 금액에 한정된다.[187]

4) 식사비 · 접대비 등(Meals, entertainment, and Gift Expense)

사업과 연관된 오락, 식사, 선물비용 공제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188]

182) IRC. §195, Reg. §1.195-1
183) IRC. §195(c)(1).
184)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62.
185) IRC. §162(a)(1), Reg. §1.162-7.
186) Reg. §1.162-9.
187) Transport Mfg. & Equip. Co., CA-8, 70-2 USTC ¶9627.
188) IRC §274(a)(1), Reg. §1.274-2

2018년 이전에는 ① 거래 또는 사업의 능동적인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②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회의 바로 전·후의 유흥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접대비의 50%는 비용으로 인정되었고, 식비는 100%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이전에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식비는 50%만 공제된다.[189]

고객과의 식사 및 동료와의 식사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식비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출장 시 식비도 50% 공제될 수 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휴일 파티, 직원의 생일 및 기념일 축하 행사, 야유회 등과 같은 회사 활동은 전액 공제되는데, 전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선물에 대한 공제는 매해 수령인별로 $2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190]

5) 세금(Tax)

소득의 창출을 위하여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 귀속이 가능한 모든 주(州)세, 지방자치단체세액, 외국세액은 세금이 발생하거나 납부된 연도에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191]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 이외의 세금이 납부되거나 발생하면 그것은 취득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나중에 그 자산이 처분될 때 실현되는 이익이 감소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세목에 따른 공제 여부를 살펴보았다.

- 연방실업기금법(FUTA)상의 세금은 특별세(excise tax)로, 고용주는 만약 그것이 사업 수행이나 소득창출에 있어서 과세연도 동안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이라면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192] FUTA상 세금은 주(州)의 실업기금에 대하여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후에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193]
- 고용주가 주의 실업보험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할 때에는 그것이 주법에 따라 세금으로 분류가 되고, 소득창출을 위해서나 사업 수행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으로 공제가 가

189) Notice 2018-76.
190) IRC §274(b)(1), Reg. §1.274-3.
191) IRC §164(a).
192) Reg. §1.164-2(f).
193) IRC §3302(a)(1).

능하다.[194] 만약 주가 그 기여금을 세금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그것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연방보험적립법(FICA)상 세금, 사회보장세, 의료보험료의 사업자분은 특별세(excise tax)이므로, 고용주는 만약 그것이 사업 수행이나 소득창출에 있어서 과세연도 동안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이라면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195]
- 연방소득세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지만,[196] 누적 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와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소득액을 계산할 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197]

6) 기부금

기부금 공제는 C(corporation)회사만 공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의 10%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10%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5년간 이월되는데 그 연도들의 공제도 최대 금액의 제한을 받는다.[198]

자영업자는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별지(Schedule) A에서 개인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파트너십은 파트너가 S법인은 주주가 기부금공제를 할 수 있다.

10% 한도는 2017년 캘리포니아 산불 및 태풍 Harvey, Irma, Maria 등 법으로 지정된 자연재해 지역에서 구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한 적격 기부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199]

7) 사업이자

이자비용 또는 거래 또는 사업, 또는 임대·사용료 소득의 창출에서 발생한 차입비용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회계방법에 따라 지불연도(현금주의) 또는 발생연도(발생주의)에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2017년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사업이자비용 공제는 전체적인 한도가 적용된다. 공제는 ① 납세자가 공제를 신청하는(투자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과세연도의 사업이자소득 ② 납세자의 조정과세소득(AGI, 0 이하 제외)의 30%, 그리고 ③ floor plan 금융이자비용의 합으로

194) 미국 국세청(IRS) Pub. 535(2019).
195) Reg. §1.164-2(f).
196) IRC §275.
197) Reg. §1.535-2, §1.545-2.
198) IRC §170(d)(2).
199)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71.

제한된다.[200] 이러한 제한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연간 총 매출액이 $26,000,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8) 피고용인 사업비용

개인이 피고용인으로 역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 또는 발생한 사업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201] 그러나 피고용인 사업비용은 공연예술가, 법에서 정한 근로자, 학교 교사, 수당을 받는 정부 근로자 등에게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시작하는 과세연도 동안에만 공제가 가능하다.[202]

9) 교통 및 자동차 비용

두 특정한 사업장을 오가는 데 드는 지역 교통비는 그것이 같은 사업이건 다른 사업이건 간에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비용이므로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203] 공제방법은 피고용인이 상환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지역 교통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상업적 사용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기차, 버스, 택시 비용도 또한 포함된다.[204]

10) 출장비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출장을 가는 데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여행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205] 출장이란 정규 사업장(tax home)에서 벗어나 일상 업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업무를 보고 집이 아닌 곳에서 자거나 쉬는 것이며, 이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11) 재택근무비용(Home Office Expense)

납세자 집 일부를 정기적으로, 온전히(exclusively)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임대료, 공과금(utility), 부동산세(real estate tax), 수리비(repairs), 관리비(maintenance)의 공

200) IRC §163(j), Prop. Reg. §1.163(j)-2.
201) IRC §62(a)(2).
202)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75.
203) Reg. §1.162-1(a).
204)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76.
205) IRC §162(a)(2), Reg. §1.162-2.

제가 가능하다.

Home office는 납세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주 사업장으로,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납세자와 만나거나 거래하는 환자, 고객이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만약 납세자가 집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부속되는 별개의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장소이다.[206] 만약 납세자가 피고용인이라면 집의 사업적 사용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Home office 비용은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소득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적 사용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업비용이 집의 사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공제가능한 주택공제만큼 감소된 금액이다.[207]

Home office 비용과 관련된 사업비용은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된다.

① 집의 사용에 할당될 수 없는 사업비용(예를 들어 사무용품)

② 집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공제가능한 주택비용(예를 들어 모기지 이자)

③ 사업적 사용에 할당가능한 가사비용(예를 들어 공과금, 보험)

④ 배분가능한 감가상각[208]

가사비용과 감가상각의 공제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없다. 미사용된 가사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하지만 여전히 같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2) 적격 사업소득 공제

개인, 신탁, 상속재산(estate)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 S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국내 적격 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의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 도관공제(pass-through deduction)라고도 알려져 있는 적격 사업소득 공제는 통합 적격사업소득 또는 순 자본이익기준 과세소득의 초과액의 20% 중 적은 것이다.[209]

13) 전문직 비용(Professional expense)

의사 · 변호사 등 전문직의 업무 수행은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

206) IRC §280A(c).
207) IRC §280A(c)(5).
208) 미국 국세청(IRS) Pub. 587(2019).
209)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395.

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직업상 방문을 위한 자동차의 사용, 전문가 조직에 대한 회비, 사무실 공간을 위하여 지불한 임대료 및 다른 통상적 · 필수적 사업비용을 포함한다. 책이나 장비 구입비용은 만약 그것들의 내용연수가 1년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210]

사업, 재미, 오락 또는 다른 사교적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클럽에 지불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다.[211] 그러나 이러한 배제는 전문가 조직(예를 들어 변호사 또는 회계사 협회) 또는 공공서비스 조직(예를 들어 로터리 클럽)에 지급하는 회비에는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14) 농업종사자 비용(Farmer's expense)

원예 묘목 사업(horticultural nursery business)을 포함한 농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된다.[212] 허용되는 공제에는 1년 이하로 사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소형 도구, 가축에게 먹이주고 키우는 것(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과 납세자의 노동력은 제외), 농장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트럭의 유류, 수리비, 유지비를 포함한다.

15) 임대료(Rents and leasehold payments)

세입자가 사업재산에 지급한 사업비용 임대료 및 리스계약 차주(tenant)가 지주(landlord)를 대신하여 내도록 하는 경우 재산세와 이자와 같은 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213] 사업재산에 대하여 리스계약의 취소로 차주(lessee)가 지급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공제가능하다.[214] 그러나 리스계약의 취소로 대주(lessor)가 지급하는 금액은 자본지출이므로 취소된 리스의 미경과 기간에 걸쳐서 상각될 수 있다.[215]

---

210) Reg. §1.162-6.
211) IRC. §274(a)(3); Reg. §1.274-2(a)(2)(iii).
212) Reg. §1.162-12.
213) IRC §162(a)(3), Reg. §1.162-11.
214) A J. Cassatt, CA-3, 43-2 USTC ¶9579.
215) Peerless Weighing & Vending Machine Corp, Dec. 29,713, 52 TC 850.

3. 퇴직 · 연금 소득(Retirement Plans)

가. 개요

1) 퇴직 · 연금 소득 유형

고용주는 일정한 수익의 요건을 갖춘 연금, 이익분배제도(profit-sharing), 또는 주식 보너스 제도를 만들 수 있다.[216] 요건을 갖춘 적격 제도는 ①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탁에 대해서는 과세면제,[217] ② 신탁에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공제를 해주고, ③ 고용주의 기여금과 이익에 대해서는 피고용인에게 과세이연을 하는 것을 포함한 일정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 제공 퇴직연금제도는 §401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적격 퇴직연금제도에는 두 가지 일반적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s) 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연금부담금이 적립되는 방법으로 근로자 개인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투자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은퇴 시의 연금 급여수준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근로자에게 있다. 가입대상에 따라 401(k)연금제도, 457연금제도, 403(b)연금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장래에 수령하는 근로자의 연금급여를 근무연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결정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에 설정된 신탁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한다.[218]

적격 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 매칭 저축 제도(savings incentive match plan), 즉 SIMPLE IRA 또는 간이방식 근로자 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제도와 같은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기반 제도를 만들어서 납입을 할 수도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연금계좌로 급여공제를 통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219]

---

216) IRC §401.
217) IRC §501(a), Reg. §1.401(f)-1(c)(1).
218)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679.
219) *Id.*

1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적격 소규모 사업은 일정한 연금제도를 개설하는 데 발생한 초기비용(start-up)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관계말고도 한 해에 보수를 받는 개인은 퇴직에 대비하여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에 납입할 수 있다.[220]

2) 적격 퇴직연금제도 요건(Qualified Plan Requirements)

적격 퇴직연금제도는 과세면제 신탁에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특징을 가지는 연금제도이다. 납부한 기여금은 현재로 공제가 가능하고, 운용단계에서 이익의 누적은 비과세이며, 수익이 지급될 때 과세가 된다. 적격 퇴직연금제도가 되기 위해서, 그 제도는 IRC §401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적격인 지위를 잃게 되면 수익을 받을 자는 즉시 현재와 과거의 고용주 기여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신탁수익은 과세가능해지며, 이연은 금지된다.[221]

적격 퇴직연금제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영구적이어야 하며 피고용인과 그들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나. 전통적 개인연금계좌(Traditional IRA)

1) 전통적 개인연금계좌 의의와 요건

대표적인 은퇴연금 중 하나인 전통적 개인퇴직연금계좌(IRA, 이하 전통적 IRA로 칭함)는 연금불입 시 소득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소득으로 과세를 받는 구조를 가지는 연금으로,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보수 또는 이혼수당을 받고 과세연도 내내 70.5세 미만인 자는 전통적 IRA에 납입을 할 수 있다.[222]

일반적으로 전통적 IRA에 돈을 납입하려면 ① 납입자가 해당 과세년도 말에 70.5세가 아니어야 하고, ② 능동소득이 있어야 한다.[223]

나이 요건은 2019년도 세금신고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까지 70.5세가 아니어야 한다. 능동소득은 월급, 커미션, 급여, 상여금, 봉사료(tip)와 같은 근로소득과 개인적 역무를 수

220) *Id.*
221)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685.
222) IRC §219, §408(e)(1).
223) IRC §219, §408(e)(1).

행하면서 받은 다른 금액을 포함한다. 또 능동소득은 2019년 전에 시행된 이혼 또는 별거 협정에 따라 받는 수당을 포함한다.[224] 그러나 능동소득은 임대료,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같은 수동소득이나 그 밖의 세법상 규정된 일부 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전통적 IRA 운용

전통적 IRA의 기여금 납입 한도는 $6,000(catch-up 기여금이 허용되면 $7,000)와 납세자의 급여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225] 70.5세가 지나면 계좌에 돈을 납입할 수 없고, 50세 이후부터는 은퇴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 한도가 높아진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70.5세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에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penalty)가 발생한다. 그러나 59.5세를 넘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은 당연히 소득이 되어 과세가 되고, 추가로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그러나 59.5세 이전이라도 인출한 금액을 ① 의료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조정총소득(AGI)의 10% 이상만 해당), ② 최초로 주택(first home)을 취득하는 경우, ③ 교육비 지출보다 적은 경우, ④ 전면적·영구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⑤ 정부가 세금징수를 위해 인출해간 경우(IRS levy)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10%의 가산세가 면제된다.

10% 가산세 이외에 나머지 벌칙은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6% 가산세가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인 4월 15일(세금신고 연장 시 10월 15일) 이전에 그 초과분을 다시 인출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6% 가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에 인출하지 못할 경우, 59.5세 미만이라면 돈을 인출하는 데에 추가 1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벌칙으로 70.5세 이후에도 분배받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분배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50%의 특별세(excise tax)가 적용된다. 전통적 IRA는 은퇴연금을 목적으로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70.5세 이후에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반드시 출금해야 한다. 받을 최소 출금 금액은 계좌잔고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대수명 표(life expectancy tables)상의 지급기간으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되고, 그 이하로 받아가게 되면 특별세(exc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출금은 70.5세가 되는 해부터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다음해 4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24) IRC §219(f)(1).
225) IRC §219(c), Notice 2018-83.

다. Roth IRAs

Roth 개인퇴직연금계좌(IRA, 이하 Roth IRA라고 칭함)는 세후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종류의 개인연금이다.[226]

Roth IRA는 Roth IRA에 납입금이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적 IRA와 같이 취급된다. 반면에 Roth IRA으로부터의 적격 출금은 총수입액에서 제외가능하다.

전통적 IRA와 Roth IRA의 최대 납입한도는 2019년에는 $6,000(2020년에도 $6,000으로 예정)이다.[227] 각 연금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개인퇴직연금계좌 둘 다에 납입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과세연도 말 50세 이상인 개인은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에 $1,000의 추가적인 catch-up 납입을 할 수 있다.[228] Roth IRA로의 전환 납입금은 연간 납입금 한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 전통적 IRA와는 달리 70.5세가 지난 후에도 Roth IRA에 납입을 할 수 있다.

Roth IRA에서는 납세자의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납입금 한도가 차감된다. 2019년의 경우 수정조정총소득(MAGI) 차감범위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93,000와 $203,000 사이이고, 개인단독신고, 부양자신고, 배우자가 과세연도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서 부부개별신고를 하면 $122,000와 $137,000 사이이다.

Roth IRA에서의 적격 출금(distribution)은 수령자의 총수입액에 포함되지 않고, 조기 출금에 대한 10%의 추가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229] 적격 출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납입자가 Roth IRA에 납입하는 첫 과세연도에서 5년의 기간 종료 전까지 Roth IRA 출금(전환 납입금에 할당되는 출금 포함)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5년의 보유기간은 보유기간 시작 후 5번의 연속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에 종료한다. 둘째, 출금은 그것이 ① 납입자의 나이가 59.5세가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납입자의 사망일 또는 이후 수익자(또는 납입자의 상속재산(estate))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③ 장애를 가지게 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④ 적격 최초 주택구매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출금의 경우에만 적격 출금이 된다.[230]

---

226) IRC §408A.
227) IRC §408A(c), Reg. §1.408A-3, Notice 2018-83.
228) IRC §219(b)(5).
229) IRC §408A(d), Reg.§1.408A-6.
230) IRC §408A(d)(2).

라. SIMPLE Plans and SEPs

1)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 매칭 저축연금 제도(SIMPLE IRA)

적격 소규모 사업자인 고용주는 직원을 위하여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231] IRA(이하 SIMPLE IRA라고 칭함)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232] SIMPLE IRA는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을 고용주가 일정비율로 매칭하여 주거나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비율을 연금계좌에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즉 SIMPLE IRA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SIMPLE IRA로 선택 기여금으로 납입하게 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서면 급여 차감 약정(written salary reduction agreement)인 것이다. 고용주는 급여의 3%까지 매칭 기여금으로 또는 의무기여금으로 근로자의 SIMPLE IRA에 납입을 해야 한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기여금과 고용주의 기여금 외의 다른 기여금이 SIMPLE IRA에 납입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다른 SIMPLE IRA로부터의 전환은 가능하다.[233]

SIMPLE IRA으로부터의 출금은 전통적 IRA 출금에 적용되는 같은 규칙에 따라 근로자(또는 수익자나 근로자의 상속재산(estate))에 과세된다.[234] 연금계좌에서 조기 인출을 하면 10%의 추가과세가 적용되는데, 근로자가 그 제도에 처음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출금을 하게 되면 25%의 과세가 적용된다.[235]

2) 간이방식 근로자 연금 제도(SEP IRA)

간이방식 근로자 연금제도(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IRA라고 칭함)는 고용주가 동일한 비율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연금을 적립시켜주는 제도[236]로 근로자는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할 수 없다. 고용주가 SEP IRA에 적립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SEP IRA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의 급여의 25%와 $56,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의 총소득에 제외한다.[237] 급여는 2019년 기준 $280,000(2020년에는 $285,000 예상) 이하의 소득까지만 개설 가능하다. 만약 고용주가 연

231) 근로자를 위한 인센티브 매칭 저축 제도.
232) IRC §408(p).
233) IRC §408(d)(3)(G).
234) IRC §402(h)(3), (k).
235) IRC §72(t)(6), Notice 98-4.
236) IRC §408(k).
237) IRC §402(h), Notice 2018-83.

간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납입을 하면 초과 납입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과세가 되고 인출을 하지 않았다면 6%의 특별세(excise tax)가 적용된다.

SEP IRA를 개설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동안 근무를 했어야 하며, 2019년 기준 $600 이상(2020년 $600 예상)을 받아야 한다. 전통적 IRA와 달리 SEP IRA의 계좌 보유자는 70.5세 이후에도 납입을 할 수 있다.[238]

고용주는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신고 기한까지(연장기한 포함) 기여금을 납입해야 한다.[239]

SEP IRA에서 출금을 하면 전통적 IRA에서의 출금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과세된다. 59.5세 이전에 출금하면 10%의 추가과세가 이루어진다.

238) IRC §219(b)(2).
239) IRC §404(h).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가. 개요

개인 납세자는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에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큰 것을 선택하여 공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는 기초 표준공제액과 추가 표준공제(납세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맹인인 경우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합한 금액이다.[240] 일정한 경우에는 순 재해손실(net disasters losses)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나. 기초 표준공제(Basic Standard Deduction)

기초 표준공제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방식(filing status)에 따라 다양하며,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아래는 2019[241]년 및 2020년의 신고방식(예정)에 따른 기초 표준공제이다.

〈표 Ⅲ-1〉 미국의 2019년 및 2020년(예정) 기초 표준공제

(단위: 달러)

신고방식	공제액	
	2019년	2020년(예정)
부부합산신고와 사별의 경우 생존배우자 (Married filing jointly and surviving spouses)	24,400	24,800
세대주신고(Head of household filers)	18,350	18,650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200	12,400
개인단독신고(Single filers)	12,200	12,400

출처: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161.

다. 부양가족 공제(Dependents Deduction)

어떤 납세자의 피부양자인 납세자의 공제는 그 개인이 실제로 피부양자로 주장되는지와 관계없이 더 적은 표준공제금액에 한정된다. 피부양자의 기초 표준공제는 다음 둘 중에서 더

240) IRC §63(c).
241) Rev. Proc. 2018-57.

큰 것을 초과할 수 없다.

① 2019년의 경우 $1,100(2020년에도 $1,100로 예정) 또는

② $350과 적용가능한 개인 소득을 표준공제액을 한도로 한 것(예를 들어 단일 신고자의 경우 2019년에 $12,200)의 합

이 한도는 기초 표준공제에 적용되며 노인과 맹인 납세자를 위한 추가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장학금과 연구비지원금(fellowship grant)은 이 목적으로는 취득된 소득으로 간주한다.[242]

라. 노인 또는 맹인 납세자 공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말에 〈표 Ⅲ-1〉의 기초 표준공제에 추가하여 추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243]

추가 금액은 ① 부부합산신고, 부부별도신고, 사별의 경우 생존배우자의 경우 2019년에는 $1,300(2020년도 동일 예정)이고, ② 단독신고, 미혼자, 합산대상자(head of household)의 경우 2019년에는 $1,650(2020년도 동일 예정)이다. 과세연도 말에 65세 이상이면서 맹인인 개인납세자에게는 두 개의 추가 표준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 개인이 합산신고를 할 경우 둘 다 65세 이상이면서 맹인일 경우에는 4개의 추가 표준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 표준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연도가 끝나기 직전에 65세 이상 또는 맹인, 혹은 둘 다에 해당하여야 한다. 어느 해의 1월 1일에 65세가 된 자는 전년도 12월 31일에 65세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맹인을 이유로 추가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 또는 등록된 검안사(optometrist)로부터 확인서(certified statement)를 발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납세자의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야 하며 ① 그 자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쓰고 더 좋은 시력을 가진 쪽이 20/200보다 더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② 그 자의 시계(field of vision)가 20도 이하라는 것 중 하나가 설명되어야 한다.

부부별도신고를 하는 개인은 그 해 동안 총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추가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다.[244]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이거나 혹은 둘 다인 개인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납세자는 그 개인에 대해서 추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42) 미국 국세청(IRS) Pub. 501(2019).
243) IRC §63(f), Prop. Reg. §1.63-3, Reg. §1.151-1, Rev. Proc. 2018-57.
244) IRC §151(b).

마.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

만약 결혼한 개인이 각자 소득을 신고한다면, 두 배우자 모두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든지, 표준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며,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배우자의 표준공제액은 그 자가 65세 이상 또는 맹인 혹은 둘 다에 해당한다고 해도 영(0)이 된다.

이 규칙은 만약 한 배우자가 세대주(head-of-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 영(0)인 표준공제는 또한 단축과세연도(short tax year)의 개인, 비거주자인 외국인, 상속재산(estate), 신탁, 공동투자신탁자금(common trust fund), 파트너십에도 적용이 된다.[245] 항목별 공제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는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고서 Form1040 별지(Schedule) A 마지막 줄의 박스에 체크해야 한다.

바. 순 재해손실(Net Disaster Losses)

개인 납세자는 과세대상 소득과 최저한세 납세액(alternative minimum tax (AMT) liability)을 계산할 때 적격 순 재해손실(net qualified disaster losses)에 대한 추가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적격 순 재해손실(net qualified disaster losses)은 지정된 재해 영역-2017년 캘리포니아 산불, 2017년 태풍 Harvey · Irma · Maria 그리고 2016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개인적 피해로 인한 손실이다.

2. 인적 공제(Exemptions)

가. 개요

2018년 이전과 2025년 이후로 시작하는 과세연도 동안 개인은 본인 인적 공제와 그 자의 세금신고서에 피부양자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인적 공제가 폐지되었다.

인적 공제액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해마다 조정되며, 2017년에는 $4,050이었고,[246] 2018년과 2025년 간의 과세연도의 인적 공제액은 영($0)이다. 이 기간 동안 본인 인적 공제

245) IRC §63(c)(6).
246) IRC §151(d), Rev. Proc. 2016-55.

및 피부양자 인적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납세자의 피부양자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은 다른 세제혜택(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결정에 적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다른 세제혜택에 있어서 피부양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적 공제액은 2019년에는 $4,200 (2020년에는 $4,300로 예정)이다.[247]

나. 본인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2018년 이전과 2025년 이후로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개인은 세금신고서에 그 해[248]에 해당하는 인적 공제액을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는 데 세금신고서 Form 1040에 본인 인적 공제로 적용할 수 있다.[249]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인적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시간제로 일을 한 학생은 만약 다른 납세자(즉, 부모)가 세금신고 시에 그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세금신고서에 본인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본인 인적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부양가족이 2017년에 $1,05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총소득으로 가진다면 그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을 것이고 그 해에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018년 이전과 2025년 이후로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부부가 합산신고를 한다면 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두 개의 본인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합산신고를 한다면 다른 납세자의 신고서에 피부양자로 될 수 없다. 만약 부부가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또는 한 사람이 세대주(head of household)가 되는 경우) 각 배우자는 그들의 개별적 신고서에 각자 본인의 인적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총소득이 없고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총소득을 가지는 배우자는 별도의 세금신고서에 다른 배우자의 본인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개별신고를 하는 결혼한 납세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두 개의 인적 공제(배우자 본인 인적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2018년 이전과 2025년 이후로 시작하는 과세연도 동안 사망하였다면 생존 배우자가 합산신고를 할 것이고 생존 배우자는 같은 해에 재혼하지 않는 한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의 과세 신고 방식의 결정은 해당 과세연도 말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의 사망 시에 이루어진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과세연도

247) Rev. Proc. 2018-57.
248) 2017년의 경우 $4,050, 2018년에서 2025년의 경우 $0이다.
249) IRC §151(b), Reg. §1.151-1, Prop. Reg. §1.151-1.

말이 되기 전에 재혼한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 상태(status)는 그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결정이 된다. 만약 납세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법적으로 별거를 공표한다면, 납세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250]

거주자 외국인은 2018년 이전과 2025년 이후로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본인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거주자 외국인이 합산신고를 하면, 배우자에 대한 본인 인적 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일방 배우자가 그 과세연도 동안 어느 때라도 비거주자 외국인이었다면, 그 납세자가 거주자 외국인으로 취급되도록 선택을 하지 않는 한 합산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251]

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Dependency Exemption)

2018년 이전과 2025년 이후로 시작하는 과세연도 동안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각 피부양자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252] 공제액은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2017년에는 $4,050이다. 2018년에서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 동안에는 공제액이 영($0)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피부양자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조세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피부양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조세혜택을 위하여 피부양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제액은 2019년에는 $4,200(2020년에는 $4,300 예정)이다.[253]

부양가족은 그 해의 납세자의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 또는 적격 친척(qualifying relative)인 개인으로 정의된다.[254]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적격 자녀 및 적격 친척 둘 다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부양가족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신고서에 기입해야 한다.[255]

② 부양가족은 미국 시민 또는 그 해의 일부 기간 동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일정한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부양가족은 자신의 세금신고 시에 부양가족을 적용할 수 없다.

④ 결혼한 개인은 만약 그 상대 배우자와 합산신고를 한다면 합산신고가 추정 또는 원천징

250) 미국 국세청(IRS) Pub. 17 (2017).
251) IRC §6013(a)(1), Reg. §1.6013-1(b).
252) IRC §151(c), Reg. §1.151-1, Prop. Reg. §1.151-1.
253) Rev. Proc. 2018-57.
254) IRC §152, Prop. Reg. §1.152-1.
255) IRC §151(e).

수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목적으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배우자들 중 누구도 그들이 별개로 세금신고를 했을 경우에 과세소득이 없는 한 부양가족으로 적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 자녀의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법적으로 별거를 한 경우에 부양가족 적용에 대해서는 특별규칙이 적용된다. 또 만약 자녀가 납세자 한 명 이상의 적격 자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를 적용하기 위하여 tie-breaking rule이 적용된다.

3. 개인 소득공제(Deductions of Individuals)

가. 개요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총소득에 대한 조정으로 일컬어지는 조정총소득(AGI)을 산출하기 위하여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상위공제)

② 신고방식에 근거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동안의 적격 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총소득(AGI)로부터 공제하는 것

〈표 Ⅲ-2〉 미국의 개인소득세 계산 체계

	Gross Income	총소득
-	Deduction for AGI	상위공제(조정총소득 산출을 위한 공제)
=	Adjusted Gross Income	조정총소득
-	Itemized Deduction (or 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
-	Exemptions	인적 공제
=	Taxable Income	과세표준
×	Tax Rate	세율
=	Tax	산출 세액
-	Tax Credit	세액공제
=	Tax Due(or Refund)	납부 세액(환급 세액)

출처: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p. 154-155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2018년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납세자 본인의 인적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공제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납세자의 총소득을 감소시킨다.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적 비용. 생활비용, 가족 비용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고,[256]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만이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개인의 조정총소득(AGI)은 총소득과 과세표준 사이에 중간에 있는 숫자이다. 그것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소득에 의해서 제한되는 다른 세제 혜택을 계산하기 위한 시작점이다.[257] 조정총소득(AGI)은 개인의 총소득에서 다음의 공제를 차감함으로써 계산된다.[258]

-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으로서가 아닌 납세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래 또는 사업비용
- 고용주의 비용정산(reimbursement) 또는 비용 공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도에서 피고용인으로서 납세자의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불한 상업 또는 사업상 비용
- 적격 예술가, 학교 교사, fee-based government employee, National Guard or Armed Forces Reserves 회원의 일정 비용
- 임대자산 또는 사용료 자산에 귀속되는 비용

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개인 납세자는 표준공제 대신에 개인 비용에 대한 일정한 항목별 공제를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259] 보통 표준공제보다 항목별 공제가 많으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다. 세법개정으로 2018년에는 허용되는 개별 공제 항목과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고, 항목별 공제 감축제도가 폐지되었다.

납세자는 ① 의료(치과의료 포함) 비용, ② 주(州)세, 지방세, 외국세액, ③ 주택 모기지 이자, ④ 기부금, ⑤ 재해 및 도난 손실, ⑥ 일정한 잡비용을 포함하여 세금신고서 별지(Schedule) A를 작성하여 첨부함으로써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개는 항목별 공제가 표준공제

256) IRC §262, Reg. §1.262-1.
257) IRC §62, Temp. Reg. §1.62-1T.
258) 이를 상위공제(above-the-line)라고도 함.
259) IRC §63(e).

보다 더 높을 때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만,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가 표준공제보다 더 적을 때에도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260] 수정신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 신청 여부를 변경할 수도 있다. 부부개별신고의 경우에는 양 배우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018년에서 2025년까지 개인 납세자의 조정총소득(AGI)이 세금신고 유형과 연간 물가상승(inflation) 조정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적용가능 항목별 공제는 차감(phaseout)되거나 감소된다. 이러한 차감은 의료비용, 투자 이자비용, 개인용 또는 비사업용 소득창출 자산의 재해·도난 손실 또는 허용가능한 도박 손실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소(reduction)는 2018년 이전 기부금 한도, 일정한 식비나 오락비용에 대한 한도, 2018년과 2025년 사이에는 기타항목별 공제에 대한 2%, 조정총소득 한도를 포함한 모든 다른 제한이 적용된 후에 적용된다.[261]

라. 의료비 공제

1) 개요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세금신고 시 공제된다. 즉 개인적으로 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은 자들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지 않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서 그 비용들을 공제하는데, 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로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일반적으로 납세자 본인(taxpayer)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다.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되지만,[262] 1952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라면 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조정총소득(AGI)이 $90,000이라면,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9,000 이상 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세법에서 의료비라고 인정한 비용만 공제가 되고, 의료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만 인정이 된다(AGI 10% limitation).

---

260) 예를 들어 주(州) 세금신고서에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이익이 연방소득세 신고에서 표준공제를 신청하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

261)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p. 405~406.

262) IRC §213, Reg. §1.213-1.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나, 성형시술 등을 하는 것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의료비 포함 범위

의료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사 처방을 받은 약(Prescription Medicines)
- 의사나 치료사에게 지불한 비용
- 각종 의료 검사(X-ray, Laboratory services 등)
- 각종 의료 진단 비용(Pregnancy test, blood sugar test kit, full-body scan등)
- 숙식비 포함 입원비(Hospital care including meals and lodging)
- 의료보험료 납부한 것(Health and dental insurance premium)
- 금연 프로그램 및 관련 처방 약(A program to stop smoking and prescription medicines)
- 치료목적의 체중감량 프로그램(A weight-loss program as treatment)
- 약물 및 알코올중독 치료(Medical treatment for drugs and alcohol addiction)
- 의료 보조기구(안경, 렌즈,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Glasses, lenses, wheelchair, hearing aid, crutches)
- 라식/라섹 등의 눈 수술(Laser eye surgery)
- 구급차 비용 및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여정 비용(Ambulance services and other travel for medical care)
- 산모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및 관련 도구(Breast pumps and supplies)

이 외에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병원 관련 시설까지 이동했다면, 실제 발생한 비용(주유비 등)과 운행거리를 비용화한 금액 (1마일당 19센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에게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납부한 보험료(Medicare B, Medicare part D)가 공제되고, 장기요양보험료 (long-term care premium)도 공제가 되지만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의료비로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다이어트 관련 식비(Cost of diet food)

- 미용 목적의 성형(Cosmetic surgery not to improve deformity)
- 생명보험료(Life insurance premium)
- 정부에 납부하는 의료보험료(Medicare tax)
- 건강한 아이를 돌보는 간호 도우미(Nursing care for a healthy baby)
- 불법 약물(Illegal drugs)
- 미국 특정 기관에서 승인받지 않은 수입된 약(Imported drugs not approved by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 FDA 승인이 되지 않은 외국에서 제조된 약(Foreign-made drugs without FDA approval)
- 처방 받지 않은 약(Nonprescription medicines)
- 장례비용(Funeral, burial, or Cremation(화장))

이 외에도 납세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Income protection policy)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교육비 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1) 개요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공부를 할 경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interest)는 세금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Student loan interest)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① 실제로 그 해 대출 이자를 납부한 경우, ② 대출 이자를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④ 납세자의 신고방식(filing status)이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닌 경우, ⑤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매년 설정되는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납세자가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납세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피부양자 인적 공제(Exemption)를 그 세금신고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 신고방식(filing status)이 부부개별신고만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하였다면 그것은 납세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적격 교육기관과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일반적으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출받은 돈을 대학, 직업학교, 다른 중등과정 후의 교육기관 등에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며, 학위나 자격증 취득의 목적으로, 적어도 half-time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① 등록금 및 수업료(tuition and fees), ② 주거비용(room and board), ③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books, supplies, and equipment), ④ 다른 필요한 비용(other necessary expenses; 예를 들어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과 같다.

학자금은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피부양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일반적으로 인적 공제(exemption)를 받기 위한 피부양자 요건과는 조금 다르고, 보다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바. 세금

과세연도에 납부하거나 발생한 일정한 세금-① 주세, 지방세, 외국소득세, ② 주와 지방의 판매세, ③ 주와 지방, 외국의 부동산세, ④ 주와 지방의 동산세, ⑤ 소득 배분에 부과되는 generation-skipping transfer(GST)세를 포함하는-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사업 또는 수익창출을 위하여 보유한 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과세연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하거나 납부한 세금은 항목별 공제로만 공제가 가능하다(세금신고서 별지 A). 개인의 주세의 항목별 공제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로 제한되어 있다. 자영업(self-employed)을 하는 개인은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above-the-line으로서 자영업세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수익창출을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직접 귀속될 수 있는 주세, 지방세, 외국세액은 통상적·필수적 사업비용 또는 투자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es)

주(州) 부동산세, 지방 부동산세 및 외국 부동산세는 세금이 발생 또는 납부된 해에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263] 부동산세란 부동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일반 공공복지를 위하여 부과된다.

263) IRC §164(a)(1), Reg. §1.164-1(a), §1.164-3.

아. 이자

주택 모기지이자(Qualified residence acquisition debt)의 경우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융자금 $750,000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가 가능하다.[264] 그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1,000,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자(Home equity indebtedness)는 $100,000까지는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다. 대출금은 주택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공제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자선단체 기부금

개인 납세자는 적격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를 소득세신고서 별지 A에 신청할 수 있다.[265] 과세연도 동안의 기부금 공제는 기부를 받은 기관의 유형과 기부되는 자산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납세자의 기부금 기초가액의 비율로 한정된다.[266] 만약 부부합산신고를 한다면 그 비율은 부부의 총기부금 기초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2017년 세법 개정 전에는 현금 기부의 경우 조정총소득(순영업손실(NOL) 공제 이전)의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조정총소득의 60%까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를 넘는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차. 이사비용 공제(Moving Expenses)

2017년까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직장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267] 2018년에서 2025년 과세연도까지 이사비용은 총수입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2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근로자는 적격 이사비용을 부가급여(fringe benefit)로 총수입과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간에 관계없이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268]

---

264) IRC §163(h)(3), Pub. 936.
265) IRC §170.
266) IRC §170(b)(1), Reg. §1.170A-8.
267) IRC §62(a)(15), §217, 서식은 Form 3903을 사용함.
268) IRC §217(g), Reg. §1.217-2(g), 미국 국세청(IRS) Pub. 521(2018).

공제대상이 되는 이사비용은 운송, 이삿짐과 개인물품의 임시 보관, 숙박을 포함한 새로운 거주지로의 여행비용을 포함하되, 식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사를 하면, 실제로 발생하여 지불한 금액 또는 표준거리공제(standard mileage allowance)[269]와 주차비용 및 톨게이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270]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① 새 집 구입비용, ② 자동차 번호판(car tag), ③ 운전면허증, ④ 주택매매비용(부동산 수수료, 모기지 수수료 등), ⑤ 리스계약을 하거나 해지하는 비용, ⑥ 집의 매도를 쉽게 하기 위한 개량비용, ⑦ 집의 처분 손실, ⑧ 클럽 맴버십 처분 손실, ⑨ 모기지 위약금, ⑩ 이사 전 집 구하기 위한 비용, ⑪ 부동산세, ⑫ 카페트와 휘장 수리비용, ⑬ 이전 거주지로 돌아오는 여행비용, ⑭ 보증금(이사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보증금 포함), ⑮ 외국 이사를 위한 것 그리고 수송 시 발생한 것을 제외한 창고료가 있다.[271]

미국 이외의 국가로 일을 시작할 경우에도 이사 및 보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업무에서 복귀하는 개인도 미국으로 돌아오는 데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외에서 근무하던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 또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귀환하는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새로운 직장은 납세자의 예전 거주지에서 예전 근무지까지의 거리보다 납세자의 예전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 되는 거리여야 한다.

이사 직후 12개월 기간 동안 납세자는 39주 이상 동안 전업으로 근무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이사 직후 24개월 동안 78주 이상, 첫 12개월 동안은 39주 이상을 전업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요건은 사망, 장애, 고의적 불법행위를 제외한 강제별거 또는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다른 곳으로 전근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러한 근무요건이 이사비용이 발생되어 지급한 과세연도(연장기간 포함)의 세금신고서 작성기한까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다음 연도 세금신고 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총수입액 포함시켜야 한다.

이사는 새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사비용은 납세자가 새로운 직장 또는 사업을 신고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1년 이내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비용은 납세자가 1년 이내에 이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닌 한 공제되지 않는다.

269) 2019년에는 1 마일당 20센트인데, 2019년에는 일반 이사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군인에게만 허용된다.
270) Rev. Proc. 2010-51, Notice 2019-2.
271) 미국 국세청(IRS) Pub. 521(2018), p. 4.

4. 세액공제(Tax Credits)

가. 근로 관련 세액공제

1)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액 세액공제(Credit for Taxes Withheld on Wages)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272] 이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하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 또한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한 명 이상의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사회보장 급여 기준액이 2019년 경우 총 $132,900 (2020년 $137,700 예상) 이상을 버는 경우에는 초과 사회보장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다. 원천징수될 수 있는 사회보장세의 최대금액은 급여 기준액의 6.2%이다. 같은 규칙이 초과 원천징수된 railroad retirement taxes에도 적용된다. 의료보험료는 과세를 위한 급여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초과 원천징수될 수 없다.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 또는 railroad retirement taxes는 소득세신고서 별지(Schedule) 3에 세액공제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Form 843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273] 비거주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유효하게 관련이 있지 않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 세액공제가 허용된다.[274]

2) 근로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가) 공제요건 및 신청절차

근로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ITC)는 납세자의 소득(기준금액까지)과 적격 자녀의 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75]

첫째, 납세자의 조정총소득이 〈표 Ⅲ-3〉에서처럼 일정액보다 적어야 한다.

272) IRC §31.
273) Reg. §31.6413(c)-1.
274) IRC §33.
275) IRS Pub. 596(2019), p. 2.

〈표 Ⅲ-3〉 2019년 근로소득공제 대상 조정총소득 기준액

(단위: 달러)

소득세 신고유형	납세자의 적격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개인단독신고	15,570	41,094	46,703	50,162
부부합산신고	21,370	46,884	52,493	55,952

출처: 미국 국세청(IRS) Pub. 596(2019), p. 2, https://www.irs.gov/pub/irs-pdf/p596.pdf에서 이용 가능.

둘째, 납세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번호는 미국에서의 근로를 위해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납세자의 세금신고기한(연장 포함)이 되는 날 전까지 발급되어야 한다.

셋째, 부부개별신고 방식을 채택해서 신고를 할 수 없다. 결혼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합산신고를 해야 하지만, 과세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다른 배우자와 떨어져 산 기혼 배우자는 부양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개별 신고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넷째, 납세자는 과세연도 내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섯째, 납세자는 외국근로소득과 관련된 Form 2555를 작성할 수 없다.

여섯째, 납세자의 투자소득이 $3,600 이하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관계, 나이, 거주지, 합산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납세자의 적격 자녀지위가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한 사람 이상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납세자가 또 다른 자의 적격 자녀여서는 안된다.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① 납세자(또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과세연도 말에 25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② 납세자가 또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적격 자녀가 아니고, ③ 납세자가 과세연도의 반 이상 동안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 근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연도 종료 후 두 번째 달 15일(2월 15일)이 되면 환급한다.[276] 한 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위하여 세금신고서 별지(Schedule) EIC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납세자, 납세자의 배우자, 각 적격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인납세자식별번호는 여기에 사용되지 않는다.

276) IRC §6402(m).

나) 공제세액

근로세액공제액수는 납세자의 조정총소득기준액에 납세자의 적격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미국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지침 사항으로 EIC 작성법과 근로세액공제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발췌한 것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2019년 근로세액공제 표(일부 발췌)

If the amount you are looking up from the worksheet is–		And your filing status is– Single,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and you have–				And your filing status is– Married filing jointly and you have–			
		0	1	2	3	0	1	2	3
At least	But less than	Your credit is–				Your credit is–			
$1	$50	$2	$9	$10	$11	$2	$9	$10	$11
50	100	6	26	30	34	6	26	30	34
100	150	10	43	50	56	10	43	50	56
150	200	13	60	70	79	13	60	70	79
200	250	17	77	90	101	17	77	90	101
250	300	21	94	110	124	21	94	110	124
300	350	25	111	130	146	25	111	130	146
350	400	29	128	150	169	29	128	150	169
400	450	33	145	170	191	33	145	170	191
450	500	36	162	190	214	36	162	190	214
500	550	40	179	210	236	40	179	210	236
550	600	44	196	230	259	44	196	230	259
600	650	48	213	250	281	48	213	250	281
650	700	52	230	270	304	52	230	270	304
700	750	55	247	290	326	55	247	290	326
750	800	59	264	310	349	59	264	310	349
800	850	63	281	330	371	63	281	330	371
850	900	67	298	350	394	67	298	350	394
900	950	71	315	370	416	71	315	370	416
950	1,000	75	332	390	439	75	332	390	439
1,000	1,050	78	349	410	461	78	349	410	461
1,050	1,100	82	366	430	484	82	366	430	484
1,100	1,150	86	383	450	506	86	383	450	506
1,150	1,200	90	400	470	529	90	400	470	529
1,200	1,250	94	417	490	551	94	417	490	551
1,250	1,300	98	434	510	574	98	434	510	574
1,300	1,350	101	451	530	596	101	451	530	596
1,350	1,400	105	468	550	619	105	468	550	619
1,400	1,450	109	485	570	641	109	485	570	641
1,450	1,500	113	502	590	664	113	502	590	664
1,500	1,550	117	519	610	686	117	519	610	686
1,550	1,600	120	536	630	709	120	536	630	709
1,600	1,650	124	553	650	731	124	553	650	731
1,650	1,700	128	570	670	754	128	570	670	754
1,700	1,750	132	587	690	776	132	587	690	776
1,750	1,800	136	604	710	799	136	604	710	799
2,800	2,850	216	961	1,130	1,271	216	961	1,130	1,271
2,850	2,900	220	978	1,150	1,294	220	978	1,150	1,294
2,900	2,950	224	995	1,170	1,316	224	995	1,170	1,316
2,950	3,000	228	1,012	1,190	1,339	228	1,012	1,190	1,339
3,000	3,050	231	1,029	1,210	1,361	231	1,029	1,210	1,361
3,050	3,100	235	1,046	1,230	1,384	235	1,046	1,230	1,384
3,100	3,150	239	1,063	1,250	1,406	239	1,063	1,250	1,406
3,150	3,200	243	1,080	1,270	1,429	243	1,080	1,270	1,429
3,200	3,250	247	1,097	1,290	1,451	247	1,097	1,290	1,451
3,250	3,300	251	1,114	1,310	1,474	251	1,114	1,310	1,474
3,300	3,350	254	1,131	1,330	1,496	254	1,131	1,330	1,496
3,350	3,400	258	1,148	1,350	1,519	258	1,148	1,350	1,519
3,400	3,450	262	1,165	1,370	1,541	262	1,165	1,370	1,541
3,450	3,500	266	1,182	1,390	1,564	266	1,182	1,390	1,564
3,500	3,550	270	1,199	1,410	1,586	270	1,199	1,410	1,586
3,550	3,600	273	1,216	1,430	1,609	273	1,216	1,430	1,609
3,600	3,650	277	1,233	1,450	1,631	277	1,233	1,450	1,631
3,650	3,700	281	1,250	1,470	1,654	281	1,250	1,470	1,654
3,700	3,750	285	1,267	1,490	1,676	285	1,267	1,490	1,676
3,750	3,800	289	1,284	1,510	1,699	289	1,284	1,510	1,699
3,800	3,850	293	1,301	1,530	1,721	293	1,301	1,530	1,721
3,850	3,900	296	1,318	1,550	1,744	296	1,318	1,550	1,744
3,900	3,950	300	1,335	1,570	1,766	300	1,335	1,570	1,766
3,950	4,000	304	1,352	1,590	1,789	304	1,352	1,590	1,789
4,000	4,050	308	1,369	1,610	1,811	308	1,369	1,610	1,811
4,050	4,100	312	1,386	1,630	1,834	312	1,386	1,630	1,834
4,100	4,150	316	1,403	1,650	1,856	316	1,403	1,650	1,856
4,150	4,200	319	1,420	1,670	1,879	319	1,420	1,670	1,879
4,200	4,250	323	1,437	1,690	1,901	323	1,437	1,690	1,901
4,250	4,300	327	1,454	1,710	1,924	327	1,454	1,710	1,924
4,300	4,350	331	1,471	1,730	1,946	331	1,471	1,730	1,946
4,350	4,400	335	1,488	1,750	1,969	335	1,488	1,750	1,969
4,400	4,450	339	1,505	1,770	1,991	339	1,505	1,770	1,991
4,450	4,500	342	1,522	1,790	2,014	342	1,522	1,790	2,014
4,500	4,550	346	1,539	1,810	2,036	346	1,539	1,810	2,036
4,550	4,600	350	1,556	1,830	2,059	350	1,556	1,830	2,059

출처: 미국 국세청(IRS) 1040 and 1040-SR 세율표와 근로세액공제 표, https://www.irs.gov/pub/irs-pdf/i1040tt.pdf에서 이용 가능.

2019년 최대 소득금액은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6,920,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0,370,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4,570이다.[277] 이 금액에서 개인의 조정총소득 초과분 또는 물가상승(inflation)을 반영한 차감금액보다 큰 소득금액 중 큰 것과 차감비율을 곱한만큼 감소하게 된다. 2019년 기준 근로세액공제 한도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529,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3,526, 2명인 경우에는 $5,828, 3명 이상인 경우에는 $6,557이다.

277) Rev. Proc. 2018-57.

나. 사업 관련 세액공제

1) 일반 사업 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s)

일반 사업 세액공제는 많은 개인의 사업 세액공제로 구성되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이다. 일반 사업 세액공제는 ① 현재 과세연도로 이월된 사업 세액공제, ② 현 과세연도의 사업 세액공제액, ③ 소급공제되는 사업 세액공제의 합이다.[278]

현재 과세연도의 일반 사업 세액공제는 ① 투자 세액공제, ② 일자리 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credit), ③ 바이오연료(biofuel) 생산자 세액공제, ④ 연구활동 세액공제, ⑤ 저소득자 주택 세액공제, ⑥ enhanced oil recovery credit, ⑦ 장애인 접근 세액공제(disabled access credit), ⑧ 재생 전기 생산 세액공제, ⑨ 권한위임(empowerment zone) 지역 고용 세액공제, ⑩ 미국 원주민 고용 세액공제, ⑪ 고용주 사회보장 세액공제(FICA tip credit), ⑫ 희귀약품(orphan drug) 세액공제, ⑬ 신시장(new markets) 세액공제, ⑭ 소규모 고용주 연금제도 창업비용 세액공제, ⑮ 적격 철로 관리 세액공제, ⑯ 바이오디젤 및 재생 디젤연료 세액공제, ⑰ 작은 석유 및 가스정(井) 생산 세액공제, ⑱ 증류주(distilled spirits) 세액공제, ⑲ 선진 원자력 시설(advanced nuclear power facility) 생산 세액공제, ⑳ 에너지 효율 주택 세액공제, ㉑ 대체 자동차 세액공제(거래 또는 사업에 할당되는 부분), ㉒ 대체연료전동차 재연료 세액공제(거래 또는 사업에 할당되는 부분), ㉓ 광산 구조팀 훈련 세액공제, ㉔ 차등 급여지급 세액공제, ㉕ 산화탄소(이산화탄소) 제거 세액공제, ㉖ 적격 플러그 사용 전기모터 자동차 세액공제(거래 또는 사업에 할당되는 부분), ㉗ 소규모 고용주 건강보험 세액공제, ㉘ 가족 및 의료 휴양 세액공제, ㉙ 직원 유지(employee retention) 세액공제, ㉚ 대규모 파트너십 선택에 대한 일반 세액공제)의 합이다.

이들 각 세액공제는 각각 적용되는 국세청 서식에서 따로 산출이 되고, 총세액공제 금액은 Form 3800에 작성·신고한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세액공제의 유일한 원천이 파트너십, S회사, 상속재산(estate), 신탁, 조합이 아니고, 납세자 그 자신이 파트너십이나 S회사가 아닌 한 세액공제 계산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세액공제[279], 바이오디젤 및 재생디젤연료 세액공제[280]를 신청하고, 납세자가 상속재산(estate) 또는 신탁이면서 세액공제가 수익자에게 할당되거나, 또는 납세자가 조합이

278) IRC §38.
279) Form 3468.
280) Form 8864.

면서 세액공제가 후원자에게 할당되면, 계산서식이 필요하다.

일반 사업 세액공제액은 납세자의 잠정적 최저한세 또는 $25,000이 넘은 순 정규 납부세액의 25% 중 큰 것에 대한 납세자의 순소득세의 초과액을 넘을 수는 없다.[281] 순 소득세는 납세자의 정규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납부세액의 합계에 모든 다른 환급불가 세액공제를 뺀 것이다. 순 정규 납부세액(Net regular tax liability)은 이들 세액공제를 차감한 정규 납부세액이다.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는 2017년부터 폐지되어서, 회사는 2017년 이후부터 잠정적 최저한세가 없다.

납부세액한도는 각각의 세액공제 항목에 귀속되는 일반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납부세액한도가 과세연도 동안 초과가 되면 일반 사업 세액공제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된 순서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282] 초과분 또는 미사용분은 소급공제는 1년, 이월공제는 20년 동안 가능하다.[283]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의 순서는 ① 선입선출(FIFO) 법으로 그 해에 이월공제, ② 그 해에 산출된 일반 사업 세액공제, ③ 선입선출(FIFO) 법으로 그 해에 소급공제 순으로 한다.

2010년에 시작하는 첫 과세연도에 결정된 적격 소규모 사업의 적격 세액공제는 소급공제 5년과 이월공제 20년이 가능하다.[284] 적격 소규모 사업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 세액공제의 현재 연도 사업 세액공제의 항목들이다. 적격 소규모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는 첫 과세연도 이전 3년 동안 연간 평균 총매출액이 $50,000,000 이하인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 비공개거래회사를 말한다. 2010년 적격 소규모 사업 세액공제는 적격 소규모 사업의 정규 및 최저한 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2) 투자 세액공제

납세자는 재활(rehabilitation) 세액공제, 에너지 세액공제, 적격 선진 석탄 프로젝트 세액공제, 적격 가스화(gasification) 프로젝트 세액공제, 적격 선진 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의 합인 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285] 투자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 세액공제의 부분이므로 그에 적용되는 세액한도 및 이월규칙이 적용된다.

---

281) IRC §38(c).
282) IRC §38(d).
283) IRC §39.
284) IRC §39(a)(4), prior to being stricken by P L. 115-141.
285) IRC §46. Form 3468 사용.

파트너십의 투자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의 이익을 나누는 파트너들에게 같은 비율로 할당이 되고,[286] S회사의 경우에는 각 주주의 소유지분에 따라 일할로 주주들에게 배분된다.[287] 상속재산(estate)와 신탁의 경우에는 상속재산(estate)과 신탁과 수익자(할당되는 소득에 근거하여) 간에 배분된다.[288]

다. 퇴직 관련 세액공제

1) 은퇴저축 납입금 세액공제(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납세자는 저축 납입금에 대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 및 일정한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As)에 대해서 선택적인 이연을 신청할 수 있다.[289]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과세연도 말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 다른 납세자 세금신고서에 피부양자 또는 전업학생이 아니어야 한다.

은퇴저축 세액공제는 세금신고 유형과 조정총소득에 의해서 결정된 납세자의 적용비율을 과세연도 동안 $2,000를 넘지 않는 총적격 퇴직저축 납입금에 곱한 것이다. 최대 세액공제 가능한도는 $1,000이다. 세액공제는 선택적 이연을 하는 것 그리고 IRA 기여금에 대한 총수입금 제외 또는 공제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적격 은퇴저축제도 납입금은 ① 전환 납입금을 제외한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에 대한 납입,[290] ② 401(k), 403(b) 조세회피적 연금(tax-sheltered annuity),[291] SIMPLE제도, SEP 제도로의 급여의 선택적 이연, ③ 주정부, 지방정부, 비과세 단체의 IRC §457(b) 제도로의 급여의 선택적 이연, ④ 적격 은퇴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피고용인 납입금,[292] ⑤ 2018년에서 2025년까지 개인 자신의 ABLE 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합이다.

고려가 되는 납입금액은 시험기간(test period)에 걸친 적격 은퇴 제도로부터의 분배금만큼 감소된다. 시험기간은 현재 과세연도, 이전 2개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세금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의 기간이다.

---

286) Reg. §1.46-3(f).
287) Reg. §1.48-5.
288) IRC §50(d)(6); Reg. §1.48-6.
289) IRC §25B.
290) IRC §219(e).
291) IRC §402(g)(3).
292) IRC §4974(c).

2019년에 세액공제액[293]은 조정총소득이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64,000, 부양자신고의 경우는 $48,000, 개인단독신고와 부부개별신고의 경우에는 $32,000[294]을 초과하였을 때 완전히 차감된다. 2019년 세액공제를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조정총소득에 따른 은퇴저축 세액공제 비율

(단위: 달러,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적용 비율
합산신고	부양자 신고	다른 신고유형	
$0 이상 $38,500 미만	$0 이상 $28,875 미만	$0 이상 $19,250 미만	50
$38,500 이상 $41,500 미만	$28,875 이상 $31,125 미만	$19,250 이상 $20,750 미만	20
$41,500 이상 $64,000 미만	$31,125 이상 $48,000 미만	$20,750 이상 $32,000 미만	10
$64,000 이상	$48,000 이상	$32,000 이상	0

출처: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 524.

라. 교육 관련 세액공제

1) 의의

교육관련 세액공제는 과세연도에 지출·발생한 적격 등록금과 관련 비용에 대하여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LLC)이다.[295] 세액공제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환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의 40%까지는 환급가능하다.

부부개별신고를 하는 자나 또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학생이 지불하는 적격 비용은 그 학생을 피부양자로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납세자에 의해서 지불된 것으로 취급된다. 납세자는 학생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세금신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의 경우에 납세자 식별번호(TIN)는 세금신고 작성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적격 교육기관으로부터 Form 1098-T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293) Form 8880 사용.
294) 2020년에는 각 $65,000, $48,750, $32,500으로 예상됨. Notice 2018-83.
295) IRC §25A, Reg. §1.25A-1, Prop. Reg. §1.25A-1. 교육 세액공제는 Form 8863 사용.

2)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는 요건을 갖춘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적격 등록금 및 관련비용의 첫 $2,000의 100%와 지출한 적격 비용의 다음 $2,000의 25%를 합한 금액이다. 공제가능한 최대 액수는 1년에 $2,500이다.[296]

$80,000와 $90,000(합산신고자는 $160,000와 $180,000) 사이의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액은 비율에 따라 차감된다.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 기준으로 $90,000(합산신고자는 $180,000)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공제세액이 납세자의 정규 납부세액과 최저한세액을 초과한다면 공제세액의 40%까지는 환급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학생이 키디텍스(kiddie tax)[297]의 적용대상이면 세액공제액 중 환급가능한 액수는 없다.[298] 이 세액공제는 4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를 신청하기 위한 적격 학생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299]

① 신청 당시 학부생(대학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이어야 함
② 신청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이 혜택을 4년 이상 신청하지 않았어야 함(총 4년만 신청가능)
③ 전업(Full-time) 학생으로 해당연도 수업의 절반 이상 수강했어야 함
④ 학위(Degree)나 관련 자격증(Certificates, educational credential)을 위한 것이어야 함
⑤ 중범죄(Felony) 기록이 없어야 함
⑥ 세금신고 마감 전까지(6개월 연장 포함)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가 있어야 함

이 6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신청 자격이 되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최대 세액은 학생 1명당 $2,500인데, 학비의 첫 $2,000의 100%, 그다음 $2,000의 25%를 적용하면 $2,500이 산출된다. 이 중 세액공제를 학 남은 금액은 최대 $1,000(학비의 40%)까지 환급가능하다.

296) IRC §25A(b)(1), (d).
297) 주로 미성년자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처음에는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19세 미만(23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2017년까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100를 초과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신고서에 포함시켜 세금을 신고했지만,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25년까지는 미성년자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부모의 소득세율이 아닌 상속재산(estate)이나 신탁(trust)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98) IRC §25A(i).
299) IRC §25A(b)(2), (b)(3).

학비, 등록비, 그 밖의 수업 교재 및 관련 물품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항목이고, 기숙사 및 생활비, 교통비,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대상 비용항목이 아니다.

3)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교육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LCC)는 납세자가 지출한 적격 등록금 및 관련 비용의 첫 $10,000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300] 주의해야 할 것은 이는 학생별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신고별로 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되는데, 개인단독신고의 경우 2019년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58,000(부부합산신고는 $116,000)를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68,000(부부합산신고는 $136,000)가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301]

평생교육 세액공제(LCC)는 평생교육을 대상으로 한 공제이므로, 직장을 다니면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공부, 대학원, 시험이나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경우 등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교육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세액공제(LCC)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납세자는 적격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1개 이상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서 적격 교육기관이란 일반적으로 납부한 학비에 대해 Form 1098-T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Form 1098-T는 납부한 학비에 대해 그 기관으로부터 받는 세금 서식인데, 세금신고 시에 사용된다. 둘째, 부부개별신고를 해서는 안 되고, 납세자가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비거주자 외국인이 아니어야 한다.

공제대상 비용은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처럼 일반적으로 학비, 등록비, 그 밖의 수업 교재 및 관련 교구 등의 비용이며, 기숙사 및 생활비, 교통비, 보험료, 의료비 등의 비용은 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그 장학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학비로 납부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 금액은 감소한다. 평생교육 세액공제(LCC)는 환급되지 않는다.[302]

300) IRC §25A(c), (d).
301) Rev. Proc. 2018-57.
302) Form 8863 사용.

마. 자녀 관련 세액공제

1) 자녀 및 피부양자 양육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가) 적용 요건

양육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한 명 이상의 적격 자녀 또는 피부양자가 있는 납세자가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돌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303] 이 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이다.

자녀 및 피부양자 양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04]

① Form 2441에서 확인되는 한 명 이상의 적격 자녀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양육이어야 함(Qualifying person test)

② 납세자(합산신고인 경우에는 배우자도)가 당해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Earned income test)

③ 자녀 또는 피부양자 양육비용은 납세자(합산신고인 경우에는 배우자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나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어야 함(Work-related expense test)

④ 납세자는 납세자(납세자의 배우자도)가 세금신고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다른 자에게 자녀 및 피부양자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함. 만약 자녀에게 지급한다면 그 자녀는 납세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당해 과세연도 말까지 19세 이상이어야 함. 납세자는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적격 자녀 또는 피부양자가 납세자의 자녀이고 13세 미만이라면 적격 자녀 또는 피부양자의 부모에게 양육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⑤ 세금신고 유형은 개인단독신고, 부양자신고, 피부양자자녀가 있는 미망인(홀아비)신고가 가능하며,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부부합산신고를 해야 함(Joint return test)

⑥ 납세자는 세금신고서에 양육 담당자를 확정해야 함(Provider identification test)

⑦ 만약 납세자가 피부양자 양육 지원제도(dependent care benefit plan)에 의해 지원받은 양육비를 제외하거나 공제를 하면, 제외 또는 공제를 한 총금액은 적격 비용의 제한금액(일반적으로 1명의 적격 자녀에 대해서는 $3,000, 2명 이상의 적격 자녀에 대해서는 $6,000)보다 더 적어야 한다.

303) IRC §21, Form 2441 사용.
304) 미국 국세청(IRS) Pub. 503(2019), p. 2.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 자녀 또는 피부양자는 ① 피부양자이면서 양육 제공 당시에 13세 미만인 자녀, ②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볼 수 없으면서 1년의 반 이상을 함께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③ 자녀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납세자의 부양가족이었거나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었던 자이면서 1년의 반 이상을 함께 거주하는 피부양자이다.

나) 공제 금액

세액공제 금액은 적격 비용금액에 납세자의 조정총소득(AGI)에 의해 결정된 적용 비율을 곱하여서 결정된다. 조정총소득이 $15,000 이하인 납세자는 적격 비용의 35%가 공제액이다. 조정총소득이 $15,000이 넘으면 각 $2,000당 1%가 감소된다. $43,000 이상의 조정총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가능한 비율은 20%이며, 최대 공제가능 세액은 적격자 1명당 $1,050이고,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2,100이다.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대상 양육비용의 최대 액수는 적격자 1명당 $3,000이고,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6,000이다. 이러한 비용한도는 고용주의 피부양자 양육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만큼 줄어든다. 적격인 고용 관련 비용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득금액에는 월급, 급여, 개인 역무에 대한 보상, 자영업으로부터의 순이익, 납세자가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비과세 위험특별수당(combat pay)을 포함한다.

부부의 경우 비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제한된다. 만약 한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과세연도 동안 5개월 이상 교육기관에서 전업 학생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305] 이런 경우 소득금액은 1명의 적격자당 한 달에 $250, 2명 이상의 경우에는 한 달에 $500이라고 추정한다.

다) 공제대상 비용

공제가 가능한 적격비용은 납세자(부부합산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일하거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적격 자녀 또는 피부양자 양육 또는 가사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work-related expense)이다. 적격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확실하게 자녀 또는 피부양자의 복리와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사서비스 비용은 가정

305)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되고, 적격 자녀 및 피부양자의 양육에 부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포함한다. 가정 외에서의 서비스는 13세 미만의 피부양자를 돌보는 데 또는 정규적으로 납세자의 집에서 8시간 이상을 보내는 적격 피부양자에게만 가능하다. 친척에게 지급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친척을 세금신고 시 피부양자로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친척이 납세자의 19세 미만의 자녀라면 적격 비용이 될 수 있다.

납세자가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각 일당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1. 납세자와 납세자의 배우자가 저녁을 먹기 위하여 외출한 동안 지급되는 베이비시터(babysitter) 비용은 일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
2. 납세자는 낮에 일을 하고, 납세자의 배우자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잔다. 납세자가 일을 하고, 그 배우자가 잠을 자는 시간동안 5세 아이를 돌보는 데 지급한 비용은 일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납세자가 일주일에 3일 일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6세의 자녀는 탁아소(모든 주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하는)에 맡겨진다. 납세자는 일주일 3일에는 $150을, 5일에는 $250을 탁아소에 지불하는데, 이 납세자는 일주일에 5일 아이를 탁아소에 맡긴다. 이 납세자의 관련 비용은 주당 $150으로 제한된다.
4. 납세자는 일을 하기 위하여 9세의 자녀와 15세의 자녀를 돌보도록 가사도우미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가사도우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하루의 30분은 납세자를 출퇴근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해준다. 납세자는 이러한 비용을 나눌 필요가 없고 전체 비용을 일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출퇴근을 시켜주는 운전시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비용이 부분적으로 적격 자녀가 아닌 15세 자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나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또한 부분적으로 적격 자녀인 9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미국 국세청(IRS) Pub. 503(2019), p. 6, p. 8, https://www.irs.gov/pub/irs-pdf/p503.pdf에서 이용 가능.

2)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가) 공제대상 및 한도

개인납세자는 17세 미만의 피부양자인 적격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서 2025년 동안의 과세기간에는 다른 피부양자에 대해서 부분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306]

적격 자녀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307]

306) IRC §24.
307) IRS Pub. 972(2019), p. 3.

① 납세자의 자녀, 의붓자녀(stepchild), 수양자녀(foster child), 형제·자매(의붓(step), 이복(half) 형제·자매 포함) 그리고 그들의 직계비속인 납세자의 손자녀, 조카 등[308]
② 자녀는 과세연도 말에 17세 미만이어야 함
③ 자녀가 과세연도 동안 자신의 양육비를 반 이상 제공하지 않아야 함
④ 과세연도 동안 반 이상 납세자와 같이 거주해야 함[309]
⑤ 자녀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서에 피부양자로 기재되어야 함
⑥ 자녀가 해당 연도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야 함
⑦ 자녀는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자 외국인이어야 함[310]

공제가능한 최대 금액은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의 경우 $2,000(2018년 이전, 2025년 이후에는 $1,000)이고 다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500이다.

세금신고서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각 피부양자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적격 자녀의 납세자 식별번호는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세금신고 기한 전에 발행된 사회보장번호이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적격자녀는 피부양자를 위한 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단축과세연도 이외에는 12개월을 구성하는 과세연도에만 허용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2018년에서 2025년 동안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자녀세액공제는 만약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총소득이 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400,000, 다른 유형의 신고의 경우에는 $200,000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차감된다. 2018년에서 2025년까지의 한도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10,000,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55,000, 개인단독신고의 경우 $75,000이다. 수정된 조정총소득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외국 주거비용, 미국 보유 소득에 제외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조정총소득이다.

자녀세액공제는 환급불가 세액공제이다.

나) 추가 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개인 세액공제이지만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

308) IRC §152(c)(2).
309)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자녀가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나거나 사망하고, 납세자의 집에서 그 자녀가 생존하는 동안의 반 이상을 같이 거주하였을 때, 자녀가 학업, 휴가, 사업, 병원치료, 군복무, 소년원에서의 구금 등 일시적인 부재인 경우 등. IRS Pub. 972(2019), p. 3.
310) IRC §24(c)(2), (h)(4)(B).

은 환급이 가능한데, 이것을 추가 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라고 한다. 추가 자녀세액공제란 세액공제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중에서 환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311]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적어서 공제신청을 할 수 없는 자녀세액공제의 부분이나 $2,500(2018년에서 2025년까지는 $3,000)을 초과하는 납세자 소득세액의 15% 중 적은 것이다.[312] 만약 납세자에게 셋 이상의 적격자녀가 있으면, 한도는 그 해의 소득금액에서 납세자의 사회보장세 초과분이다. 추가 자녀세액공제는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당 2019년에는 $1,400(2020년에도 $1,400예상)을 초과할 수 없다.[313] 다른 피부양자에 대한 $500 부분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이다.

추가 자녀세액공제는 외국 소득금액과 주거비용을 총수입액에서 제외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314]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은 다음해 2번째 달 15일(2월 15일)이 되어서야 환급가능하다.[315]

3) 입양세액공제(Adoption Credit)

납세자는 적격 자녀를 적격 입양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세액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316]

최대 공제액은 2019년 기준 $14,080(2020년에는 $14,300으로 예상)이다. 이 공제액은 2019년 $211,160이 넘는 수정된 조정총소득(2020년에는 $251,160으로 예상)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비율에 따라 차감되며 수정된 조정총소득이 2019년 $251,160(2020년에는 $254,520으로 예상)이 넘는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317]

적격 입양비용은 적격 자녀의 법적 입양과 직접 관련된 합리적이며 필요한 입양비용, 법원비용, 변호사 비용, 여행비용 및 다른 비용을 말한다. 적격입양비용은 연방·주·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거나 상환되는 비용, 연방법 또는 주법을 위반하는 비용, 대리모계약(surrogate parent arrangement)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납세자의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기

311) 소득신고서 별지(Schedule) 8812 사용.
312) IRC §24(d), (h)(5), (h)(6).
313) Rev. Proc. 2018-57.
314) 즉,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를 받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15) IRC §6402(m).
316) IRC §23.
317) Rev. Proc. 2018-57.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요청하는 데 사용된 비용은 양육 세액공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에는 피고용인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용주의 입양보조제도에 의해서 지급되거나 상환된 금액을 포함한다. 근로자는 적격 입양비용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한 입양세액공제와 총수입에서의 제외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을 위한 적격 자녀는 입양 당시 18세가 되지 않은 자 또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개인을 말하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포함한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란 그 자녀가 본국(parental home)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서는 안되고, 도움이 없으면 아이에게 양부모를 찾아줄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특별한 요소나 조건이 있다고 주가 결정하는 경우의 미국 또는 미국 점유지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아이를 말한다.

입양세액공제는 외국세액공제를 차감한 정규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납부세액 둘 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제액은 외국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납세자의 정규 세액과 최저한세액의 합에서 입양세액공제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 공제(residential energy efficient property credit)를 제외한 다른 모든 환불불가 세액공제의 합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주택 · 부동산 관련 세액공제

1)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Mortgage Interest Credit)

주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적격 모기지 세액공제 증명(qualified mortgage credit certificate; MCC)을 받은 자는 그 증명서가 유효한 과세연도 동안 주택모기지에서 발생 · 지급한 이자의 일부에 대하여 환급불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318] 모기지 세액공제 증명(MCC)은 일반적으로 증명이 발급되는 날이 시작하는 기간과 ① 발급기관에서 취소되었을 때 또는 ② 납세자가 주택을 매도하였거나 개인 거주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때에 끝나는 기간에 귀속된다. 항목별 공제로 신청되는 모기지 이자는 신청되는 세액공제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세액공제[319]는 ① 10%를 넘고 50% 미만인 증명서의 공제율을 ② 공증된 부채의 남은 원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세자에 의해 발생 · 지급된 이자를 곱한 것이다. 만약 세액공제율이 20%를 초과하면, 그 해의 세액공제는 $2,000를 초과할 수 없다.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액은 환급불가 개인 세액공제상의 한도를 모기지 이자세액공제, 입

318) IRC §25, 미국 국세청(IRS) Pub. 530.
319) Form 8396 사용.

양세액공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 공제를 제외한 모든 환급불가 세액공제만큼 감소시킨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제 신청되지 않은 세액공제는 다음 3개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이월 금액은 현재 과세연도 공제액에 가산되고 같은 납부세액 한도가 적용된다.

2) Washington,D.C. 지역 최초 주택구매 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credit for District of Columbia)

2012년 1월 1일 이전 Washington,D.C.에 주된 거주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처음 구매한 자는 구매가액의 $5,000(부부개별신고 $2,500)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320] 이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의해 제한되는 환급불가 개인 세액공제이다.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된다.[321]

3) 최초 주택구매 세액공제(Repayment of First-Time Homebuyer Credit)

2010년 5월 1일 이전 미국에 주된 거주지를 구매한 최초의 주택구매자에 대하여 환급가능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322]

4) REITS와 RICs의 미분배 자본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규제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RIC) 또는 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에서 분배되지 않은 자본이익은 주주의 총수입액에 지분에 따라 포함되어야 한다. 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지불하는 자본이득세는 주주에 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세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된다.[323]

사. 노인 ·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

과세연도 말 전에 65세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은퇴한 자, 그리고 은퇴 시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를 가지게 된 개인에게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324] 기혼인 개인은

320) IRC §1400C, prior to being stricken by the Tax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2018 (P L. 115-141).
321) Form 8859 사용.
322) IRC §36.
323) IRC §852(b)(3)(D), 857(b)(3)(C).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Form 2439의 Copy B가 세금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324) IRC §22.

배우자가 전체 과세연도 동안 따로 거주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325]

세액공제액은 개인의 신고유형에 따른 최초의 금액에 일정한 소득을 차감한 15%이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적용가능 최초 금액은 ① 개인단독신고는 $5,000, ② 부부합산신고이며, 배우자 한 명이 적격인 경우는 $5,000, ③ 부부합산신고이며, 배우자 모두가 적격인 경우에는 $7,500, ④ 부부별도신고의 경우에는 $3,750이다.

최초 금액은 비과세 연금, 사회보장을 포함한 장애연금, 철도직원 은퇴연금, 퇴역군인 연금 또는 세법규정이 아닌 법에서 제외가능한 연금만큼 차감된다. 재향군인회(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제도에서 개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대 액수는 ① 개인단독신고의 경우 $7,500, ②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0,000, ③ 부부별도신고의 경우 $5,000의 기준에서 납세자의 조정총소득 총소득 초과액의 2분의 1만큼 또 차감된다.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를 가지게 된 65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최초금액은 과세연도 동안 장애관련소득(disability income)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관련소득(disability income)은 연금 또는 상해건강보험에 대한 규칙에 따라 그 금액이 그 개인이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나 급여를 대신하는 지급액이 되는 한도에서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의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총액을 의미한다. 만약 두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중 한 사람이 65세 미만이면 특별한 규칙이 부부합산신고에 적용된다.

납세자는 사망을 야기하거나 납세자가 최소 12개월의 계속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판단가능한 육체적 · 정신적 장애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면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장애는 납세자의 기록을 보관하는 공인된 의사의 문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아. 건강보험 관련 세액공제

1) 건강보험료 지원 세액공제(Health insurance premium assistance credit)

가족 1명 이상을 적격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 납세자는 Marketplace Exchange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 또는 가족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325) 세금신고서 별지(Schedule) R.

수 있다.[326] 가정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FPL)의 100%에서 400% 사이일 경우에는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의 모든 보험적용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액수의 합계이다.[327]

2) 건강보험 세액공제(Health coverage tax credit; HCTC)

2020년 1월 1일 이전 시작 보험의 적용 기간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개인은 그 자신, 합산신고의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피부양자에 대한 적격 건강보험료 비용에 대하여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세액공제(HCTC)는 그 개인이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을 받거나, 연금급여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로부터 급여를 받는 55세 이상의 퇴직자만이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328] 건강보험 세액공제(HCTC)액은 과세연도 동안 모든 보험적용기간 동안 발생・지급한 비용의 72.5%이다.

자. 최저한세 세액공제

전년도에 납부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자의 정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최저한세 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 MTC)라고 한다. 최저한세 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이다.

최저한세 세액공제는 모든 과세연도의 조정 순 최저한세를 모든 이전 과세연도의 최저한세 세액공제만큼 차감한 금액이다.[329]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모든 다른 환급불가 세액공제가 차감된 납부세액이 과세연도 동안 잠정적(tentative) 최저한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정규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무제한으로 이월된다.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인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 조정 순 최저한세란 납세자의 최저한 납부세액을 일정한 최저한세 조정(adjustment)과 우대항목(preference items)만이 고려되었다면 납세자의 최저한세액이었을 금액만큼 감소시킨 것이다. 조정(adjustment)은 표준소득공제, 인적 공제, 의료비(치과의료비) 공제, 기타 항목별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s), 세금, 이자비용

326) IRC §36B.
327) IRC §36B(b), Reg. §1.36B-3.
328) IRC §35.
329) IRC §53.

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우대항목(preference items)은 조정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일정한 감모상각(depletion) 공제, 특정 사적사업채권(private activity bonds)상 이자, 적격 소기업주식 양도상 이익 배제를 포함한다.

법인의 경우 2017년 이후부터 최저한세가 폐지되었다. 법인의 잠정적 최저한세는 0이고, 2017년 이후 공제 요청되는 최저한세 세액공제는 정규납부세액을 다른 환급 불가능 세액공제만큼 차감한 금액이다.

차.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

개인은 외국 납부·발생 소득세를 항목별 공제로 공제하거나 미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330]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Form 1116에 신청을 하는데, 납부한 외국세액 총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 $300(합산신고자 $600) 미만이면, 모든 다른 신고요건이 충족된다면 세금신고서 별지(Schedule) 3에 공제신청을 해도 된다.

330) IRC §27.

Ⅳ 시사점

종합소득 합산대상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미국의 「소득세법」은 총소득계산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일정한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주의의 적용으로 당연히 소득을 합산하고, 공제를 허용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소득세법」은 세밀한 법령과 규칙에서 세밀한 규정을 두고, 확립된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미국의 「소득세법」이 우리나라의 세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성직자를 독립적 계약자로 인정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의 대상으로 하고, 성직자가 수취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인 소득과세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을 일부 독립적 계약자와 근로자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는 미국의 체계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매우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제상의 취급도 매우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연금의 조기인출에 대한 추가과세 등 이러한 세밀한 규정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소득세의 신고단위를 부부합산신고, 세대주신고, 부부별도신고, 개인단독신고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산의 인적단위는 2002년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헌결정으로 공동사업장에 대한 합산과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다. 소득세의 신고단위에 대해서도 소비활동의 단위를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이정미, 『실무자를 위한 미국세법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6.
Burke, J. M. & Friel, M. K., *Taxation of Individual Income,* 9th edition, LexisNexis, 2010.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미국 국세청(IRS) Pub. 17(2017).
미국 국세청(IRS) Pub. 334(2019).
미국 국세청(IRS) Pub. 463(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01(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03(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21(2018).
미국 국세청(IRS) Pub. 525(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29(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30(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35(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87(2019).
미국 국세청(IRS) Pub. 596(2019).
미국 국세청(IRS) Pub. 972(2019).

미국 국세청(IRS), IRS issues guidance on Section 179 expenses and Section 168(g) depreciation under Tax Cuts and Jobs Act, 2018,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on-section-179-expenses-and-section-168g-depreciation-under-tax-cuts-and-jobs-act.
미국 국세청(IRS), Topic No. 417 Earnings for Clergy, https://www.irs.gov/taxtopics/tc417.
미국 국세청(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forms-instructions.
미국 국세청(IRS), Schedules for Form 1040 and Form 1040-SR, https://www.irs.gov/forms-pubs/schedules-for-form-1040.
미국 국세청(IRS), Topic No. 409 Capital Gains and Losses,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부록: 미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 미국 법체계에서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은 제26장(Title 26)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 내국세입법의 조문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주요 조문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대분류	세부내용		조문
소득의 정의	총소득의 정의와 소득의 유형 열거		§61
	조정총소득의 정의		§62
	과세표준	과세표준정의	§63(a)
		표준공제	§63(c)
		항목별공제	§63(d), (e)
		노인 · 맹인 공제	§63(f)
회계연도 · 회계방법	과세연도		§§441~444
	회계방법		§§446~448
	소득귀속연도		§§451~460
	공제귀속연도		§§461~470
소득의 범위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71~91
	총소득에 제외되는 항목		§§101~140
소득공제	인적 공제		§§151~153
	항목별 공제		§§161~199A
	감가상각		§167
	개인에 대한 추가공제		§§211~224
세액공제	환급불가능 개인 세액공제		§§21~26
	그 외 다른 세액공제		§§27~30D
	환급가능 세액공제		§§31~37
	사업관련 세액공제		§§38~45S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46~50A
	일자리기회세액공제 계산방법		§§51~52
	전년도 최저한세에 대한 정규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53

제2장 일본

Ⅰ. 소득세제 개관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Ⅳ. 손익통산과 손실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일본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2장 | 일본

Ⅰ 소득세제 개관

1. 종합소득세제 특징 및 변천 개관

가. 종합소득세제 특징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응능(應能)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소득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소득세액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른 부담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세부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 소득세제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소득세제 운영 방식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4년에 일반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한반도)에서 소득세제가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일본이 자국의 세제를 이식시킨 것이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 「소득세법」이 제정되었고,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12월 소득세제의 초과누진과세 종합과세체계를 정비하게 된다.[331] 「소득세법」 제정 당시 및 소득세 종합과세체계의 정비에서도 일본의 소득세법을 많이 참조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일본의 소득세법을 많이 참조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양국 간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분류 방법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을 따로 분류하지만 일본은 연금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에는 일시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소득 종류의 독립된 분류로 남아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들을 독립된 분류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부동산소득,

331) 본문의 우리나라 세제사에 관한 설명은 재무부(1979), 『韓國稅制史(上)』을 참조하였음.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청색신고서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는 '청색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의 이들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일본 종합소득세제가 한국과 다른 특징으로는 ①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의 분류가 다르다는 점과 ② 소득세 계산방식에 있어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소득이라고 하여도 그 중 분리과세로 취급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점이다. ②에서의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우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종류의 분류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일본「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발생형태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1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소득은 그 성질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담세력의 차이에 상응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332]

위에서 언급한 10종류의 소득이라고 함은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을 말한다. 일본「소득세법」상의 소득세 계산방식은 퇴직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인 총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총소득금액(한국에서는 종합소득)'이라 함은 퇴직소득과 산림소득을 제외한 8종류의 소득금액(장기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의 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2분의 1로 한 금액)을 합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이 분리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퇴직소득금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 공제 후 금액의 2분의 1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또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는 데 드는 식림비 등의 필요경비 공제 외에도 특별공제(50만엔)가 인정된다. 산림소득의 경우 이들 필요경비와 특별공제를 공제한 잔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10종류의 소득을 보면 연금소득이 독립된 소득 종류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연금소득이 잡소득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잡소득은 연

332)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87. 참고.

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를 다룸에 있어 종합소득과세를 염두에 두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퇴직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주요 국가들과의 일관성 있는 논의를 고려하여, 일본의 연금소득을 다루면서는 잡소득 안의 연금소득과 잡소득 안의 기타소득을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잡소득 안의 기타소득 이외에 10종류의 소득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일시소득'도 하나의 독립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소득 종류 분류의 특징과 주요국과의 비교 논의상의 통일성을 참작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기타소득'은 '잡소득 중 연금소득 이외'를 대상으로 하여 다루고, '일시소득'을 독립된 항목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분리과세로 취급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서 언급한 10종류의 소득에 있어 사업소득, 잡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 일시소득, 양도소득 중 일부는 종합소득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333] 이 경우의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하여 세금을 걷는다는 의미에서의 분리과세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다음 두 단락에서도 마찬가지).

부동산업자 등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사업소득, 잡소득이나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주식 등에 관계되는 양도소득 등에 관해서도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매년 변동이 심한 변동소득이나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에 의한 세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한 세액계산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좀 더 세분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사업 · 양도 · 잡소득),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양도소득), 부동산업자 토지의 단기 양도에 따른 소득(사업 · 잡소득, 2020년 3월 31일까지 과세 정지), 선물(先物) 거래에 따른 소득(사업 · 양도 · 잡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은 논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어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어떤 소득을 분리하여 분리과세하느냐에 따라 과세소득 규모가 다르게 되고, 그 결과 소득세액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보고서(제2권)에서는 개인소득세 중 종합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제3권에서는 개인소득세 중 '자본이득 과세 및 국제조세'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333) 잡소득 중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로 하여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본이득 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3권에서 다루게 된다. 이때 본 보고서(제2권)가 개인소득세 종합과세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본에서 종합소득과 구별되는 별개의 '단위'로서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은 다루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보고서(제2권)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도 본 보고서의 취급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의 개인소득세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와의 구분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제3권에서의 자본이득과세 및 국제조세 부분도 함께 섭렵한다면 일본 개인소득세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종합소득세제 변천 개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는 일본은 그들의 조세제도를 한반도에 이식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지 해방 직후의 한일 조세체계를 보면 양국의 세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334]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세제는 각각의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다른 형태로 형성되어 갔다. 일본은 패전 후 연합군총사령부(GHQ) 총사령부의 지배하에 1949년 샤우프(C. Shoup) 세제 권고의 영향에 따라 새로운 조세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샤우프 세제는 소득과세에 편중된 '포괄적 소득과세(comprehensive income tax)'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세제였다.[335]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이 끝나면서 소득·소비 세원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및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왔으나,[336] 개인소득세(간단히 소득세)는 여전히 국세 기간세로 자리잡고

334) 한일 조세체계의 비교에 관하여는 鞠(1996), 국중호(1998), Kook(2001)을 참조바람.

335) 샤우프 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eneral Headquarters(1949), シャウプの税制研究會 編(1985), 井上一郎 編(1988), 宮島(1989), 佐藤·宮島(1991), Ishi(2001), 石(2008) 등을 참조바람.

336)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전후 세제는 소득과세 위주였으나, 그 후 소득세와 소비세와의 균형을 취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는 1989년 3%의 일반 소비세 도입 후 실체화되어 나타났다. 특히 거품경제 붕괴 및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은 소득세 수입만으로는 안정적인 사회보장·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소비세 도입 후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왔다(1997년 5%로, 2014년 8%로 인상). 소비세 증세 개혁과 관련된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에 대하여는 大田(2002), 日本政府税制調査會(2000, 2002, 2003, 2007, 2008), 石(2001, 2008)에서 다루고 있다. 이윽고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함에 따라 일본은 2020년부터 소비세 수입 비중이 소득세 비중보다 높아지는 체계

있다. 소득세제는 전후(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율이나 세율구간 수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세제개정을 거쳐 왔다. 〈표 Ⅰ-1〉에서는 1950년 샤우프세제개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득세의 최저세율, 최고세율, 세율구간 수 및 주요세제 개혁을 요약하여 담고 있다.

〈표 Ⅰ-1〉 소득세의 주요 세율 개정 추이

(단위: %, 개)

	최저세율	최고세율	세율 구간 수	주요 세제개혁
1950	20	55	8	샤우프세제 권고
1953	15	65	11	부유세 폐지
1969	10	75	16	장기세제 답신
1984	10.5	70	15	최고세율의 인하
1987	10.5	60	12	최고세율의 인하
1989	10	50	5	발본적 세제개혁(소비세 도입)
1995	10	50	5	과세소득계급의 상향 조정[1)]
1999	10	37	4	최고세율의 인하
2007	5	40	6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소득세→주민세)
2015	5	45	7	최고세율의 인상

주: 1) 10% 과세소득 구간은 300만엔을 330만엔으로, 50% 과세소득 구간은 2,000만엔을 3,000만엔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101.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표 Ⅰ-1〉에서 보듯이 1950년 샤우프세제 당시는 최저세율 20%, 최고세율 55%, 세율구간 수 8단계의 소득세 체계였으나 그 후 세율구간 수와 최고세율이 확대되어 1969년에는 16개 세율구간과 최고세율 75%를 갖는 소득세 체계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1988년 12월 발본적 세제개혁에서는 1987년 이전의 최고세율 70%와 15단계의 세율구조로부터 최고세율 60%와 12단계로 완화하였다.

이어 1994년 11월 세제개혁에서는 활력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세율 20% 구간을 대상으로 한계세율 적용소득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중견소득 계층의 부담 완화가 있었다. 그 배경에는 비교적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나 주택구입 융자금 등의 지출이 많아 실제 수입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중견소득 계층의 부담감이 특히 커지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기된 지적을 받아들여 중견소득 계층의 세부담 누증(累增)을 완화하기

로 바뀌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소비세(21조 7,190억엔) 비중은 34.1%, 소득세(19조 5,290억엔) 비중은 30.7%로 소비세 비중이 높게 되어 있다. 본문에서 용어 사용 시는 '소득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법인세(12조 650억엔) 비중은 19.0%이다. 財務省(2020), 「令和2年度租稅及び印紙收入概要」 참조. 또한 일본의 소비세제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세정연구센터(2020)의 일본 부분을 참조바람.

위해 취해진 것이 1994년의 개혁이었다. 이러한 부담경감과 함께 소비과세의 충실도 도모하였다.[337]

1999년도의 세제개정에서 최고세율이 50%에서 37%로 대폭 인하된 결과 10%에서 37%까지 4단계로 하는, 세율은 낮고 간소화된 체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2001~2006)에서는 삼위일체 개혁(세원이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일체로 하여 취해진 개혁)이 추진되었다.[338] 그 일환으로 추진된 2006년의 세제개정으로 2007년부터는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라는 관점에서 국세 소득세를 지방세 주민세로 이양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최저세율 5%, 최고세율 40%, 6단계의 세율구간을 갖는 소득세 체계로 바뀌었다.

이상으로부터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소득세의 누진구조 단계는 대폭적으로 완화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지방으로의 세원이양(2007년)과 함께 국세 소득세의 누진구조가 강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지방의 주민세(한국의 지방소득세)에도 약간의 누진구조가 있었지만 지방세의 누진성을 국세 소득세로 흡수하고 주민세는 10%의 비례세율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표 Ⅰ-1〉의 맨 아래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소득세 세율 구간을 6단계에서 7단계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5년 이전에는 1,800만엔이 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던 것을, 2015년부터는 4,000만엔(약 4억 4천만원)을 넘는 과세소득에 대해 45%의 세율을 도입하여 누진성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7단계의 세율구간을 갖고 있다. 현행 소득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국세 소득금액 계급별 세율과 공제액은 다음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소득금액 계급별 세율과 공제액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 195만엔 이하	5%	-
195만엔 초과 ~ 330만엔 이하	10%	9,75만엔
330만엔 초과 ~ 695만엔 이하	20%	42.75만엔
695만엔 초과 ~ 900만엔 이하	23%	63.60만엔
900만엔 초과 ~ 1,800만엔 이하	33%	153.60만엔
1,800만엔 초과 ~ 4,000만엔 이하	40%	279.60만엔
4,000만엔 초과 ~	45%	479.60만엔

주: 소득세액 = 과세되는 소득금액 × 세율 - 공제액, 즉 세액 = ⓐ × ⓑ - ⓒ.
자료: 松崎啓介 · 高橋達也 編著(2008), 『税法便覧』, p. 151.
坂井裕幸 · 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87.

337) 1997년에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그 중 1%p분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창설하였다.
338) 삼위일체 개혁에 대해서는 平嶋彰英(2018), 中野英夫(2018), 국중호(2018)를 참조바람.

2007년 국세 소득세에서 지방세 주민세(도부현민세)로의 세원이양과 함께 일본은 주민세(한국의 지방소득세에 해당)를 10%의 비례세율로 부과하였다. 일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득세인 도부현민세(4%의 비례세율)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득세인 시정촌민세(6%의 비례세율)를 합쳐 주민세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법인이 비록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개인 소득과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세 소득세에 초점을 두어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339]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의 종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발생 형태에 따라 소득을 1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10종류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중에서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8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 다음 그 과세소득에 대하여 7단계(〈표 Ⅰ-2〉에서 보듯이, 5%, 10%, 20%, 23%, 33%, 40%,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8종류의 각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8종류의 소득에 대하여도 완전한 형태의 종합소득 합산과세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면이 있다. 종합과세되는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0종류 소득의 각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자소득 이외에는 각각의 수입 또는 경제적 이익에서 이들 수입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이들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즉, 과세소득)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의 소득세는 각각의 소득 크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뒤에서 언급하듯이 가족의 구성 상황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339)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비롯한 일본의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는 鞠(2004), 국중호(2012)를 참조바람.

3. 조세특별조치법의 지위 및 기능

일본은 일반원칙에서 구체적 케이스를 규명하는 방식의 '연역적 접근법'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특별 케이스로 하여 대응하고 그로부터 일반성으로 접근하는 '귀납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특징을 지니는 국가(사회)이다. 소득세제 운영에서도 「소득세법」만이 아니라 「조세특별조치법」에서도 사업소득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 경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소득세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일본에서 「조세특별조치법」이 갖는 체계적, 현실적 지위나 기능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짚어보기로 하자.

주지하듯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태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안을 대응한다는 법체계적 또는 현실적 지위나 기능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대처를 할 때 일반원칙을 세워 놓고(즉 일반법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의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접근 시, 일반원칙의 논리성 판단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응(접근)하는 방식보다는, 그 구체적 사안별로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대응(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소득세 부과에서도 「소득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득세 부과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 실행하고 있는 소득세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유연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특별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일본은 소득세법의 일반적 취지를 적용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조세특별조치법」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 곧잘 이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담고 매우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소득세법의 특례, 제3장 법인세법의 특례, 제4장 상속세법의 특례, 제4장의 2 지가세법의 특례, 제5장 등록면허세법의 특례, 제6장 소비세법의 특례, 제7장 이자세 등의 비율의 특례, 제8장 잡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다.[340] 일본에서 조세특별조치법의 법체계적 지위 및 기능은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위를 가지면서 일반법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을 열거식으로 규정하면서

34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은 e-Gov'(イーガブ: 電子政府総合窓口)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체적인 URL은 뒤의 참고문헌을 참조바람.

대처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청색신고세제상의 특례 규정은 대부분이 「조세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간혹 조세특별조치법의 조항들을 인용하고 있다.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총괄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계산방식은 10가지 소득 종류 중 퇴직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는 이들 10가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과세방식(종합과세인가 분리과세인가)을 개괄하기로 한다.

본 절에서는 다른 주요국들의 소득세 설명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급여(근로)소득, 잡소득 중 연금소득, 잡소득 중 기타소득, 일시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총괄 부분인 본 항에서는 이들 소득에 더하여 제3권의 고찰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첫째로, 사업소득은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수입금액-필요경비'의 산식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의 대상이나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원천적 완납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급여(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상여금(보너스) 등의 소득을 말하며, '수입금액-급여소득공제액'의 산식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과세 대상이다.

셋째로, 잡소득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잡소득)으로 분류된다. 잡소득 중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하사금(恩級) 등의 소득이 포함되며, '수입금액-공적연금등 공제액'의 산식에 따라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과세 대상이다. 또한 잡소득 중 연금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은 비영업 대부금의 이자 등 소득세 소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수입금액-필요경비'의 산식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나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로, 일시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 발생한 일시적 소득으로 노무기타 역무 또는 자산 양도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퀴즈 상금, 생명보험계약 만기반환금 등)을 말한다. 일시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이나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원천적 완납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로, 퇴직소득은 퇴직수당, 일시하사금(恩級) 기타 퇴직으로 인해 받는 급여 등을 말하며, '(수입금액- 퇴직소득공제액)×1/2'의 산식[341]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소득과 구별되는 별개의 '단위'로서의 분리과세 대상이다.

여섯째로, 산림소득은 소유기간 5년 초과 산림의 입목 채벌 또는 양도에 따른 소득을 말하며, '수입금액-필요경비-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의 산식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소득과 구별되는 별개의 '단위'로서의 분리과세 대상이다.

일곱째로, 배당소득은 법인 잉여금 배당, 주식 출자의 배당,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 소득 등을 말하며, '수입금액-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가 그 소득금액이 된다. '신고불필요 종합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신고불필요 종합과세'라 함은 종합과세되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하며, '신고분리과세'라 함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지만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같음).

여덟째로, 이자소득은 예금・저금, 국채 등의 이자,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된다. 원천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홉째로, 부동산(임대)소득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대여 소득을 말하며, '수입금액-필요경비'의 산식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과세 대상이다.

열째로,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유 목적의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에 따른 소득을 말하며, '수입금액-매각자산의 취득비・양도비용-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의 산식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과세이나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소득 중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의 소득이 본 보고서의 고찰 대상이다. 즉,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하의 제2항, 급여(근로)소득은 제3항, 잡소득 중 연금소득은 제4항, 잡소득 중 연금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은 제5항, 일시소득은 제6항, 퇴직소득은 제6항, 그리고 산림소득은 제7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소득 이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3권 개인소득세 - 자본이득 과세 및 국제조세 - '에서 다루게 된다.

〈표 Ⅱ-1〉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10가지 소득 종류에 대

341) 근속연수 5년 이하의 법인 임원 등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여, 각각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과세방식(종합과세인가 분리과세인가)을 총괄하여 보이고 있다.

〈표 Ⅱ-1〉 일본 소득세법상의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종류[1]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과세방식
사업소득 (제2항)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	종합과세[2]
급여(근로) 소득(제3항)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상여금(보너스) 등의 소득	수입금액-급여소득 공제액	종합과세
잡소득: 연금(제4항), 기타소득 (제5항)	국민연금, 후생연금, 하사금(恩級) 등의 소득	수입금액-공적연금 등 공제액	종합과세
	비영업 대부금의 이자 등 소득세 소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	종합과세[2]
일시소득 (제6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 발생한 일시적 소득으로 노무 기타 역무 또는 자산 양도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퀴즈 상금, 생명보험계약 만기반환금 등)	수입금액-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	종합과세[2]
퇴직소득 (제7항)	퇴직수당, 일시하사금(은급) 기타 퇴직으로 인해 받는 급여 등	(수입금액- 퇴직소득공제액)×1/2[3]	분리과세
산림소득 (제8항)	소유기간 5년 초과 산림의 입목 채벌 또는 양도에 따른 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	분리과세
이하는 [제3권 개인소득세 - 자본이득 과세 및 국제조세 -]에서 다루게 됨			
배당소득	법인 잉여금 배당, 주식 출자의 배당,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 소득	수입금액-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신고불필요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
이자소득	예금 · 저금, 국채 등의 이자,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 소득	수입금액=소득금액	원천분리 과세[4]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대여 소득	수입금액-필요경비	종합과세
양도소득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유 목적의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에 따른 소득	수입금액-매각자산의 취득비 · 양도비용-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	종합과세[2]
국제조세			

주: 1)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항 표시는 본 보고서에서의 이하 항별 논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음.
2) 일부 분리과세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 그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은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사업 · 양도 · 잡소득),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양도소득), 부동산업자 토지의 단기 양도에 따른 소득(사업 · 잡소득. 2020년 3월 31일까지 과세 정지), 선물 거래에 따른 소득(사업 · 양도 · 잡소득) 등임.
3) 근속연수 5년 이하의 법인임원 등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4) 특정 공사채 이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

자료: 財務省(2019), 『もっと知りたい税のこと』, p. 10.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税制』, p. 87.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2. 사업소득

가. 개요: 사업소득의 정의 및 범위

일본「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을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에서 정부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라 정의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총리 직속의 내각부(內閣部)라는 부처가 있고, 이 내각부는 개별 부처(部處: 일본에서는 성청(省廳))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정부령이라고 하였지만 일본어로는 정령(政令)이 되는데, 이 정령은 개별 부처가 정하는 정부령이 아니라 부처(또는 내각)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규정하는 정부령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에서는 이 정부령[政令]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농업, ② 임업 및 수렵업, ③ 어업 및 수산양식업, ④ 광업(토석(土石) 채취업을 포함), ⑤ 건설업, ⑥ 제조업, ⑦ 도매업 및 소매업(음식점업 및 요리점업을 포함), ⑧ 금융업 및 보험업, ⑨ 부동산업, ⑩ 운수통신업(창고업을 포함), ⑪ 의료보건업, 저술업 기타서비스업, ⑫ 상기 외에 대가를 얻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위의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였거나 폐지하였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개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229조). 주의할 것은 부동산임대업,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업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소득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위 사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대여업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대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또한 종합소득과세와 구별되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도 제외된다.

사업소득 금액은 그 해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총수입(收入)금액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소득세법」제27조 제2항). 수입금액에는 확정된 수입금액만이 아니라, 금전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대표적인 예로서 매출원가, 토지·가옥 또는 기타 물건의 수선비나 임차료,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나. 분리과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 사업소득은 납세자별로 다른 소득과 합

산하여 종합과세되지만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다(이하 사업소득에서의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로서의 분리과세를 뜻한다).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그처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는, ① 토지의 양도 등에 대한 과세, ②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 ③ 선물(先物)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들 수 있다.[342]

우선, 토지의 양도 소득과 관련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년 1월 1일 현재 소유기간이 5년 이하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분리하여 중과(重課)된다. 이는 일종의 과세상의 특례조치라 할 수 있으나 이 특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토지 양도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가운데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가운데 선물거래를 하고 차금(差金) 결제한 소득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 사업소득 수입시기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의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라 함은 '수입(收入)으로서 들어올 금액'을 말하며, 수입금액의 계산에서는 금전적인 수입만이 아니라 금전 이외의 물품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여기서 '수입으로서 들어올 금액'이라 함은 수입으로 들어올 권리가 확정된 금액이다.

수입 권리의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으로서 들어올 금액'의 기초가 된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따른다. 단, 연불조건(延拂條件)부 판매, 장기대규모 공사 등의 도급에 의한 수입금액 및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서 특별 경리가 인정된다(「소득세법」 제36조, 제66조).

한편,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수확하여 얻은 수입은 수확 시의 시가(時價)로 계상한다(「소득세법」 제41조). 그러나 농산물을 실제로 양도한 때는 그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확 시의 시가를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 시기가 속하는 해의 소득으로 한다.

라. 총수입액으로의 산입 여부

사업수입은 상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상품, 제품 원재료, 작업하고 남은 물품 등의 재고(棚卸)자산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재고자산을 가사

342)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覽』, p. 109.

(家事)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소비나 증여 시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계상한다(「소득세법」 제39조 제40조). 재고(棚卸)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증여를 한 경우에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기장하여 그것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 때는 그 금액이 대략 시가의 70% 미만이 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한다(「소득세 기본통달」 39-2).

법인 또는 개인 사업용 자산을 전속적(專屬的)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익 금액은 해당 자산의 이용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등과 같은 해당 사업용 자산 이용의 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사용료 지출이 있으면 그것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자력(資力)을 상실하여 채무 변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자력 상실로 인한 채무 면제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가액에 대하여는 그 해당인의 각종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4조의 2).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고정자산 취득 또는 개량에 충당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그 해에 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고정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2조).

마.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 계산에 이용되는 필요경비 산입에 있어, 감가상각자산, 이연자산(繰延資産)의 상각비, 재고재산의 평가방법, 대손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특별 규정이 있다.[343] 필요경비는 이러한 특별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원가 및 그 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쓰인 비용, 그 해 지출한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업무비용의 총액을 말하며, 그 해 중의 미확정 채무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제37조).[344]

단, 다음에 들고 있는 경우는 그 각각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사업에 속하는 일부의 유휴설비(유지보수가 이루어져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의 것에 한함)에 쓰이는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 기본통달」 2-16).

343)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11.
344) 청색신고를 하는 소규모사업자 소득에 대하여는 현금주의에 의한 계산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청색신고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제3절 제8항을 참조바람.

(2) 수년분의 지대(地代), 집세, 보험료를 일시에 지불하거나 주택 임차(借家) 등에 즈음하여 소위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일시지불금이나 권리금과 관련된 금액을 그 계산의 기초가 된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중 매출 원가는 연초와 연말에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그 해 중 매입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초상품 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매출원가

필요경비 계산 시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는 그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 및 최종매입원가법에 따른 재고자산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 해당 거주자가 행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 원가법의 어느 것에 해당하고 또 그 방법에 따라 소득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방법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소득세법」 제47조 및 제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02조, 제120조~제125조).

바. 사업소득상의 필요경비

사업소득 등의 계산 시 산입되는 필요경비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345]

① 매출품 원가, ②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의 수선비 또는 임차료(賃借料), ③ 손해보험 계약에 기초하여 지불된 보험료, ④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 ⑤ 이연자산 (繰延資産)의 상각비, ⑥ 토지, 가옥 기타 물건 또는 업무 관련 조세 및 공과금, ⑦ 사용인의 급료 및 친족 종사자의 급료(전속종사자(專從者) 공제 등)에 해당하는 것, ⑧ 수도광열비, ⑨ 부채 이자, ⑩ 대손금, ⑪ 종묘(種苗), 누에종자, 비료 구매비, ⑫ 가축 사육료, ⑬ 기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로 인한 비용.

일본에서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주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색신고서로 신고납부하는 청색신고자와 그 이외의 국세

345)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12.

청 작성 흰색신고서로 납부하는 백색신고자로 구별하고 있다(제3절 제8항 참조). 위에서 전속종사자 공제(위의 ⑦)에서는 다음과 같이 백색신고자와 청색신고자를 구분하여 필요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7조).

(1) 백색신고자의 경우

86만엔[346]과 사업소득 금액을 전속종사자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금액 중 낮은 쪽의 금액

(2) 청색신고자의 경우

'청색 전속종사자(專從者) 급여에 관한 신고서'에 기재된 방법에서 그 기재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색사업 전속종사자에 지급되는 급여로, 노동의 종사기간, 성질, 다른 사용인의 급여액, 그 사업의 수익 상황 등에 비추어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전액 필요경비가 된다.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괴, 폐기[除却], 멸실 등의 손실 금액(보험금 등으로 보전(補塡)된 금액 및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것을 제외)도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는 발생하는 경비가 사업수행상 필요하게 되는 경비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예컨대 매출원가나 판매비 등은 대표적인 필요경비가 된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은 사업수행상 필요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면 어떨 것인가? 그 경우에는 해당 경비가 사업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그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필요경비로 한다. 또한 일본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소득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 경비에 관한 특례도 마련하고 있다(후술 참조). 일본 사업소득 등의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가사관련비, ② 소득세(연납 등의 이자세 제외), ③ 소득세 이외의 국세 연체세 및 각종 가산세 또는 인지세법 규정에 의한 과태세, ④ 주민세, ⑤ 지방세 연체금 및 각종 가산금, ⑥

346) 전속종사자가 배우자인 경우나 그 외의 전속종사자에 대해서는 50만엔.

벌금, 과료(科料: 외국 또는 기타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들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 및 과료, ⑦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불하는 손해배상금, ⑧「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등 일정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연체금(외국 또는 기타 지방공공단체나 국제기관이 납부를 명하는 일부 과징금 및 연체금 종류를 포함), ⑨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 등에 공여하는 뇌물 등, ⑩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지불하는 급여(전속종사자 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및 임차료 등(「소득세법」 제45조, 제56조).

가사관련비(가사비와 사업경비와의 양면 성격을 갖는 경비)에 대해서는 그 주된 부분이 사업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그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필요경비로 한다. 또한 청색신고자의 경우는 거래 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면 그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표 Ⅱ-1〉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관련되는 매출원가나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이지만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충당금, 준비금, 감가상각 등에 대한 각종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347] 이와 같은 특례는 「법인세법」에서의 특례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 사회보험 진료보수의 소득계산 특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회보험 진료보수의 소득계산 특례, 가내노동자 소득계산 특례, 유한책임 사업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의 사업소득 계산 특례, 소규모사업자의 수입 및 비용의 귀속시기의 특례,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필요경비의 특례 등 여러 가지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348]

의료업 또는 치과의료업 운영자의 사회보험 진료보수와 관련된 소득계산에서는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관한 특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특례조치(사회보험 진료보수의 소득계산 특례)는 사회보험 진료보수의 수입금액에 따라 개산(概算)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Ⅱ-2〉는 사회보험 진료보수와 관련된 개산(표준)경비율을 보이고 있다.

347)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116.
348) 이들 특례에 관한 설명은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稅法便覽』, pp. 112~120에 자세히 나와 있다.

〈표 Ⅱ-2〉 사회보험 진료보수와 관련된 개산(표준) 경비율 특례

수입금액	개산(표준)경비율
~ 2,500만엔 이하	72%
2,500만엔 초과 ~ 3,000만엔 이하	70%
3,000만엔 초과 ~ 4,000만엔 이하	62%
4,000만엔 초과 ~ 5,000만엔 이하	57%
5,000만엔 초과 ~	개산(표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음[1)]

주: 1) 사회보험 진료보수의 수입금액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그 해의 의사업, 치과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7,000만엔을 초과하는 자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117.

1988년 12월 발본(拔本)개정에서 1989년분 이후는 사회보험 진료보수 금액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준(개산)경비율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었다. 그러다가 사회보험 진료보수 금액이 그 해의 7,000만엔을 초과하는 의사업 및 치과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경우, 개인은 2014년분 이후의 소득세부터, 법인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년도부터 이 개산경비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표 Ⅱ-2〉의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계산을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청색신고제도와 손익통산

한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청색신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993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기장을 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부동산 및 사업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65만엔을 청색신고특별공제로서 공제하는 것이다.[349)] 청색신고제도에 관하여는 제3절 제8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4절에서 살펴보듯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의 계산상 발생한 손실은 일정 순서에 따라 다른 각종 흑자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이를 손익통산이라 한다). 이때 손익통산을 하여도 전부 공제할 수 없는 손실이 있거나 재해 피해를 입은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실(순손실

349) 1992년까지는 사업주 본인에 대해서도 사업주 보수 지불을 인정하여, 그 사업주 보수를 급여소득으로 하는 등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특례조치로서 간주법인 과세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청색신고 특별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간주법인 과세제도는 1992년분까지 적용하고 폐지되었다.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세력을 조정하는 관점에서 3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순손실의 공제대상이 되는 순손실 금액의 범위는 청색신고자와 청색신고 이외의 납세자 간에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차.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액 계산 예

소득세의 세액계산은 각각의 소득종류나 세액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일정 상황을 설정하여 사업소득자의 경우에 사업소득 세액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이기로 한다. 〈표 Ⅱ-3〉은 사업소득자 상황 설정을 보이고 있으며 〈표 Ⅱ-3〉 아래에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액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적고 있다(2017년분의 계산 예).[350]

〈표 Ⅱ-3〉 사업소득자의 상황 설정

사업소득 수입금액(철공소 경영)	1,500만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전업자 급료 제외)	1,000만엔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아파트경영)	200만엔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	70만엔
토지(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의 양도수입금액	7,000만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26만엔
국민연금 보험료	10만엔
생명보험료 지불액	12만엔
가족구성:	
처(전업자, 전업자 급여액 96만엔), 장남(중학생), 차남(초등학생)	

이상과 같은 상황 설정하에서 소득세액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금액 1,500만엔-1,000만엔-96만엔[351]=404만엔 (청색신고특별공제)
- 부동산소득금액 200만엔 - 70만엔 - 65만엔=65만엔
- 총소득금액 404만엔 + 65만엔=469만엔

350) 본문의 사업소득자 소득계산 예는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126에 있는 예를 기초로 필자가 일부 설명을 첨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351) 전업자 급여액 96만엔이다.

- 토지와 관계되는 양도소득금액(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개산취득비)
  7,000만엔 - 7,000만엔×5%=6,550만엔
- 소득공제액
  사회보험료공제 26만엔+10만엔=36만엔
  생명보험료공제(10만엔 초과하므로 최고한도액) 5만엔
  인적공제(기초공제) 38만엔
  계 79만엔
- 과세총소득금액 469만엔-79만엔=390만엔
- 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 6,550만엔
- 소득세액 (세율 및 공제액은 〈표 Ⅰ-2〉 참조)
  총소득금액과 관련되는 부분 (390만엔×20%)-42.75만엔=32.25만엔
  토지양도에 관계되는 부분 6,650만엔×15%[352]=997.5만엔
- 부흥특별소득세액[353] (32.25만엔+997.5만엔)×2.1%=21.69만엔
- 세액 32.25만엔+997.5만엔+21.69만엔 =1,054.44만엔

3. 근로(급여)소득

가. 개요: 근로(급여)소득의 정의 및 범위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라 하지 않고 '급여'소득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소득세법의 용어에 따라 급여소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급여소득이라 함은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및 상여금, 이들 성질을 갖는 급여와 관련된 소득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이들 소득을 '급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득세법 규정을 전개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을 다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국외 원천소득을 규정하

352)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覽』, p. 191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시 5년을 초과하는 장기양도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5년 이하의 단기 양도소득세는 과세소득×30%로 하고 있다(같은 자료 p. 201). 이는 토지건물과 관련된 양도소득 분리과세의 특례에 따른 것이다. 즉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신고분리과세를 하는 특례가 「조세특별조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353)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재해가 일어난 뒤 그 부흥을 위해 소득세액의 2.1%를 부흥특별세 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는 경우).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봉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이 받는 매달의 기본급을 의미하며 샐러리맨의 급료에 해당한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봉급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달 지불되는 기본급을 정한 표가 된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통 급여라 하지 않고 샐러리맨과 마찬가지로 '급료'라 하고 있다.

다음으로 '급료'라 함은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 등이 노동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당을 포함한 지불금을 말한다. 급료는 회사원 등이 사업주로부터 받는 지불금이라는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데 비해 '임금'이라는 용어는 주로 「노동법」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세 번째로 들고 있는 '임금'이라 함은, 「노동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보수로써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일본 「노동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임금, 급료, 수당, 상여, 기타 명칭의 여하를 막론하고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상(일본 노동법에서는 이를 대상(對償)이라 하고 있다)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노동기준법」 제11조).

네 번째의 '세비'라 함은 국가가 국회의원에게 지불하는 일년간의 수당을 말한다. 참고로 지방의원에게 지불되는 급여는 '의원보수'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급여와는 별도로 관청, 회사 등에서 지불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여금은 소위 보너스 또는 특별수당으로 불리기도 하며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지불되고 있다.

일본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률 용어로는 급여라는 말을 사용하나 노동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이 강조되면 근로자라는 표현이 곧잘 등장하곤 한다. '근로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예로 '근로자재산형성급부금 계약' 또는 '근로자재산형성기금 계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계약에 기초하여 일시금으로 지불받는 재산형성 급부금 또는 재산형성기금 급부금 가운데 7년 주기의 중도에 지불받은 것(부득이한 이유로 인한 중도지불은 제외)은 급여 등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354]

급여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액 이외의 물품 또는 권리로 받은 경우(현물급여라 한다)도 급여소득에 산입된다. 즉 직무상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물품 또는 권리를 수입으로 받은 현물급여는 시가로 하여 그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56조).

354)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覽』, p. 136.

급여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연말조정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특정 경우 이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121조).

나. 급여소득 공제액

급여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급여소득공제는 근무에 따른 개산적인 경비가 공제되는 것으로 수입금액에 따라 〈표 Ⅱ-4〉와 같이 공제액이 정해져 있다. 〈표 Ⅱ-4a〉 및 〈표 Ⅱ-4b〉에서 보이고 있듯이 최근 들어서는 급여소득 공제액을 축소(바꾸어 말하면 근로(급여)소득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355]

〈표 Ⅱ-4a〉 급여소득 공제액(2017년분~)

급여수입 구간	급여소득 공제액
~ 162.5만엔 이하	65만엔
162.5만엔 초과 ~ 180만엔 이하	급여수입×40%
180만엔 초과 ~ 360만엔 이하	급여수입×30% + 18만엔
360만엔 초과 ~ 660만엔 이하	급여수입×20% + 54만엔
66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급여수입×10% + 120만엔
1,000만엔 초과 ~	220만엔

자료: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36.

〈표 Ⅱ-4b〉 급여소득 공제액(2020년분~)

급여수입 구간	급여소득 공제액
~ 162.5만엔 이하	65만엔
162.5만엔 초과 ~ 180만엔 이하	급여수입×40% - 10만엔
180만엔 초과 ~ 360만엔 이하	급여수입×30% + 8만엔
360만엔 초과 ~ 660만엔 이하	급여수입×20% + 44만엔
660만엔 초과 ~ 850만엔 이하	급여수입×10% + 110만엔
850만엔 초과 ~	195만엔

자료: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36.

355) 한편, 거주자가 주식을 무상 또는 유리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어진 경우, 그 거주자(또는 그 상속인 포함)가 해당 권리를 그 발행법인에 양도한 때는, 양도 대가액으로부터 해당 권리의 취득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그 발행법인이 지불하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금액, 급여소득(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급여 등의 수입금액, 퇴직소득(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수당 등의 수입금액, 일시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 또는 잡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것은 제외)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소득세법」 제41조의 2). 이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무상 또는 유리한 가격의 주식 취득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급여소득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 소득금액 조정공제를 적용받는 자의 총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 금액으로부터 소득금액 조정공제를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급여)소득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출에 비해 세입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세출을 줄이는 정책 방향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예컨대 2019년 사회보장관계비는 일반회계 세출의 33.6%)[356]은 지출 경직성이 높아 이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다른 경직성이 심한 국채비지출도 높은 비중(일반회계 세출의 23.2%)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지출 재원을 마련해 왔지만, 소비세율 인상만으로는 세출 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고려하여 일본에서 급여소득세 부담을 올리면서는 저소득층보다는 중·고 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점차 부담이 높아지도록(급여소득공제액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Ⅱ-4a〉 및 〈표 Ⅱ-4b〉를 보아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급여소득 공제액(65만엔)이 그대로이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는 급여소득 공제액이 줄어들도록 하고 고소득층 급여수입 구간의 적용도 낮추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급여수입 구간을 보면, 〈표 Ⅱ-4a〉(2017년분~)에서 '66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1,000만엔 초과 ~ '로 되어 있던 것이, 〈표 Ⅱ-4b〉(2020년분~)에서는 '660만엔 초과 ~ 850만엔 이하, 850만엔 초과 ~ '로 바뀌어 급여소득 공제가 적용되는 급여수입 구간을 낮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급여수입 구간에 적용되는 급여소득 공제액도 줄이고 있다. 〈표 Ⅱ-4a〉(2017년분~)을 보면, '1,000만엔 초과 ~ '의 급여수입 구간에 적용되던 급여소득 공제액은 220만엔이었다. 그러던 것이 〈표 Ⅱ-4b〉(2020년분~)에서 보듯이, '850만엔 초과 ~ '의 급여수입 구간에 적용되는 급여소득 공제액은 195만엔으로 되어 있다. 즉, 공제액 적용의 급여수입 구간 최고소득수준도 줄어들고 급여소득 공제액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급여소득 공제액 계산

급여소득과 관련되는 소득세액의 계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급여수입 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를 차감한 다음 급여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 이때 〈표 Ⅱ-4a〉 및 〈표 Ⅱ-4b〉에서 보이고 있는 급여소득공제액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356) 小宮敦史 編著(2020), 『圖說日本の財政』를 참조한 수치.

일본「소득세법」에서는 아래의 라.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공제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급여소득 계산을 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아래 라.에서 언급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특례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급여소득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기로 한다.

급여소득 공제에는, ① 급여소득자가 근무 또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개산적으로 공제한다고 하는 측면과 ② 급여소득의 특이성을 고려한 다른 소득과의 부담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357] 〈표 Ⅱ-4b〉에서는 현행의 급여수입 구간별로 공제율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공제율은 〈표 Ⅱ-4b〉에서 보이고 있듯이 2020년부터는 공제율이 조정되어 공제액도 변경되게 된다.

급여수입이 증가할수록 급여수입별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표 Ⅱ-5〉에서는 급여수입별로 공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표 Ⅱ-5〉 급여소득 공제의 급여수입별 공제율(2017년분~)

급여수입	공제율
	(최저 65만엔)
~ 180만엔 이하	40%
180만엔 초과 ~ 360만엔 이하	30%
360만엔 초과 ~ 660만엔 이하	20%
66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10%
1,000만엔 초과 ~	0%
	(최고 220만엔)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105.

예컨대 급여수입이 500만엔인 경우의 급여소득 공제액을 〈표 Ⅱ-5〉에 따라 계산하면 154만엔이 된다. 즉, 〈표 Ⅱ-5〉를 이용하면 이 154만엔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80×40%+180×30%+140×20%=72+54+28=154(만엔)[358]

이는 수입의 30.8%(=154÷5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57)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104.
358) 계산에 있어 처음의 180(만엔)은 〈표 Ⅱ-5〉에서 첫 급여수입 구간의 180이고, 두 번째 180은 두 번째 구간의 '360-180'의 180이다. 세 번째의 140은 세 번째 구간에 있어 '500-360'으로 하여 나온 금액이다.

위에서는 500만엔의 급여수입의 예를 살펴보았지만, 〈표 Ⅱ-6〉에서는 500만엔 급여수입의 예를 포함하여 다른 몇몇 급여수입 금액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Ⅱ-6〉 급여수입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의 예시(2017년분~)

(단위: 만엔, %)

급여수입(a)	50만엔	100만엔	200만엔	500만엔	1,000만엔	2,000만엔
공제액(b)	50만엔	65만엔	78만엔	154만엔	220만엔	220만엔
공제율(b/a)	100	65.0	39.0	30.8	22.0	11.0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105을 수정하여 작성.

거시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예산기준으로 볼 때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급여소득공제 총액의 비율(예산베이스)은 28.5%에 달하고 있었다.[359]

〈표 Ⅱ-5〉에서 제시한 현행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전에는 1,000만엔 초과의 급여소득에 대하여도 5%의 공제율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표 Ⅱ-5〉에서 보듯이 1,000만엔 초과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그 공제율이 0%로 내려가고 있다. 공제금 최고액도 2017년부터 220만엔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이 급여소득 세부담을 강화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2020년부터는 10%의 적용구간의 상한 급여수입을 1,000만엔에서 850만엔으로 낮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50만엔 초과에 대한 공제율도 195만엔으로 낮추어 급여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더욱 높이는 세제개편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표 Ⅱ-4a〉와 〈표 Ⅱ-4b〉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다른 급여수입 구간에 대하여도 공제액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고소득 급여소득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구간을 제외한 급여소득 전반에 걸쳐 과세 강화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라.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공제 특례

일본에서는 급여소득자의 통근비나 전근으로 인한 이사비용 등의 지출을 '특정지출' 이라고 한다. 급여소득자에게는 특정지출 공제라는 특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특정지출공제 제도는 특정지출 합계액이 급여소득 공제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소득 금액 계산 시 급여소득 공제액 외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특례제도는 1988년 12월 발본개혁(일본은 이 개혁으로 1989년 4월

359) 川上尙貴 編著(2008),『圖說日本の稅制』, p. 90.

부터 일반소비세를 도입하는 세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반소비세를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발본(抜本)'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서 도입된 것이다. 〈표 Ⅱ-7〉에서는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지출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표 Ⅱ-7〉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지출의 범위

- 통근비: 통근을 위해 필요한 운임 등의 비용
- 전근에 따른 이사비용: 전근으로 인한 이사에 필요한 운임
- 연수비: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연수비
- 자격취득비: 직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 취득비는 제외)
- 단신부임자의 귀택비용: 전근으로 인한 단신 부임자 귀택 왕복 비용
  (월 4회 한도)
- 근무필요경비: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필요한 도서비, 의복비, 교제비
  (65만엔까지의 지출이 한도 금액)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税制』, p. 105를 참조하여 작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는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와 동시에 공제대상이 되는 특정지출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표 Ⅱ-7〉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2020년부터는 직무상의 여비도 급여소득 공제대상의 특정지출에 포함되게 된다. 〈표 Ⅱ-7〉을 참조하면 급여소득의 공제특례 대상이 되는 특정지출에는, ① 통근비, ② 업무상의 여비(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 ③ 전근에 따른 이사비용, ④ 연수비, ⑤ 자격취득을 위한 지출, ⑥ 단신부임자의 왕복 여비 및 ⑦ 근무필요경비(도서비, 의복비, 교제비: 합계 65만엔이 한도) 중 일정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소득세법」 제57조의 2 제2항).

위의 〈표 Ⅱ-7〉에서 보듯이 급여소득자가 근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되는 특정지출을 한 경우에 그 일부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급여소득 공제는 이러한 지출을 예상하여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급여소득 공제가 특정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공제특례는 급여소득을 얻게 되는 데 소요되는 지출(특정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그 해 중의 특정지출액 합계액이 급여소득 공제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금액을 급여소득 공제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7조의 2 제1항).

급여 등의 지불자로부터 그 특정지출이 보전(補塡)되어 그 보전된 것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전된 부분의 금액은 특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지출의 공제특례 적용을 받을 경우는 이 특례 적용을 받은 취지 및 특정지출 합계액을 확정신고서 등에 기재함과 동시에, 그 명세서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57조의 2 제3항). 부연하면 특정지출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서에 특정지출액의 지출명세서, 근무처 증명서, 지출금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제시하면 된다.

마. 급여소득의 확정 시기

일본에서 급여소득의 확정시기는 「소득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급여 등의 지급 규정에서 있어 기업 등이 처한 상황이나 계약·관습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에서 이를 망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급여소득의 구체적인 확정시기는 「소득세 기본통달」로 시행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36조에서 소득금액 계산의 통칙(제2관(款))을 제시하면서 수입금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소득세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그 해 분의 각종 소득금액 계산상 수입금액으로 해야 하는 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해에 수입해야 할 금액(금전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금전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은 당해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당해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때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그 해 분의 소득'이라든가 '이익을 향수하는 때의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아래에 들고 있는 시기에 따라 급여소득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소득세 기본통달」 36-9).

① 계약 또는 관습 기타 주식총회의 결의 등으로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급여 등(아래 ②에 든 것을 제외)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지급받은 날

②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산정 기초가 되는 이익에 관한 지표 수치가 확정되어 지급액이 정해진 것, 기타 이익을 기초로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있던 날(그 결의 등이 임원에 대하여 지불되는 상여금 총액만을 정하고 각 임원별로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날)

③ 급여규정 개정이 기왕(旣往)으로 소급되어 실시된 경우 기왕(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

는 신구(新舊) 급여 차액은 그 차액의 지급일(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개정 효력이 발생한 날)

④ 이른바 인정(認定) 상여금과 같이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실제 지급일(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업연도 종료일).

위에서 '인정(認定) 상여금'이라 함은 통상의 상여금과는 달리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 금액을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青柳(2006, p.347)에서는 '인정 상여금'이라는 말은 실무상의 용어로 세법상의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金子・武田(1974, p.491)에서도 '인정(認定) 상여금'을 세무실무상의 용어라고 하면서, "동족(同族)회사 등에서 사장 등의 임원에 대해 회사 소유의 자산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통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한 것이 된다. 이는 말하자면 '숨은 임원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회사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청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아 상여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바. 급여소득 공제액과 과세소득의 예

연 700만엔 봉급소득자를 예로 하여 급여소득 공제를 비롯한 공제금액과 과세소득을 살펴보자. 〈표 Ⅱ-8〉은 봉급소득자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부양가족 중에 1명은 특정부양공제를 받는 친족이고 다른 1명은 16세 미만이라고 설정한 상황에서 공제규모와 과세소득의 계산 예를 보인 것이다.

〈표 Ⅱ-8〉 연소득 700만엔 봉급생활자(부부+자녀2인)의 공제액과 과세소득

공제액(과세되지 않는 금액) 434만엔	과세소득 및 소득세액
급여소득공제 190만엔[1] 사회보험료공제 105만엔[2] 부양공제 63만엔 (자녀 중 1인은 특정부양친족, 1인은 16세 미만으로 가정) 배우자공제 38만엔 기초공제 38만엔	과세소득 266만엔
	소득세액: 16.9만엔 (≒ 195만엔×10% + (266만엔−195만엔)×10%

주: 1) 급여소득공제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표 Ⅱ-5〉의 공제율표 참조.
180×40%+180×30%+300×20%+40×10%=190(만엔)
2) 사회보험료는 전액 공제되지만 여기서는 연수입 900만엔 이하에 관계되는 사회보험료의 비율을 15%로 시산하고 있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105를 수정하여 작성.

사. 원천징수 및 연말조정

급여소득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할 때 그 지불액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연말조정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해당연도의 마지막 급여가 지불될 때 연간 급여총액에 대한 세액과 급여 지불 시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청산한다. 이 절차가 연말조정(정산)이다. 원천징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소득세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가 신고납세를 하는 수고를 덜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 급여소득자의 소득세액 계산 예

〈표 Ⅱ-8〉에서는 간단하게 700만엔의 급여소득만이 있을 때의 급여소득세액 계산에 대한 예를 들었으나 이하에서는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과 함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 설정하에서 급여소득자의 소득세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표 Ⅱ-9〉는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상황 설정을 보이고 있다.[360]

〈표 Ⅱ-9〉 급여소득자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상황 설정

급여수입금액	1,000만엔(원천징수세액 71만엔)
원고료 수입	50만엔(원천징수세액 5.11만엔)
정기예금 이자	30만엔(원천징수세액 4.59만엔)
의료비 지불액(보험금 등에서의 보전금 없음)	45만엔
사회보험료(급여로부터의 공제액)	45.7만엔
구(舊) 생명보험료 지불액	6만엔
지진보험료(1년 계약) 지불액	0.3만엔
가족구성	처(무직), 장녀(학생, 17세), 장남(초등학생)

이상과 같은 상황 설정하에서 소득세액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7년분의 계산 예)

- 급여소득 금액 1,000만엔-220만엔(급여소득 공제[361])=780만엔
- 잡소득 금액(필요경비를 10만엔으로 가정) 50만엔-10만엔=40만엔

360)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126에 있는 예를 기초로 필자가 설명을 부가한 것이다.

361) 급여소득공제의 공제율표는 〈표 Ⅱ-5〉에 나와 있다. 〈표 Ⅱ-5〉를 이용하여 급여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180×40%+180×30%+300×20%+340×10%=72+54+60+34=220(만엔)이 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稅法便覽』, p. 177 참조.

• 총소득금액 780만엔+40만엔=820만엔
(이자소득 30만엔은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이므로 총소득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 소득공제액
의료비공제 (45만엔-10만엔[362])=35만엔
사회보험료공제 45.7만엔
생명보험료공제 (6만엔-5만엔)×0.25+37,500엔[363]=4만엔
지진보험료공제 (단기이므로 3,000엔이 한도) 0.3만엔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38만엔	+ 38만엔 +	38만엔	= 177만엔
				계 199만엔

• 과세 총소득금액 820만엔-199만엔=621만엔

• 신고에 의한 소득세액 (621만엔×20%) - 42.75만엔=81.45만엔
(세율 및 공제액은 〈표 Ⅰ-2〉 참조)
• 부흥특별소득세액 81.45만엔×2.1%=1.71만엔
• 환부되는 세액 (81.45만엔+1.71만엔) - (71만엔+5.11만엔)=7.05만엔

위의 맨 아래 식에서 71만엔은 급여수입 원천징수세액이며, 5.11만엔은 원고료 수입 원천분리과세 징수액이다. 부흥특별소득세액은 2011년 동일본대재해 이후 소득세액에 2.1%를 곱하여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세액을 말한다. 결국 이 예에서는 신고에 의한 소득세액 83.16만엔(=81.45+1.71)과 원천분리과세 이자소득과 관계되는 소득세액 4.59만엔의 합계액 87.75만엔이 연간 납세한 소득세액이 된다. 이 납세소득세액이 과세 총소득금액(621만엔)과 이자소득(30만엔)의 합계액 651만엔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평균세율을 구하면 약 13.5%이다.

362) 후술하는 〈표 Ⅲ-4〉으로부터 의료비공제에 적용되는 것은 ① 10만엔 ② 연간소득금액의 5% 중에서 낮은 금액이므로 여기서는 10만엔이 된다. 왜냐하면 연간 총소득금액 820만엔의 5%는 41만엔으로 10만엔보다 크기 때문이다.

363) 보다 구체적으로 구(舊)생명보험료 공제를 나타내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60,000-50,000)×0.25+{25,000+(50,000-25,000)×0.5}=40,000엔이 된다. 이는 25,000엔 이하의 생명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그 후 50,000엔까지는 50%, 그다음은 25%로 생명보험료 공제액이 줄어들고 있는 공제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신(新) 생명보험료 공제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Ⅲ. 4. 보험관련 공제'를 참조바람.

4. 연금소득

가. 일본에서 연금소득 분류의 특이성

일본에서 연금소득은 잡소득에 포함시켜 과세되고 있다.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잡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잡소득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적연금 등, 비영업대금 이자, 신원보증금 이자, 금융채 상환차익, 광업권 사용료, 선박의 대여로 인한 소득(부동산소득이 되는 것 이외의 소득), 작가 이외의 인세, 원고료, 비영업자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등을 들 수 있다.[364]

잡소득 금액은 당해 년의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적연금 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과, 당해 연도의 잡소득(공적 연금 등 이외의 것)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365]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하에서는 잡소득 안에 포함되는 '공적연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로 한다.

나. 공적연금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한 이유

공적연금 등과 관련되는 소득은 1987년 9월 개정 이전에는 급여소득으로서 과세가 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7년의 개정으로 ① 공적연금 등의 소득구분을 급여소득으로부터 잡소득으로 변경하고, ② 공적연금에 적용되는 공제로서 노년자연금 특별공제 및 급여소득공제를 대신하여 새로이 공적연금 공제를 신설하고, ③ 이에 맞추어 노년자공제를 2배로 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공적연금의 소득 구분을 급여소득에서 잡소득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방식을 정비한 것은, 공적연금은 급여소득과 같이 근무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급여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987년 개정으로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년 세대가 과세최저한(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366]

---

364)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50.

365) 비영업 대부금 원금의 대손 손실은 잡소득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하여 공제한다(「소득세법」 제 51조 제4항).

366) 이 개정으로 공적연금 수급자의 면세점(수급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부부세대의 경우)은 약 340만엔으로 상당히

주지하듯이 사회보험의 하나인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령 공적연금을 받는 많은 세대가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공적연금에 대한 중과(重課)는 수직적 공평성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에서 연금소득을 근로(급여)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한 이유는 물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금소득이 근무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세법학적 논리도 있지만, 세금 부담을 근로소득보다 낮추어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배려도 함께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서 1987년 개정으로 노년 세대의 대부분이 과세최저한(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노년자(고령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강화해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그와 동시에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연금재정 팽창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년 연장, 연금지급 연령 늦추기와 같은 연금제도 개편(예를 들어, 65세 지급에서 70세 지급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소득 고령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연금제도 개편을 통한 연금재정 팽창 완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공적연금 등'의 정의 및 범위

일본에서 '공적연금 등'이라 함은 「국민연금법」이나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규정에 근거한 연금, 하사금[恩給: 또는 보훈금](일시 하사금은 제외),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연금 등을 말한다.[367]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적연금 등'은 아래에서 들고 있는 연금 등을 말한다.[368]

①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법」, 「독립행정법인 농업자 연금기금법」의 규정에 근거한 연금
② 하사금[恩給](일시 하사금은 제외) 및 과거 근무에 근거하여 사용자였던 자로부터 지급되는 연금
③ 「확정급부기업연금법」과 관련된 연금이나 적격퇴직연금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퇴직연금(승인취소 후의 급부 등을 제외)

높게 책정되었다.

367)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106.

368)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稅法便覽』, p. 150.

라.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

일본에서의 공적연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자에 대해 지급된다. 이하에서는 '공적연금 등'을 간단히 '공적연금'으로 간단히 표기하며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공적연금 공제액은 다음의 정액공제액과 정률공제액의 합계액이다.[369]

① 정액공제액: 50만엔

② 정률공제액

㉠ 정액공제 후의 수입금액이 360만엔 이하인 경우:
정액공제 후의 수입금액×25%

㉡ 정액공제 후의 수입금액이 360만엔 이상 720만엔 이하인 경우:
90만엔 + (정액공제 후의 수입금액 - 360만엔)×15%

㉢ 정액공제 후의 수입금액이 7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144만엔 + (정액공제 후 수입금액 - 720만엔)×5%

단, 위에서 언급한 정액공제액과 정률공제액의 합계액이 70만엔(65세 미만의 경우는 120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70만엔(65세 미만의 경우는 120만엔)이 공제액이 된다. 이는 공적연금의 최저공제액을 70만엔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마.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 강화

2004년에는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다. 2004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세대 간·고령자 간 세부담의 공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자 공제에 대한 우대조치 및 노년자공제(50만엔)를 폐지하였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년자에 대해 공적연금 공제의 최저보장액으로 65세 미만의 최저보장액 70만엔에 50만엔을 가산하여 120만엔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전의 140만엔에 비해 낮아진 금액이다. 이외에도 정액공제액이 개정전의 100만엔에서 50만엔으로 낮아졌다. 이들 일련의 개정으로부터 최근에는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는 하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연금재정 팽창에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일본은 노년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그 예로서 공무원의 정년을 연

369)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覧』, p. 150.

장하거나 민간기업 종업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적연금공제의 최저보장액의 인하도 그 효과가 한정적이기는 하나 노년기에 보다 많이 일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임을 엿볼 수 있다.

바.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연금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적연금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된다. 급여 지불시 급여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적연금에 있어서도 연금 지불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다음 〈표 Ⅱ-10〉은 각각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액 계산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Ⅱ-10〉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 절차

구 분	공제 등
1) 연금수입	
2) 공적연금 등 공제	[①+②]와 ③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정액공제 50만엔 ② 정률공제 (정액공제 후의 연금수입) 360만엔까지의 부분 25% 720만엔까지의 부분 15% 720만엔 초과하는 부분 5% ③ 최저보장액 65세 이상 120만엔 65세 미만 70만엔
3) 기타 소득공제	기초공제 38만엔(33만엔) 배우자공제 38만엔(33만엔) ( )안은 주민세에서의 공제액 사회보험료공제 등
4) 세액계산	

주: 연금보험료 갹출시 소득공제로서 사회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진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107.

연금수급자에게는 연말조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요구되고 있으나, 세무 사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수입이 400만엔 이하이며, 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만엔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는 제도이다. 일본은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의 진전이 빠른 만큼 연금수급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생활실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은 공적연금 과세에 대해 보험료 갹출 시, 운용 시, 연금보험 수급 시 어떤 방향으로 연금과세를 확립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5. 기타소득(잡소득 중 연금소득 이외)

가. 개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에는 잡소득 가운데 '연금소득 등' 이외의 소득이 포함된다. 앞서 연금소득을 설명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잡소득이라 함은 "이자 · 배당 · 부동산 · 사업 · 급여 · 퇴직 · 산림 · 양도 · 일시 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다(제35조).

한국 「소득세법」에서의 '기타소득' 규정 방식과는 달리 일본의 '잡소득'은 그 개념 자체가 일종의 '열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법체계적으로 보면 일면 '포괄적 소득 개념'의 근거로 삼을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세법이 '포괄적 소득과세(comprehensive income taxation)'를 취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조세법률주의가 지배적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은 '포괄적 소득개념'이라기보다는 '제한적 소득 개념'이라 하겠지만, 그 제한의 폭을 넓게 하여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연하면 일본이 잡소득을 '열린'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기본통달」에서 명확히 과세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무작정 '잡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일본 「소득세법」의 경우 이자 · 배당 · 부동산 · 사업 · 급여 · 퇴직 · 산림 · 양도 · 일시 소득의 아홉 가지 소득 및 연금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 기본통달」에서 그 예시를 하며 소득세 부과를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의 연금소득의 설명에서 언급한 잡소득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잡소득)에는 비영업대금 이자, 신원보증금 이자, 금융채 상환차익, 광업권 사용료, 선박의 대여로 인한 소득(부동산소득이 되는 것 이외의 소득), 작가 이외의 인세, 원고료, 비영업자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등이 포함된다. 일본

「소득세 기본통달」에서는 잡소득의 예시를 하고 있다(「소득세 기본통달」 35-1).

잡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공적연금 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적연금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과, 당해 연도의 잡소득(공적 연금 등 이외의 것)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기타(잡)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소득계산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가내노동자 등의 잡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과 동등한 소득계산의 특례가 있다.[370]

한국의 기타소득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소득세법」상의 잡소득(연금소득 이외)은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10가지 소득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다양한 성격의 것들이 섞여 있다. 그러한 잡소득을 대상으로 어떤 공통성이 있는 소득을 추출하고 그것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 다시 공통적인 취급을 하는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 일본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문제 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소득 이외의 잡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소득종류의 범주(카테고리) 설정으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나. 기타소득 공제액

기타소득(일본에서의 연금소득 이외의 잡소득)으로 아래에 들고 있는 공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다.[371]

(1) 기타소득(연금소득 이외의 잡소득)과 관련된 합계소득금액이 1천만엔 이하인 경우

아래 정액공제액 및 정률공제액의 합계액(그 합계액이 아래 최저보장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최저보장액).

① 정액공제: 40만엔

② 정률공제

a. 수입금액(50만엔 공제 후. 이하 (1)에서 (3)까지 같음)이 360만엔 이하의 경우: 수입금액 ×25%

b. 수입금액이 360만엔 초과 720만엔 이하의 경우:
90만엔 + (수입금액 - 360만엔) ×15%

370)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覧』, p. 151. 또한 잡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 관련 소비세액 등의 처리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 관련 소비세액 등의 처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71)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覧』, pp. 150~151.

c. 수입금액이 72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의 경우:
144만엔 + (수입금액 - 720만엔) ×5%
d. 수입금액이 95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155.5만엔
③ 최저보장액: 65세 미만은 60만엔, 65세 이상은 110만엔.

(2) 기타소득(연금소득 이외의 잡소득)과 관련된 합계소득금액이 1천만엔 초과 2천만엔 이하인 경우
아래 정액공제액 및 정률공제액의 합계액(그 합계액이 아래 최저보장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보장액)
① 정액공제: 30만엔
② 정률공제: 위 (1)의 ②와 동일
③ 최저보장액: 65세 미만은 60만엔, 65세 이상은 100만엔.

(3) 기타소득(연금소득 이외의 잡소득)과 관련된 합계소득금액이 2천만엔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정액공제액 및 정률공제액의 합계액(그 합계액이 다음 최저보장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보장액)
① 정액공제: 20만엔
② 정률공제: 위 (1)의 ②와 동일
③ 최저보장액: 65세 미만은 40만엔, 65세 이상 90만엔.

다. 특정외국자회사 등의 과세대상 금액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기에서 들고 있는 특정외국자회사 등의 과세대상 잡소득(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국제조세를 다루는 제3권에서 다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잡소득도 소득합산을 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외국자회사 등의 과세대상 잡소득이 어떻게 산입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특정외국자회사 등으로부터의 수입 중 무엇이 어떠한 방식으로 잡소득 관련 수입금액으로 산입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등에 의해 발행된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외국관계회사'라고 하고 있다. 외국관계회

사에는 '특정외국관계회사'와 '대상(對象)외국관계회사'가 포함된다.

우선, '특정외국관계회사'라 함은 아래 ①부터 ③에서 들고 있는 외국관계회사를 말한다.[372]

① 그 주된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등을 갖고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관리 등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은 외국관계회사(소위 페이퍼컴퍼니)

② 일정 이자나 배당 등의 합계액이 총자산액의 30%를 초과하는 일정 외국관계회사

③ 조세 관련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적인 공조 협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갖는 외국관계회사

다음으로, '대상외국관계회사'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관계회사를 말한다.

① 주식 등의 보유, 지적 재산권의 제공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 리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사업기준)

② 본점 소재지 국가에서 주된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등을 갖고 있는 것(실체기준) 및 그 사업의 관리 등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것(관리지배기준)

③ 도매업 등의 8개 업종에 있어서는 주로 그 관련자 이외의 자와 거래를 하고 있을 것(비관련자 기준)

④ ③의 업종 이외 업종에 있어서는 주된 본점 소재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소재지도(地圖) 기준)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동족(同族)주주 그룹이 특정외국관계회사 또는 대상외국관련회사에 해당하는 외국관계회사의 발행완료 주식 등[373]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거주자가 이들 외국관계회사와의 사이에서 실질지급관계[374]를 갖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그 경우에는, 그 외국관계회사의 적용대상금액 중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 중, 그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과세대상금액)은, 해당 외국관계회사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분(年分)에서의 그 거주자의 잡소득 관련 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의 4~40).

372)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p. 151~152.

373) 의결권(잉여금 배당 결의와 관련된 것에 한함)이 다른 주식 또는 청구권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 수의 비율, 의결권 수의 비율, 또는 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분하는 잉여금 배당 등의 금액을 말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 152.

374) 이들의 외국관계회사의 잔여재산 거의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藤崎直樹・坂井裕幸 編著(2018),『税法便覽』, p. 146.

거주자가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라. 특정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금액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도 위의 다.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조세를 다루는 제3권에서 다룰 부분이다. 하지만 특정외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중 잡소득(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과세대상 잡소득이 어떻게 산입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금액 중에서 잡소득 관련 소득이 어떠한 방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특수관계주주 등'으로 되어 있는 거주자와 관련된 특정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금액 등을 어떻게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주주 등'이라 함은, 특정관계가 발생하기 직전에 특정내국법인[375]의 주식 등을 갖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이들 특수관계주주 등이 특수관계내국법인[376]의 발행 주식 등을 80% 이상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주주 등과 특수관계내국법인 간에 개재하는 외국관계법인(회사)이 있을 수 있다. 그 외국관계법인 중, 특정외국관계법인(회사) 또는 대상외국관계법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07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과세대상 금액 등을 가질 때는 해당 특수관계주주 등인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분(年分)에서 그 거주자의 잡소득 관련 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의 7~40).

특정외국관계법인 또는 대상외국관계법인의 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외국관계회사 또는 대상외국관계회사와 동일하다.

또한 거주자가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375) 직전에 주주 5인 이하 그리고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 및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80% 이상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53.

376) 특수관계내국법인이라 함은 특정내국법인 또는 특정내국법인으로부터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해 그 자산 및 부채의 대부분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53.

마. 예·저금 형태로 받는 현상금의 분리과세

일본에서 현상금 수입은 대개는 후술하는 일시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예·저금 형태로 내건 현상금은 잡소득으로 분류되고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를 부연하면, 개인 또는 법인(공공법인 등 일정의 내국법인은 제외)이 지불(지불 혹은 교부나 공여를 말한다)을 받아야 할 '예·저금 형태로 받는 현상금'[377]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15%의 세율로 과세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9). 여기서 '예·저금 형태로 받는 현상금'이라 함은, 일본 국내에서 예·저금 등[378]과 관련된 계약에 근거한 예입(預入) 등(예입, 신탁, 구입 또는 지불을 말한다)이 이루어진 예·저금 등으로, 그 예·저금 등과 관련된 계약이 일정기간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으로 하여 해당 예·저금 등을 대상으로 내걸어 복권 등으로 지불받는 금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바. 정기적금의 급부보전금 등에 대한 원천분리과세

거주자 또는 항구적 시설을 갖는 비거주자가 일본 국내에서 지불받아야 할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의 급부보전금, 저당증권의 이자, 외화정기예금의 환차익에 따른 잡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15%의 세율로 과세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10). 한편 금(金)저축계좌·금(金)투자계좌 등의 이익(양도소득), 일시불 양로보험·일시불 손해보험 등의 차익(일시소득)에 대해서도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사. 상환차익에 대한 원천분리과세

〈표 Ⅱ-1〉에서 보듯이 일본의 소득세에서는 이자소득을 원천분리과세하고 있다. 이는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고 하면 이를 분리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할인채권(割引債)에 대하여 지불받은 상환차익은 18%의 세율[379]을 적용하여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12). 여기서의 할인채권은 할인 방법에 따라 발행되는 공사(公社)채권[380] 및 외국법인이 국내

377) 일본어로는 '현상금으로 딸린 예·저금 등의 현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54.

378) 예·저금, 합동운용신탁,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정기적금 등을 말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54.

379) 동경만(灣) 횡단도로건설사업자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중 할인채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藤崎直樹·坂井裕幸 編著(2018), 『税法便覧』, pp. 147~148.

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또한 상환차익이라 함은 할인채의 상환금액(매입 소각의 경우는 매입금액)이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익을 말한다.

할인채 조기상환(繰上償還) 또는 기한 전 매입 소각을 한 경우는 그 상환을 받은 자가 이들 사유로 인해 상환차익 감소분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응하는 소득세액이 환급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12,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의 12).

6. 일시소득

가. 일시소득의 정의

일본에서는 기타소득(잡소득)과 구분하여 일시소득을 독립된 하나의 소득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시소득이란 이자 · 배당 · 부동산 · 사업 · 급여 · 퇴직 · 산림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의 각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34조).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닐 것

② 노무나 역무 또는 자산 양도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을 것

③ 그 소득이 일시적 성질을 지닐 것

한국에서는 '일시재산소득'이라는 범주를 운용하다가 최근에 없앴지만, 일본은 '일시소득'과 '잡소득'을 구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궁금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소득 간의 구별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잡소득(기타소득)을 설명하면서 잡소득은 "이자 · 배당 · 부동산 · 사업 · 급여 · 퇴직 · 산림 · 양도 · 일시 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정의하였다(「소득세법」 제35조). 이렇게 보면 잡소득과 일시소득의 차이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즉,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잡소득이 된다.

이때 '계속적인 수입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수입인가'가의 기준이 잡소득과 일시소득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계속적인' 활동에 따른 수입이면 잡소득이 되고 '일시적인' 수입이면 일시소득이 되는 이미지라 할 것이다(잡소득과 일시소득을 구별하는 이유는 후술하는 라. 항을 참조바람).

---

380) 일본 국채(외국채권을 제외), 지방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회사채,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公庫) 및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를 제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1999년 4월 1일 이후 발행된 특정단기공사채권을 제외한다. 이때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장기신용은행채권 등 농림채 이외의 공사채는 할인채권에서 제외되고 있다. 坂井裕幸 · 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54.

나. 일시소득의 범위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일시소득에 포함되는가? 일시소득에 포함되는 예로서, 현상금, 경마·경륜의 반환금, 생명보험의 일시금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소득세 기본통달」에서는 일시소득의 자세한 예시를 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일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소득세 기본통달 34-1).

① 현상 상금 등
② 경마, 경륜 지불금(현상금) 등
③ 「노동기준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
④ 생명보험 일시금
⑤ 법인으로부터의 증여로 취득한 금품
⑥ 인격이 없는 사단의 해산으로 인해 취득한 청산분배금 등
⑦ 주택세입자 퇴실료(휴업보상, 양도소득이 되는 것을 제외)
⑧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계약착수금
⑨ 국고보조금 가운데 압축기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⑩ 유실물 습득자 등이 받는 사례금(報勞金)
⑪ 유실물 습득자 등에 의한 취득자산
⑫ 시정촌민세 등의 납기전 납부와 관련된 장려금

다. 일시소득의 계산

일시소득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그 수입의 발생과 관련하여 들어간 금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일시소득의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34조). 이때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계산 시는, 일시소득의 수입을 발생시킨 각 행위 또는 각 원인별로 그 금액을 계산하며,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은 행위 또는 원인에 수반되는 지출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소득의 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특정공제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통상 50만엔이다.

한편 근로자 재산형성 급부금 계약 또는 근로자 재산형성 기금 계약에 근거하여 일시금으로 지불받은 재산형성 급부금 또는 재산형성 기금 급부금 가운데 7년 경과 후 지불을 받은 것(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지불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은 일시소득 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29조의 3 제1항,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라. 일시소득과 잡소득을 구분하는 이유

어느 소득이 잡소득으로 분류되는가 아니면 일시소득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소득계산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 결과 소득세 납부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를 경마 현상금을 일시소득으로 볼 것인가, 잡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소송 판결을 예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위 나. 일시소득의 범위에서 보았듯이 경마, 경륜 지불금(현상금)은 통상적으로는 일시소득에 포함된다. 일본 국세청도 경마, 경륜, 보트경기, 자동차경주 등의 공영(公營)경기에서 받는 현상금은 일시소득으로 하여 확정신고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다.[381] 그러면서 현상금 지불을 받은 경우에는 ① 경기 개최일, ② 현상금 수령액, ③ 경기(경주)권 구입액을 노트 등에 기재하여 둘 것을 알리고 있다.

공영경기 현상금 관련 일시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① 현상금 관련 연간 수령액을 계산한다.

② 경기(경주)권 연간 구입액을 계산한다.

③ [① - ② - 50만엔]×1/2 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③의 계산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③에서 1/2을 곱한 이유는 '총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장기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의 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1/2로 한 금액으로 하여 총소득금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공영경기에서 받은 현상금 수입이 일시소득이 될 수 있다는 예시였지만, 그 현상금 수입이 반드시 일시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어느 시민이 고액의 경마 현상금을 받았고, 일본 국세청은 이를 일시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 적이 있다. 이에 그 시민은, 경마에서 얻은 수입은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고,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입(즉, 잡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해 2017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382] '연간을 통하여 거의 모든 경주의 마권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계속적인 영리활동'으로 판단하여 '잡소득'이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당첨되지 않은 경주권(마권) 수입액'이 경비로 인정되었다.

앞서의 기타소득(공적연금 이외의 잡소득)의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잡소득은 당해 연도의 잡소득(공적연금 등 이외의 것)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된다.

381) 国税庁(2019),「国税庁からのお知らせ : 払戻金の支払を受けた方へ」참조.
382) 最高裁判所(2017),「平成２８年（行ヒ）第３０３号 所得税更正処分等取消請求事件」.

요컨대 잡소득과 일시소득을 구별하는 이유는 해당 소득이 무엇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소득 계산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 결과 소득세 납부액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7. 퇴직소득

가. 개요

퇴직소득이란 퇴직수당, 일시 하사금(恩給), 기타 퇴직에 따라 일시에 받는 급여 및 이들 성질을 갖는 급여에 의한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30조). 퇴직수당이라 함은 본래 퇴직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게 된 성질을 갖는 수당을 말한다(「소득세 기본통달」 30-1). 퇴직급여를 금전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로 지급되는 경우의 퇴직소득 수입금액은 그 물건 또는 권리 지급시의 시가(時價)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36조)[383]. 또한 기업파산과 관련된 퇴직근무자가 국가로부터 그 사업주 대신 변제를 받는 미지불 임금은 퇴직수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384]

퇴직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는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의 장기성이나 퇴직 후 생활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

① 근속연수가 20년 이하인 경우: 40만엔×근속연수

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80만엔 미만인 경우는 80만엔으로 한다.

② 근속연수가 20년을 넘는 경우: [70만엔×(근속연수-20년)]+800만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속기간의 통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공제액 계산 특례 등도 마련되어 있다.

나. 퇴직소득의 범위

위의 개요에서 언급하였듯이 퇴직소득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30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383) 「소득세법」 제36조는 소득금액 계산의 통칙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금전 외에 '물건 또는 권리'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언급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본문에 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후술하는 나. 퇴직소득의 법위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 및 시기에서 지급되는 퇴직소득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을 짚어본 데 지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소득 설명에서도 때때로 언급되고 있다.

384)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覽』, p. 159.

나 무엇이 퇴직소득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퇴직수당, 일시 하사금(恩給), 기타 퇴직에 따라 일시에 받게 되는 급여 및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급여에 의한 퇴직소득의 형태가 기업 등이 처한 상황이나 계약·관습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무엇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 기본통달」로 운용하고 있다.

퇴직소득에는 퇴직수당에 더하여 퇴직수당(퇴직금)이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과 관련된 급여도 퇴직소득으로 산입하고 있다. 그와 같은 퇴직수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계속하여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수당으로서 일시에 지급되는 급여 중 아래 ①부터 ④의 조건하에서 지급되는 것을 들 수 있다.

① 새로이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하거나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 혹은 확정 갹출연금 제도로의 이행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 종래의 퇴직급여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 사용인에 대하여 제정 또는 개정 전의 근속기간 관련 퇴직수당 등으로 지불되는 것

② 사용인으로부터 임원이 된 자에게 사용인이었던 근속기간과 관련된 퇴직수당 등으로 지불되는 것

③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는 것과 같은 관장(分掌) 변경이 있은 다음에 보수가 격감한 이유로 관장 변경 전의 임원의 근속기간과 관련된 퇴직수당 등으로 지불되는 것

④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사용인 또는 해산 후 계속하여 청산 사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과 관련된 퇴직수당 등으로 지불되는 급여

이들 ①부터 ④의 급여가 지급된 다음에 지불되는 퇴직수당 등의 계산상 해당 급여계산의 기초가 된 근속기간을 일체 가미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지불하는 것은 퇴직수당 등으로 본다(「소득세 기본통달」 30-2).

다음으로, 재직 중 사용인에 대하여 소정의 갹출금을 갹출하여 퇴직 시 사용자로부터 지불되는 일시금은 퇴직수당 등으로 보게 된다. 그 퇴직수당 등의 금액은 일시금 지불액으로부터 갹출금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세번째로, 과거 근무에 기초하여 사용자였던 자로부터 지급되는 연금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불되는 것 중 퇴직일 이후 연금 지급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불되는 것은 퇴직수당 등으로 본다.

또한 연금의 지급개시일 후에 지불되는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장래 연금급부 총액 대신 지불되는 것은 아래 ①과 ②에서 드는 연분(年分)의 퇴직수당 등으로 하는 것이 인정된다(「소득세

기본통달」 30-4).

① 퇴직일 이후 그 퇴직에 기인하는 퇴직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 지불되는 일시금: 최초에 지급된 퇴직수당 등의 지급기

② 기타 일시금: 일시금 지급기

연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지불되는 일시금으로 위에서 든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적연금 등에 해당한다.[385]

네 번째로, 「노동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예고(豫告)수당은 퇴직수당 등에 포함된다(「소득세 기본통달」 30-5).

다. 간주퇴직수당

사회보험제도에 근거하여 지불되는 일시금 기타 그와 같은 부류의 급부, 확정급부기업연금과 관련된 규약이나 적격퇴직연금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및 확정갹출연금의 기업형연금 규약 또는 개인형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노령급부금으로 지급되는 일시금, 특정퇴직금공제 단체 및 독립행정법인 노동자퇴직금 공제기구가 제공하는 퇴직금공제에 관한 제도,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마련하고 있는 소규모기업공제 계약과 관련된 제도 등에 근거하여 지불되는 일시금은 퇴직수당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2조, 제76조).

확정급부기업연금 관련 규약 또는 적격퇴직연금 계약에 근거하여 갹출(摡出)된 연금보험료(掛金) 중에 해당 가입자 또는 근무자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으로부터 그 부담 상당분을 공제한 금액이 퇴직소득 수입금액이 된다.

라. 퇴직소득 계산과 공제액

앞의 개요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퇴직소득금액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퇴직소득금액 = [수입금액-퇴직소득공제액] ×1/2

위의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서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금액만이 아니라 퇴직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에 영향을 준다. 또한 위 산식에서

385)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p. 159~160.

는 1/2 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지급하는 '특정임원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1/2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특정임원 퇴직수당 등'이라 함은 ① 「법인세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하는 임원, ②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③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속년수가 5년 이하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등을 말한다(「소득세법」 제30조 제4항).

퇴직소득 공제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앞의 개요에서 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소득세법」 '별표 제6'에서는 근속년수에 따른 공제액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근속기간의 통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퇴직소득 계산상의 공제액 계산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30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① 그 해 퇴직수당 등의 지급액 계산이 전년 이전에 지급된 퇴직수당과 관련된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다음 산식으로 구한 공제액으로 한다.

[전년 이전에 지불된 퇴직수당 등과 관련된 근속년수를 통산한 근속년수로 계산한 퇴직소득 공제액] - [전년 이전에 지불된 퇴직수당 등과 관련된 근속년수로 계산한 퇴직소득 공제액]

② 그 해 전년 이전 4년[386] 내에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던 경우로 그 퇴직수당과 관련된 근속년수와 그 해 퇴직수당과 관련된 근속년수에 중복하는 기간 있는 경우는 다음과 산식으로 구한 공제액으로 한다.

[그 해 퇴직수당 등과 관련된 근속년수로 계산한 퇴직소득 공제액] - [중복기간을 근속년수로 간주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공제액]

한편 장애로 인한 퇴직에는 퇴직소득의 할증공제가 있게 된다. 즉, 장애인으로 된 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퇴직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위의 계산식에 100만엔을 가산한 금액(최저공제액 180만엔)이 퇴직소득 공제액이 된다.[387]

386) 그 해에 확정각출연금과 관련된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14년 이내.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p. 160~161.
387)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61.

마. 퇴직년수의 계산

퇴직소득자의 근속년수는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가 퇴직수당 등을 지불하는 곳에서 근무를 계속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또한 간주퇴직수당 근속년수는 간주퇴직수당 지급액 계산의 근거가 된 조합원이었던 기간의 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속연수의 계산상의 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시는 이를 절상하여 1년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바.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

퇴직소득 수입금액의 수입을 얻은 시기는 다음에 따른다(「소득세 기본통달」 36-10).

①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
② 회사 임원 등의 퇴직수당으로 정관 등에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결의가 있었던 날[388]
③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소급되어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에 있어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급일,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개정 효력이 발생한 날
④ 퇴직수당 등으로 간주되는 일시금은 그 지급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의한 급부 사유가 발생한 날
⑤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임원이었던 근속기간과 관련된 것은 주주총회 등의 기관이 결의한 날, 사용인이었던 근속기간과 관련된 것은 지급 원인에 대응한 일정의 날
⑥ 연금 대신에 일시금이 지불되는 것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한편 하나의 근무처를 퇴직함에 따라 둘 이상의 퇴직수당 등을 지불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먼저 지불받아야 하는 것의 수입(收入)일에 따른다.

388) 그 결의가 퇴직수당 등의 지급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날. 藤崎直樹・坂井裕幸 編著(2018), 『税法便覧』, p. 155.

8. 산림소득

가. 개요: 산림소득의 정의와 범위

일본에서는 산림소득도 「소득세법」상의 소득분류의 하나로 하여 다루고 있다. 산림소득이란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단, 산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된다(「소득세법」 제32조).

산림의 벌채로 인한 소득이라 함은 벌채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산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 함은 벌채를 하지 않고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토지와 함께 입목(立木)을 양도한 경우는 토지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부분은 산림소득이 아니다(「소득세 기본통달」 32-1, 32-2).

분수조림(分收造林) 계약 또는 분수육림(分收育林) 계약에 의해 그 조림 또는 육림에 관련되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나누어 갖는(분수(分收)하는) 경우[389]에도 산림소득이 된다.[390] 분수림(分收林)이라 함은 임야의 소유자, 조림・육림자, 비용부담자의 3자 간에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눌 것을 정한 임야를 말한다.[391]

분수(分收)조림 계약 또는 분수(分收)육림 계약상의 권리를 조림비부담자 또는 육림비부담자 이외의 자가 양도(권리 취득 후 5년 이내의 양도는 제외)한 경우의 소득도 산림소득이 된다. 이때 증여(법인에 대한 것에 한함), 상속(한정승인과 관련된 것에 한함), 유증[392]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의 대가 금액에 의한 양도(법인에 대한 것에 한함)는 그 당시의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일시소득과 마찬가지로 산림소득도 별도의 범주로 운용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폐지하고 사업소득의 한 경우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393] 그렇다면 일본에서 산림소득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 산림소득의 정의 및 범위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산림소득은 산림의 벌채

389) 그 계약과 관련되는 권리 취득 후 5년 이내에 분수(分收)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90) 분수(分收)조림계약이란 일정토지의 조림에 관하여 조림지소유자, 조림자 및 조림비부담자라는 세 관계자 또는 이들 중 어느 두 관계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분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 분수(分收)육림계약이란 일정 토지에 심어져 있는(植栽된) 수림을 대상으로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는 약정을 말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56.

391) 新村出 編(2008), 『広辞苑』(第六版).

392) 법인에 대한 것 및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련한 것에 한한다. 藤崎直樹・坂井裕幸 編著(2018), 『税法便覧』, p. 150.

393) 이 문장은 감수자의 논평을 참조하여 적은 것이며, 그 논평을 고려하여 일본에서 산림소득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에 관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를 위한 노동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의 성격과 벌채한 입목을 양도하여 얻게 되는 자산성 소득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산림소득의 성격은 다른 일반 사업소득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소득은 다른 일반의 사업소득과 달리, 산림을 생육하여 벌채한다는 사업으로서의 특성으로부터 그 소득을 얻게 되는 데 '매우 긴기간'을 요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산림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부과에 있어 일정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산림소득을 별도의 소득 범주로 하여 분류하고 있다.

산림소득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즉, 산림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액). 필요경비에는 해당 산림의 식림비용,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 기타 해당 산림의 육성 또는 양도비용 등이 포함된다.

나. 산림소득의 계산

위의 개요에서 산림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 산식(算式)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해당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양도 비용]-특별공제액

위의 산식에서의 산림소득의 특별공제액은, ① 필요경비 공제 후의 잔액이 50만엔 미만인 경우는 그 잔액으로 하며, ② 필요경비 공제 후의 잔액이 50만엔 이상인 경우는 50만엔으로 한다. 즉 산림소득의 특별공제액의 상한은 50만엔이다.

이때 195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따른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공제하는 해당 산림 식림비(植林費) 등의 필요경비금액은 그 이전의 것은 감안되지 않는다. 즉, 195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의 산림소득 필요경비금액은 그 산림에 대하여 1953년 1월 1일에 있어서의 상속세 평가액 및 그 산림을 같은 날 이후에 지출한 관리비, 벌채비 기타 그 산림 육성 또는 양도에 들어간 비용의 합계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위에서 말하는 상속세 평가액이라 함은 1953년 1월 1일에 있어서의 산림의 수종(樹種)별 및 식령(植齡)별 표준적인 평가액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게 산출한 금액에 그 산림에 대한 토질[地味], 지역, 기타 사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부분을 가미한 금액이 상속세

평가액이 된다. 그 표준적인 평가액 및 그에 가미해야 하는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날(同日)에 있어 산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국세청장관이 공표한 방법에 따른다.[394]

간벌(間伐)에 따라 양도한 산림의 필요경비에는 해당 산림 벌채 및 양도에 들어간 비용 외에 그 산림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및 육성비가 포함된다(「소득세 기본통달」 37-32).

한편, 재해, 도난, 횡령으로 인해 산림에 손실이 발생한 때는 그 손실액(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부분 제외)은 그 손실이 발생한 해의 산림소득(사업소득) 계산상의 필요경비가 된다(「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다. 산림소득 계산의 특례

1) 개산경비공제 방법에 의한 산림소득의 계산

당해 연도 15년 전의 해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산림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으로부터 벌채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 비율(50%)을 곱하여, 수입금액으로부터 차감한 식림비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이른바 '개산(概算)경비공제'라고 하는 간단한 계산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이 개산경비공제는 확정신고서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산경비공제 방법에 따른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소득의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벌채비, 운반비 등의 양도비용)}×50%
+ (벌채비, 운반비 등의 양도비용) + (재해사업용자산의 손실 금액)]
- 특별공제액

2) 산림소득과 관련된 삼림계획 특별공제

① 본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인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년(各年)에 소유하는 산림에 대하여 삼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장(市町村長: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삼림경영계획에 기초

394)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p. 156~157.

하여 해당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벌채하거나 양도[395]하게 되면 삼림계획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단, 삼림경영계획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소급하여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조세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법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 또는 한정승인과 관련된 상속이나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의 경우의 간주산림소득(「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및 삼림보건시설을 정리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양도한 경우의 산림소득은 이 삼림계획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396]

② 삼림계획 특별공제액

'삼림계획 특별공제액'은 삼림 시업(施業) 계획에 기초하여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 및 ⓑ로 계산한 금액 중 낮은 쪽의 금액에 따른다. 또한 앞서 기술한 개산경비를 공제 방법에 따라 산림소득의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의 금액으로 하고 있다.

ⓐ (수입금액-벌채비 등)×20%[397]

ⓑ (수입금액-벌채비 등)×50% - (벌채비 등 이외의 경비)

3) 기타 삼림소득 과세의 특례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산림의 수용(收用), 매입 또는 교환이 있는 경우, 산림을 처분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입목을 기부한 경우 또는 상속세의 물납으로 사용한 경우 등은 산림소득 계산 및 과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례와 마찬가지의 특례가 적용된다.[398]

양도소득의 계산의 특례로는 ① 토지, 건물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특례, ② 국외전출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③ 증여 등으로 비거주자에게 자산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④ 외국전출 시의 규정 적용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 등의 특례 등을 들 수 있다.[399] 양도소득에 관한 논의는 제3권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395) 교환, 출자 및 수용(收用) 등에 의한 양도는 제외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 157.
396)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 157.
397) 수입금액이 2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적용한다.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 157.
398)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p. 157~158.
399)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p. 143~147.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소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소득공제의 종류

가. 과세최저한

일본 소득세제 설명의 모두(冒頭)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발생 형태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 각각의 수입 또는 경제적 이익에서 필요경비나 각종 소득공제 등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 시에는 각종 공제로 인해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과세최저한(면세점)이라고 한다.

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기초공제 등의 소득공제 수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본의 소득공제 종류별 설명에 앞서 소득세 과세최저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소득세 설명에서는 면세점이라는 용어보다는 '과세최저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400] 과세최저한은 가계 구성이나 처한 입장(부양가족이 있는지 또는 장애인이 있는지 등)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고정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소득세의 과세최저한에 관한 개략적인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급여생활자의 독신세대, 부부세대, 그리고 '부부와 자녀 2명'의 세대를 예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1〉에서는 급여소득자를 예로 하여 일본의 소득세 과세최저한을 독신세대, 부부세대, 부부와 자녀 2명의 경우로 나누어 보이고 있다.

400) 본문에서 면세점(免稅點)과 '과세최저한'이라는 용어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소득세 면세점에 대응하는 것이 과세최저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보고서에서는 다른 주요국들과의 체계를 감안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논의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본문에서 면세점이라는 말을 병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면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면세라고 하면 '면세 상점'에서와 같이 물건 구입 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면세가 있다. 또한 일본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서 한국의 수출 품목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수출 면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Ⅲ-1〉 소득세 과세최저한의 내역(급여소득자의 경우)

(단위: 천엔)

구 분		독신	부부	부부+자녀 2명
면세점		1,211	1,688	2,854
내역	급여소득공제	650	650	965
	기초공제	380	380	380
	배우자공제	-	380	380
	부양공제	-	-	-
	특정부양공제	-	-	630
	사회보험료공제	182	253	428

주: 1. 부부+자녀 2명의 경우는 16세 미만의 자녀 1명과 특정부양친족 1명이 있다고 상정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일정의 사회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87.

〈표 Ⅲ-1〉에서 보듯이 세대구성이나 가족구성에 따라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수준에 따라 과세최저한의 금액이 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컨대, 독신 급여소득자는 121만 1천엔이 과세최저한인 데 비하여, 부부와 자녀2명으로 구성된 급여소득자 세대는 285만 4천엔(약 3천만원)이 과세최저한이다. 이처럼 세대구성에 따라 최저과세한의 금액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과세최저한이 상당 정도 하향조정되어 왔다. 과세최저한 금액의 하향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급여소득공제의 하향조정, 일정 기간에 걸친 배우자특별공제의 폐지, 사회보험료 공제의 햐향조정이다. 예컨대 '부부+자녀 2명' 급여소득자 세대(자녀 중 1명은 특정부양가족이라 상정)를 대상으로 2008년[401]과 2018년을 비교하여 보면 2008년의 급여소득공제는 115만 5천엔인 데 비해 현행은 96만 5천엔으로 10년 동안에 그 공제액이 19만엔이나 줄어들었다(〈표 Ⅲ-1〉 참조).

한편 〈표 Ⅲ-1〉에서는 2018년 사회보험료공제 금액이 42만 8천엔으로 되어 있으나, 10년 전인 2008년에는 32만 5천엔으로 10년 사이에 10만 3천엔이나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로 최근 들어 일본에서 사회보장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득세액 계산 시 사회보장 부담의 공제가 이루어진다. 2008년 과세최저한 수준은 '부부 + 자녀 2명'세대(특정부양가족 1명이 있는 세대의 경우)로 하였을 때 325만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하면 〈표 Ⅲ-1〉에서 보듯이 2018년의 과세최저한은 285만 4천엔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최저한이

401) 2008년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국중호(2009)를 참조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39만 6천엔이나 줄어들었다는 것, 달리 말해 최근 소득세 면세점이 크게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402]

최근 과세최저한의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급여소득공제의 하향조정이 가장 큰 요인이다. 국중호(2009)에 따르면 2002년 '부부 + 자녀 2명' 급여소득자 세대(특정부양가족 1명의 세대)의 급여소득공제는 130만 8천엔에 달하였다. 이 수치와 〈표 Ⅲ-1〉에 있는 '부부 + 자녀 2명'세대의 급여소득공제 96만 5천엔을 비교하면,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급여소득자 세대의 공제액 인하(달리 말해 과세 강화)가 크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일본 소득공제의 종류 및 네 가지 범주에 따른 분류

1) 일본 소득공제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소득세법」에서도 소득세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 납세자가 처한 사정을 감안하여 총소득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총소득금액은 제1절에서 언급한 10가지의 소득 종류 중 산림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 별개의 단위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8가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금액이 되는데 총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양도소득과 일시소득은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① 잡손공제, ② 의료비공제, ③ 사회보험료공제, ④ 소규모기업공제 부금공제, ⑤ 생명보험료공제, ⑥ 지진보험료공제, ⑦ 기부금공제, ⑧ 장애자공제, ⑨ 과부(寡婦) 또는 홀아비(寡夫)공제, ⑩ 근로학생공제, ⑪ 배우자공제, ⑫ 배우자특별공제, ⑬ 부양공제, ⑭ 기초공제의 14가지 공제가 있다. 위에서 ①부터 ⑭까지의 번호는 坂井・川上(2019)[403]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공제의 순서일 뿐 큰 의미는 없다.

일본에서는 이들 소득공제를 크게 인적공제, 잡손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등의 기타공제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404] 이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급여생활자가 이들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02) 川上尙貴 編著(2008),『圖說日本の稅制』, p. 73.
403)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稅法便覽』, pp. 174~186에서는 이들 공제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404) 예컨대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에서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稅法便覽』의 자료와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일본 소득공제 제도의 네 가지 범주에 따른 분류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공제의 분류를 (1) 가족관련 공제, (2) 보험관련 공제, (3) 교육관련 공제, (4) 기타 공제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14가지의 소득공제 종류를 이들 4가지로 범주화하기에는 어려운(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⑩ 근로학생공제를 가족 관련 공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육관련 공제로 볼 것인가는 애매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에 근로학생이 있다고 하면 가족관련 공제가 되겠지만 근로'학생'을 대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교육관련 공제로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득공제 종류의 분류를 위와 같은 4가지 범주에 명확하게 분류하여 포함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하에서는 가급적 각각의 범주에 가까운 것들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우선 (1) 가족관련 공제에는 ⑭ 기초공제, ⑪ 배우자공제, ⑫ 배우자특별공제, ⑬ 부양공제, ⑧ 장애자공제, ⑨ 과부(寡婦) 또는 홀아비(寡夫)공제를 포함시키고, (2) 보험관련 공제에는 ④ 소규모기업 공제부금 공제, ③ 사회보험료공제, ⑤ 생명보험료공제, ⑥ 지진보험료공제, ② 의료비공제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또한 (3) 교육관련 공제에는 ⑩ 근로학생공제를 포함시키고, (4) 기타 공제에는 ① 잡손공제, ⑦ 기부금공제를 포함시키기로 한다.[405] 근로학생 공제를 교육관련 공제에 포함시킨 이유는 근로학생의 정의가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가족관련 공제

가. 가족관련 공제와 인적공제 제도

일본에서는 '가족관련 소득공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의 가족관련 소득공제 제도는 일본에서 흔히 논의되는 '인적공제'제도와 관련이 깊다.[406] 그렇다고 가족관련 공제제도가 인적공제제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인적공제제도가 실시

405) 앞에서 보인 일본의 소득공제가 4가지 범주 중 어디에 포함되었는지를 추적하기 쉽도록 원(圓) 안의 수치를 그대로 두었다. 아래 본문의 4가지 범주에 열거한 순서에 따라 고찰하고 있다.

406)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공제의 분류를 (1) 가족관련 공제, (2) 보험관련 공제, (3) 교육관련 공제, (4) 기타 공제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공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본에서의 인적공제가 가족관련 공제와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인적공제'제도를 가족관련 공제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후반의 제3항에서 일본의 인적공제 제도를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되고 있다. 인적공제제도는 크게 나누어, 기초 · 배우자 · 부양공제 등의 이른바 기초적인 공제 성격을 갖는 공제제도와 장애자 · 노인공제 등 보통사람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생활비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공제제도라는 두 그룹이 있다.

나. 기초공제

일본에서 기초공제는 기본적인 인적공제의 하나로 분류된다. 기초공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기초공제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제도라고 하는 점이다. 기초공제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38만엔이 소득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86조).

2020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준이 변경되고 있다.[407] 그 내용을 보면 각각의 거주자에 대하여 그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이 다음에 들고 있는 소득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고 있다.

① 합계소득금액이 2,400만엔 이하인 경우: 48만엔
② 합계소득금액이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인 경우: 32만엔
③ 합계소득금액이 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인 경우: 16만엔

위의 기초공제의 변경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공제 수준을 낮추는(달리 말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위에서 말한 합계소득금액이라 함은 순손실의 이월공제 및 잡손실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경우의 총소득금액, 상장주식 관련 배당소득금액, 토지 관련 사업소득금액, 장기 양도소득금액, 단기 양도소득금액, 일반주식 관련 양도소득금액, 상장주식 관련 양도소득금액, 선물(先物)거래 관련 잡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0호, 제31호).

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합계 38만엔 이하인 경우에 납세자의 소득금액으로부터 최대 38만엔을 공제하는 제도이다.[408]

407) 坂井裕幸 · 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85.
408)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税制』, p. 92.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공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공제액이 적용이 적용되고 있다.[409] 즉,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다음에 들고 있는 소득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배우자공제로서 합계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고 있다(「소득세법」 제83조).

①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 이하인 경우: 38만엔
(노인공제대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48만엔)
②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인 경우: 26만엔
(노인공제대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32만엔)
③ 합계소득금액이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인 경우: 13만엔
(노인공제대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16만엔)

일본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동일생계 배우자라 하는데 이는 동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배우자[410] 중 합계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인 자[411]를 말한다. 공제대상 배우자라 함은 동일생계 배우자 중 합계소득금액이 1천만엔 이하의 거주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한 노인공제대상 배우자라 함은 공제대상 배우자 중 연령 70세 이상인 자를 한다.

공제대상 배우자의 유무, 부양친족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연도 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때)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연도 도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 연도 도중에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중 어느 쪽 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그러나 사실혼 관계[412]에 있는 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배우자특별공제

납세자와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서로 밀접하게 연동하도록 설계된 것이 배우자특별공제 제도이다. 배우자특별공제는 납세자(연간소득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합계가 3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급여수입으로는 103만엔 초과 201만엔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액을 납세자

409)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84.
410) 청색사업 전업종사자 또는 사업 전업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11) 2020년분 이후의 소득세부터는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의 자를 동일생계 배우자로 하고 있다.
412) 한국에서는 '내연관계'라는 말은 공식적인 서면에서는 잘 쓰지 않고 사실혼 관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그대로 '내연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제도이다.[413]

배우자 특별공제도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공제액이 적용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특별공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414] 즉, 거주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합계소득금액이 123만엔 이하인 자에 한함)로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그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다음에 들고 있는 소득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배우자특별공제로서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고 있다(「소득세법」 제83조의 2). 단, 거주자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나 그 배우자가 청색사업 전업종사자 또는 사업 전업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는 배우자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 이하인 경우: 그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소득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해진 금액

a) 85만엔 이하인 경우: 38만엔

b) 8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인 경우:

[38만엔-(합계소득금액-83만 1엔)]

c) 120만엔 초과인 경우: 3만엔

②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인 경우:

①에서 정한 금액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415]

③ 합계소득금액이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인 경우: 13만엔

①에서 정한 금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416]

2020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배우자는 합계소득금액이 133만엔 이하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3조의 2). 그렇게 되면 위 ① 규정에서의 a)~c)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소득세법」 제83조의 2의 제1항).

a) 95만엔 이하인 경우: 38만엔

b) 95만엔 초과 130만엔 이하인 경우:

[38만엔-(합계소득금액-93만 1엔)]

c) 130만엔 초과인 경우: 3만엔

즉, 각각의 구분 기준 금액이 10만엔씩 증가하게 된다.

413)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94.
414)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稅法便覽』, pp. 184~185.
415) 1만엔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경우는 이를 절상한 금액.
416) 1만엔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경우는 이를 절상한 금액.

위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배우자특별공제는 소득액에 따라 체감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일반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구조라 평가할 수 있다.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에서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900만엔 초과인 경우에 공제액이 감소하여 1,000만엔 초과의 경우는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배우자의 급여수입이 150만엔 이하이면 38만엔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 배우자 관련 공제제도의 변천

1987년 9월의 세법 개정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의 연간소득이 일정액(38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배우자특별공제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대 전체의 세후(税後) 수령액이 오히려 감소해버리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경위가 있다.[417]

일본에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는 2018년분 이후의 소득세부터 납세자 본인의 소득제한에 따라 그 공제액이 여러 단계로 변동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납세자 본인의 급여수입이 1,120만엔(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부터 점차 체감하기 시작하여 1,220만엔(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이 되면 배우자특별공제가 없어지는(소실(消失)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이 있기 전의 배우자특별공제는 납세자 본인의 급여 수입이 1,220만엔(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의 경우)에서 소실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급여수입 1,120만엔(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부터 1,220만엔(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까지의 구간에서 점차 체감(逓減)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들 소득구간에서 배우자특별공제가 체감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체감에 대응하여 소득세액이 체증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2018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하는 배우자관련 공제 제도는 크게 복잡해졌다. 다시 말하면 2018년분 이후부터 적용하는 본인의 급여소득(이하 괄호 안은 합계소득금액)이 1,120만엔(900만엔) 초과 1,220만엔(1,000만엔) 이하의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이 체감하며 소득수준이 높아져 갈수록 소실하게 되는 구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급여수준과 배우자공제액과의 조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18] 즉 납세자 본인의 급여수입(합계소득금액)이 1,120만엔(900만엔) 이하인 경우의 '공제액'을

417) 이른바 '시간제근로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7년 9월의 세제개정에서 창설된 것이 배우자특별공제 제도였다. 川上尙貴 編著(2008),『圖說日本の稅制』, p. 78.
418)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95.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 본인의 급여수입(합계소득금액)이 ① 1,120만~1,170만엔(900만~950만엔)인 경우는 그 공제액의 2/3로, ② 1,170만~1,220만엔(950만~1,000만엔)의 경우에는 그 공제액의 1/3로 하고, ③ 1,220만엔(1,000만엔)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어지는(소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바. 부양공제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금액이 소득금액으로부터 부양공제로서 공제되고 있다(「소득세법」 제84조).

① 일반의 공제대상 부양친족(특정부양친족 또는 노인부양친족 이외의 부양친족으로 16세 이상의 자): 1인당 38만엔

② 공제대상 부양친족 가운데 특정부양친족(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자: 1인당 63만엔

③ 공제대상 부양친족 가운데 노인부양친족(7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 1인당 48만엔

노인부양친족이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또한 이들 중 어느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의 부양공제액은 48만엔(노인부양공제액)에 10만엔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16 제1항). 부양공제 대상의 친족이라 함은 6촌 내의 혈족 및 3촌 내의 인척을 말한다. 한편,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부양친족을 나눌 수가 있다.[419]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 함은 일상생활의 자산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기거(起居)를 함께함을 요하지 않는다.

이상으로부터 부양공제에는 특정부양공제(16세 이상 23세 미만이 대상), 노인부양공제(70세 이상이 대상) 등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가산 및 할증공제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장애자공제

보통사람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생활비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인적공제제도의 하나로 장애자공제를 들 수 있다. 거주자 또는 그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친족이 장애자에

419) 여기서 부양친족이라 함은 거주자의 친족(거주자의 배우자를 제외) 및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법 제6조의 4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양부모에 위탁된 아동 및 「노인복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같은 호(號)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양호수탁자의 위탁된 노인으로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가운데 합계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2020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48만엔 이하)인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34~34의 4).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으로부터 장애자공제로서 다음 금액이 공제된다(「소득세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① 일반장애자인 경우: 1인당 27만엔

② 특별장애자인 경우: 1인당 40만엔

장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해 12월 31일 시점에서 판정한다(과부, 홀아비, 근로학생의 판정도 이와 같다).[420]

거주자의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특별장애자로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배우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어느 쪽과의 동거를 상시적 상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부터 장애자공제로서 75만엔이 공제된다(「소득세법」 제79조 제3항)

아. 과부(寡婦) 또는 홀아비(寡夫) 공제

거주자가 과부 또는 홀아비인 때는 소득금액으로부터 과부(寡婦) 또는 홀아비(寡夫)공제로서 27만엔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81조).

여기서 과부(寡婦)라 함은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①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인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남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중 그 어느 것에 해당하고 부양친족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 다른 사람의 부양친족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합계소득금액이 기초공제 상당액 이하인 자

② 남편과 사별한 후 결혼하고 있지 않은 자나 남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자

또한 홀아비(寡夫)라 함은 부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인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부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중 그 어느 것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 다른 사람의 부양친족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합계소득금액이 기초공제 상당액 이하인 자 가운데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

남편과 사별하거나 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을 하고 있지 않은 자 중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로 부양친족인 자녀를 두고 있는 자의 과부(寡婦)(또는 홀아비(寡夫))공제에 대하여는 27만엔에 8만엔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17 제1항).

420)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p. 181~182.

3. 일본의 인적공제 제도 요약

본 보고서에서 분류하는 가족관련 공제, 보험관련 공제, 교육관련 공제 대부분은 일본에서 인적공제로 하여 분류하고 있는 공제제도이다. 인적공제에 속하는 부류로는 앞에서 설명한 앞에서 설명한 장애자공제, 노인공제, 과부(寡婦)·홀아비(寡夫) 공제 및 후술하는 (5. 교육관련 공제)근로학생공제가 있다.

장애자공제나 노인공제는 기본적으로는 납세자 본인이 장애자나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특별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장애자공제가 인정된다. 과부(寡婦)·홀아비(寡夫) 공제(일본에서는 寡婦(夫) 공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및 근로학생공제는 소득요건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된다. 또 과부·홀아비(寡婦(夫)) 공제에서는 특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공제액이 할증 또는 가산되는 케이스도 있다.

2011년분부터 당시의 어린이수당 창설(2012년 4월부터 이름을 아동수당으로 바꾸었다)과 때를 같이하여 연소(16세 미만)부양친족에 대한 부양공제(38만엔)가 폐지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무료[無償]화와 함께 16~18세까지의 특정부양친족에 대한 부양공제의 추가분(25만엔)도 폐지되었다.

2018년부터는 배우자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업조정에 대한 왜곡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특별공제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표 Ⅲ-2〉에서는 일본 인적공제제도의 창설년도 및 대상자를 요약하여 보이고 있으며, 〈표 Ⅲ-3〉에서는 인적공제제도별 공제액을 정리하고 있다.

〈표 Ⅲ-2〉 인적공제 창설년도(소득세)와 대상자

		창설	대상자
기초적인적공제	**기초공제**	1947	본인
	배우자공제	1961	생계를 같이하고 또 합계 소득금액이 38[48][1]만엔 이하인 배우자(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자
	일반공제대상 배우자	1961	연령이 70세 미만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자
	노인공제대상 배우자	1977	연령이 70세 이상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배우자특별공제	1987	생계를 같이하고 합계 소득금액이 38[48]만엔을 초과하고 123[133]만엔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자
	부양공제	1950	생계를 같이하고 합계 소득금액이 38[48]만엔 이하인 친족 등(부양친족)이 있는 자

〈표 Ⅲ-2〉의 계속

		창설	대상자
	일반부양친족	1950	연령이 16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23세 이상 70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자
	특정부양친족	1989	연령이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자
	노인부양친족	1972	연령이 70세 이상의 부양친족이 있는 자
	(동거노친 등 가산)	1979	직계존속인 노인부양친족과 동거하는 자
특별인적공제	**장애자공제**	1950	장애인인 자 장애자인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자
	특별장애자공제	1968	특별장애인인 자 특별장애자인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자
	(동거특별장애자공제)	1982	특별장애자인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과 동거하는 자
	과부(寡婦)공제	1951	① 남편과 사별한 자 ②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자로, 부양친족이 있는 자
	특별과부(寡婦)가산	1989	과부로, 부양친족인 자녀가 있는 자
	과부(寡夫)공제	1981	처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자로 부양친족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학생공제[2]	1951	본인이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학교의 학생인 자

주: 1) 위 표에서 [ ] 안의 수치는 2018년도 개정으로 2020년 이후의 소득세(2021년도분 이후의 주민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2) 근로학생 공제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교육관련 공제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93을 참고로 필자 작성.

〈표 Ⅲ-3〉 인적공제 공제액과 납세자 본인의 소득요건

		공제액		본인의 소득요건
		소득세	주민세	
기초적인적공제	**기초공제**	38만엔 [최고 48만엔][1]	33만엔 [최고 43만엔]	[합계 소득금액이 2,500만엔 이하 (2,400만엔 초과부터 공제액이 체감(遞減))]
	배우자공제			
	일반공제대상배우자	최고 38만엔	최고 33만엔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부터 공제액이 체감(遞減))
	노인공제대상배우자	최고 48만엔	최고 38만엔	
	배우자특별공제	최고 38만엔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부터 공제액이 체감(遞減))
	부양공제			
	일반부양친족	38만엔	33만엔	-
	특정부양친족	63만엔	45만엔	-
	노인부양친족	48만엔	38만엔	-
	(동거노친 등 가산)	+10만엔	+7만엔	-

〈표 Ⅲ-3〉의 계속

		공제액		본인의 소득요건
		소득세	주민세	
특별인적공제	**장애자공제**	27만엔	26만엔	-
	특별장애자공제	40만엔	30만엔	-
	(동거특별장애자공제)	75만엔	53만엔	-
	과부(寡婦)공제	27만엔	26만엔	남편과 사별한 경우 합계 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특별과부(寡婦)가산	+8만엔	+4만엔	합계 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과부(寡夫)공제	27만엔	26만엔	합계 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근로학생공제	27만엔	26만엔	합계 소득금액이 65[75]만엔 이하이면서 급여소득 등 이외가 10만엔 이하

주: 1) [ ] 안은 2018년도 개정으로 2020년 이후의 소득세(2021년도분 이후의 주민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93을 참고로 필자 작성.

4. 보험관련 공제

가. 개요

일본에서는 후생연금보험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경우(급여에서 공제된 부분도 포함된다)로부터 그 전액이 사회보험료로서 공제된다. 사회보험료 공제 이외에도 생명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부금(賦金)공제가 있다. 이들은 월급생활자의 연말조정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1종 소규모기업공제 계약에 기초한 부금(賦金)이나 확정갹출연금의 개인형 연금가입자의 부금도 그 전액이 소규모기업공제 부금공제로서 공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보험 관련 공제 외에 의료비공제도 여기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나. 사회보험료 공제

거주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을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또는 급료로부터 차감되는 다음의 사회보험료 합계액은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소득세법」 제7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4,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7 제2항).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세), 개호(노인장기요양)보험료,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고령자)의료제도 관련 보험료, 노동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부금(掛金), 농업자연금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존속(存續)후생연금기금 부금, 선원보험료,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부금, 지방공무원공제조합 부금,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부금, 하사금(恩給: 보훈금),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부칙의 규정에 의한 부금, 지방공무원단체직원의 상조회에 대한 직원부담금, 노동재해보험의 특별가입자가 부담하는 노동재해보험료, 전국건강보험협회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부가적(附加的) 급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부금.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금액 가운데 사업주가 법정 또는 인가(認可)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용자의 급여소득에 산입되는 것은 공제 대상이 되며 그 이외의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421] 한편 급여소득자가 직접 지불한 사회보험료는 연말조정 전에 '보험료공제신고서'를 급여지불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생명보험료 공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구(舊)생명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생명보험료 공제의 경우 일반생명보험료 공제와 개인연금보험료 공제가 주된 두 가지 공제가 된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체결한 신(新)생명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 공제는 이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신(新)생명보험료와 구(舊)생명보험료를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신생명보험료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422]

생명보험료 공제한도액은 최고 4만엔이며, 그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423] 거주자가 생명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4, 5).

a) 20,000엔 이하: 지불보험료 전액

b) 20,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20,000엔 + (지불보험료 - 20,000엔)÷2

c) 40,000엔 초과 80,000엔 이하:

30,000엔 + (지불보험료 - 40,000엔)÷4

d) 80,000엔 초과: 40,000엔

421)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 176.
422)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p. 177~178.
423)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税制』, p. 98.

거주자가 개호(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위의 생명보험료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지불보험료의 금액 구분에 따라 각각의 정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소득세법」 제7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6, 7).

① 20,000엔 이하: 지불보험료 전액
② 20,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20,000엔 + (지불보험료 - 20,000엔)÷2
③ 40,000엔 초과 80,000엔 이하:
30,000엔 + (지불보험료 - 40,000엔)÷4
④ 80,000엔 초과: 40,000엔

위의 생명보험료 및 개호(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공제합계액이 12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만엔을 한도로 한다(「소득세법」 제76조 제4항).

생명보험료 공제에는 일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된 공제와 개인연금보험 계약에 관련된 공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제가 있다. 일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된 공제제도는 보험금 등의 수취인을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친족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나 생명공제계약 등에 대해 지불한 보험료 중 일정액(4만엔 한도)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또 개인연금보험 계약과 관련된 공제는 개인연금보험 계약 가운데 연금 수취인 및 보험료 지불 기간 등에 대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 보험료의 일정액(4만엔 한도)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라. 지진보험료 공제

지진보험료공제는 지진 피해에 따른 손실 대비와 관련한 자조노력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이전의 손해보험료공제를 개편하여 2006년도 세제개정에서 창설된 것이다.[424] 지진보험은 거주자의 거주용 가옥, 생활용 동산(動産)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나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등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손해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지진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그 지불보험료 전액(5만엔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 지진보험료 공제 제도이다. 지진보험료 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진보험은 거주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거주용으로

424)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98.

사용하는 가옥 및 이들의 생활에 통상 필요한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진보험료 공제는 지진보험 대상물이 지진 등을 직접 또는 간접 원인으로 하는 화재 등에 의한 손해('지진 손해'라 한다)를 입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즉, 지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하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불되는 손해보험 계약을 위해 지불한 지진 손해 부분의 보험료나 부금('지진 보험료'라 한다)이 있을 때 그 지진 보험료 합계액(최고 5만엔)을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7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또한 거주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일정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나 공제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장기손해보험공제액(최고 1만5천엔)이 2017년 이후 그 해 분의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425] 위에서 언급한 지진보험료 공제와 합하여 최고 5만엔을 한도로 한다(2016년 개정 부칙 제10조).

마. 소규모기업 공제(共濟)부금 공제

거주자가 소규모기업 공제(共濟)부금을 지불한 경우 그 지불 금액이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는 제도가 소규모기업 공제부금 공제이다(「소득세법」 제75조). 소규모기업 공제부금이라 함은 다음 부금을 말할다.[426]

① 「소규모기업 공제부금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 계약에 근거한 부금
② 「확정갹출연금법」 제3조 제3항 제7호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형 연금가입자 부금 또는 동법 제55조 제2항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연금가입자 부금
③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따라 심신장애자를 부양하는 자를 가입자로 하고 그 가입자의 사망, 폐질 등이 있던 경우에 종신 임금을 급부할 목적으로 그 가입자가 지방공공단체에 납부하는 부금

바.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 자체를 보험관련 공제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의료비 지출 자체가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출이 다액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의료비 지출에 있어 일정 금액(연간 소득금액의 5%와 10만엔 중

425)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覽』, pp. 178~179.
426)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覽』, pp. 176~177.

낮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한도(200만엔 한도 내에서)를 공제하여 주고 있다. 이 점에서 의료비공제도 보험관련 공제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여기서는 의료비공제를 보험관련 공제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비공제에 관하여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거주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을 위하여 다액의 의료비를 지불한 때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공제액이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의료비공제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과 관련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한 진료나 치료비 등의 의료비 지출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의 5%와 10만엔 중 낮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200만엔 한도 내에서)을 공제하게 된다. 즉, 의료비공제액은 최고한도액 200만엔 내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427]

의료비공제액 = 지출한 의료비액 - 보험금 등의 보전액 - (① 10만엔과 ② 연간소득금액 ×5% 중 낮은 금액)

이 외에도 적절한 건강관리하에서 의료용의약품으로부터의 대체를 진작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의료비공제의 특례(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를 마련하고 있다.[428] 이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특정 일반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에 그 해 중에 납세자가 일정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 경우는 특정 일반용 의약품 구입비의 합계액(보험금 등으로 보전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에서 1만 2천엔을 차감한 금액의 공제(최대 8만 8천엔)를 통상의 의료비공제에 대신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Ⅲ-4〉에서는 일본의 의료비 공제제도 개요를 보이고 있다.

〈표 Ⅲ-4〉 의료비 공제제도의 개요

공제제도	개 요	공제액의 계산방식
통상의 의료 공제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그 친족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공제	의료비공제액=지출한 의료비액- (① 10만엔과 ② 연간소득금액×5% 중 낮은 금액) *공제 최고 한도액은 200만엔

427)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覧』, pp. 174~177.
428)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税制』, p. 96.

〈표 Ⅲ-4〉의 계속

공제제도	개 요	공제액의 계산방식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의료비 공제의 특례)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특정 일반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에 그 해 중에 납세자가 일정 건강진단을 하고 있을 때의 공제	의료비공제액=(지불한 특정 일반용 의약품 구입비 금액)-12,000엔 *공제 최고 한도액은 88,000엔

주: 위 표에서 밑줄은 최소적용 한도액이다. 즉, 밑줄 친 금액 이상이어야 각 공제가 적용된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97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5. 교육관련 공제: 근로학생 공제

거주자가 근로학생일 때는 근로학생 공제로서 소득금액으로부터 27만엔을 공제한다. 여기서 근로학생이라 함은「학교교육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학생, 생도(生徒)나 아동, 일정과정을 이수하는 전수(專修)학교・각종 학교의 생도, 직업훈련법인이 행하는 인정(認定)직업훈련을 받는 자로, ① 자기 급여소득 등이 있고, ② 합계소득금액이 65만엔 이하로 합계소득금액 중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인 자를 말한다(「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32호). 여기서 급여소득 등이라 함은 자기의 근로에 기초하여 얻은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또는 잡소득을 말한다.

6. 기타공제

가. 개요

일본에서 위에서 언급한 가족관련 공제, 보험관련 공제, 교육관련 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제도로서 잡손공제와 기부금공제를 들 수 있다. 잡손공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잡손실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부금공제는 공익적인 사업에 대하여 개인의 기부를 권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429]

429)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96.

나. 잡손공제

잡손공제는 재해, 도난 또는 횡령으로 인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이 소유하는 주택·가재(家財)도구 등에 대해 피해를 받은 손실액 및 그 재해 등과 관련된 지출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430] 이때 보험금이나 재해배상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된다. 한편,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잡손공제액에 대해서는 이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잡손공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갖는 자산(통상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자산 또는 재해를 입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이 재해, 도난 또는 횡령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잡손공제액이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소득세법」 제7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① 손실금액 중 재해관련 지출액이 없거나 5만엔 이하인 경우:
손실금액 - 합계소득금액×10%

② 손실금액 중 5만엔을 초과하는 재해관련 지출액이 있는 경우:
손실금액 - 다음의 a)와 b)의 금액 중 적은 금액
a) 합계소득금액×10%
b) 손실금액 - 5만엔을 초과하는 재해관련 지출액

③ 손실금액 모두가 재해관련 지출액인 경우:
손실금액 - 다음의 a)와 b)의 금액 중 적은 금액
a) 합계소득금액×10%
b) 5만엔

위에서 재해관련 지출액이라 함은 재해가 있었던 주택·가재(家財) 등을 부수거나 제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위의 산식으로부터 합계소득금액×10%와 5만엔은 잡손공제 적용을 위한 최소적용 한도액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금액 이하이면 잡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손실금액 가운데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전된 것은 제외하게 된다.

재해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납세자는 「재해감면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잡손공제와 소득세 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430)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96.

선택할 수 있다.[431] 잡손공제에 의한 경우는 그 공제 부족액에 대하여 3년간의 이월공제가 인정되며, 「재해감면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는 당해연도분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된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

「재해감면법」의 적용은 주택 · 가재(家財)의 손해에 한정되는데 연소득 규모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게 된다. 연소득 500만엔 이하는 전액 경감, 500만엔 초과 750만엔 이하는 50% 경감, 7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는 25% 경감되고 있다(「재해감면법」 제2조).

〈표 Ⅲ-5〉에서는 일본의 잡손공제 제도 요약을 보이고 있다.

〈표 Ⅲ-5〉 잡손공제 제도의 요약

공제제도	개 요	공제액의 계산방식
잡손공제	주택 · 가재(家財)도구 등의 재해, 도난, 횡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재해관련 지출금이 있는 경우에 공제	잡손공제액은 아래 ①과 ② 중 많은 쪽의 금액이 된다. ① 재해손실액+재해관련 지출금액 - 연간소득금액×10% ② 재해관련 지출금액-5만엔

주: 위 표에서 밑줄은 최소적용 한도액이다. 즉, 밑줄 친 금액 이상이어야 각 공제가 적용된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97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다. 기부금공제

거주자가 교육이나 과학의 진흥, 문화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를 '특정기부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공제가 인정되고 있다.[432] 이처럼 기부금공제는 특정기부금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특정기부금에는 ① 중앙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433] ④ 인정(認定)NPO법인(국세청 장관의 인정을 받은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2001년 10월부터 적용), ⑤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특정의 정치헌금)이 포함된다.

위의 ②에서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모집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지정기부금은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

431) 坂井裕幸 · 川上文吾 編著(2019),『稅法便覽』, p. 174.
432) 坂井裕幸 · 川上文吾 編著(2019),『稅法便覽』, p. 179.
433) 2008년 세제개정에서 따라 공익사단법인과 공익재단법인은 모두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川上尙貴 編著(2008),『圖說日本の稅制』, p. 83.

향상 등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히 충당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서 재무성 장관이 기간 및 모금 총액을 정하여 지정한 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기부금'을 말한다.[434]

위의 ③에 대해 부연하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정의 것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기부금액(총소득금액의 40%가 상한)으로부터 2천엔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부터 공제하고 있다.[435] 공익사단법인과 공익재단법인은 모두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서 취급된다.

또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특정의 정치헌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및 공익사단 기부금 가운데 일정의 것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에 대신하여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액(총소득의 40%가 상한)으로부터 2천엔을 공제한 금액의 40% 상당액으로 되어 있다.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NPO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2001년 10월부터 적용된 것이다. 기부금공제액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다.

기부금공제액
= (① 특정기부금의 합계액과 ② 연간소득금액×40% 중의 낮은 금액) - 2천엔

2008년도 세제개정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기부금공제제도를 적용한 엔젤세제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2008년도 개정에 따라 일정의 특정 신규중소기업자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에 대하여 1,000만엔을 한도로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국중호(2009)). 〈표 Ⅲ-6〉에서는 일본의 기부금공제 제도를 요약하고 있다.

〈표 Ⅲ-6〉 기부금공제 제도의 요약

공제제도	개 요	공제액의 계산방식
기부금 공제	특정기부금을 지불한 경우에 공제	기부금공제액=(① 특정기부금의 합계액과 ② 연간소득금액×40% 중에서 낮은 금액) - 2천엔

주: 1. 위 표에서 밑줄은 최소적용 한도액이다. 즉, 밑줄 친 금액 이상이어야 각 공제가 적용된다.
2. 기부금 공제에 있어 특정기부금에는, ① 중앙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④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2001년 10월부터 적용), ⑤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특정의 정치헌금)이 포함된다.

자료: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97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434) 文化庁文化部宗務課(2016),「指定寄附金制度に係る申請の手引」, p. 1.을 참조.
435) 川上尙貴 編著(2008),『圖說日本の稅制』, p. 96.

7. 세액공제제도

가. 개요

소득세의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소득세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소득 산출 단계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소득공제는 가족 구성 등 납세자의 담세력 감소를 배려하는 것으로 일정액을 소득으로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경감액이 크게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일정액을 세액으로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부담 경감액이 일정하여 재정지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일본「소득세법」에서는 배당공제 및 외국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조세특별조치법」에서 주택자금대출(loan) 관련 소득세액 특별공제, 정치활동 관련 기부를 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 인정(認定)특정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경우의 기부액공제의 특례 또는 소득세액의 특별공제, 공익사단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배당공제 및 외국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주택자금대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배당공제

배당공제는 납세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산출세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배당공제 제도는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의 이중부담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중부담을 조정하는 이유는 법인세가 소득세의 선불(先拂)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당공제제도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436]

배당소득 세액공제는 과세 총소득이 1,000만엔 이하인가 1,000만엔 초과인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우선, 과세 총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 금액의 10%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과세 총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배당소득 금액 중 과세 총소득금액으로부터 1,000만엔을 차감한 금액에 달하기 까지의 금액'(A)에 5%를 곱한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 중 A 이외의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436) 이하는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103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배당공제는 배당소득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공제이며, 〈표 Ⅱ-1〉에서 그 윤곽을 보이고 있는바,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3권(자본이득 과세 및 국제조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437]

다. 외국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는 국내 소득세와 외국 소득세의 이중부담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다. 즉 외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이미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에 대해 다시 국내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간의 이중과세가 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소득세액 가운데 일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외국세액공제제도이다.

일본「소득세법」에서도 외국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해의 소득세액으로부터 외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의 세액으로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95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외국세액공제는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공제이며, 〈표 Ⅱ-1〉에서 안내하고 있듯이 국제조세 관한 설명은 제3권(자본이득 과세 및 국제조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라. 주택자금대출 관련 세액공제

1) 주택정책 세제의 변천개관

주택자금대출(loan)과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는 주택 취득 시 납세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주택 취득 등으로 인한 초기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내집 마련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다. 동 제도는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주택자금 대출)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부터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1986년 자가주택 취득을 촉진할 목적으로 창설된 주택취득 촉진세제가 1999년도 개정으로 주택차입금을 갖는 경우의 특별세액공제 제도로 개편되었다. 1999년도 세제개정에서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주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자금대출 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택차입금의 연말잔액 한도를 1999~2000년의 2년 동안 5,000만엔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437)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覧』, pp. 275~276.에서는 배당세액공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함께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공제기간(예컨대 2004년 거주분은 6년간 등)에 따라 소정의 공제액(예컨대, 2004년 거주분은 1년째~6년째 최고 25만엔으로 하여 합계 150만엔 등)을 적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001년 세제개정에서는 주택자금대출 세액공제제도의 종료를 계기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제도로서 신주택대출감세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 제도는 주택자금대출 연말잔액 한도를 5,000만엔 이하의 부분에 한정하고 공제기간을 10년, 공제율을 1%로 한 것이다.[438] 2004년도 개정에서는 경기상황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2004년분에 대해 2003년과 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장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5년부터 2008년분에 대해 계획적인 자가주택 취득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공제기간 10년간을 유지하면서 중견소득계층의 주택대출 수준을 염두에 둔 감세조치의 중점화가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의 주택자금대출과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는 특정정책 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일련의 개정으로서 ① 지진안전주택에 적합한 중고주택을 일정기준하에서 건축 후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2005년도 세제개정, ② 기존 주택을 장애자나 장애물 제거(barrier free)주택으로 개수(改修)를 촉진시키기 위한 2007년도 장애물 제거(barrier free) 개수촉진세제의 창설, ③ 기존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의 개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2008년도 에너지절약 개수촉진세제의 창설을 들 수 있다.

2) 현행 주택자금대출 세액공제제도

이제 현행 주택자금대출 또는 주택정책 관련 주요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439] 일본의 경우 소득세의 주택자금대출(loan)공제 가능액 가운데 소득세로부터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주민세로부터도 공제되고 있다. 주택차입금 감세제도는 누차의 세제개정을 거치면서 복수의 특례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현행 주된 주택감세 특례로는, 인정(認定)주택(장기우량주택이나 저탄소주택으로 인정된 주택)의 특례, 장애물 제거(Barrier free) 개수(改修)촉진세제, 에너지절약형 개수촉진세제, 3

438) 이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바닥면적이나 소득금액에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확정신고서에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을 기재함과 동시에 주민표나 등기부 등본, 차입금 연말잔액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었다.

439)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pp. 277~287 및 289~293에서는 주택정책 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들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기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언급도 하고 있다(같은 책 pp. 293~294).

세대 동거에 대응한 주택리폼과 관련된 특례, 내구성 향상 개수세제를 들 수 있다. 이들 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여 보자.[440]

가) 인정주택의 특례

주택의 품질 향상 관점에서 장기우량주택이나 저탄소주택으로서 인정받은 주택을 인정(認定)주택이라 한다. 인정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 관련 주택자금대출액 등의 연말잔액 중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나) 장애물 제거(Barrier free) 개수촉진세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주택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장애물 제거 개수(改修)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거주용 가옥에 대해 장애물 제거 개수공사를 포함한 증·개축 등을 한 경우, 해당 증·개축 관련 주택자금대출액 등의 연말잔액 중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 에너지절약형 개수촉진세제

주택 개수에 있어 장애물 제거만이 아니라 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수하는 방향으로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납세자가 소유하는 거주용주택에 대해 일정의 에너지절약형 개수공사를 포함한 증·개축 등을 한 경우 해당 증·개축 관련 주택자금대출액 등의 연말잔액 중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라) 3세대 동거에 대응한 주택 리폼 관련 세제

주택정책 세제는 세대 간의 상호 배려로 육아를 지원하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주된 조치로 납세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3세대 동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수공사를 한 경우 3세대 동거 대응 개수공사 관련 주택자금대출액 등의 연말잔액 중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440)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稅制』, p. 118을 참고로 정리한 것임.

마) 내구성향상 개수세제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기존주택 유통・리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구성이 뛰어난 양질의 주택이 많이 형성되도록 촉진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택정책 세제에서도 납세자가 소유하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약형 개수 공사와 더불어 내구성 향상 개수공사를 포함한 증・개축 등을 한 경우 해당 증・개축 관련 주택자금대출액 등의 연말잔액 중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8. 청색신고제도

가. 제도개요 및 공제액

일본 소득세제도에는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들 소득을 갖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청색신고서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색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색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청색신고자'라고 한다. 이 청색신고자 이외의 자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작성하는 흰색신고서로 신고한다는 의미에서 '백색신고자'라 부르고 있다.

청색신고자는 정규의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장부에 기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정규복식부기 기장방식과는 달리 재무성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간이기장으로 기록하는 방법(간이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전전년분의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300만엔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현금 수지(收支)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간이장부 작성(현금주의에 의한 기장)만으로도 소득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색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 전속종사자[專從者]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청색신고특별공제(65만엔 또는 10만엔)를 적용하는 등 소득계산상 또는 신고나 납세절차상 여러 가지 특전이 인정된다. 〈표 Ⅲ-7〉은 청색신고공제 및 청색신고특별공제의 개략을 보인 것이다.

〈표 Ⅲ-7〉 청색신고 공제 및 청색신고 특별공제

	청색신고공제		
1972	(창설) 10만엔		
1992	청 색 신 고 특 별 공 제		
	(우측 이외의 자)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 거래를 정규(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자)	(간이부기(기록)방법에 따라 기록하는 자: 대차대조표를 첨부)
1993	(창설) 10만엔	35만엔	35만엔(경과조치)
1998	10만엔	45만엔	45만엔
2000	10만엔	55만엔	45만엔
2005	10만엔	65만엔(2004년 개정)	45만엔(2005년분 이후 폐지)
2018	10만엔	55만엔(통상의 장부보존) 65만엔(전자(電磁)적 기록의 비치·보존이나 e-Tax 이용시)	-

자료: 川上尙貴 編著(2008), 『圖說日本の稅制』, p. 103.
吉沢浩二郎 編著(2018), 『圖說日本の稅制』, p. 122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7〉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청색신고공제제도가 창설된 것은 1972년으로 50년 가까이 지났다. 동 제도의 주요 개정을 보면 1992년도 세제개정에서 종래의 청색신고공제 대신에 청색신고특별공제가 창설되었다(1993년도부터 적용됨). 2004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청색신고특별공제로서 2005년부터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청색신고자 중 정규의 부기 원칙에 따른 기장에는 65만엔, 그 이외의 청색신고자에 대해서는 10만엔의 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간이부기방법에 따라 기장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993년분부터 2005년분까지의 각년도분을 대상으로 한 경과조치를 취하였다. 이 경과조치에서는 청색신고특별공제를 1993년 35만엔으로 하였다가 1998년에 45만엔으로 인상하였다. 간이부기방법에 따라 기록하는 자는 청색신고서에 손익계산서와 함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면 45만엔의 특별공제 적용을 인정받았으나 2005년분 이후부터 이를 폐지하였다. 한편 청색신고자나 백색신고자는 일정 기간동안 기장·보존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청색신고특별공제 공제액 개편이 있었다. 그 주된 내용은 정규의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기장하는 자와 관련된 청색신고특별공제의 공제액을 65만엔에서 55만엔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의 세정 전산화는 한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사업장부의 전자(電子)장부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의도를 내세우고 있다. 청색신고제도에 있어서도 장부의 기록·보존에 있어 전자(電磁)적 기록의 비치 및 보존을 하거나, 당해연도의 소득세확정신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제출기한 내에 e-Tax(전자납부)를 사용하면 청색신고특별공제액을 종전과 같은 65만엔으로 하고 있다.

나. 청색신고자에 대한 특전

일본 세제에 있어 오래되고 특유한 제도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청색신고자에 대한 특례를 모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41]

(1) 청색사업 전업종사자(일본에서는 전종자(專從者)라는 말을 사용) 급여의 필요경비로의 산입(「소득세법」 제57조)

여기서 청색사업 전업종사자라 함은 청색신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으로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오로지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연령이 15세 미만인 자는 청색사업 전종자가 되지 않는다.

(2) 청색신고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의 2)(위의 〈표 Ⅲ-7〉 참조)

(3)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금속광업 등 광해(鑛害) 방지준비금, 특정재해방지준비금, 특정선박 관련 특별수선준비금, 탐광(探鑛)준비금, 농업경영 기반강화 준비금의 전입금 또는 적립금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 제52조, 제54조, 「조세특별조치법」 제20조~제20조의 3, 제22조, 제24조의 2)

(4) 가사관련비 중 거래 기록 등에 기초하여 업무수행상 직접 필요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부분의 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5)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단축, 증가(增加) 상각(「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133조)

(6) 순손실의 이월공제, 되돌림 환부(繰戻し還付)(「소득세법」 제70조, 제140조)

(7)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저가법(低價法)의 선택(「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8) 시험연구를 한 경우의 소득세법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

(9) 고도(高度) 에너지 절약 증진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2)

(10) 중소사업자가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3)

441)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稅法便覽』, pp. 307~309을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임.

(11) 지역경제 견인사업 촉진구역 내에서 특별사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4)

(12) 지방 활력 향상지역 등에서 특정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4의 2)

(13) 지방 활력 향상지역 등에서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5)

(14) 특정 중소사업자가 특정 경영개선 설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5의 2)

(15) 특정 중소사업자가 특정 경영력 향상 설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5의 3)

(16) 급여 등의 인상 및 설비투자를 한 경우 등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5의 4)

(17) 혁신적 정보산업 활용설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5의 5)

(18) 감가상각 특례

감가상각 특례는 「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 2부터 제15조에 걸쳐 매우 다양한 특례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 두 가지만 제시하여 보면, ① 고도 에너지 절약 증진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2), ② 중소사업자가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의 3)을 들 수 있다.[442]

(19) 신광상탐광비(新鑛床探鑛費) 특별공제(「조세특별조치법」 제23조)

(20) 중소사업자의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의 특례(「조세특별조치법」 제28조의 2)

(21) 소규모 사업자의 현금주의에 따른 수입 및 비용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22) 경정(更正)의 제한 및 이유의 부기(附記)(「소득세법」 제155조)

이상으로부터 청색신고자에 대한 특례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 특례의 대부분이 「조세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이 열거적으로 매우 세세하게 정해져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442) 다른 다양한 감가상각 특례에 관하여는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p. 308~309에서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였음.

이는 일본 소득세 제도의 초반부(Ⅰ. 3. 조세특별조치법의 지위 및 기능)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세특별조치법」이 일반법(소득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위를 가지면서 일반법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을 열거식으로 규정하면서 대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단적인 예가 된다고 할 것이다.

Ⅳ 손익통산과 손실

1. 과세 총소득금액의 계산

일본의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표방하고 있으며 첫 부분의 'Ⅰ.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의 종류'에서 언급한 각종 소득금액은 일정 순서로 종합된다.[443] 이처럼 종합과세를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산림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별되어 별개의 단위로 분리과세된다. 이에 더해 일정의 이자소득 및 특정 배당소득, 원천분리과세의 상환차익, 토지 관련 사업소득, 토지건물 등의 장기양도소득 및 단기양도소득 금액, 일반·상장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금액 및 선물거래와 관련된 잡소득 등의 금액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완납적 원천징수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각종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은 결국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22조).

① 총소득금액

[배당소득(② 제외), 부동산소득, 사업소득(⑤ 및 ⑥ 제외), 급여소득, ③ 및 ⑤ 이외의 단기양도소득, 잡소득(⑤ 및 ⑥ 제외)의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④ 및 ⑤ 이외의 장기양도소득, 일시적인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1/2

② 상장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금액

③ 단기양도소득 금액(토지 건물 등)

④ 장기양도소득 금액(토지 건물 등)

⑤ 일반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금액, 상장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금액

⑥ 선물(先物)거래와 관련된 잡소득 금액

⑦ 산림소득 금액

⑧ 퇴직소득 금액

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할 때 개별소득 금액 중 손실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흑자 소득금액과 통합하여 일정 순서에 따라 손익통산을 하게 된다.

또 전년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순손실 금액 또는 잡손실 금액으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통산 후의 총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으로부터 일정

443) 본 절의 손익통산과 손실에 관한 내용은 주로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覽』의 「소득의 종합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pp. 162~167)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한편 잡손실금액 중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상기 이외에 상장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금액, 장기양도소득 금액, 단기양도소득 금액,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금액 및 선물거래와 관련된 잡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이때 배당소득, 급여소득 및 잡소득의 손실은 소득통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조세특별조치법」 제8조의 4).[444]

위에서 토지건물 등의 양도와 관련된 장기양도소득 금액 및 단기양도소득 금액은 손익통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거주용 재산의 양도손실금액 또는 특정거주용 재산의 양도손실 금액은 손익통산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5).

이상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총소득금액, 상장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금액, 장기양도소득 금액, 단기양도소득 금액,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금액, 선물거래와 관련된 잡소득 금액 산림소득 금액 및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소득세법」 제22조, 「조세특별조치법」 제8조의 4 및 그 외 해당 조문).

2. 손익통산의 순서

부동산, 사업, 양도 및 산림의 각 소득 금액 계산시 발생한 손실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순서로 손익통산을 한다(「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①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급여 및 각종 잡소득금액(경상소득 금액: 이하 A그룹이라 한다) 중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는 이들 손실금액을 우선 A그룹 내의 다른 소득 금액으로부터 차감한다.

② 양도소득 금액 및 일시소득금액(이하 B그룹이라 한다) 계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는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상 발생한 손실 금액만을 일시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①의 계산(A그룹 내의 통산)을 하여도 여전히 차감할 수 없는 A그룹의 손실금액은 양도소득 금액 및 일시소득 금액(B그룹 내 통산 후의 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④ ②의 계산(B그룹 내 통산)을 하여도 여전히 차감할 수 없는 B그룹의 손실금액은 A그룹의 금액(A그룹 내 통산 후의 금액)으로부터 차감한다.

444) 나아가 부동산소득의 손실 금액 중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부채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 및 부동산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민법조합 등의 특정조합원 또는 특정수익자가 조합사업 또는 신탁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 4 및 제41조의 4의 2).

⑤ ③ 또는 ④의 계산을 하여도 여전히 차감할 수 없는 손실금액은 이를 우선 산림소득 금액에서 차감하고, 이어 퇴직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⑥ 산림소득 금액 계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는 이것을 우선 A그룹 소득금액(① 또는 ④의 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계산 후의 금액)으로부터 차감하고, 이어 양도소득 금액 및 일시소득 금액(② 또는 ③의 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계산 후의 금액)에서 차감하고,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금액(⑤의 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계산 후의 금액)에서 차감한다.

⑦ ①에서 ⑥까지의 계산을 하여도 여전히 차감할 수 없는 손실금액은 그 해분의 순손실금액이 된다.

한편 위의 ③ 또는 ⑥의 양도소득 금액 중 토지 건물 이외의 자산과 관련된 단기 및 장기양도소득이 있을 때는 단기양도분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적용한다.

나아가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발생한 손실금액 중 변동소득의 손실금액, 재해를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금액 또는 기타 손실금액이 둘 이상 있을 때는, 우선 기타 손실금액, 이어 재해를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금액, 마지막으로 변동소득 손실금액을 차감한다. 산림소득 금액 계산상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기타 손실금액, 이어 재해를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금액을 차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3. 손실과 이월공제

손익통산 결과 남게 되는 순손실금액은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연도분의 순손실에 한하여 다음 해 이후 3년간의 소득금액으로부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청색신고를 하지 않은 연도분의 순손실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중 변동소득 금액 계산상의 손실 또는 재해를 입은 사업용자산의 손실금액은 다음 해 이후 3년간 소득금액으로부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나아가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해의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연도분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었던 잡손실금액은 다음 해 이후 3년간의 소득금액으로부터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71조). 따라서 그 해의 총소득금액, 산림소득 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전년 이전 3년 내에 발생한 순손실 금액 또는 잡손실 금액 중 전년 이전에 이월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음의 〈표 Ⅳ-1〉은 손실을 순손실과 잡손실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손실 내용과 이월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표 Ⅳ-1〉 순손실 · 잡손실 및 이월공제 절차

<table>
<tr><th colspan="3">손실의 구분</th><th>손실의 내용</th><th>이월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th></tr>
<tr><td rowspan="3">순손실</td><td rowspan="2">보통 소득의 손실</td><td>재해를 입은 사업용자산 손실 이외의 손실</td><td>보통소득의 손실 중 재해를 입은 사업용자산 손실 이외의 손실금액(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연도에 한함)</td><td>순손실이 발생한 해에 청색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 후도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것</td></tr>
<tr><td>재해를 입은 사업용자산의 손실</td><td>보통소득의 손실 중 사업용자산이 지진피해, 풍수해, 화재 등으로 피해로 인한 손실금액(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을 제외)</td><td rowspan="3">순손실 또는 잡손실이 발생한 해에 그 손실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확정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 후도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것</td></tr>
<tr><td colspan="2">변동소득의 손실</td><td>어획, 김채취 등의 양식으로 인한 소득, 원고집필, 작곡 보수 또는 저작권 사용료 소득 계산상의 손실금액</td></tr>
<tr><td colspan="3">잡손실</td><td>그 해의 소득으로부터 잡손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잡손실 금액</td></tr>
</table>

자료: 坂井裕幸 · 川上文吾 編著(2019), 『税法便覧』, p. 166.

4. 이월공제의 순서

이월된 손실금액이 전년 이전 3년내 2개년 이상의 해에 발생한 손실금액인 때는 오래된 연도분 손실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같은 해에 순손실금액과 잡손실금액이 있는 때는 순손실금액부터 우선 차감한다. 손실을 순손실금액과 잡손실금액으로 나누어 이월공제하는데 이월공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가. 순손실금액

① 총소득금액 계산상의 손실금액은 각각 그 해의 총소득금액으로부터 차감하고 산림소득금액 계산상의 손실금액은 우선 그 해의 산림소득금액으로부터 차감한다.

② ①에 의해서도 여전히 차감할 수 없는 총소득금액 계산상의 손실금액은 그 해의 산림소득금액(산림소득 이월손실금액이 있는 때는 그 금액을 차감한 다음의 산림소득금액)으로부터 차감하고 이어 그 해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①에 의해서도 여전히 차감할 수 없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상의 손실금액이 있으면 그 해의 총소득금액(총소득의 이월손실금액이 있는 때는 그 금액을 차감한 이후의 총소득

금액)으로부터 차감한다. 이어 그 해의 퇴직소득금액②에 의해서도 여전히 차감할 수 없는 총소득의 이월손실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부터 차감하는 때는 그 차감한 다음의 퇴직소득금액)으로부터 차감한다.

나. 잡손실 금액

이월 순손실의 금액을 차감한 다음의 총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 외에도 상장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금액, 장기양도소득금액, 단기양도소득금액,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 금액 및 선물거래와 관련된 잡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 일정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및 「조세특별조치법」 제8조의 4 및 그 외 해당 조문).

V 시사점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4년 한반도에서의 일반소득세 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 소득세법의 제정, 그리고 1974년 초과누진과세 종합소득과세 정비라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일본세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후 여러 차례 세법 개정을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을 따로 분류하지만 일본은 연금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일시소득이나 산림소득이 독립된 소득 분류로 남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을 독립된 분류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청색신고서로 신고 납부하는 '청색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일 세제비교가 목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각론에서는 일부 언급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한일 간 비교는 하지 않고 있으며 총론적인 차이 언급에 그치고 있다.

총론적인 입장에서 일본 종합소득세제가 한국과 다른 특징으로는, ①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의 분류가 다르다는 점, ② 소득세 계산방식에 있어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소득이라고 하여도 그 중 완납적 원천징수의 분리과세로 취급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 차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소득세제 운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하에서는 시사점에 대한 것으로서 '세법적 논리성 확보'와 '조세사안 정보활용'이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우선, '세법 논리의 정합성'을 갖추는 작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세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가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여 바뀌어 가는 것은 조세정책 차원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어떤 제도를 형성하여 가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 도입하고, 일단 실시된 제도는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그때그때 조세정책의 편의에 따라 자주 개편하곤 한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의 세제를 많이 참조하여 받아들이면서, 따로 분류된 일시소득이나 산림소득이라는 소득 분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분류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법 논리를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하는 점도 제도 성숙과 납세협력 제고에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이자, 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기타소득의 계산에서는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나누면서 복수의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소득계산을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간편성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세법 논리성 측면에서는 정합성이 부족하다. 일본은 소득의 성격 중 '일시성은 일시소득', '계속성은 잡소득', '(육림(育林)의) 장기성은 산림소득'이라는 식으로 세법상의 논리를 갖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소득 종류를 다시 분류하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뭉뚱그림 성격의 기타소득에 대한 '세법적 논리성 확보' 노력은 조세체계의 성숙과 함께 납세자들의 납세협력(tax compliance)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과세되는지를 납득하고 싶은 납세자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축적된 세세하고 개별적인 '조세사안 정보활용' 전략이다. 부연하면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이 취해왔던 일본 세제의 답습이 아닌 '활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지침(매뉴얼)에 입각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사회이다. 소득세제 운용에서도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규칙(rule)을 정해 놓고 대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거래나 소득 원천의 등장으로 인해 또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소득세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조세사안이 등장한다. 일본은 이들 사안에 대해 많은 경우 특례적 대처로서 「조세특별조치법」에 포함시키거나 「소득세 기본통달」 등으로 대응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도입되고 있지 않은 청색신고세제상의 특례(특전)도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들이 많다.

임기응변적 대응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뛰어나지만 개별적이고 세세한 사안별 대응에서는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은 어떤 일처리에 있어, '정의, 평등'과 같은 일반원칙에 따른 대응보다는 구체적인 사안별 처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세제조사회가 내세우는 조세원칙은 '형평, 중립, 간소'이지만, 실제 일처리에서는 일일이 규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일처리로 인해 일본에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규정(기록)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방식을 취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한국의 대처 성향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일본이 축적한 세세하고 개별적인 조세사안을 우리나라가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거나 모순에 직면하는 어떤 조세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의 대처에 있어, 일본의 조세사안 축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주게 될 것이다. 디지털 세무행정은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단계이지만, 지근거리에서 납세자 입장을 반영한 세무행정, 정직한 기장문화는 일본에 비해 뒤지고 있다. 청색신고제도도 정직한 기장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요컨대, 조세정책상의 편의성만이 아닌 '세법 논리 정합성 확보'를 통한 납세협력의 제고, 일본의 개별적이고 세세한 '조세사안 축적정보 활용'을 통한 시행착오 줄이기가 총론적 입장에서의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를 시사점으로 제시하며 종합소득세 일본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e-Gov'(イーガブ: 電子政府総合窓口),「所得税法」(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0AC0000000033#A) 검색일자: 2019.12.14.

e-Gov'(イーガブ: 電子政府総合窓口),「所得税法施行令」(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0CO0000000096#O) 검색일자: 2019.12.14.

e-Gov'(イーガブ: 電子政府総合窓口),「租税特別措置法」(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2AC0000000026) 검색일자: 2019.12.14.

e-Gov'(イーガブ: 電子政府総合窓口),「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2CO0000000043) 검색일자: 2019.12.14.

e-Gov'(イーガブ: 電子政府総合窓口),「労働基準法」(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049) 검색일자: 2020.3.7.

シャウプの税制研究會編(1985), 福田幸弘 監修,『シャウプの税制勧告』, 霞出版社.

井上一郎編(1988), 福田幸弘 監修,『シャウプの税制勧告〈新聞資料編〉』, 霞出版社.

鞠重鎬(1996),「戦後における日韓の税制比較」,『アジア研究』, アジア經濟研究所 第37號 第11卷(11月號), pp.21~42.

鞠重鎬(2004),『韓国の地方税 – 日本との比較の視点 – 』創成社.

鞠重鎬(2015),『韓国の財政と地方財政』横浜市立大学学術研究会新叢書 No7, 9月, 春風社.

吉沢浩二郎 編著(2018),『圖說日本の税制』, 財經詳報社.

宮島洋(1989),『租税論の展開と日本の税制』, 日本評論社.

金子宏・武田昌輔編(1974),『税法の基礎知識』, 有斐閣.

高野俊信・松田淳 編(2002),『税法便覽』, 税務研究會出版局.

国税庁(2019),「国税庁からのお知らせ: 払戻金の支払を受けた方へ」1월.

佐藤進・宮島洋(1991),『戦後税制史』, 税務經理協會.

最高裁判所(2019),「平成２８年（行ヒ）第３０３号 所得税更正処分等取消請求事件」平成29年12月15日 第二小法廷判決.

財務省(2019),『もっと知りたい税のこと』10月.
財務省(2020),「令和2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要」.
財務省(大藏省)(各年度),『財政金融統計月報』(租税特集).
坂井裕幸・川上文吾 編著(2019),『税法便覽』, 稅務研究會出版局.
小宮敦史 編著(2020),『圖說日本の財政』, 財經詳報社.
松崎啓介・高橋達也 編著(2008),『税法便覽』, 稅務研究會出版局.
新村出編(2008),『広辞苑』(第六版). 岩波書店.
青柳達郎(2006),「認定賞与についての小論(上)」,『山口経済学雑誌』, 山口大学経済学会, 第55巻 第3号, pp.345~371.
石弘光(1987),『租税政策の効果』, 東洋経済新報社.
石弘光(2001),『税制ウォッチング』, 中公新書1591.
石弘光(2008),『現代税制改革史—終戦からバブル崩壊まで—』, 東洋経済新報社.
川上尙貴 編著(2008),『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大田弘子(2002),『良い增稅・惡い增稅』, 東洋經濟新報社.
大藏省財政史室編(1984),『昭和財政史 - 終戰から講和まで - 』, 7 租稅 東洋經濟新報社.
中野英夫(2018),「三位一体改革と地方の自立」(국중호 번역「삼위일체개혁과 지방의 자립」),『지방재정』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특집, Vol.39 제3호(8월), pp.56~71.
藤崎直樹・坂井裕幸 編著(2018),『税法便覽』, 稅務研究會出版局.
日本政府稅制調査會(2000),『わが國稅制の現狀と課題 21世紀に向けた國民の參加と選擇 』7월.
日本政府稅制調査會(2002),『平成15年度稅制改正についての答申 —あるべき稅制の構築に向けて— 』11月.
日本政府稅制調査會(2003),『少子・高齡社會における稅制のあり方』6月.
日本政府稅制調査會(2007),「拔本的な稅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な考え方」11月.
日本政府稅制調査會(2008),『平成21年度稅制改正に關する答申』10月.
日本政府稅制調査會(2014),『稅制調査会資料 - 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対する消費税について - 』国際課税DG, 6月 27日.
文化庁文化部宗務課(2016),「指定寄附金制度に係る申請の手引」平成28年 9月 9日.
平嶋彰英(2018),「日本の三位一体の改革を振り返る」(국중호 번역「일본 삼위일체개혁의 회고」)『지방재정』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특집, Vol.39 제3호(8월), pp.30~55.
稻垣光 隆編(2002),『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内閣府(各年度), 『国民経済計算』(https://www.esri.cao.go.jp/jp/sna/menu.html) 검색일자: 2019.8.5.

국세청(각년도), 『국세통계연보』.

국중호(1998), 『소득 · 소비 · 자산과세의 분류에 따른 한일 조세구조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8-01, 3월.

국중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월.

국중호(2012), 『일본의 지방세와 세제개혁 논의』, 한국지방세연구원, 7월.

국중호(2018), 「일본 삼위일체개혁에서의 세원이양의 효과와 이론적 근거」,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특집, Vol.39제3호, pp.10~29.

세정연구센터(2019), 『주요국의 조세제도(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월.

세정연구센터(2020), 『주요국의 소비세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예정.

財務部(1979), 『韓國稅制史(上)(下)』, 1979.

General Headquarters(1949), *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Shoup Mission*,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kyo,1949.

Ishi, Hiromitsu(2001), *The Japanese Tax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Kook, Joong-Ho (2001), "A Comparative Study of Tax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15-2, pp.251~286.

부록: 일본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1조~제4조)
제2장 납세의무(제5조~제6조)
제2장의 2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자 등에 과한 통칙(제6조의 2~제6조의 3)
제3장 과세소득의 범위(제7조~제11조)
제4장 소득의 귀속에 관한 통칙(제12조~제14조)
제5장 납세지(제15조~제20조)

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통칙(제21조)
제2장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계산 및 소득공제
  제1절 과세표준(제22조)
  제2절 각종 소득금액의 계산(제23조~제68조)
  제3절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제69조~제71조)
  제4절 소득공제(제72조~제88조)
제3장 세액계산
  제1절 세율(제89조~제91조)
  제2절 세액공제(제92조~제95조)
제4장 세액계산의 특례(제96조~제103조)
제5장 신고, 납부 및 환부
  제1절 예정납세(제104조~제119조)
  제2절 확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 및 환부(제121조~제142조)
  제3절 청색신고(제143조~제151조)
제6장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등에 관한 특례(제151조의 2~제151조의 6)
재7장 경정 청구의 특례(제152조~제153조의 6)
제8장 경정 및 결정(제154조~제160조)

제3편 비거주자 및 법인의 납세의무
제1장 국내원천소득(제161조~제163조)
제2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통칙(제164조)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종합과세(제165조~제168조의 2)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분리과세(제169조~제173조)
제3장 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제174조~제178조)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제178조~제180조의 2)

제4편 원천징수
제1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제181조~제182조)
제2장 급여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의무 및 징수세액(제183조~제189조)
제2절 연말조정(제190조~제193조)
제3절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와 관한 신고(제194조~제198조)
제3장 퇴직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제199조~제203조)
제3장의 2 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제203조의 2~제203조의 6)
제4장 보수, 요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
제1절 보수, 요금, 계약금 또는 상금과 관련된 원천징수(제204조의 1~제206조)
제2절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연금과 관련된 원천징수(제207조~제209조)
제3절 정기적금의 급부보전금 등과 관련된 원천징수(제209조의 2~제209조의 3)
제4절 익명조합계약 등의 이익 배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210조~제211조)
제5장 비거주자 또는 법인 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제212조~제215조)
제6장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 납기의 특례(제216조~제219조)
제7장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의 납부 및 징수(제220조~제223조)

제5편 잡칙
제1장 지불조서 제출 등 의무(제224조~제231조)

제2장 기타 잡칙(제232조~제237조)

제6편 벌칙(제238조~제243조)

부칙

제3장 호주

Ⅰ. 소득세제 개관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호주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3장 | 호주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제의 특징

가. 포괄주의

호주의 소득세제는 포괄주의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호주의 1997년 개정판「소득세법」ITAA 1997(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Division 6에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assessable income)과 면세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은 통상적인 개념에 따른 소득 즉,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으로 구성된다. 통상소득은 회계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는 다른 개념으로, 호주 세법에서는 '통상적 개념(ordinary concept)에 따른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 세법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나 정의가 없다. 통상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인식되는 것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포괄주의 원칙하에서만 가능한 소득의 개념이며, 포괄주의에 적합한 소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이에 해당한다.[445]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아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지만「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통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이 되는 것을 법정소득이라고 한다.

445) 특정 소득이 통상소득에 해당하는지, 법정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호주 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한 규정에서 그 소득이 통상소득인지 법정소득인지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을 설명한 보고서 등에서 자본이득이 통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소득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ITAA 1997 Division 6에는 또한 면세소득(exempt income)과 비과세-비면세소득(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이 규정되어 있다. 통상소득이나 법정소득 중에서 면세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비과세-비면세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비면세소득은 면세소득은 아니지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는 소득을 말한다. [그림 Ⅰ-1]은 「소득세법」에 나타난 과세소득의 개념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통상소득과 법정소득에서 각각 면세소득과 비과세-비면세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을 종합하면 과세대상 소득 합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ITAA 1997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과세소득 산정에 대해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S10-5에서 관련 조항의 목록을 종합 정리하여 보여준다.

[그림 Ⅰ-1] 호주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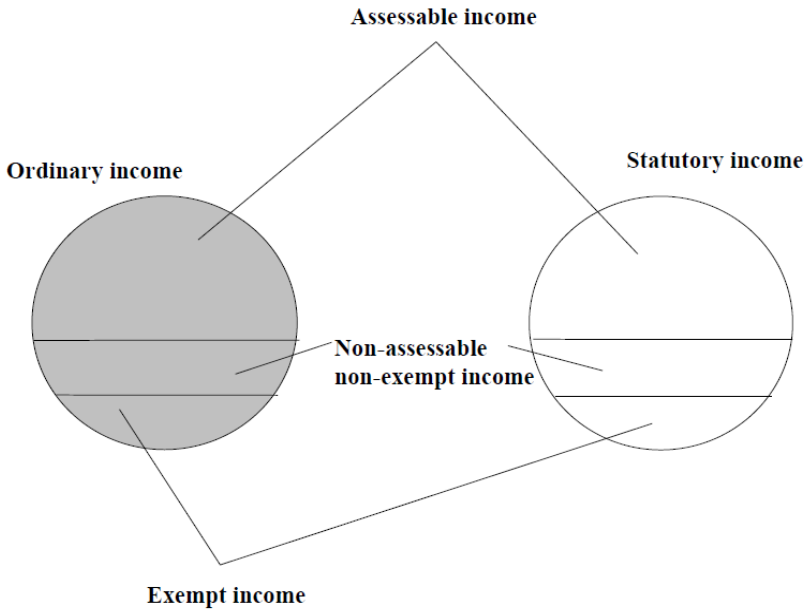

자료: ITAA 1977 s6-1

나. 세액 계산 방법

호주의 소득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득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는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과세대상 소득은 납세자가 수령한 수입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과세표준(tax base)과 같은

의미이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한국에서 수입금액과 같은 개념이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공제는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s)와 특정공제(specific deductions)로 구분된다. ITAA 1997 s8-1에 규정된 일반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경비(work-related expenses)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필요경비와 같은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필요경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경비는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경비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의 경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소득(taxable income) =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 공제액(deductions)
공제액 =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s) + 특정공제(specific deductions)
일반공제: 필요경비
특정공제: 법에 규정된 공제

ITAA 1997 s8-5에 규정된 특정공제는 법에 규정된 공제로서 기부금 관련 공제, 세금 신고 관련 비용 공제, 연금기여금 공제 등이 있다. ITAA 1997 s12-5에 특정공제 관련 법률 조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소득 항목별 수입금액의 합계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항목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금액에서 법에 규정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필요경비는 호주의 일반공제에 해당하고, 법에 규정된 소득 항목별 공제액이 특정공제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반공제와 특정공제를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소득은 한국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된다.

다. 소득의 귀속시기

호주의 과세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0일까지이다. 소득세는 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특정 소득이 어느 과세연도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방

식으로는 현금주의 회계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적용된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소득이 지급된 연도에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소득 지급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연도에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한다. 즉, 소득이 지급된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종업원의 급여는 급여가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때에 발생한 것이며,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가 그 계좌에 지급된 때에 발생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어 소득의 발생 시기는 일의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일을 수행하고 청구서(invoice)가 발행된 때이다. 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일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 월간 잡지를 발행하고 연간 구독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그 선불을 받은 때에 선불로 받은 금액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매월 월간지를 발행하여 구독자에게 제공한 때에 선불로 받은 금액의 12분의 1만큼씩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의 경비에 대해서도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한다.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한다.

라. 기장의무

ITAA 1936 Section 262A(2)에서는 소득세 신고자의 기장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예외 없이 기장을 하여야 하며, 그 기장은 납세자가 수행한 세금 목적과 관련된 모든 거래와 활동을 기록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가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장부는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서류, 납세자가 수행한 선택, 결정, 추계, 계산의 세부사항 및 추정, 결정, 계산의 근거를 담은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납세자의 기록은 영어로 기록되어야 하며,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로 추출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446]

기록은, 일반적으로 기록이 준비되거나 작성된 시점과 해당 거래가 완성된 시점 중 나중에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중간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446) 이하 기장의무에 대한 내용은 Wolters and Kluwers(2019), ¶9-030, ¶9-045 참조.

에는 기록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 과세목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두 기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적 보관기간이 끝날 때; ② 손실이 완전히 공제된 해의 소득신고서 검토를 완료하도록 규정된 법정 기간. 기장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벌점(penalty units)은 최대 30점이다.

기장의무는 전자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자기장의 경우에 기록된 내용의 인쇄본을 보관할 필요는 없다. 단, 특정 법이나 규정에 인쇄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전자기장은 변경되거나 조작(manipulate)되지 않아야 하며, 변경 및 조작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전자장부는 검색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요청할 때에는 시스템 설명서(system documentation), 암호화 키(encryption key), 그리고 정보처리도구(data manipulation tools)를 제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기장을 하는 회계방식은,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즉, 인적용역소득(PSI: Personal Service Income)만 있는 경우에는 현금주의를 적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발생주의 회계가 적합하다.

- 사업활동에 재고자산의 거래가 포함됨
- 일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지출이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자본재나 소비재의 순환에 의존하는 경우
- 납세자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직원과 장비에 의존하는 경우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가.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법정소득(statutory income)

호주에서는 통상적인 개념상의 소득, 즉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호주의 소득세법(ITAA 1997)에는 통상소득은 통상적 개념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는 간단한 정의 외에 자세한 설명이나 정의가 없다. 다만 판례를 통해서 통상적 개념에 따른 소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특성은 주기성(periodicity), 반복성(recurrence), 그리고 규칙성(regularity)이다. 즉, 직접적으로

고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447]

그러나 주기성, 반복성, 그리고 규칙성이 소득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독립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일시불로 지급되더라도 소득에 해당된다. 리스 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리스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은 지급받은 자의 소득이 된다. 한편, 정기적인 것이라도 특정 자금원으로부터 자본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그 외의 경우에도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이 규칙적이지 않더라도 그 대가는 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수입도 소득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취미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료 등도 통상소득에 포함되며, 불법적 활동에서 얻은 수입도 소득에 포함된다. 물물교환이나 직접거래에서 발생한 수입도 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물물교환이나 직접거래가 가족 내에서의 거래나 사교모임 내에서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수익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소득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이다. 피고용인의 급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셋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세 범주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통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지불이나 지급을 보면, 자본의 상환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의 가치가 상승되어도, 금전이나 다른 재산의 형태로 이익이 실현된 경우가 아니면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 자체를 현금화한 경우에 수취한 현금이나 투자 전환에 따라 발생한 장부상 이익도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부금도 일반적으로 기부를 받은 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웨이터나 택시 기사가 받은 봉사료(tip)는 서비스의 대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된다. 운동선수가 받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순전히 개인적인 근거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애인에게 임시 간호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임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자원봉사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447) 이하 통상소득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Wolters Kluwer(2019), ¶10-010 참조.

통상적 개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985년 9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호주는 세법에서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 과세 내용을 보면, 소득세와 별도로 자본이득세제가 운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자본이득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므로 자본이득세(CGT)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본이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발생한 이득의 50%를 감면한다. 자본이득은 통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에 규정하여 과세하는 법정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종류의 소득은 수입금액이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이 되지만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득(net capital gain)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그 외에도 ITAA 1997 Subdiv 20-B에 규정된 소득이 법정소득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자동차를 리스한 자가 그 차를 매입하여 재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리스한 자의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통상소득과 법정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므로 통상소득이나 법정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통상소득과 법정소득 중에서 면세소득으로 규정된 것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정소득의 경우 세법이나 그 외 연방정부 법(Commonwealth law)에서 명시적으로 면세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만 면세소득이 된다.[448] 한편 통상소득의 경우 세법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면세소득이 된다. 면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거나 비용으로 공제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로지 면세소득만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이나 손실은 무시한다.[449]

퇴직소득의 경우, 호주에서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소득을 의미한다. 60세 이상이 되어 퇴직하면 퇴직연금 소득을 비과세하고, 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에만 수령형태에 따라 분류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한다. 59세 이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분류과세가 적용된다.

호주의 국세청이 정리한 설명서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시 신고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450]

448) ITAA 1997, s6-20.
449) ITAA 1997, s6-15.
450)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 2.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 피용자 보수
- 연금소득, 정부보조금
- 투자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자본이득 포함
- 사업소득, 파트너십 소득, 신탁소득
- 국외소득
- 크라우드펀딩
- 공유경제 소득
- 그 외 소득

나. 면세소득(exempt income)

면세소득과 관련된 규정은 ITAA 1997 s11-5와 s11-15에 정리되어 있다. S11-5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세자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으며, s11-15에는 통상소득과 법정소득 중 면세가 되는 소득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다. S11-5에 열거된 면세자에는 자선기관, 교육기관, 과학재단, 사회봉사단체, 노조 등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정부 및 정부기관, 공공 및 비영리 의료기관, 호주의 산업 및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회 등이 있다.

〈표 Ⅰ-1〉 호주의 개인 소득세 면세자(ITAA 1997, s11-5)

범주	비과세 소득	관련 조항
자선, 교육, 과학	- 공교육기관(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Ltd - 등록된 자선기관(registered charity) - 과학 교육, 연구기관(scientific institution) - 과학연구재단(scientific research fund) - 과학단체 등(scientific society etc)	s50-5
지역사회봉사	-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협회, 클럽(정치 또는 로비 목적 제외)	s50-10
피고용인 및 고용자 단체	- 노동조합 - 피고용인 단체 - 고용주 단체	s50-15
정부	- CFSs(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s)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municipal corporation) -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s50-25
	- 주(state)/준주(territory) 정부	div 24AK~24AZ

〈표 Ⅰ-1〉의 계속

범주	비과세 소득	관련 조항
보건	- 단체나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병원 - 공공병원 - 민간건강보험법(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15)에 따른 민간건강보험사(private health insurer)	s50-30
광업	- The British Phosate Commissioners Banaba Contingency Fund	s50-35
1차 및 2차 자원, 관광	- 각 산업 협회 및 단체	s50-40
스포츠, 문학, 연예	- 관련 협회 및 단체	s50-45

자료: ITAA 1997 s11-5.

〈표 Ⅰ-2〉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소득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호주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통합되어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면세 항목 중 개인에게 적용되는 항목 중 주요 항목을 뽑아서 정리한 것이다. 군인 및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수당, 포상금, 장학금, 저소득층 및 특정 지역 거주자 교육비 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금, 자녀양육보조금, 개인상해연금 등이 면세소득에 포함된다.

〈표 Ⅰ-2〉 호주의 개인 소득 중 주요 면세소득과 관련 규정(ITAA 1997 s11-15)[1)]

범주	비과세 소득	관련 규정
국방	- 규정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된 수당, 포상금 - 군인에게 무상으로 지급, 배급된 물품의 시장가치	s51-5
	- 전쟁 서비스 배치에 따른 수당의 손실 보상금	s51-32
	- 육 · 해 · 공군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지속적인 전일제 근무에 따른 급여와 수당 제외)	s51-5
	- 육 · 해 · 공군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의 손실보상금	s51-33
교육 · 훈련	- 전일제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장학금, 학비보조금(bursary), 교육수당(educational allowance), 교육비 지원(educational assistance)	s51-35
	- (a) 중등교육, (b) 벽지 어린이(isolated children)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금	s51-40
	- Commonwealth Trade Learning Scholarship 장학금, Apprenticeship Wage Top-Up에 따른 지급액, Endeavour Awards의 연구 장학금이나 상금	s51-10
	- 견습(apprenticeship)의 조기 완료에 따른 보너스로 1,000호주달러 이내의 금액	s51-42

〈표 Ⅰ-2〉의 계속

범주	비과세 소득	관련 규정
상금	- 총리상(Prime Minister's Prizes): 호주 역사, 과학, 문학	s51-60
복지 지원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양육비(이혼 등의 경우)	s51-50
	-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재난회복 보조금	s51-30
	- 사회보장 지급액	
	- 특정 연금, 보조금 및 수당 ·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지급액 ·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Militar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4에 따른 지급액 · ABSTUDY 제도(원주민, 토레스해협 섬주민 교육비지원제도)에 따른 지급액 · 연방 교육 · 훈련지원의 추가 지원금(주거비 등) · A New Tax System (Family Assistance) (Administration) Act 1999에 따른 가족 지원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 family tax benefit, 저소득층 경제안정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ETR) 등)	div 52 (subdiv 52-A ~ 53-H)
기타	- 개인상해 연금이나 일시금 등	div. 53, 54

주: 1) 개인에게 적용되는 면세소득의 주요 항목을 정리한 것임.
자료: ITAA 1997, s11-15.

다. 비과세-비면세 소득(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

비과세-비면세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소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거나 지불된 비용은 일반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비면세 소득의 창출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은 원칙적으로 무시된다. 그러나 비과세 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ITAA 1997 s118-12에는 비과세-비면세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재산의 양도차익 및 양도손실이 무시되지 않는 경우 즉, 과세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ITAA 1997의 s11-55에서 비과세-비면세 소득 관련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의 소득으로서 이미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것은 비과세-비면세 소득이 된다. 화재보험의 손해보상금, 호주 기업의 해외 지점 이익,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에 귀속된 소득, 외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일시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국외 원천소득, 과세대상 공급에 부과되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등도 비과세-비면세 소득이다.[451] 비과세-

451) Wolters Kluwer(2019), ¶10-895 참조.

비면세 소득 규정은 그 소득을 과세망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표 Ⅰ-3〉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비과세-비면세 소득에 해당되는 주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인적용역 소득을 수취한 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여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급은 비과세-비면세 소득이 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비면세 소득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기퇴직수당, 고용 종료에 따른 지급액 중 비과세금액,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 등이 비과세-비면세 소득이 된다. 국제소득의 경우에는 일시적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비면세 소득이 된다. 일시적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경우에도, 호주 내 고정사업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면 비과세-비면세 소득이 된다. 부가급여(fringe benefit)는 부가급여세(FBT: Fringe Benefit Tax)가 부과되므로 소득세에서는 비과세-비면세 소득으로 취급한다. 연금소득은 60세 이후에 수취하는 연금소득, 사망한 연금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일시불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외국으로 이주한 자의 호주 연금이 비과세-비면세 소득이 된다.

〈표 Ⅰ-3〉 호주의 개인 소득 중 주요 비과세-비면세 소득 관련 규정
(ITAA 1997 s11-55)[1)]

비과세-비면제 소득	관련 조항
•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alienated personal services income)	
- 소득을 수취한 자가 특수관계자(associates)에게 지불하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그 특수관계자의 비과세-비면세소득이 됨	s85-20(3)
- 인적용역회사의 소득으로서 특정 개인의 인적용역 소득에 이미 포함된 것은 그 회사의 비과세-비면제소득이 됨	s86-30, 86-35
• 배당소득	
- 기업분할에 따른 배당금	**s44 (4)**
- 과세목적으로 이미 계상된 배당금을 상계하는 후취배당금(later dividend)	**s109ZC (3)**
• 고용에 따른 소득	
- 조기퇴직수당(early retirement scheme payment) 중 비과세금액	s83-170
- 고용 종료에 따른 지급(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중 비과세금액	s82-10, 82-65, 82,70
-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genuine redundancy payment)	s83-170

〈표 Ⅰ-3〉의 계속

비과세-비면제 소득	관련 조항
• 국제소득	
- 일시적 거주자(temporary resident)의 국외원천소득	s768-910
- 일시적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로서 호주 내 고정사업장의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	s768-980
• 토착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s59-50
• 부가급여(fringe benefits)	**s23L (1)**
• 연금소득	
- 60세 이후에 수취하는 연금소득	s301-10
- 사망자의 피부양자에게 일시불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s302-60, 302-65, 302-70, 302-140, 303-5
- 국외로 이주한 자의 호주 연금소득	s 301-175

주: 1) 개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비면세 소득의 주요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관련조항 중 굵은 글씨로 나타낸 부분은 ITAA 1936의 조항이며, 그 외의 것은 조항은 ITAA 1997 조항임.
자료: ITAA 1997, s11-55.

3. 그 외 호주 소득세제의 특징

호주 소득세제에는 다른 국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특징적인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부가급여세(FBT: Fringe Benefit Tax)와 특정 전문가 소득의 평균소득과세제도이다. 본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 외의 현물 또는 현금의 복지혜택 즉, 부가급여(fringe benefit)를 제공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① 그 혜택을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하고 기업에서는 비용공제를 허용하거나, ②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기업의 비용공제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한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부가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급여세라는 이름으로 기업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특정 전문가 소득의 평균소득과세제도는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수입의 변동성이 큰 납세자가 소득이 많은 때에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452]

부가급여세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한 부가급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용주에게 부과되며, 제공한 부가급여 총액에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과 같다. 메디케어 부담금도 부과된다.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개인소득세가 아니라고 취급할 수도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 개인소득으로 취급되는 부가급여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호주의 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는 본 보고서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호주에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분류과세라고도 할 수 있다.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가급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피고용인에게 업무용 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저리 융자
- 피고용인의 체육관 회원권 회비 납부
- 연주회의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여 향응 제공
- 교육비 등 피고용인이 지불한 비용의 보상
- 급여희생 계약(salary sacrifice arrangement)

한편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부가급여가 아니다.

- 임금 및 급여
- 종업원 지주제도에 의한 주식 취득
- 연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
- 퇴직수당
- 배당으로 간주된 혜택이나 지급
- 자원 봉사자나 도급업자에게 제공된 혜택
- 면세 부가급여: 예, 종교기관이 종교인(religious practitioners)에게 제공한 혜택

300호주달러 미만인 소액의 혜택으로서 부가급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부가급여세가 면제된다. 직장에서의 음식이나 음료 제공, 벽지 근무자를 위한 주택의 제공도 부가급여세가 면제된다. 부가급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것이 소득세 과

452) 부가급여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안내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Fringe Benefits Tax(FBT),* 29 March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16941.pdf, 2020. 1. 7. 접속).

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부가급여세 면제 항목은 그 항목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보다 부가급여세 세율이 0%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특정 전문가의 평균소득과세(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453]

특정 전문가, 스포츠맨, 예술가, 연예인 등은 소득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발생한 때에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은 4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총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전문가 과세소득(TPI: taxable professional income)을 산출하고, TPI를 평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평균 TPI(ATPI: average TPI)는 앞선 4년의 TPI 합계의 1/4이 된다.

평균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 예술가
- 작가
- 작곡가
- 발명가
- 공연예술가
- 예술품 생산자(production associates): 예술적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자, 영화감독, 안무가, 예술감독, 사진감독, 영화 편집자, 조명감독, 음악감독 등
- 운동선수

453) 평균소득과세제도는 다음 안내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veraging for Professionals* 2019, 30 May 2019, (https://www.ato.gov. au/misc/downloads/pdf/qc58648.pdf, 2020. 1. 8. 접속).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1.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의 개념

사업소득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 수행의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ITAA 1997 s995-1의 정의에 빠르면 사업(business)은 전문직, 교역, 고용, 직업(vocation and calling)을 포함하는데, 피고용인(employee)으로서의 직업은 제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 수행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이 주된 소득 창출 활동 외에 보조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업인지 취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의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454]

- 수익성: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익이 없다고 하여 사업활동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규모: 규모가 클수록 사업활동일 가능성이 크다.
- 노력: 주어진 기간 내에 실질적이며 정기적인 노력이 투입되면 사업활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또는 주업무에 부가하여 수행하는 파트타임 부업도 있을 수 있다.
- 사업기록: 영업장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경우에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호주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gross profit)이 아니라 수입금액(gross earning or proceedings)이다. 즉, 총수입금액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된다. 자본적 성격의 수입은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 조항, 또는 그 외 다른 명시적으로 과세대상이라고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455]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거래에서 발생된 수입은 소득이 되지만, 통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이득도, 그 거래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454) 이하 사업소득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Wolters Kluwer(2019), ¶10-105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455) Wolters Kluwer(2019), ¶10-110.

데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노하우나 비밀공정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사용료(royalty)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더라도, 통상적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단,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면서 노하우나 비밀공정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사업으로서 판매용 재고자산(trading stock)을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통상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연도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의 보유자산을 회계장부에 재고판매용 자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의 수행으로 보기에 충분한 양의 거래를 한다면 주식도 판매용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판매용 자산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포함된다. 부분적으로 생산된 상품(partly manufactured goods)도 통상적으로 매매용 재고에 해당되며, 그 외에 다른 형태로 진행 중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소득에 포함된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융자 수수료와 커미션, 대출금 상환보증 수수료, 은행·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나 프리미엄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456] 계약의 변경이나 취소,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수입도 통상적으로 소득에 포함된다.[457]

나. 주요 사업소득

호주의 국세청에서 발간한 사업소득과 관련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안내서에 나와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58]

1) 현금소득

현금소득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현금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모두 포괄한다.

- 모든 현금수입(cash earnings)
- 쿠폰, 바우처, 기프트 카드 등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
- 사업체가 모기지나 개인 신용카드 계좌에 입금한 금액
- 은행이자, 배당, 의제배당(franking credits)

456) Wolters Kluwer(2019), ¶10-110.
457) Wolters Kluwer(2019), ¶10-114.
458) ATO, *Income and Deductions for Business,* 24 June 2019, pp. 2~8. (https://www.ato.go.au/misc/downloads/pdf/ qc33872.pdf, 2019. 12. 26. 접속).

2) 중개수수료(commission), 투자수입(investment earnings), 봉사료(gratuities), 보상 지급(compensation payments)

사업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commission), 투자수입(investment earnings), 봉사료(gratuities) 또는 보상 지급(compensation payments)을 수령하면, 그 수령한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개수수료 소득
- 특허권을 다른 주체가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사용료(royalty)
- 사업장 임대료 현금지급과 같은 인센티브 지불
- 사업 목적의 투자에 따른 이자, 세금의 과도 또는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
- 사업 목적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법인단계 납부세금에 대한 의제배당(franking credits)
- 사업체 수요 재산의 임대 수입
- 임대료, 고용에 따른 수수료(고용인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현금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지급받는 팁과 봉사료(tips and gratuities)
- 근로자 보상, 거래용 자산 손실이나 사업 중단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지급과 같은 보상금
- 세금 공제를 받은 불량채권 회수

3) 일상적인 사업활동(everyday business activities)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소득

일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연간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표 Ⅱ-1〉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표 Ⅱ-1〉 일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의 사례

활동	소득
비거래용 자산 (non-trading stock assets)의 처분	토지, 건물, 사무용 가구 또는 집기 등 비거래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자동차, 집기 등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처분에 따른 수입액에서 상각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른 상각 자산의 경우, 판매나 증여, 이전 등에 따른 순자본이득
거래용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	거래용 자산의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한다.

〈표 Ⅱ-1〉의 계속

활동	소득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금전 외의 대가 수령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물물교환을 통해 거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과세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가치 상승은 기초자산의 가치와 기말자산의 가치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거래 (isolated transactions)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된 거래로서 거래의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사업상의 수상(prizes or awards)	사업체가 지역 내 우수기업상과 같은 상을 수상하여 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보험청구에 따른 지급액	사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자료: ATO, *Income and Deductions for Business,* 24 June 2019, (https://www.ato.go.au/misc/downloads/pdf/qc33872.pdf, 2019년 12월 26일 접속), pp. 4~5.

4) 정부 지급(government payments)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등을 수령하였을 때, 그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연료세액공제 또는 PSO(Product Stewardship for Oil Program) 혜택
-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생산자 환급(producer rebate)
- 주류 제조업체의 소비세 환급
- 도제지원프로그램(Apprenticeship Incentive Program)에서 받는 것과 같은 보조금
-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5) 자본 이득과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

사업용 자산을 매각, 증여, 이전(transfer), 폐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자본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본 이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하고 손실은 차감한다. 사업용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모든 사산을 의미하지만, 자본 이득이나 손실은 사업장, 토지, 특허권, 영업권, 사업상 권리, 면허 등 특정 자산에서만 발생

한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에서는 자본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과세대상 소득에 어떻게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한다.[459]

6)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사업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그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7)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서 발생한 소득

공유경제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소득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을 공유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8) 크라우드 펀딩 수입(income from crowd funding)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이나 벤처의 후원자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 과세대상 여부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과 납세자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나 금융활동에도 전통적인 투자나 금융활동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9)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

인적용역소득은 주로 개인적인 기술이나 노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계약 또는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의 50% 이상이 개인의 노동과 기술, 전문성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라고 한다. 납세자가 사업체를 통해서 인적용역소득을 취득하고, 그 사업체가 인적용역사업체(personal services business)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대한 일반적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을 취득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인적용역사업체가 아닌 사업체나 파

459) 본장의 '4. 그 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참조.

트너십, 신탁 등을 통해서 인적용역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납세자 개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취급된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다.[460]

10) 국외원천소득(foreign income)

호주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호주 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한다.

11)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 취미활동에서 발생한 것
- 증여, 상속
-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품 및 상금(prizes and awards)
- 내기나 도박(betting and gambling) 상금(내기나 도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외)
- 부가가치세(GST) 징수액
- 차입금
- 사업주가 투입한 자본금
- 소규모 기업에 제공된 특정 재난 복구 보조금

다. 필요경비(genefal deductions)의 개념

호주에서는 사업자의 수익(profits)이 아니라 수입(earnings or proceedings)이 사업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사업비용이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ITAA 1997 Division 8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와 특정공제(specific decuction)로 규정된다. Section 8-1에서 일반공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과세소득을 취득하거나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손실 또는 지출

(2)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적 손실이나 지출

460) 본 장의 '4. 그 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참조.

그러나 자본이나 자본적 성격의 지출, 개인적 성격의 지출, 면세소득 및 비과세-비면제 소득의 취득이나 발생과 관련된 지출, 「소득세법」에서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손실이나 지출을 공제할 수 없다. Section 12-5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Section 8-1의 제2항을 법문 그대로 번역하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necessarily incurred) 손실이나 지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necessarily"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등의 강한 의미보다는 사업 목적상 "적합한 것이 분명한"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정 손실이나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특정할 사항은 아니다.[461]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금, 급여, 보너스, 팁, 수당 등, 상품 판매를 위해 지불한 광고비용, 접대비, 출장비, 임대료, 사용료 지급액, 자문비(counsel fee), 법원에 납부한 비용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출이 일반공제 대상이다.[462][463]

자본적 지출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비용, 불법적 활동에 소요된 비용, 벌금 등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464] 특정한 지출이 두 개 이상의 공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이중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 사업 시작 전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과거 판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작 전 실현 가능성 조사를 위한 사전활동인지를 구분하여 사업 시작 전 사전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465] 단, 사전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도 광산과 관련한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지출비용의 공제를 허용한다.[466]

지출한 비용이 개인적 용도와 사업 수행에 동시에 사용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라. 주요 필요경비 항목

다음에서는 호주 국세청에서 발간한 사업소득 및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공제 가능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을 요약 정리하였다.[467]

461) Wolters Kluwer(2019), ¶10-015.
46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pp. 201~202.
463) Wolters Kluwer(2019), ¶16-152.
464) Wolters Kluwer(2019), ¶16-152, 16-105.
465) Wolters Kluwer(2019), ¶16-154.
466) Wolters Kluwer(2019), ¶19-050.

1) 자동차 비용 공제

사업주는 사업에 사용된 승용차와 그 외 자동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연료비, 수리비 및 서비스비용, 차량 구매용 대출의 이자비용, 리스비, 보험료, 등록비, 감가상각비 등이다. 자동차 비용 공제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과세 목적상) 승용차와 기타 차량으로 구분된다.

- 승용차: 1톤 미만의 화물차, 9인승 미만의 승용차
- 기타 차량: 오토바이, 1톤 이상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자동차 관련 비용을 공제할 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사업용 사용을 구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만 공제하여야 한다. 집과 회사 간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본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경우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거리당 일정액 방식(the cents for kilometer method)과 일지 방식(the logbook method)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여러 대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승용차마다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비용 방식(the actual cost method)을 적용한다. 법인, 신탁의 경우에는 승용차, 기타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비용 방식만 적용한다.

거리당 일정액 방식(the cents for kilometer method)은 승용차 운행 거리(킬로미터)당 일정액을 곱하여 운행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차 한 대당 1년에 5,000km까지 허용되며, 운행거리를 입증하는 서면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조사할 때 일지 등을 요구할 수는 있다. 단위당 비용에는 연료 외에 자동차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015~2018년에는 단위당 비용이 66센트였는데, 2018~2019 과세연도와 2019~2020 과세연도에는 68센트이다. 1년에 5,000km 이상을 운행하고 그 비용을 공제하려면 일지 방식이나 실제 비용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지 방식(the logbook method)은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그 일지의 기록을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지를 활용하여 사업용 승용차 운행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한다.

② 운행일지에 기록된 총운행거리에서 사업용으로 운행한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467) ATO, *Income and Deductions for Business,* 24 June 2019, (https://www.ato.go.au/misc/downloads/pdf/ qc33872.pdf, 2019. 12. 26. 접속), pp. 12~54.

③ 연간 지출한 총자동차 비용의 합계에 위 ②의 단계에서 산정한 사업용 운행 비율을 곱하여 사업용 비용을 계산한다.

자동차 일지는 전자적인 방식이나 미리 인쇄된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을 사용하여도 된다. 실제 운행거리와 실제 연료비, 그리고 그 외 모든 자동차 비용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운행거리 산정을 위해 운행을 시작할 때와 종료 시의 오도미터 기록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운행에 대해 사업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운행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일지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한 첫 해에 최소 12주간 연속적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용-비사업용 비율을 산정하면, 그 비율을 연간 대표(representative) 비율로 보아 연간 사업용 승용차 비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대표 비율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전에 새로 일지를 작성하여 대표 비율을 갱신할 수 있다. 일지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한 첫 해에 일지를 기록한 기간이 12주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해까지 이어서 12주 이상 기록한 후에 대표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전 과세기간에 산정한 대표 비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대표 비율의 근거가 되는 일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두 대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의 12주 일지 기록 기간이 같아야 대표 비율이 인정된다.

일지 방식을 적용할 때, 승용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는데 승용차 감가상각비에는 일정한 한도가 적용된다. 2019-2020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한도는 차량 한 대당 57,581 호주달러이다. 2016-2017 과세연도부터 계속 동일한 한도금액이 적용되었다. 감가상각 한도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동률이 1 이하인 경우 즉, 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고 이전 연도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2019~2020년의 경우 조정률이 0.987로 1보다 작으므로 전년도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비용 방식(the actual cost method)은 기업이나 신탁의 경우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기타 자동차에 적용된다. 이 방식은 모든 자동차 관련 비용의 영수증을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에 사용된 부분만 비용 공제가 허용되므로, 자동차를 사업용과 개인적 용도로 혼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을 구분하기 위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앞에서 언급한 감가상각비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택 사업을 하는 경우, 집에서 사업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그 이동은 사업용 이동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고객이 있는 곳으로의 이동, 집기를 구매하기 위한 이동, 사업용 계좌 관리를 위한 은행 방문, 사업용 우편을 위한 우체국 방문, 회계사, 세무 전문가 등을 방문하기 위한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일상적인 사업활동에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불한 연료비 등 비용을 자동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사의 차를 종업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개인적 용도의 사용에 대해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가 부과되며, 부가급여세 납부액은 공제 가능하다.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자동차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배당이나 용자로 간주되며, 그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2) 재택사업 비용(expenses for a home-based business) 공제

재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사무실 점유비(occupancy expenses): 대출 이자, 임대료, 재산세(council rates), 토지세, 주택보험료 등
- 운영비(running expenses): 전기료, 전화요금, 시설 · 집기의 감가상각비, 가구 · 비품의 보수, 청소비 등
- 사업용 자동차 운영비: 집에서 고객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비 등

재택사업은 집이 주된 사업장인 경우 즉, 집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의 일정한 공간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에서 옷을 만들고, 고객이 집으로 와서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타일 기술자와 같이 주로 고객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집에서는 장부를 기록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재택사업에 해당한다. 집이 주된(principal or main) 사업장은 아니지만, 집에서 사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재택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무실 점유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임대료, 재산세, 토지세, 집과 집기에 대한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집의 일부분을 전적으로(exclusively) 또는 거의 전적으로(almost exclusively) 사업 수행 장소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 장소는 사업장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장 간판이 부착된 경우가 그러하다. 그 장소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고객이 방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집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진가의 홈스튜디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중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면적 비율이 사용되지만, 면적 비율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재택사업에 따른 사무실 점유비용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집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집을 판매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의 일부를 구분하여 전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의 매각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 중 사업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본이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운영비용은 집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공제되는데, 그 장소가 사업장으로서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의 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냉난방비, 조명 비용
- 사업용으로 사용된 유선전화, 인터넷 서비스 비용(휴대전화와 인터넷 비용은 자산 및 사업운영비로 별도로 취급)
- 감가상각비 및 보수비용 :
  - 컴퓨터, 고정된 공구, 기계 등 기계 설비
  - 의자, 책상, 서가 등 가구
  - 커튼, 카펫, 조명기구 등
- 청소비

운영비 중 사업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방법이어야 한다. ② 개인적 생활에 사용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택사업에서 사업 목적의 사용은 실질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부수적인(incidental)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객의 팩스를 받기 위해 팩스기를 24시간 켜 놓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전기료를 모두 사업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을 구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사용패턴을 적용하는 방법, 면적을 활용하는 방법, 사용 시간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사용패턴 방법은 대표적인 4주간의 일지를 작성하고, 그 일지에 나타난 사용패턴을 적용하여 사업용과 개인적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매년 대표적 4주의 일

지를 작성해야 하며, 정기적인 사용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면 연중 사용한 시간 또는 사용한 장소에 대해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면적 기준은 전기료, 가스요금, 청소비에 적용할 수 있다. 면적 기준은 집의 특정 부분을 전적으로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면적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할 때는 그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냉난방, 조명, 청소 및 가구 감가상각비는 면적 기준 대신 사용시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시간은 실제 시간을 사용하거나 설정된 시간별 사용패턴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사업용 사용 시간당 52센트의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유선전화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그 요금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 설치비는 공제할 수 없다. 전화 설치비는 자본비용이기 때문이다. 유선전화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하는 경우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화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다. 인터넷 비용의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시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상세 명세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 통화에서 사업용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하면 된다. 상세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및 인터넷 사용 패턴을 4주간 기록하여 사용패턴을 도출하고, 그 패턴을 적용하여 사업용 비용을 산출한다.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 상각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컴퓨터, 전동공구, 복사기, 가구, 카펫, 커튼, 자동차 등이 수명이 한정된 감가상각 자산이다. 사업체의 총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미만이면, 즉시상각(instant asset write-off)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구입비용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입 즉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즉시상각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상각자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공제를 할 수 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4주의 일지 작성을 통해 대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그 일지에는 사용한 자산과 사용 목적, 그리고 사용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여행경비 공제

사업주나 종업원이 사업목적으로 여행을 한 경우에 여행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 파트너의 경우에는 1박 이상의 여행 시 필수적으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일지 작성이 적극적으로 추천된다. 일지에는 여행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의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박 이상의 여행비용을 공제하려면 주거지와 여행 목적지가 달라야 한다. 당일 여행이든 1박 이상의 여행이든 모든 사업목적의 여행비용이 공제되는데, 공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운임
- 기차 · 버스 · 택시 등 각종 교통요금
- 자동차 렌트 요금 및 렌트에 부수되는 비용
- 숙박비
- 1박 이상의 경우 식비

다음과 같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사업 목적의 여행과 결합한 휴가, 가족 또는 친구 방문
- 사업 목적의 여행에 가족을 데려가는 비용
- 기념품, 선물
- 관광, 오락(entertainment)
- 비자, 여권, 여행보험
- 이사, 이주비용
- 사업 개시 전에 진행된 여행

여행비용을 공제한 경우에, 여행경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비행기표, 티켓, 여행일지, 사업용 경비와 비사업용 경비를 구분한 방법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4) 종업원 급여와 연금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및 급여, 연금(super fund) 및 퇴직저축계좌(RSA: retirement savings accounts)에 종업원이나 그 외 계약자들을 위해 기여한 연금기여금(super contributions)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임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면 매 지급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PAYGOW: pay as you go withhoding)를 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연금기여금 공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항목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468]

468) 본장의 '3. 연금소득과 연금기여금' 참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적 연금기여금(personal super contributions)을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적 연금기여금은 개인 납세자가 세후 소득에서 납부하는 연금기여금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인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는 이익이 배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있으면, 그 지급은 이익의 배분으로 본다.

5) 보수, 유지, 대체비용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공구, 사업장의 보수, 유지, 대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비용들이 자본비용이 아닌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가능한 비용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페인트 비용
- 배수로 관리, 배관 보수 및 유지
- 전기제품 수리, 기계 수립
- 누수되는 부분 수리
- 부서진 울타리, 깨진 유리 교체

자본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새로운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중요한 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자본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기계나 공구, 또는 다른 자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한 직후에 수선하는 경우에는, 구매·취득한 물건의 상태가 구매 또는 취득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리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자본비용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이나 자본비용 공제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6) 기타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일상적 사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문구류 구입비용, 건물 임대료, 거래용 자산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비용들은 작업비용(working expenses) 또는 수입비용(revenue expense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때, 이를 잘 기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이 사업 운영비에 해당한다.

- 재고자산 구매비, 배송료 포함
- 광고 및 스폰서 비용, 홍보비용
- 미래의 수입, 자금의 차입, 담보의 해제, 세무자문 등을 위한 법률 비용
- 입찰비용, 입찰에 실패한 경우 포함
- 부실채권
- 은행 수수료 및 요금
- 손해, 장애, 화재, 강도, 전문가 면책, 공공 위험, 자동차, 이익손실, 노동자 보상 등에 대한 보험의 보험료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
  -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 세금 납부, 고용주 부담 연금기여금 납부, 세금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납부를 위한 차입금
- 고급 자동차 리스비용
- 문구 비용
- 상업용 웹사이트 운영비: 사이트 유지 보수, 컨텐츠 업데이트, 인터넷 비용
- 상용 기성 소프트웨어 구독료
- 교통비, 운임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
- 주차비, 주차 벌금 제외
- 1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구매

이상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노동자조합, 생산자협회, 사업자협회, 전문가협회 등 가입비용
- 의복비, 직업 특성상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육, 기술 또는 전문 자격 관련 비용
- 사업용 · 전문 간행물, 정보서비스, 신문, 잡지 구독료
- 조합, 협회 등 가입비용
- 사업상 실외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한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비용
- 공제 가능한 기부금 수취 기관에 대한 기부금

7) 감가상각

감가상각 공제의 일반적 규정

자본비용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자본비용은 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 사업체 설립, 대체, 확대, 개선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ITAA 1997 Division 40에 규정되어 있다. 감가상각은 상각자산(depreciating assets)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락된 가치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각자산은 실질적 수명(effective life)이 제한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산을 말한다. 상각대상 자산의 구입 및 설치비용은 자산적 지출이 되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산의 가치 하락은 공제대상이 된다. 실질적 수명은 자산이 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감가상각 목적으로 계산하는 가치의 하락은 구입 및 설치비용과 실질적 수명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실제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ITAA 1997 Section 40-10). 실질적 수명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판단한다.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실질수명을 정할 수 있다. TR(Tax Ruling) 2019/5에서는 산업별, 자산별로 대부분의 상각대상 자산의 실질적 수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체적으로 실질 수명을 결정하는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469] 이 규정은 매년 갱신된다.

상각자산에는 기계, 장치, 자동차, 가구, 카펫, 커튼,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토지와 상품재고,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상각대상이 되기도 한다. 채굴, 채석, 탐사권 및 관련 정보, 지열탐사권, 지적재산권, 사내개발 소프트웨어, 통신케이블 시스템 사용권(IRU: Indefeasible rights to use a telecommunication cable system), 스펙트럼 라이센스(spectrum licenses), 데이터 캐스팅 전송기(datacasting transmitter) 면허,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업자가 취득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이트 접근 권한이 상각이 가능한 무형재산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저작권, 의장등록 등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은 법정 수명 기간 동안 정액법(the prime cost method)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정액법은 구입 및 설치비용을 실질적 수명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정액)을 사용한 기간 동안 매년 상각하는 것이다.[470]

469) TR(Tax Ruling) 2019/5, Table A, B.
470) Wolters and Kluwer(2019), ¶17-015.

일반적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the prime cost method)과 정률법(the diminishing value method)이 있다. 어느 경우든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상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자산의 40% 정도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감가상각비 공제액도 40% 차감하여야 한다.

상각자산을 처분하였을 때는 잔액조정(balancing adjustments)을 하여야 한다. 즉, 자산 처분 가액이 조정 가액(adjustable value)보다 크면, 그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처분 가액은 처분의 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조정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소규모 사업자 특례

연간 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ITAA 1997 Subdivision 328-D에 규정된 단순상각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Division 40의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는 저비용 상각자산(low-cost depreciating assets)의 취득비용을 즉시 상각(immediate write-off)하며, 다른 자산은 종합(pooling)하여 일률적으로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잔액조정(balancing adjustments)의 경우에도 단순화된 방법이 적용된다. 이 상각은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자산에만 적용되며,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혼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만 적용된다.

2019년 4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구입되어 설치 또는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개별 자산의 가격이 3만호주달러(2020년 7월 1일 이후 1천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이 적용된다. 취득 가격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상각자산을 종합하여 일률적으로 상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각률은 30%이다. 과세연도 중에 자산이 추가된 경우, 추가된 자산에 대해서는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자산을 추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15%의 상각률이 적용된다. 상각기간이 25년 이상인 자산은 일률적 상각에서 제외하여 Division 40에 규정된 일반적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471]

중규모 사업자 특례

연 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 이상, 5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도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471) Wolters and Kluwer(2019), ¶7-250.

2019년 4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구입되어 설치 또는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개별 자산의 가격이 3만호주달러(2020년 7월 1일 이후 1천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을 할 수 있다. 취득 가격이 3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472]

소액자산 즉시상각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소액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이 허용된다. 즉, 사업소득을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1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이 3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사업소득 외의 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직원 제공 도구 및 장비(employee-provided tools and equipment)를 들 수 있다.

저가자산 풀(low-value assets pool)

또한 저가자산(low-value assets)의 경우에는 종합(pooling)하여 일률적으로 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중 부가가치세(GST) 환급액을 뺀 금액이 1천호주달러 미만인 자산이 저가자산에 해당한다. 일반 상각자산 중 상각으로 인하여 장부가치가 1천호주달러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저가자산에 포함하여 일률적인 상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저가자산을 종합하여 일률적 상각을 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자산을 종합하여 일률적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각을 통해서 장부가치가 1천호주달러 미만이 된 경우에는 자산별로 저가자산 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저가자산 풀의 상각률은 37.5%이며, 과세연도 중에 구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18.75%의 상각률이 적용된다.

8) 기타 자본비용

감가상각 외의 자본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용의 공제가 허용된다.

- 소규모 기업의 착수비용(start-up expenses): 기업이 지불한 전문적 착수비용은 5년에 걸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매출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경

472) ATO, *Depreciation and capital expenses and allowances,* 24 April 2018, (https://www.ato.gov. au /misc/downloads/pdf/qc17053.pdf, 2020. 1. 6 접속).

우에는 비용을 지불한 연도의 소득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 법률 자문, 회계 자문, 정부 수수료 및 요금 등 스타트업 비용 등이 이러한 비용에 해당된다.

- 그 외 사업 관련 자본 비용: 사업을 착수하거나 종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특정 프로젝트 관련 비용(project-related expenses) 등은 5년에 걸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 관련 비용에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등이 포함된다.
- 건축비용: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구조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일정 기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 웹사이트 비용: 사업목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웹사이트 비용을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 풀(software development pool)에 포함시키면 유효수명이 5년이다.
- 내부개발 소프트웨어(in-house software): 내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풀에 포함하여 5년에 걸쳐 정률법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탄소 저감 숲 비용(carbon sink forest expenses): 탄소를 저감시키는 목적의 숲에 나무를 심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마. 손실의 공제[473]

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일부 공제 항목은 손실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킬 수 없는데 기부금, 개인연금기여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비상업적 손실 요건(non-commercial losses requirements)을 충족시키면 사업손실을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비상업적 손실 요건이 충족되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손실은 이월하여 사업손실에서 공제해야 한다.

- 1차 산업이나 전문적인 예술 사업을 수행하며, 그 과세연도의 다른 소득이 4만호주달러 미만(순자본이득은 제외)인 경우

473) 손실의 공제는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에 정리된 사업소득 손실공제 설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for Businesses*, 24 June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3872.pdf, 2019. 12. 26. 접속), pp. 63~65.

- 소득이 25만호주달러 미만(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수입은 제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이 2만호주달러 이상
  -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5년 중 3개 연도에 수익 발생
  - 사업용으로 50만호주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에 사용(사적 거주지와 그 부속 토지는 제외)
  -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자산이 지속적으로 10만호주달러 이상
- 호주 과세당국에 의해 다른 소득에서 사업 손실을 공제하도록 허용된 경우

바. 파트너십(partnership) 소득과 신탁(trust) 소득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트너십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총수입금액과 공제하는 비용이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파트너 간 배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별 파트너는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파트너십의 순이익 또는 손실 중 자신에게 배분되는 몫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배분된 것뿐만 아니라 배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에게 배분될 몫을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 양도차익과 관련해서는, 파트너들이 각각 양도차익 과세대상 자산의 일부를 보유하므로 개별적으로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손실을 산출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킨다. 파트너십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탁의 경우에도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신탁 단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관리자는 신탁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탁의 수혜자는, 신탁소득의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소득 중 자신에게 배분되는 몫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위신탁(unit trust), 가족신탁분배세(family trust)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위신탁으로서 신탁 단위(units)가 주식거래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신탁 또는 신탁 지분 소유주가 50명 이상이고, 20명 이내의 지분 소유자가 보유하는 지분이 총지분의 75%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신탁을 공공단위신탁(public unit trade)이라고 한다. 공공단위신탁으로서 트레이딩 신탁(trading trust)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탁을 공공 트레이딩 신탁(public trading trust)이라고 하며, 소득세 신고 시 법인으로 취급된다(ITAA 1936, Div. 6C). 이 경우에 신탁은 지분 소유자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받은 지분 소유자는 배당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트레이딩 신탁(trading trust)은 신탁이 신탁받은 주식이나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하거나 수동적인 투자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가족신탁(family trust)은 가족 그룹(family group)에 의해 지배되는 신탁으로서, 가족신탁으로 취급되기를 선택한 신탁을 말한다. 가족 신탁의 지분 소유자가 신탁을 소유한 가족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지분 한도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소득·자본을 분배, 대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가족신탁분배세(family trust distribution tax: FTDT)가 과세된다. 가족신탁분배세는 신탁의 소득이나 자본을 신탁 지분 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과세되며,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공받은 수입금액이 비과세-비면세 소득이 된다.

2.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의 개념과 포괄범위[474]

근로소득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고용주가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직업이 하나인 경우나 여러 개인 경우나, 상근 근무자이거나 시간제 근무자이거나 관계없이 고용을 통해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급여 및 임금(salary and wages)

고용을 통해 얻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소득은 급여 및 임금이다. 급여 및 임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급을 포괄한다.

- 주급, 격주급, 월급

474) 이하 근로소득의 내용에 대해서는 호주 국세청의 설명서인 다음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20 May 2019. pp. 2~6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 커미션(commissions)
- 상여금(고용주와 고용관계 유지에 따른 상여금 포함)
-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casual work) 수당
- 육아휴직수당(parental leave pay)
-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 부부(동성애자 부부 포함) 중 1명이 무급휴가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새로 출산하였거나 입양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최대 2주간 최저임금 지급
- 다음과 같은 보험의 지급
  - 소득보장보험(an income protection policy)
  - 질병 또는 사고 보험(a sickness or accident insurance policy)
  - 근로자 보상제도(a workers compensation scheme)
- 육군, 해군, 공군 예비군에서의 지속적인 상근에 따른 급여 및 수당
- 국외 근무수당: 호주 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호주의 공식적인 개발지원(ODA)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소득, 단, 호주 군인으로서 국외에서 ODA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과세면제

2) 수당 및 기타 고용에 따른 소득

납세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을 받았을 때, 그 지급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 수당(allowances):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별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자동차, 통근, 의복, 세탁비
  - 근로조건에 따른 수당: 예, 위험, 고도(height), 먼지, 비행기 승무
  - 자격 또는 특정 의무 수당: 예, 응급처치 자격, 안전요원(safety officer)
- 팁(tips), 봉사료(gratuities), 그 외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지급
- 자문수당, 자발적 봉사에 대한 지급
- 배심원 참여수당

산업 법, 보상 또는 계약에 따라 통근수당을 받거나 야근에 따른 식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소득 명세서에 그 지급이 포함되지 않음
- 국세청에서 정한 합리적인 수당 규모를 넘지 않음
- 지급받은 수당 전체를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함

3) 일시불 지급

근로의 대가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해당되는 지급액은 소득을 지급받은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사용하지 않은 연간 휴가, 장기 근무 휴가, 특정 휴가에 대한 보상을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 연체된 임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

4) 신고대상 부가급여(fringe benefits)와 연금기여금(super contributions)

그 외에 근로 관련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용주가 지급한 신고대상 부가급여: 예,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저리 대출, 무료 개인건강보험
- 신고대상 연금 기여금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

이 항목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정부지원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므로 수령액을 신고해야 한다.

나. 근로 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 공제[475]

1) 근로 관련 비용의 개념과 특성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필요경비를 ITAA 1997 Section 8-1에 규정된 일반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된 직원이 의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이 공제대상이 되며, 납세자가 그 지출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제시된 고용의 조건이라는 점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적 지출

475) 이하 근로소득 관련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호주 국세청의 설명서인 다음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20 May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pp. 17~84.

이나 개인적 용도의 지출, 가족을 위한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지출된 비용이 근로 목적도 있고 사적인 목적도 있는 경우에는 근로 관련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보상을 한 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특정 직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보증하고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그 도구의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나 목수의 수공구, 미용사가 사용하는 미용도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학자, 전기공, 화가 등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한 계산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의 보증 및 수리에 사용된 비용도 일반공제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도 허용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 기술서적 등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업의 피고용인이 광고목적으로 선물, 인사 카드 등을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수요자에게 보여주거나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자신이 지불한 비용, 홈오피스(home office)를 유지하는 데 소요된 비용도 공제대상이 된다.

주로 일반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 관련 경비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및 교통비
- 의복, 세탁, 드라이크리닝 비용
- 재택근무 사무실 운영비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도구, 장비, 기타 자산 비용
- 그 외 근로 관련 경비

근로 관련 비용은 그 비용을 지불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근로를 시작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호주 국세청은 직업, 산업별로 발생하는 근로 관련 비용에 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476] 다음에서는 직업, 산업별로 특화된 비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관련 비용에 대해 설명한다.

476) ATO, *Occupation and Industry Specific Guides*, 28, May 2019.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 and-deductions/Occupation-and-industry-specific-guides/, 2020. 1. 7. 접속).

2) 교통비

근로의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회사 간 통상적인 통근비용은 사적 비용으로 간주된다. 특정한 경우에는 집-회사 간 교통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두 개의 작업장 간 이동에 따른 교통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교통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두 개의 작업장 간 이동에 따른 직접 교통비: 예, 두 개의 직업이 있으며, 둘 중 하나의 직업의 작업장이 집이 아닌 경우
- 정규 작업장에서 정규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예, 고객의 사업장)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 작업장 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집에서 일을 시작한 후 작업장(work place)으로 이동하여 같은 고용주를 위해 근로를 하는 경우
- 근무지가 이동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매일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집에서 출발하여 정규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 작업장이나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 다른 장소가 정규 작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사업장에 보관할 수 없는 부피가 큰 도구나 장비(예, 확장 사다리, 첼로 등)를 휴대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 사소한 업무 관련 일을 하는 경우: 예,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
- 하루에 두 번 이상 집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 긴급 대기하는 경우: 예, 집에서 업무 대기를 하는 중에 고용주가 연락하여 출근하는 경우
- 직장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예, 야간 근무, 초과 근무
- 재택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근로를 위해 그 사업장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
- 집에서 일하는 경우

3) 승용차 비용

근로자가 자신의 차를 근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이용되었다면, 사적 용도로 이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근로 관련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승용차(car)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세법상 승용차는 1톤 미만의 화물 운송, 9인 미만의 승객 운송용 차량을 의미한다. 그 외의 차량을 근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료 등 직접 비용을 여행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용을 산출하여 공제하여야 하는데, 연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업무용 사용과 사적 목적의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기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근로를 위해 부피가 큰 도구나 장비(예, 확장 사다리, 첼로 등)를 사용해야 하는데, 작업장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는 경우
-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업무 관련 컨퍼런스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 물건을 배달하거나 수거하는 경우
- 서로 다른 두 개의 근무장소로 이동해야 하나 하나가 집이 아닌 경우: 예, 부업을 하는 경우
- 정규 근무지에서 정규 근무지가 아닌 대체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고 정규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
- 정상적인 근무지나 집에서 정규 근무지가 아닌 대체 근무지(예, 고객의 사업장)로 이동하는 경우
- 순회 작업(itinerant work)을 수행하는 경우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보면, 집과 직장 간의 통상적인 출퇴근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급여희생으로 지원된 차량이나 비용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오토바이나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비용을 근로 관련 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운행 거리당 일정액 방식(cents per kilometer method)과 일지 방식(logbook method)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업소득의 자동차 비용 공제 항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477]

477) 본장 '1. 사업소득' 참조.

4) 그 외 여행경비

그 외 여행경비로서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지역의 컨퍼런스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1박 이상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식사비, 숙박비 등 – 당일 여행에 대해서는 식사비를 공제할 수 없다.
- 다른 사람의 승용차나 근로 관련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 예, 연료비, 수리 및 유지비용
- 항공료, 버스, 기차, 트램(tram), 택시 비용
- 교량 및 도로 통행료
- 자동차 주차비, 렌트비

고용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았으며 급여 명세에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한다. 급여 명세에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고 비용을 공제해도 되고, 아예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공제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급여 명세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수령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비용에 차이가 있으면 수령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여행경비 중 일부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근로 관련 경비만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는 여행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여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경비를 고용주로부터 받았으며, 공제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합리적인 비용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5) 의복, 세탁, 드라이크리닝 비용

직업에 특화된 의상, 보호복(protective clothing), 독특하고 특별한 의복을 구입하고 세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의복의 구입 및 세액에 대한 기록과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대표적 기간 기록이 유지 되어야 한다.

- 공제 비용이 15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근로 관련 비용 공제 총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의복 관련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고,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공제액은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직업에 특화된 의상은 특정 직업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대중이 의복만으로도 쉽게 직업을 파악할 수 있는 의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요리사가 입는 의복이 이에 해당한다. 바텐더가 검은색 바지와 하얀색 셔츠를 입는 경우, 은행원이 양복을 입는 경우, 수영 교사가 수영복을 입는 경우와 같이 특정 직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의복을 구매하여 입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보호복은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 작업장의 환경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복과 신발 등을 의미한다. 보호복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보호복에 해당한다.

- 내화성 의복, 자외선 차단 의복
- 안전색 조끼
- 미끄럼 방지 간호사 신발
- 콘크리트 작업자용 고무장화
- 철(steel)로 덮인 부츠, 장갑, 튼튼한 셔츠와 바지
- 소득 창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상복이 손상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덧입는 바지

독특하며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제복을 입는 경우에, 그 제복 관련 비용도 공제된다. 고용주가 특정 기업의 직원임을 표시한 제복을 입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 제복과 함께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양말, 신발 등의 비용도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강요하지 않은 제복은 고용주가 호주의 Ausindustry에 등록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그 제복에 부수되는 양말, 신발 등의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작업복의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세탁 비용이 150호주달러를 초과하며, 총근로 관련 비용 공제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 식비, 포상에 따른 여행경비 지원, 여행 경비 제외)에는 세탁 비용에 대한 영수증, 일지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하다. 서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데, 세탁이나 건조, 다림질을 직업 하는 경우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관련 의복만 포함된 경우, 1회당 1호주달러
- 업무 관련 의복과 사적 용도의 의복이 혼합된 경우, 1회당 50센트

드라이크리닝 비용도 공제할 수 있는데, 총업무 관련 경비 공제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 식비, 포상에 따른 여행경비 지원, 여행경비 제외)에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6) 재택근무 비용(home office expense)

집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자의 경우 그 근로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주로 공제되는 비용은 재택사무실 운영비, 근로 관련 전화비 및 인터넷 비용이다. 컴퓨터 감가상각비(근로 관련 부분에 한해서), 사무용 집기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재택사무실 점유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는데, 재택사무실 점유비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이다.

- 재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앞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근로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집의 일부를 사용자의 사업에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사업장소로 활용된 부분에 대한 점유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7) 본인 교육비(self-education exepense)

근로자 본인이 현행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을 받거나 과세대상 직장 장학금(taxable bonded scholarship)을 받는 경우에 자신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다.

본인 교육비는 교육 과정이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자로서 현행 업무활동과 충분한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할 수 있다.

- 현행 업무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경우
- 현행 업무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광범위하게 보면 현행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주말에 임시직 판매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전일제로 패션사진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며, 간호사가 의사로 전직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직장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제공자가 고용주라면 정상적인 근로 관련 교육 요건이 만족된다.

본인 교육비 공제를 할 때는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경비와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 경비에는 교육에 따른 숙식비, 컴퓨터 소모품비, 등록금 및 수업료, 장비 및 기술적 도구 구입비, 장비 수리비, 요금, 고등교육비 융자금 수수료(원금은 제외), 재택사무실 운영비, 이자비용, 인터넷 비용, 전화비, 주차비, 우편요금, 문구 구입비, 학생회비, 소모품비, 교과서비, 전문·학술지 구독료, 집과 학교간의 통학비, 직장과 학교

간의 교통비가 포함된다.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구입 가격이 300호주달러 이하이면 구입연도에 일시 상각할 수 있으며,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 수명 기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자산이 교육에 사용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공제가 허용되며, 사적 사용과 교육목적의 사용이 혼용되었으면 교육목적으로 사용한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자동차 비용은 집과 학교, 직장과 학교 간의 이동에 사용한 비용이 공제된다. 그러나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마지막 단계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융자금의 원금 상환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재택사무실 비용의 경우, 점유비는 공제할 수 없다.

교육비 공제 항목은 〈표 Ⅱ-2〉에 정리된 바와 같이 5개 범주로 구분된다. A범주는 교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로 구성되며, B범주는 감가상각비, C범주는 수리비, D범주는 자동차 비용으로 구성된다. E범주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수적 비용으로 독자적으로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주 A의 공제 차감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된다.[478]

〈표 Ⅱ-2〉 교육비 공제항목의 구분

범주	공제 가능 비용
A	등록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생회비, 학생 서비스와 편의시설 비용, 대중교통비, 일지 방식을 활용한 경우의 자동차 비용(감가상각비 제외), 공부 장소를 별도로 설정한 경우의 공부방 운영비
B	컴퓨터, 책상, 자동차(일지 방식을 적용한 경우) 감가상각
C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자산의 수리비, 자동차 수리비 제외
D	거리당 일정액 방식을 적용한 경우의 자동차 비용
E	실제 지출된 비용이지만 공제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면 - 교육 관련 교통비로서 다음의 경우에 마지막 이동에 따른 비용 •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 • 직장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으로 이동 - 과세대상 장학금 수혜자로서 장학금 수여자가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가 아닌 경우, 집과 정상적인 교육장소 간의 이동 경비 - 강의나 다른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육아비용(child care costs) - 컴퓨터, 책상과 같은 교육에 사용된 자산의 과세기간 중 구입비용. 이 범주의 비용은 A범주 비용에서 차감된 250호주달러 범위 내에서 공제

자료: ATO, *Education and Study,* 27 June 2019, pp. 6~7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16918.pdf, 2020. 1. 7. 접속).

478) 교육비 공제규모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ATO, *Education and Study*, 27 June 2019, pp. 6~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 pdf/qc16918.pdf, 2020. 1. 7. 접속).

자신의 교육 관련 비용의 공제액 산정방식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79]

- 1단계: 범주 A의 비용을 합산한다.
- 2단계: 범주 C, D, E의 비용을 합산한다.
- 3단계: 250호주달러에서 2단계의 결과로 나타난 합계액을 차감한다. 이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놓는다.
- 4단계: 3단계에서 산출한 금액을 1단계의 결과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놓는다.
- 5단계: 4단계에서 산출한 금액에 B, C, D 범주의 금액을 합산한다.

8) 도구, 장비 및 기타 자산

소득 창출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구, 장비, 기타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 자산들을 근로 목적과 그 외 개인적 목적으로 혼용하였다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의 비용만 공제하여야 한다. 컴퓨터를 혼용한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만 공제한다.

공제방식은 자산 구매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 세트의 일부가 아닌 품목으로서 구매가격이 3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전체의 가격이 300호주달러 이하인 세트의 일부 품목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한 연도에 즉시 공제할 수 있다.
- 구매가격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품목, 또는 전체적으로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세트의 일부분을 구매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공제방식을 적용한다.

공제 가능한 도구, 장비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계산기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 책상, 의자, 조명기구
- 서류 캐비넷과 책장
- 스패너, 망치, 드라이버 같은 수공구 및 그라인더, 샌더, 해머드릴 같은 전동공구
- 모자, 보호안경,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화장품 등 보호 품목
- 전문 도서

479) ATO, *Education and Study*, 27 June 2019, p. 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 pdf/qc16918.pdf, 2020. 1. 7. 접속).

- 안전장비
- 기술적 기기(technical instruments)

9) 기타 근로 관련 경비

도서, 정기간행물, 디지털 정보 비용

도서, 정기간행물, 디지털 정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온라인 구동, e-book, e-journal과 같이 전자적으로 출판된 도서 구입, 그 외 디지털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구입비가 300호주달러 미만이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공제가 가능하다.

- 주로 사업소득 외의 과세대상 소득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 같은 해에 구입된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같은 해에 구입된 300호주달러 초과 품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품목이 아니다.

구입가격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거나 300호주달러 초과 품목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이 품목을 전문도서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 공제를 할 수 있다.

현금부족액, 고객의 불량부채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입증할 수 있는) 현금 부족액이나 고객의 불량부채를 고용주에게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손실로 처리하거나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휴대폰, 인터넷, 거주지 유선전화 등을 근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화, 인터넷을 근로 목적과 개인적 용도로 혼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목적으로 사용된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목적 비용만 공제하여야 한다. 50호주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4주 이상의 대표기간 동안 일지를 기록하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의 비율을 입증해야 한다.

전화의 사용이 부수적이고, 50호주달러 미만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분석하여 근로 목적과 개인적 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다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선전화 건당 0.25호주달러
- 휴대폰 전화 건당 0.75호주달러
- 휴대폰 문자 0.1호주달러

전화요금 청구서에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분석하여 근로 목적과 개인적 사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때, 전화 건수와 통화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세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4주 이상의 대표기간 동안 일지를 작성하여 사용패턴에 대한 합리적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 비용

선거 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정부, 주 및 준주, 연방 선거의 후보자로서 소요되는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방정부의 경우 각 선거마다 공제금액이 1천호주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선거 비용을 공제한 후에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노조선거 비용은 지속성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지속성은 조합에서의 지위가 선거 없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에서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과정에는 선거 비용과 재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호 안경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은 사적인 것으로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 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로 과정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창출과 충분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 고글(safety goggles), 실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햇빛으로 인한 눈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의 보호 선글라스(protective sunglasses)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보호 선글라스에는 처방을 받은 선글라스와 눈부심 방지 안경이 포함된다.

소득보장보험

소득의 감소에 대한 대비로 소득보장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의 혜택 중에 소득의 성격과 자본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만 공제된다. 육체적 부상에 대한 보험, 연금보험의 일환으로 공제된 보험 등의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 외상보험, 중환자 보험 등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야근 식비

야근 식비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서면 증빙 없이도 공제할 수 있다.

- 산업적 수단(예, 보상)의 일환으로 야근 식비 수당을 받으며,
- 야근할 때 음식물을 구매하고,
- 합리적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경우

야근 식비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야근 식비를 실비로 공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액에 대한 서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 풀 공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본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의 자본비용을 프로젝트 풀에 종합해서 공제할 수 있다. 그 프로젝트는 과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근로 활동과 충분한 관계가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가 조합이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인 여행도 하였다면 개인적인 지출은 공제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비용, 협회 가입비, 협상대리인 비용

노동조합 비용, 상업 · 경영 · 전문가 협회 가입비, 사용자와의 새로운 노사협의를 위해 노조의 협상 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비용의 경우, 기여금을 납부

한 노조원의 소득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파업펀드(a strike fund)에 기여한 부분만 공제가 허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이나 협회 등이 공제 가능한 비용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아동보호 근무 체크(Working with children check)

호주에서는 아동과 함께 근무하거나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아동보호 근무 체크(WWCC: working with children check)를 요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WWCC를 받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기존 근로자가 그 지위에서의 소득을 계속 받기 위해 적합성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
- 관련 부문에서 계속 일하였던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을 위하여 적합성 점검이 필요한 경우

최근에 아동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신규 고용을 위하여 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3. 연금기여금과 연금소득

가. 연금기여금[480]

호주의 연금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TTE(Tax-Tax-Exemption) 형식을 띠고 있다. 즉, 기여단계에서 과세하고, 운용단계의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비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여단계에서 일정 한도 내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특혜세율을 적용하며, 운용단계에서도 낮은 수준(15%)의 특혜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호주 국민들의 연금기여를 촉진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기여단계에서 세금 혜택을 받은 이후에 노년이 되기 전에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과도하게 일찍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에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일종의 조세혜택 남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을 일찍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단계에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과도한 연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기여단계에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480) 호주 국세청의 다음 자료 중 연금 기여금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Super*, 28 November 201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23212.pdf, 2020. 1. 14. 접속).

기여 단계에서의 과세를 보면, 세전 기여 또는 특례기여(before-tax contribution or concessional contribution)의 경우에는 기여할 때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 세금은 기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여금을 받은 연금기금에서 납부한다. 조정과세소득이 25만호주달러 이상이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전 기여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기여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설정한 급여희생기여금, 그리고 피고용인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한 임금의 9.5% 이상의 기여금을 연금기금에 기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SG(super guarantee) 기여라고 한다. 급여희생기여금(salary sacrifice contribution)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급여 일부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연금기금에 기여하는 것이다. SG 기여가 특례기여의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희생기여금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용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기여를 하고 기여금의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의 두 가지 기여금이 특혜 기여의 한도에 미치지 못할 때,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특례기여의 한도는 연간 25,000호주달러이다. 특례기여 한도를 초과하는 세전 기여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된다.

〈표 Ⅱ-3〉 호주의 연금 기여단계에서의 과세 요약

(단위: 호주달러, %)

	종류	연간한도	세부담	
			한도내	한도 초과분
특례기여	고용주 부담 SG 급여희생 자발적 기여-소득공제	25,000	15%, (30%)[2]	- 종합과세 - 인출가능 - 미인출 시 비특례 기여금
비특례 기여	근로자 자발적 기여	100,000[1]	비과세[3]	- 초과분, 투자소득 인출 가능 - 인출된 투자소득 종합과세 - 미인출 초과분에 47% 세율로 세금 부과

주: 1) ① 65~75세 또는 ② 65세 이하이면서 총연금잔액 160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총연금 잔액이 160만호주달러를 넘으면 비특례 기여한도 = 0)
2) 총조정소득이 25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3) 세후소득에서 기여한 것이므로 총합과세 세율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 ATO, *Super,* 28 November 2018 자료에서 추출하여 저자 작성.

총연금잔액이 50만호주달러 미만이면, 사용되지 않은 특례기여 한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월은 5년까지 가능하다. 특례기여 한도를 초과하는 세전 기여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된다. 특례한도를 초과한 기여금은 연금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하지 않으면 비특례 기여금에 포함된다.

피고용인이 세후소득에서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세후기여금(after-tax contributions) 또는 비특례 기여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이라고 한다. 이 기여금은 소득세를 납부한 세후소득에서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연금기여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후기여금에 대해서도 연간 납입 한도가 있다. 한도금액은 연령과 총연금잔액에 따라 달라진다. 65세 미만이고, 총연금잔액이 160만호주달러 미만이면 10만호주달러의 세후기여가 가능하다. 65~75세는 총연금잔액에 관계없이 매년 10만호주달러의 세후기여가 가능하다. 세후기여금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과 관련 투자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한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된다. 초과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최고한계세율 47%(소득세 최고세율 45% + 의료부담금 2%)가 적용된다.

나. 연금소득[481]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면, 기여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한 세후기여금 또는 비특례 기여금에서 발생한 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즉, TTE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소득(taxable component)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과세분(taxed element)이고 다른 하나는 비과세분(untaxed component)이다. 과세분은 기여금 기여단계에서 15% 또는 3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고용주가 기여한 기여금과 납세자 본인이 기여한 특례기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비과세분은 정부에서 기여금을 보조한 것으로서 기여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다. 연금소득 과세단계에서 과세분에 비해 비과세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여 단계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된 세전기여금 또는 특례 기여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령별로 다른 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연금수령 기준 연령(preservation age)이 있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1960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55세가 적용되며, 그 이후 출생연도가 1년씩 늦어질 때마나 기준 연령이 1세씩 늘어나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는 60세의 기준 연령이 적용된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납세자의 기준 연령이 60세가 된다.

481) 호주 국세청에서 정리한 다음의 연금소득 과세제도 설명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Withdrawing your Super and Paying Tax,* 29 August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7785.pdf, 2020. 1. 13. 접속).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시불로 수령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과세분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즉 TTE가 적용된다. 비과세분의 경우에는 연금형태로 받는 연금소득에는 한계세율이 적용되고, 일시금의 경우에는 비과세금 일시불 한도(untaxed plan cap) 이내에서는 한계세율과 17%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 한도를 초과하면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된다. 2018-2019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한도는 151만 5천호주달러이다. 60세는 되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기준 연령을 넘은 자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분의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비과세분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시불로 수령하면, 과세분의 경우 일정 한도 즉, 저율과세한도(low-rate cap)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17%(의료부담금 2%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되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이보다 낮을 때는 그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2018-2019년도의 저율과세한도는 20만 5천호주달러이다. 비과세분의 경우에는 저율한도 이내 금액에 대해 최고 17%의 세율이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에는 최고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Ⅱ-4〉 호주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구분		수령형태		과세방법
비과세연금		연금, 일시금		비과세
과세연금, 과세분	60세 이상	연금, 일시금		비과세
	기준연령 ~60세	연금		한계세율, 15% 세액공제
		일시금[1]	저율한도 이내	비과세
			저율한도 초과분	한계세율과 17%[2] 중 낮은 세율
	기준연령 미만	연금		한계세율, 장애연금 15% 세액공제
		일시금		한계세율과 22%[2] 중 낮은 세율
과세연금, 비과세분	60세 이상	연금		한계세율
		일시금		한계세율과 17%[2] 중 낮은 세율[3]
	기준연령 ~60세	연금		한계세율
		일시금[1]	저율한도 이내	한계세율과 17%[2] 중 낮은 세율
			저율한도 초과분	한계세율과 32%[2] 중 낮은 세율[3]
	기준연령 미만	연금		한계세율
		일시금		한계세율과 32%[2] 중 낮은 세율[3]

주: 1) 2017/2018년의 저율과세한도(low-rate cap)는 20만 5천호주달러임
2) 의료부담금 2% 포함
3) 비과세분 일시금 한도(untaxed plan cap)이내의 경우(2018-19년 한도 151만 5천호주달러), 한도 초과분에는 최고한계세율 적용

자료: ATO, *Withdrawing Your Super and Paying Tax,* 29 August 2019 자료에서 추출하여 저자 작성(https://www.ato. gov.au/misc/downloads/pdf/qc37785.pdf, 2020. 1. 13. 접속).

기준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과세분으로서 장애인 연금인 경우에 한하여 15%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일시불로 수령하면 과세분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과 22%의 세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한다. 비과세분 일시금은 비과세분 일시금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한계세율과 32%의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4. 그 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포괄적 소득세제가 적용된다. 세법에 규정이 있는 소득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개념상 소득에 해당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정리한 근로 제공의 대가, 사업소득, 연금소득 외에도 통상적으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 중에서 특기할만한 부분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 보조금(super pensions, and government payments)[482]

호주 정부가 지급하는 간병인 지원금(carer payments), Austudy, New Start, Youth Allowance 지원금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483] 일부 보조금은 과세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 정보들이 다양한 정부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면세소득이지만 신고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 Part 2.5에 따른 간병인 보조금(Social Security Act 1991 part 2.19는 제외)
- Centrelink가 지급한 노령연금 지급 연령 이전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484]
-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의 퇴역군인이 받는 부상자 지원금(invalidity service payments)
- 배우자 연금(partner service pension)

---

482)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4~6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83) Austudy: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학생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New Start: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자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Youth Allowance: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16~24세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484) Centrelink: 호주 정부의 복지지원 기관

- 배우자와 퇴역군인이 모두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전이고, 퇴역군인이 부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전이고, 퇴역군인이 사망하였으며, 사망 시에 부상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나. 인적용역 소득(personal service income)[485]

인적용역은 개인의 기술과 노력을 통해서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인적용역 소득(PSI: personal service income)을 기업, 파트너십 또는 신탁을 통해서 수취함으로써 세부담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인적용역 소득은 모든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의 소득을 포괄한다.

- 금융 전문가
- 정보기술 자문가
- 기술자(engineer)
- 건축 종사자(construction workers), 의료 종사자(medical practitioners)

인적용역 사업(PSB: personal service business)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소득이 있더라도 PSI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1) PSI 규정 적용 여부 판정 방법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서 PSI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단계: PSI 테스트(test)

PSI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발생하는 개별 계약의 건별로 소득이 다음 중 어떤 성격을 가진 소득인지 구분한다.

485) 호주 국세청에서 정리한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 안내서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ATO, *Personal Services Income*, 7 August 2019, (https://www.ato.gov.au/misc/ downloads/pdf/qc16906.pdf, 2020. 1. 9. 접속).

- 그 용역을 위해 개인이 제공한 노동, 기술, 지식, 전문성 또는 노력에 의해 발생한 부분
-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 또는 공구 등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발생한 부분

노동, 기술, 지식 등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50%를 초과하면 그 소득이 PSI가 된다. 개인이 제공한 노동, 기술, 지식 등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50% 이하이면, 그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가 PSI가 아니다. 사업체의 피고용인으로서 받은 급여나 임금 및 기타 소득은 PSI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나 파트너십, 신탁을 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PSI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소득, 소득 창출목적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자산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기업의 소득은 PSI가 아니다.

2단계: 결과(results) 테스트

PSI가 있는 경우에, 다음 단계에서 결과 테스트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결과 테스트가 충족된다.

- 특정 결과의 도출: 특정 결과를 도출해야 대가를 지급받는다.
- 공구, 장비 공급요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공구나 장비를 직접 공급하여야 하며, 고객은 사소한 수준의 공구나 장비만 제공한다.
- 잘못된 부분의 수정: 오류나 잘못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한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계약별로 결과 테스트를 하여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한 과세연도의 PSI 중 75% 이상이면 결과 테스트가 충족된다. 기업이나 파트너십, 신탁으로서 여러 명의 개인이 PSI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결과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3단계: 80% 원칙(rule)

다음 단계로는 과세연도 내에 발생한 PSI를 고객별로 구분하여 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한 고객과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는 합하여 하나의 고객으로 본다. 중개 대리인(commission agents)으로서 특정인(principal)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principal)의 고객이 용역 제공자의 고객이 된다.

4단계: 잔여 테스트(the remaining test)

3단계에서 80%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다음 세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 세 개의 테스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PSB로 인정되며, PSI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독립적 고객 테스트(unrelated clients test): PSI가 둘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고객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대중(public) 또는 대중의 일부(sections of the public)에게 업무제의(offer)를 하여 업무를 받아야 한다.
- 고용 테스트(employment test): 사업체가 PSI를 창출하는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고용을 하거나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고용이나 계약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의 역할이 시장 가치로 보아 주된 업무(principal work)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견습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한 명 이상의 견습공을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테스트(business premises test): 사업장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장이 주로(50% 이상) PSI를 창출하는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장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장은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private premises)와 분리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장은 고객의 장소(clients' premises)와도 분리되어야 한다.

2) PSI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과세 방법

개인사업자로서 PSI 규정이 적용되면, PSI에 대해 몇 가지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이 규제는 PSI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PSI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PSI 질문지(Personal services income questions)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SI에 적용할 수 없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집(특수관계자의 집 포함)의 임대료, 저당 차입금 이자, 재산세(rates), 토지세
- 비서업무 등 일을 도와준 데 대해 배우자,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가
-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비용들

기업이나 파트너십, 신탁을 통해서 PSI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PSI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같은 비용 공제 제한이 적용된다. 기업이나 파트너십, 신탁의 PSI는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 배분(attributed)되어야 하며, 개인 단계에서 PSI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종업원 지주제도[486]

종업원 지주제도에 대한 과세규정은 ITAA 1997 Div. 83A에 규정되어 있다. 고용주가 자사의 주식이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면, 시가와 양도한 금액의 차액 즉, 할인액은 양도를 받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국세청에 양도받은 종업원의 납세자번호(TFN: Tax File Number)를 제공하여야 한다. TFN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주 정부는 종업원지주제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특례제도를 제공한다. 과세이연제도, 1천 달러 감면제도, 신생기업(start-up) 특례제도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특례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특례를 위한 기본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다음에 각 제도의 특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음의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 종업원지주제도 특례의 기본조건이 만족된다.

- 피고용인의 고용주나 그 고용주의 지주회사가 주식이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공급해야 한다.
- 양도되는 주식이나 주식을 취득할 권리는 보통주 또는 보통주를 취득할 권리여야 한다.
- 주식이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주된 사업이 주식을 취득, 판매, 보유하거나 그 외 투자를 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하며, 비고용인은 고용주와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회사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피고용인이 주식이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한 직후에 고용주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1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신생기업(start-up) 특례제도는 특정 소규모 신생기업이 제공하는 옵션(options)의 할인액을 0으로 하는 특례를 말한다. 이때 할인액은 옵션 제공 시점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실현되었을 때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487] 신생기업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 피고용인이 주식이나 주식을 취득할 권한을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옵션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식이 어떤 승인된 시장에도 상장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옵션 공급자나 관련 그룹의 어떤 기업도 설립한 지 10년 이내여야 한다.

---

486) 종업원 지주제도에 대한 과세제도 설명은 Wolters Kluwer(2019), ¶10-085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87) Wolters Kluwer(2019), ¶10-090.

- 옵션을 공급한 기업의 (옵션을 취득한 해의) 전년도 총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이하여야 한다.
-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옵션을 취득하는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과세이연제도는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식이나 주식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과세를 이연된 과세시점(ESS deferred taxing point)까지 이연하는 제도이다. 다음의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이 이연된 과세시점이 된다.[488]

- 고용이 종료된 시점
- 권리가 확정되거나 처분된 경우(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옵션 행사 전에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없고 권리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시점
- 옵션을 행사한 경우(옵션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 처분할 방법이 없고,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제 처분 제한이 없는 경우): 옵션의 권리가 확정되고 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
- 옵션의 기초가 되는 주식을 판매한 경우(옵션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 처분할 방법이 없고,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제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주식을 상실할 위험이 없고 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시점
- 옵션을 취득한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한 이연된 과세시점에서 30일이 지나기 전에 옵션이나 권리를 처분하거나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시점이 과세시점이 된다. 이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천호주달러 감면제도는 광범위한 주식 공유의 경우(broad-based share plans)에 적용된다. 주식이나 주식을 구매할 권리를 취득한 때에 과세하되, 혜택을 받은 피고용인 1인당 1천호주달러를 과세대상이 되는 할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앞에서 언급한 기본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489]

- 비차별적인 주식공유여야 한다. 즉, 호주 거주자인 정규직 종업원의 75% 이상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주식 공유여야 한다.
- 혜택을 받은 종업원의 주식을 몰수하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종업원이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488) Wolters Kluwer(2019), ¶10-089.
489) Wolters Kluwer(2019), ¶10-087.

그리고 혜택을 받는 자가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혜택을 받은 해의 종업원의 조정총소득이 18만호주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의 만족 여부는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주식공유제도가 다른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점만 설명하면 된다.

라. 투자소득[490]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 배당, 임대료, 투자펀드 소득, 자산양도차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자는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나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투자에서 발생한 벌금적 성격의 이자, 과세관청이 지급한 이자, 생명보험 보너스, 국외원천 이자를 모두 포괄한다.

배당은 금전이나 다른 자산 또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을 모두 포괄한다. 배당은 통상적으로 상장투자회사, 공모신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위신탁, 법인형 유한 파트너십에 의해 지급된다.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의 의제배당(imputation)과 납부세액 공제(franking credit)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신고 되어야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임대료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의 손상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면제한 경우, 체납된 임대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건물의 손상 등에 대한 보상으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상환금액 또는 보상금도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세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단기간 동안 방이나 집 전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도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만 신고하면 된다.

관리형 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의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받은 소득도 신고하여야 한다. 현금 관리 신탁(cash management trust), 머니마켓 신탁(money market trust), 모기지 신탁(mortgage trust), 단위신탁(unit trust), 각종 관리형 펀드(managed fund)가 이러한 신탁에 해당한다.

490) 투자소득에 대한 설명은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6~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마. 양도소득(Capital Gains)[491]

호주에서는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한다. 호주의 조세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나 국세청의 호주 조세제도 설명에서도 양도차익과세(CGT: Capital Gains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법이나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양도차익의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복잡한 내용들을 일반적 소득과 구분하여 설명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차익과세는 소득세법인 ITAA 1977 Pt 3-1과 3-3에 규정되어 있다.

양도차익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양도소득(net capital gain) 즉,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 즉, 양도차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한다. 양도차익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자산양도에 따른 수입액에서 그 해에 발생한 자본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본손실은 자산의 구입가액과 자산의 거래에 소요된 비용을 포괄한다. 자본손실은 양도소득에서만 차감할 수 있으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한 과세연도에 다 차감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월 기간은 제한이 없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개인의 경우 50%, 연금기금의 경우 33⅓% 감면한다. 개인은 호주 거주자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이득세 이벤트(CGT event)가 발생하였을 때 자본 수입이나 손실이 발생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자본이득세 이벤트는 CGT 대상 자산의 처분이다. 많은 경우에 CGT 자산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물, 토지, 주식, 신탁재산, 수입품, 개인용 자산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쉽게 인식되지 않는 CGT 자산도 있는데, 가족의 주거용 주택, 계약상의 원리, 영업권 등은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가족의 주거용 주택은 일반적으로 CGT가 면제된다. ITAA 1997 Section 104-5에 CGT 이벤트가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계약이 체결된 때가 CGT 이벤트 시점이다. 자산이 손실되거나 파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시점,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견된 시점 또는 파기된 시점이 CGT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이다. 계약상의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시점이 CGT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이 된다.

491) 양도소득 과세제도 설명은 호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설명 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Capital Gains Tax,* 15 June 201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 pdf/qc22147.pdf, 2019. 12. 26. 접속).

양도차익은 자본 수입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자본비용은 원가(cost base)와 축소조정원가(reduced cost base)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원가는 양도차익을 인식할 때 사용되며, 축소조정원가는 양도차손을 인식할 때 사용된다. 즉, 자본 수입이 원가보다 크면 그 차액이 양도차익이 된다. 그리고 자본 수입이 축소조정원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이 양도차손이 된다. 만약 자본 수입이 원가와 축소조정원가 사이에 있으면,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고 양도차손도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연도 내의 각각의 CGT 이벤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연간 합계하여 그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양도차익의 합계가 그 해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이전 연도들에서 이월된 양도차손의 합계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이 과세대상 소득이 포함되는 순양도차익이 된다. 반대로 그 해에 발생한 양도차손의 합이 양도차익의 합보다 크면 그 차액이 그 해에 발생한 순양도손실이 된다.

원가(cost base)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첫째, CGT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금전이나 재산의 시장가치
- 둘째, CGT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수적 비용 또는 CGT 이벤트 관련 비용:
  - 부동산 중개서비스, 법률 자문 등 거래 관련 서비스 수수료
  - 양도비용
  - 인지세, 기타 유사한 비용
  - 광고, 마케팅 비용
  -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또는 배분과 관련된 비용
  - 자산 관련 조사비용(토지 소유권 조사비용 및 유사 비용)
  - 부동산양도법(conveyancing kit) 비용 또는 유사한 비용
  - 대출 비용(대출 신청 수수료, 담보 말소 비용 등)
  - 연결회사 그룹 본사의 CGT 자산을 그룹 구성원과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그룹 구성원이 아닌 자(entity)에 지불한 비용
- 셋째, CGT 자산 보유비용: 자산 보유세, 토지세, 수리비, 보험료 등과 CGT 자산 구입 비용 및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로서 공제되지 않음 금액
- 넷째, 자산의 가치 상승 또는 보전, 이전 및 설치를 위해 지불한 자본비용
- 다섯째, CGT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보전하고 지키는 데 소요된 자본비용

축소조정원가 역시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둘째 및 넷째, 다섯째 요소는 앞에서 설명한 원가 구성요소와 같고 셋째 요소에서만 차이가 있다.

- 셋째, 잔액조정금액(balancing adjustment amount)[492]

CGT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CGT 이전 자산(pre-CGT asset)으로 불리는 1985년 9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CGT가 면제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주거주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2핵타(hectares) 이내의 토지, 자동차, 오토바이, 취득금액 1만호주달러 미만의 개인용 자산(보트, 가구, 전자기기 등), 취득금액 500호주달러 미만의 수집품, 과세대상 소득 창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재고자산, 면세소득이나 비과세-비면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직업상 상해 또는 개인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 도박·게임 또는 상금이 있는 경쟁에서 얻은 상금이나 손실, 할인된 채권 등은 CGT가 면제된다.

호주에서는 CGT 대상 자산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자본비용을 자본 수입에서 공제할 때, 같은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한 자본 수입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 가지 종류는 ① 취득가격 500호주달러 이상의 수집품, ② 취득가격 1만호주달러 이상의 개인용 자산, ③ 그 외의 자산이다. 이러한 구분은 취미 또는 개인적 용도의 자본 지출로 인해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차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특정 자산이나 특정 이벤트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내용을 보면, 증여의 경우 시가로 증여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증여자는 증여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고 수증자는 그 시점의 시가를 원가에 포함한다(ITAA 1997 s112-20).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과세가 롤오버(rollover)된다. 즉,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자본이득세를 연기하는 것이다. 회사가 배당을 재투자하고 주주에게 재투자된 배당금 대신 새로 발행한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배당받은 금액을 신주에 투자한 것으로 취급한다. 여러 시기에 나눠서 구입한 주식을 매각할 때, 주주가 어떤 것을 매각하는지 지정할 수 있다. 하루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평균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에 2.5% (특정한 경우에는 4%)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액은 원가와 축소조정 원가에서 차감된다. 그러므로, 건물의 경우에 감가상각이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본이익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CGT 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년 감면(15-year exemption): 소규모 기업을 15년 이상 운영한 55세 이상의 사업자가 은퇴를 목적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492) 잔액조정(balancing adjustment): 감가상각 자산의 처분 가액이 상각 후 잔존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며, 반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정.

CGT가 면제된다.

- 적극적 자산 50% 감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던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50% 감면된다. 1년 이상 보유 자산의 50% 감면에 추가하여 감면되므로,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면 75%가 감면된다.
- 소기업 은퇴 면제: 55세 미만으로서 소규모 기업을 매각하고, 양도차익을 연금기금에 납부하는 경우에 CGT가 면제된다. 이 경우, 감면 상한은 평생 합계 50만호주달러이다.
- 소기업 롤오버: 소기업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매각하고, 특정 대체 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대체자산에 사용된 금액은 CGT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과세감면이 아니라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바. 국외원천소득(foreign income)[493]

호주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호주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국외소득은 호주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국외원천소득을 호주에서 신고할 때는 모든 소득을 호주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환율은 상황에 따라 특정 시세를 적용하거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주요 과세대상 국외소득은 다음과 같다.

- 연금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자산 소득 및 투자소득
- 해외자산 양도차익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주는 4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에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및 투자 거래 상대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외국 과세기관과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외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호주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벌금과 가산금이 부과된다.

493)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설명은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10~11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사. 그 외 소득[494]

1) 보상(compensation) 및 보험 지급액

소득 보호, 질병 및 사고 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 보험(worker compensation scheme)으로부터 받은 손실된 급여 및 임금 보상액은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부상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합의를 본 경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시금이나 정기적으로, 또는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지급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 보호, 질병 및 사고 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 보험(worker compensation scheme)으로부터 받은 지급액도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으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상품 및 상금(prizes and awards)

은행, 건물조합, 신용조합 또는 기타 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복권이나 경품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수령한 상품이나 기타 혜택의 가치를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상품은 현금,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휴가,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로또나 래플(raffles) 등 일반적인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상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495] 그러나 복권에서 당첨되어 받은 상품을 처분한 경우에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양도차익은 신고하여야 한다. 게임쇼에 참가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그에 따른 부상을 받거나 수상을 하는 경우에만 수상금액을 신고한다.

494)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10~11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495) 래플(raffles)은 특정 기금 모금을 위한 단기복권을 의미한다.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소득공제

가. 일반공제

호주의 소득세제에서 소득공제는 일반공제(general deduction)와 특정공제(specific deduction)로 구분된다(ITAA 1997 s8-1). 일반공제는 소득 창출에 필요한 필요경비 공제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소득금액에서 법정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수입금액을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이라고 정의하고, 과세대상 소득에서 필요경비인 일반공제와 특정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즉,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앞 장의 소득에 대한 설명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과 관련된 일반공제 즉, 필요경비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 이자, 배당, 또는 다른 투자소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도 일반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되는 배당이나 다른 면세소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자 세미나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정 투자소득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공제할 수 있다.

아. 특정 공제

1) 국세청(ATO) 이자[496]

국세청에 납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수령하는 이자는 다음과 같다.

- 일반 이자(GIC: general interest charge)
- 과소 납부 이자(SIC: shortfall interest charge)
- 지연 납부 이자(LPI: late payment interest)
- 조기 납부 이자(IEP: interest on early payment)

496)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84~96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 과다 납부 이자(IOP: interest on overpayment)
- 환급 지연 이자(DRI: delayed refund interest)

국세청에서는 2014년부터 개별 납세자에게 공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자(GIC, SIC, LPI)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자(GIC · SIC · LPI 환급액 또는 감면액), 국세청이 지급한 이자(IEP, IOP, DRI)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2) 세금 신고 비용[497]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세금 신고서와 활동 명세서 준비 및 제출
- 세무 자문을 위한 이동에 따른 여비: 예, 공인 세무자문가와의 회의를 위해 소요된 여비
- 소송비용: 법원, 행정심판소 수수료, 사무법무사(solicitor), 법정변호사(barrister) 및 기타 법률비용
- 변호사 비용
- 공제 가능한 증여, 기부 재산 또는 보존 계약 체결 비용 공제를 위한 평가

세금 신고서와 활동 명세서 준비 및 제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 참고자료 구입
- 세금 신고 준비 과정 이수
- 공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공인 세무자문가로부터 자문 – 공인 세무대리인, 사무변호사, 법정변호사
- 국세청과 세금 문제 논의
-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497)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96~97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3) 기부금[498]

공제 가능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적격 기관(DGRs: deductible gift recipients)에 기부, 증여한 경우에만 기부, 증여액을 공제할 수 있다. DGR은 비영리기관(not-for-profit organisations)으로서 보건, 교육, 연구, 사회복지, 국방, 환경보호, 가족보호, 국제문제, 스포츠·오락, 문화, 소방, 중개펀드(ancillary fund) 등 분야에서 다양한 DGR이 지정되어 있다.[499] 납세자는 기부를 받는 기관의 납세자 번호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DGR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자선기관이 DGR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선기금을 모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는 DGR이 아닌 경우가 많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기부를 입증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500]

기부, 증여 공제를 적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DGR에 기부하거나 증여해야 한다.
- 실질적 기부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이전해야 하며, 그 대가로 물질적 혜택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물질적 혜택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 또는 증여해야 한다. 주식 등 금융자산도 포함한다.
- 증여, 기부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DGR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공제 가능한 기부에 대한 부가 요건을 규정한 경우가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부 금액, 2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 재산이나 주식 기부: 각각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치
- 문화유산 프로그램에 따른 기부(Heritage and Cultural program):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금액

등록된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기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당의 당원 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부액은 2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지 12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하여야 한다. 한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498)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97~101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499) ancillary fund: 기부자와 기부를 받을 DGR을 연결시켜주는 특정 펀드.

500) ATO, *Getting Started*, 19 June 2017, p. 17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 qc33586.pdf, 2020. 1. 13. 접속).

최대 금액은 정당에 대한 기부금 1,500호주달러, 무소속 후보에 대한 기부금 1,500호주달러이다.

기부,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DGR은 기부를 받았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니다. 영수증 외에도 은행 거래 명세서 등으로 기부를 입증할 수도 있다.

4) 개인 연금기여금

개인 연금기여금(pers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이나 퇴직저축계좌(RSA: retirement savings account) 기여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의 기여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한 경우, 그 기여금은 펀드 단계에서 1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 기여금 공제에 대해서는 앞의 제Ⅱ장 '3. 연금기여금과 연금소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5) 공제되지 않은 국외 연금 기여금[501]

국외 연금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공제되지 않는 구매금액(UPP: undeducted purchase price)이 있는 경우, 세부담 절감을 위한 공제가 허용된다. 모든 국외 연금에서 UPP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국외 연금에서만 UPP가 발생한다. UPP는 개인이 연금에 기여한 금액을 말한다.

2. 세액공제

가. 세액공제의 개념

한국에서는 부양가족의 부양, 의료비 지출 등 납세자의 특정한 상황이나 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절감하고자 할 때,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소득 창출에 소요된 필요경비 외에 세금신고 관련 비용과 기부금뿐이다. 세금신고 관련 비용은 보기에 따라서 필요경비로도 볼 수 있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특정 공제는 기부금 공제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501)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 105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한편 세액공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영어로 tax offset 또는 rebate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용어는 같은 의미이다.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offset)와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있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가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세액공제액 중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는다. 즉, 세액공제액이 산출한 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0이 되며, 남는 공제액은 무시된다.

나. 주요 세액공제

1) 건강보험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urance)의 세액공제 가능성 여부는 보험 대상자의 최고 연령과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세금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공제액이 산정된다. 이 공제는 환급 가능한(refundable) 공제이며, 공제액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502]

2018~2019년에 보험 대상자 중 최고 연장자가 65세 미만인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독신자의 경우 소득이 90,000호주달러 이하이면 2019~2020년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25.059%이다. 소득 90,001~105,000호주달러 구간에는 16.706%, 소득 105,001~140,000호주달러 구간에는 8.35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140,001호주달러 이상이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구간 구분 기준으로 각각 180,000, 210,000, 280,000호주달러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공제율은 독신자의 경우와 같다. 보험대상자 중 최고 연장자가 65~69세인 경우에는 최대 공제율이 29.236%로 더 높다. 그리고 최고 연장자가 70세 이상이면 최대 33.41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고 연장자 연령이 높아지면 소득구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각 구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높아진다. 어떤 경우든 독신자는 140,001호주달러, 가족 가입자의 경우에는 280,001호주달러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502) 사적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 참조.
ATO, *Medicare Levy,* 27 June 2019, pp. 15~24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 /qc27030.pdf, 2020. 1. 14. 접속).

〈표 Ⅲ-1〉 사적 건강보험 세액공제율: 최고령자가 2018~19년에 65세 미만

(단위: 호주달러, %)

소득수준		2018. 7. 1 ~ 2019. 3. 31	2019. 4. 1 ~ 2020. 6. 30
독신	90,000 이하	25.415	25.059
	90,001~105,000	16.943	16.706
	105,001~140,000	8.471	8.352
	140,001 이상	공제불가	공제불가
가족	180,000 이하	25.415	25.059
	180,001~210,000	16.943	16.706
	210,001~280,000	8.471	8.352
	280,001 이상	공제불가	공제불가

자료: ATO, *Medicare Levy,* 27 June 2019, pp. 34~35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 /qc27030.pdf, 2020. 1. 14. 접속).

호주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구간을 기본 계층(base tier), 계층(tier) 1, 계층 2, 계층 3의 네 개로 구분하는데, 보험료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계층은 계층 3이다. 기본 계층에 가장 높은 공제율(〈표 Ⅲ-1〉의 25.059%)이 적용되고, 계층 1에는 한 단계 낮은 공제율(16.706%), 계층 2에는 더 낮은 공제율(8.352%)이 적용된다.

2) 정부 보조금 수혜자

특정 정부 보조금(Australian Government allowances and payments)을 받는 자는 수혜자 세액공제(beneficiary tax offset) 적용대상이 된다.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받는 납세자는 그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있으면 약간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혜받은 보조금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ITAA 1936 s160AAA (1), (3)).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일 때 적용되며, 적용대상 보조금이 6천호주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15%를 곱한 금액이 공제된다.[503]

503) Wolters Kluwer(2019), ¶15-315.

3) 병상자(invalid) 부양 및 간병인(invalid carer) 비용[504]

다음에 해당하는 병상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병상자 부양 세액공제가 적용된다(ITAA 1997 s61-5).

- 배우자
- 16세 이상의 자녀, 형제, 자매
- 16세 이상의 배우자의 자녀, 형제, 자매
-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위의 병상자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장애자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특별 수요 장애 연금(special needs disability support pension)
- Veterans'Entitlement Act 1986에 따른 부상퇴역군인연금(invality service pension)

또한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16세 이상 자녀나 형제, 자매인 병상자를 간병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상자 간병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그 간병에 대해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간병인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병상인 간병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장애인 지원 연금을 받는 병상인
  - 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특별 수요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 Veterans'Entitlement Act 1986에 따른 부상 퇴역 군인 연금(invality service pension)을 받는 경우

2018~2019년에 적용되는 최대 공제액은 2,717호주달러인데, 이 공제액 규모는 물가상승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된다.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의 조정총소득(ATI: adjusted total income)이 282호주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4호주달러당 1달러씩 공제액이 차감된다. 병상자를 부양하는 납세자의 조정총소득이 10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505]

---

504)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p. 109.

505) Wolters Kluwer(2019), ¶15-300.

4) 중저소득층 세액공제[506]

저소득층 세액공제

저소득층 세액공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66,667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이면 최대 공제액 445호주달러가 적용되고, 과세소득이 37,000호주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1호주달러당 1.5센트씩 공제액이 감소하여 과세소득이 66,777호주달러에 도달하면 0이 된다(ITAA 1936 s159H, 159N).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18~2019년의 과세소득 20,542호주달러까지 비과세되어 공식적인 비과세 기준 18,200호주달러보다 면세점이 높아진다.[507]

중저소득층 세액공제

중저소득층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126,000호주달러까지 적용된다. 최대 공제액은 연 1,080호주달러이며, 최소 공제액은 연 255호주달러이다. 납세자의 소득 수준, 세금 납부액 등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공제액을 계산하여 세금신고서에 포함한다. 이 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액공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세소득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이면 255호주달러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과세소득이 37,001~48,000호주달러이면, 255호주달러에 더하여 과세소득 중 37,000호주달러 초과분의 7.5%가 공제되며, 공제한도는 1,080호주달러이다.
- 과세소득이 48,001~90,000호주달러이면, 최대 세액공제액인 1,080호주달러가 공제된다.
- 과세소득이 90,000~126,000호주달러이면, 1,080호주달러에서 90,000호주달러를 초과한 과세소득의 3%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506)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pp. 110~111.

507) Wolters Kluwer(2019), ¶15-100.

5) 의료비[508]

장애인 보조기구, 수행간병(attendant care), 노령자 간병 비용에 적용되던 순의료비 공제(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는 2018~2019 과세연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ITAA 1936 s159P).

6) 고령자, 연금 수급자[509]

호주 국적의 고령자는 고령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SAPTO: senoirs and pensioners tax offset) 대상이 될 수 있다(ITAA 1936 s160AAAA).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호주 정부의 연금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18~2019년에 적용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Centrelink로부터 받는 호주 정부의 연금보조금을 받은 경우
- DVA(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부터 연금, 수당, 보조금을 받은 경우
- Centrelink 노령연금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 기간 중에 호주 정부 노령연금 자격이 생겼는데 청구하지 않았거나 소득 또는 자산요건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킨 경우
  - 10년간 지속적으로 노령연금 목적상 호주 거주자였거나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거주자였으며, 그 중 중 5년간 지속적으로 거주자인 경우
  - 거주지 면세 자격이 있는 경우 – 난민이나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special humanitarian program)으로 호주에 도착한 경우
  - 호주에서 미망인이 된 여성(본인과 사별한 남편이 호주 거주자였던 경우)이 노령연금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 직전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직전에 미망인 B 연금, 미망인 보조금 또는 파트너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국제 사회보장 조약(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508)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 113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참조.

509)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114~116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 퇴직군인 연금 연령 요건을 만족하고, 과세연도 중에 DVA로부터 연금, 수당,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는데 청구하지 않았거나 소득 또는 자산요건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킨 경우
  - 적격 전쟁 복무를 한 퇴역 군인
  - 연방군, 연합군, 해군 제대자로서 적격 복무를 한 자

Centrelink로부터 받는 호주 정부 연금은 6월 30일 기준으로 65세 6개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DVA로부터 연금, 수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퇴역군인 연금 연령 요건을 만족시키고 6월 30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2018~2019년에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그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510]

-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할인소득(RI: rebate income)이 50,119호주달러 미만
- 할인 소득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신고대상 연금 기여금(고용주 기여금, 개인연금기여금 포함), 순투자손실의 합계(total net investment loss)(순금융투자손실과 순임대재산 손실 포함), 조정 부가급여(adjusted fringe benefit) 합계 금액을 말한다.
  - RI가 32,279호주달러 이하이면 2,230호주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RI가 32,279호주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1호주달러당 12.5센트가 감소되어 RI가 50,119호주달러가 되면 공제액이 0이 된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결합 할인소득(combined rebate income)이 83,580호주달러
  - 부부 각각 RI가 28,974호주달러 이하이면 1,602호주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 각각 RI가 28,974호주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1호주달러당 12.5센트가 감소되어 RI가 41,790호주달러(부부 합하여 83,850호주달러)가 되면 공제액이 0이 된다.
- 과세대상 기간 중 어떤 시점에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둘 다 양로원에서 지내게 되어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되는 경우, 결합 할인소득 95,198호주달러 미만
  - 부부 각각 RI가 31,279호주달러 이하이면 2,040호주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10) Wolters Kluwer(2019), ¶15-310.

- 부부 각각 RI가 31,279호주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1호주달러당 12.5센트가 감소되어 RI가 47,599호주달러(부부 합하여 95,198호주달러)가 되면 공제액이 0이 된다.

7) 연금 관련 세액공제[511]

연금소득 세액공제

연금기여금 및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앞의 제Ⅱ장 '3.연금기여금과 연금소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연금소득의 경우 비과세 연금소득과 과세 연금소득이 있는데, 과세 연금소득 중 과세분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과세분은 기여금 납부 시 연금기금에서 기여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을 말한다. 60세 이상인 자가 연금을 받을 때는 그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 지급 기준 연령(preservation age)을 초과하였으나 60세 미만인 자가 과세 연금소득 중 과세분을 연금으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 지급 기준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에 한하여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 연금 기여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낮아서 배우자를 대신하여 연금이나 퇴직저축계좌(RSA)에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 배우자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40호주달러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혼인을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연금 펀드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 배우자의 소득이 37,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7,000호주달러를 초과하면 공제액이 감소하며, 40,000호주달러가 되었을 때 공제액이 0이 된다.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540호주달러의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2017~2018년 이전 연도의 배우자 과세소득과 신고대상 부가급여, 신고대상 고용주 연금기여금의 합계가 13,800호주달러 미만임

511)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116~11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 2017~2018년의 배우자 과세소득과 신고대상 부가급여, 신고대상 고용주 연금기여금의 합계가 40,000호주달러 미만이고 기여금이 본인(기여자)의 공제대상이 아님
- 2018~2019년과 그 이후 연도에, 배우자 과세소득과 신고대상 부가급여, 신고대상 고용주 연금기여금의 합계가 40,000호주달러 미만이고 기여금이 본인(기여자)의 공제대상이 아님
- 기여금은 연금펀드(super fund)에 대한 기여이며, 그 펀드는 기여금을 납부한 소득발생 연도의 법규에 따른 연금펀드임
- 기여금을 납부할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호주 거주자임
- 기여금을 납부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항구적으로 분리되어 별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
- 2017~2018년과 그 이후 연도에 배우자가 연도별 비특례기여한도(non- concessional contribution cap)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기여금이 납부된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직전에 연금 총잔액이 이체잔액한도(transfer balance cap)에 도달하였거나 그 한도를 초과하였음(2018~2019년의 일반적인 이전잔액한도는 160만호주달러임)

비특례기여한도는 매년 세후소득에서 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하며, 2019~2020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한도는 10만호주달러이다. 한도를 초과한 기여금은 연금기금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기여자의 소득공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된 부분이 발생하면 초과된 기여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투자소득의 85%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하지 않으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최고한계세율(메디케어 부담금 포함 47%)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체잔액한도는 누적된 연금계좌 잔액에서 비과세 '퇴직단계(retirement phase)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이다. 160만호주달러가 한도이다. 이 한도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조정되며, 10만호주달러 단위로 반올림된다. 이체잔액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퇴직단계 연금의 일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그 초과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단계 계좌의 투자소득이 발생하여 잔액이 160만호주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단 한도가 초과된 이후에 투자손실로 인해 퇴직계좌 잔액이 160만호주달러 미만으로 축소되더라도 더 이체할 수는 없다.

8) 특정 지역, 국외복무 군인[512]

특정 지역 세액공제

특정 벽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세액공제(zone tax offset)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외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국외복무 세액공제(overseas forces tax offset)가 적용된다.

호주 정부는 특정 지역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외딴 지역을 Zone A, Zone B, 특구(special area)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지역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신자의 경우 Zone A에는 338호주달러, Zone B에는 57달러, 특구에는 1,173호주달러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지역에 통상적인 거주지(usual place of residence)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183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ITAA 1936 s79A).

-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에 통상적인 거주지를 둔 기간이 5년 미만
- 첫해에 183일 미만 거주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첫해와 현 과세연도 중에 거주한 기간이 합하여 183일 이상이고, 현 과세기간의 첫날에 해당 지역에 거주

국외복무 군인 세액공제

다음의 군대에 소속되어 국외에서 복무를 한 경우에는 국외 복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ITAA 1936 s79B).

- 호주국방군(Australian Defense Force)
- UN군(United Nations armed force), 소득이 면세소득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국외소득 면세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복무하면 전액 공제받고, 183일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일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신자의 경우 338호주달러이며, 피부양자가 1명인 경우에는 1,516호주달러이다.

512) 호주 국세청 설명자료인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TO,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pp. 119~121(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Ⅳ 시사점

다른 국가의 조세제도를 살펴본 것만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각의 국가들이 그 국가만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조세제도가 발전하여 왔으며, 그 국가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조세제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호주의 소득세제가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이라기보다는 소득세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호주의 소득세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느낀 인상적인 점들에 대해 정리한다.

첫째, 호주의 소득세제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소득의 개념이 통상적 소득이라는 것이다. '통상적 개념상 소득이 되는 것'이라는 정의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을 통해서 호주는 포괄주의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통상적인 개념 즉, 상식적으로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이 있다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둘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일반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호주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교통비, 자동차 경비, 여행경비, 본인 교육비,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 등이다. 특히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교육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교육비와 부양가족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호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며, 본인 교육비만 직업의 수행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관련 필요경비로 공제가 허용된다.

셋째, 소득의 개념에서 '통상적 개념의 소득'이라는 매우 단순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소득세제 설명서에는 매우 자세하게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상당히 최근의 개념들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유경제 소득, 클라우드 펀딩에 따른 소득 등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호주 소득세제 중 특이한 제도 중 하나로 특정 전문가의 평균소득과세제도가 있다. 스포츠맨, 연예인 등 소득의 변동성이 큰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평균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평균하는 기간은 4년이다. 즉,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이전 4년의 소득 합계를 4로 나눈 평균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특정 연도의 소득

이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소득세법을 보면, 장이나 절 등의 구분 시 각 장, 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된 조항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내용을 정리한 조항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항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세청,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0.
_____,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이경희,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pp. 1~1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19*, CCH Australia Limited, 2019.

호주 소득세법령

ITAA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ITAA 1936
TR(Tax Ruling) 2019/5 Income Tax: Effective Life of Depreciating Assets (applicable from 1 July 2019)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홈페이지에 탑재된 호주 조세제도 설명 자료

ATO, *Getting Started*, 19 June 2017,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3586.pdf, 2020. 1. 13. 접속).
_____, *Capital Gains Tax,* 15 June 201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22147.pdf, 2019. 12. 26. 접속).
_____, *Depreciation and Capital Expenses and Allowances,* 24 April 201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17053.pdf, 2020. 1. 6. 접속).
_____, *Super,* 28 November 201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23212.pdf, 2020. 1. 7. 접속).
_____, *Education and Study*, 27 June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16918.pdf, 2020. 1. 7. 접속).
_____, *Fringe Benefits Tax(FBT)*, 29 March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16941.pdf, 2020. 1. 7. 접속).

_____, *Income Averaging for Professionals 2019*, 30 May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58648.pdf, 2020. 1. 8. 접속).

_____, *Income and Deductions*, 30 May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 pdf/qc31943.pdf, 2020. 1. 7. 접속).

_____, *Income and Deductions for Businesses*, 24 June 2019, (https://www.ato.gov.au/ misc/downloads/pdf/qc33872.pdf, 2019. 12. 26. 접속).

_____, *Individual Tax Return Instructions 2019*, 30 May 2019, (https://www.ato.gov. au/misc/downloads/pdf/qc57974.pdf, 2020. 1. 7. 접속).

_____, *Medicare Levy,* 27 June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 qc27030.pdf, 2020. 1. 14. 접속).

_____, *Occupation and Industry Specific Guide*, 28 May 2019, (https://www.ato.gov.au/ 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Occupation-and-industry-specific-guides/, 2020. 1. 7. 접속).

_____, *Personal Services Income*, 7 August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16906.pdf, 2020. 1. 9. 접속).

_____, *Super*, 28 November 2018,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23212.pdf, 2020. 1. 14. 접속).

_____, *Super co-contribution*, 13 September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17469.pdf, 2020. 1. 8. 접속).

_____, *Withdrawing Your Super and Paying Tax*, 29 August 2019, (https://www.ato.gov.au/misc/downloads/pdf/qc37785.pdf, 2020. 1. 13. 접속).

부록: 호주 소득세법 주요 조문

호주 연방 헌법에 따르면, 세금을 규정한 법은 세금에 대해서만 규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에서 하나의 주제(subject)만 다루도록 되어 있다(호주 헌법(Australian Constitution s55). 그러므로 소득세,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관세 등 개별 세목별로 별도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 세목에 대해서도 부과(imposition), 세율(rates), 평가(assessment) 등 주제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소득세 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 ITAA) 1997과 1936이다. ITAA 1997은 당초에 ITAA 1936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전부 대체하지는 못하여 아직도 두 가지 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ITAA 1997과 ITAA 1936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hapter 1 Introduction and core provisions
- Part 1-1 Preliminary
- Part 1-2 A Guide to this act
- Part 1-3 Core provisions
- Part 1-4 Checklists of what is covered by concepts used in the core provisions

Chapter 2 Liability rules of general application
- Part 2-1 Assessable income
- Part 2-5 Rules about deductibility of particular kinds of amounts
- Part 2-10 Capital allowances: rules about deductibility of capital expenditure
- Part 2-15 Non-assessable income
- Part 2-20 Tax offsets
- Part 2-25 Trading stock
- Part 2-40 Rules affecting employees and other taxpayers receiving PAYG withholding payments
- Part 2-42 Personal services income

Chapter 3 Specialist liability rules
Part 3-1 Capital gains and losses: general topics
Part 3-3 Capital gains and losses: special topics
Part 3-5 Corporate taxpayers and corporate distributions
Part 3-6 The imputation system
Part 3-10 Financial transactions
Part 3-25 Particular kinds of trusts
Part 3-30 Superannuation
Part 3-32 Co-operatives and mutual entities
Part 3-35 Insurance business
Part 3-45 Rules for particular industries and occupations
Part 3-50 Climate change
Part 3-80 Roll-overs applying to assets generally
Part 3-90 Consolidated groups
Part 3-95 Value shifting
Chapter 4 International aspects of income tax
Part 4-5 General
Chapter 5 Administration
Part 5-30 Record-keeping and other obligations
Part 5-35 Miscellaneous
Chapter 6 The Dictionary
Part 6-1 Concepts and topics
Part 6-5 Dictionary definitions
Endnotes

2.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Part I Preliminary
Part II Administration
Part III Liability to taxation
Part IIIB Australian branches of foreign banks

Part IV Returns and assessments
Part IVA Schemes to reduce income tax
Part VA Tax file numbers
Part VIIB Medicare levy and Medicare levy surcharge
Part VIII Miscellaneous
Part X Attribution of income in respect of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Schedule 2
Schedule 2D Tax exempt entities that become taxable
Schedule 2F Trust losses and other deductions
Schedule 2H Demutualisation of mutual entities other than insurance companies and health insurers
Endnotes
Endnote 5 Miscellaneous

제4장 영국

I. 소득세제 개관
II.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III.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IV.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영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4장 | 영국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 과세 대상

기본적으로 영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영국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주요 소득원천별로 소득세 납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대상 소득 중 '기타소득'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규정(sweeping clause)함으로써 포괄주의 과세 요소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513]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각 원천별 소득은 해당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지만 세액계산 시에는 이러한 원천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다만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소득세와 별도로 1965년도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며[514] 이에 따라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된다.

2. 종합소득의 구성

과세대상 종합소득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다.

가.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영국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일반적인 상거래(trade)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뿐만 아

513) Barker, W. B. "Comparative Approach to Income Tax Law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ath. UL Rev.,* 46, 7. 1996, p. 19.
514) UK Parliament, "Capital gains tax: background history," SN860, 2 June, 2010.

니라 전문적 · 인적 용역(profession or vocation) 등의 활동에서 비롯한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상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활동을 뜻한다. 전문적 인적용역(profession) 및 인적 서비스(vocation)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에 기반한 업무를 제공하거나 종교인 등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나.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하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salary), 임금(wage), 수수료, 사례금 등을 포괄하여 이와 유사한 가치를 갖는 금전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연금수입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법인 등으로부터의 배당(dividend),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interest), 무형자산 사용 대가로 받는 로열티(royalty), 부동산임대소득(immovable property), 신탁소득(trust) 등 자본의 사용 또는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 양도 등 자본의 처분으로 인해 받는 소득은 자본이득으로서 분류과세된다. 투자소득의 세부 종류 및 과세대상 소득 결정, 소득금액 산출 등의 과정에는 상당히 복잡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라. 기타소득(other taxable income)

상기의 주요 소득 유형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이익(profit) 추구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일시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소득이 이에 해당하며, 일시적 저작 활동에 따른 수입, 소개비, 커미션, 프리랜서 수입 등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종합소득 과세 단계별 개요

개인납세자의 각 원천별 소득으로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515]

가. 과세대상 총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배당 및 이자소득, 사업소득, 지적재산권 소득, 기타소득 등 각 소득원천별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원천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비용이나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등과 같이 수익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개별 비용들을 차감하여 각 원천별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러한 원천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금액(total income)을 계산한다.

나. 과세대상 순소득금액 계산

납세자의 종합소득 총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및 소정의 비용항목을 공제(deduction)하여 과세대상 순소득금액(net income)을 산출한다. 결손금은 주로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발생시기 및 원천 등에 따라 다른 소득과 통산, 과거 일정연도와의 소급공제 또는 장래 이월공제 등을 적용한다. 또한 특정 이자비용, 보험비용, 기부금 공제 등의 비용지출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 요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대상 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성격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s) 및 시각장애인공제(blind person's allowance) 등을 포함한다.

라.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515)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p. 75~78.

3구간으로 나누어지며, 각 구간별로 기본 소득구간에는 20% 세율, 중간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40% 및 최고 소득구간에는 45%의 세율이 초과누진 방식으로 적용된다.

마. 세액공제감면 계산

특정 형태의 투자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등 소정의 공제 가능액을 산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주로 비상장기업의 신주발행 투자, 소규모 초창기 기업에 대한 투자, 지역개발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사회적 기업 관련 투자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활동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 가산 조정세액 계산

기부금, 연금소득 등의 특정 항목의 소득금액 계산 특칙과 관련하여 법소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납부세액을 일정액만큼 증가시키는 조정을 수행한다. 이는 납세실적이 기부금보조 금액에 미달하거나 연금저축납입액이 연간한도를 초과한다든지 하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마. 기납부세액 차감

근로소득 원천징수(PAYE)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deduction at source from savings income)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근로소득 및 대부분의 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해당 과세연도에 원천징수시스템으로 소득신고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림 Ⅰ-1] 영국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산출 단계[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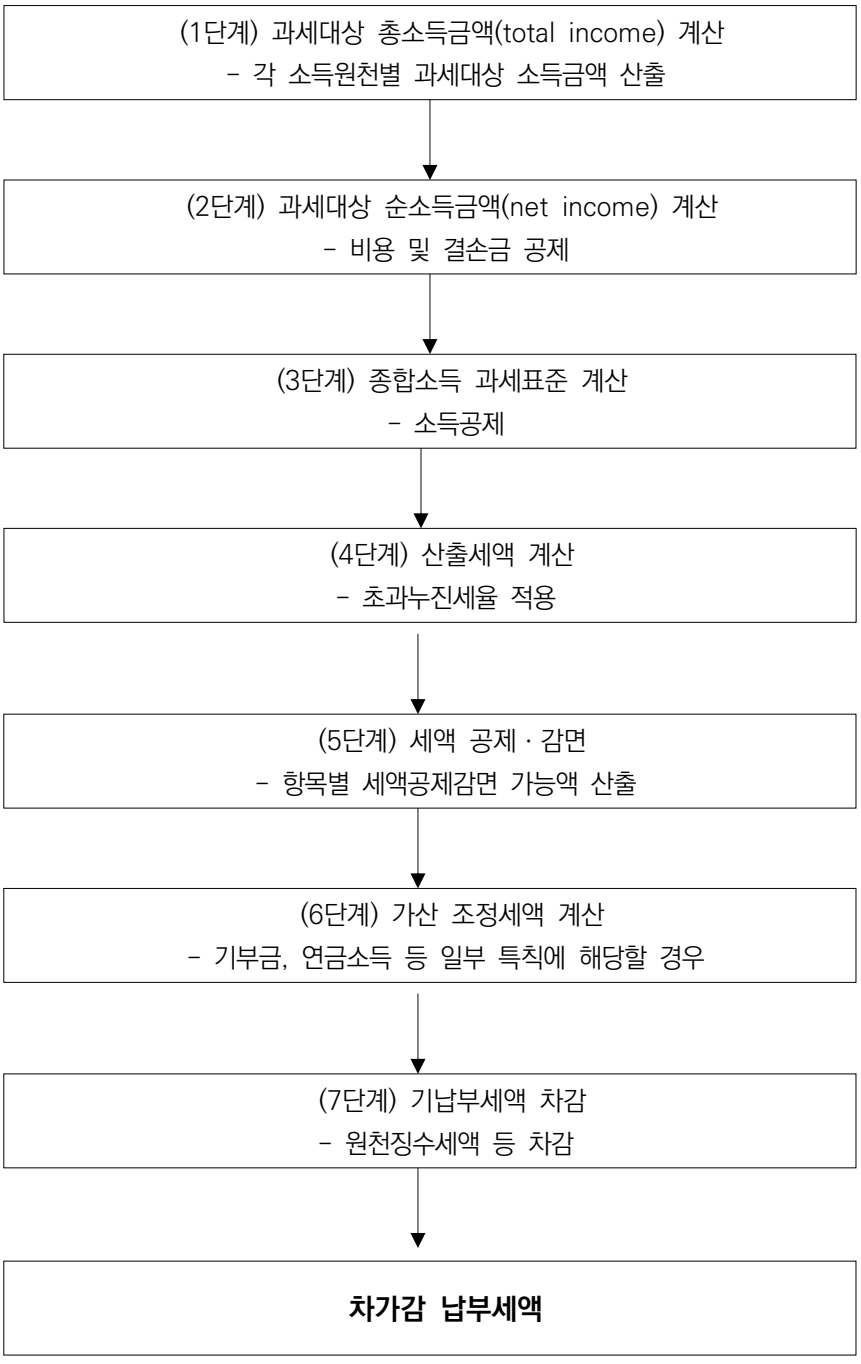

516)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p. 75~7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1) 사업소득의 범위 및 해당 요건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은 크게 상거래활동(trade) 및 인적용역(profession or vocation) 등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구성된다.[517]

가) 상거래활동(trade)

○ 상거래활동 여부의 판단 기준

상거래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업활동이 이에 해당한다.[518] 어떤 활동이 상거래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일이나, 상거래활동을 구성하는 특질(badges)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활동의 동기(motive test)에 관한 것이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주된 관건이며, 단순한 취미 수준에 불과한 것(예: 아마추어 예술가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519]

- 상거래활동 구성 여부에 대한 판례[520]

Collins v The Firth-Brearley Stainless Steel Syndicate Ltd [1925] 9TC520
쟁점: 특허권 양도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 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실관계:
해당 기업은 특허권 취득 및 사용, 라이센스 허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동 회사는 스텐레스스틸 관련 특허권을 취득하고 22개국에 걸쳐 해외 특허권도 받았다. 동 회사는 이러한 특허권 등의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지급받았다. 다만 특허권을 직접 매각한 경우가 3건 있었으며 그 대가로 특허권 전체 기간에 대한 로열티를 받거나 관련 회사의 주식 또는 일시불을 제공받았다. 동 회사는 이러한

517)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790.
518) Section 989 of ITA 및 Section 832 of ICTA.
519)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Last Reviewed: 1 May 2019), 1.4.1. Business income, IBFD.
520)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21015, 검색일자: 2019.12.13.).

특허권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거래활동(trade)의 일환으로 처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판단: 해당 기업의 상거래활동에는 특허권을 매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들이 충분하다. 기업의 정관 등에도 특허권 거래를 수행할 의도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이익이 아니라 고정자산(capital)의 처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 부동산소득과의 구분

한편 토지 등에 대한 권리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련 소득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소득(property income)으로 과세된다(ITTOIA 2005, s4(1)).[521] 다만 해당 소득이 일반적인 상거래활동(trade)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 사용에 따른 소득 그 자체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 부동산소득 구분 관련 판례

Salisbury House Estate Ltd v Fry HL1930[522]
쟁점: 대규모 사무실 부동산 소유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해당 기업은 한 종류의 부동산을 임대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활동은 없었다. 동 기업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부동산 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800여 개의 임대가능 사무실로 구성되었으며 200여 명의 임차인에게 약 2년~21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임대에 공하였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의 임대차 규모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종류는 단지 임대소득으로만 국한되었다. 또한 임대 제공된 각 사무실들은 개별 임차인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은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판단:
당해 기업은 임대료 이외에도 청소, 조명, 기타 부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내역에 비춰볼 때 상거래활동(trade)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사무실 임대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부동산 크기나 임대 규모 그 자체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나) 인적용역

전문적 인적용역(profession) 및 인적서비스(vocation)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521)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791.
522) https://www.casemine.com/judgement/uk/5a938cec60d03e601f97321f,(검색일자: 2019. 12. 13.).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523]

- 전문적 인적용역(profession): 법률, 의학 등 상당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
- 인적서비스(vocation): 종교인을 비롯하여 출판가(bookmaker), 극작가(dramatist), 직업가수(professional singer) 등 통상적으로 '천직'으로 불릴 수 있는 범주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만 '전문적 인적용역'이나 '인적서비스' 여부에 따라 과세취급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에는 사실상 큰 실익은 없다. 한편 상거래활동(trade)과 인적용역(profession or vocation) 간에도 대부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아래와 같은 일부 경우에서는 이 둘 간의 구분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524]

- 사업중단 시 재공품의 가치 산정
- 연구개발비용의 과세 취급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관련 비용

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대상으로서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와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기본원칙

사업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 GAAP)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525] 따라서 사업자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같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526]

---

52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4010, 검색일자: 2019.12.13.).
52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4010, 검색일자: 2019.12.13.).
525) ITA2007, s997 및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823.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범위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공급 등에서 발생한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527]

- 해당 수입금액이 전부 상거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가?
-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가?

특히 자본거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소득세법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업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본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명목에만 좌우되어서는 아니되며 해당 수입금액이 실제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528] 또한 사업소득 여부 판단 시 적용되는 단일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의 속성을 가진 유·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액은 자본거래의 특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상거래계약상 처분에 따른 수입액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529]

3) 필요경비 손금 인정을 위한 기본 요건[530]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해당 비용이 당해 사업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wholly and exclusively)' 지출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가 오직 사업상 목적만을 위해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업 외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목적이 복합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목적(dual-purpose) 지출에 있어 일부 사업 이외의 목적이 같이 존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위의 공제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임의로 안분계산하여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526)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4.1. Business income, IBFD.

52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0051, 검색일자: 2019.12.13.).

528) Walton J in Burman v Thorn Domestic Appliances (Electrical) Ltd [1981] 55TC493 at 507I 및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0060, 검색일자: 2019.12.13.).

529) Van den Berghs Ltd v Clark [1935] 19TC390.

530)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864.

다만 해당 비용 중 일부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해 지출되었을 경우 해당 부분은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531] 한편 사업목적상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혜택(benefit)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예: 사업목적상 출장 과정에서 해외관광지를 구경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그러한 부수적 혜택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공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4) 손금불산입되는 주요 비용 항목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비용 공제 요건상 '해당 사업의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wholly and exclusively)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일반 요건 외에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 항목들을 예시하면 〈표 Ⅱ-1〉과 같다. 이 중 주요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Ⅱ-1〉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주요 개별 항목[532]

주요 속성	비용 항목
자본적 지출 관련	사업상의 자본(capital employed in the business) 및 이와 관련된 명목 이자 - 감가상각비 - 자동차 관련 비용 등
	사업용 부동산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
사업관련성이 낮은 지출	접대행위로 인한 비용
	증여성 비용
	사업자의 개인적 용도, 가족을 위한 지출 등
	사업용 목적 이외에 거주 관련 렌트 등 관련 비용
기타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비용의 지출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비용 중 공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상 적절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국외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비용

출처: HMRC manuals

53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37007, 검색일자: 2019.12.13.).

53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2060, 검색일자: 2019.12.1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 자본적 지출의 범위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자본적 속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목적상 손금불산입된다. 이는 자본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과도 일관된다. 어떠한 거래가 자본적 속성을 가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의 범위와 의미는 다양한 판례들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 다만 판례법상으로도 일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과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참고로 이와 관련된 대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533]

- 사업 운영을 위한 일상적 비용(예: 직원 임금, 재고 구매비용, 사무실 임차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수익적 지출은 자본의 순환과 연관성이 높다. 즉, 지속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손익을 발생시키게 되며, 매출회전(turnover) 과정의 일환으로 인식된다.
- 자본적 지출(예: 영업권, 사업부지 및 기계장치 구매 등)은 이러한 수익적 지출과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다. 고정자산의 경우 매출회전을 통해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고정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자가 손익을 창출하게 되는 구조이다.
- 거래상대방이 자본적 거래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우도 그러하리라 볼 수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유·무형자산 등의 식별가능한 자본의 취득, 처분, 변경 등으로 이어진다.[534]

○ 자본화 관련 이자비용

일반적인 이자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손금산입 원칙에 따라 해당 이자비용은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wholly and exclusively)'당해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어야 한다. 예컨대 사업용 자산을 소유, 운영하거나 운전자본 확충, 비용 지출에 충당하는 등의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전적으로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535]

53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35005, 검색일자: 2019.12.13.).
53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35010, 검색일자: 2019.12.13.).

다만 자산의 취득 과정에 부수되는 이자비용으로서 자본화되는 것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536] 즉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는 당해 이자비용 발생의 기초가 되는 금전 차입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개별 사안마다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537]

나) 감가상각비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공제대상 비용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이를 대신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별도 규정[538]에 따라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공제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며 납세자가 별도 신청해야 한다.[539]

다) 자동차 관련 비용(expenditure on vehicles)[540]

자동차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으며,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한편 특정차량(relevant vehicle)에 대한 적격 지출(qualifying expenditure)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정률공제(fixed rate deduction) 방법을 대신 적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차량'이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자동차(car), 이륜차(motor cycle), 또는 화물차(goods vehicle)로서 예외차량(excluded vehicle)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서 '예외차량'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당해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적용하는 것
  b) 당해 차량 취득에 대한 비용이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목적상 이미 공제된 것

또한 '적격 지출'이란 당해 차량의 취득, 소유, 리스, 임차, 사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특정한 차량운행(journey) 과정에 부수되는 비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

53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5665, 검색일자: 2019.12.13.).
53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5760, 검색일자: 2019.12.13.).
537) Scorer v Olin Energy Systems Ltd [1985] 58 TC 592 the Special Commissioners said at page 606C.
538) Capital Allowances Act("CAA") 2001.
539)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4.1. Business income, IBFD.
540)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p. 3101~3102.

한편 당해 차량에 대한 '정률공제'는 차량운행 마일리지에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appropriate mileage amount)을 따른다.

정률공제액 = 당해 차량 운행자가 사업상 용도로 운행한 마일 수 × 차량 종류별 요율(*)

(*) 여기서 차량 종류별 요율은 다음과 같다.[541]

구분	1 마일당 요율	
	첫 10,000마일까지	10,000마일 초과 부분
자동차 및 화물차	45펜스	25펜스
이륜차량	24펜스	24펜스

출처: HMRC manuals

라) 접대비 및 증여성 비용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상 접대비나 증여성 경비(expenditure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gifts)는 비록 그것이 사업 목적상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비용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접대비

사업상 접대행위란 무상 또는 저가로 환대행위(hospitality)를 하거나 접대(entertainment)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대 상대방은 소비자, 잠재적인 고객 및 기타 거래상대방 등 다양할 수 있다.[542]

다만,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은 접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련 비용 또한 수입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요식업자가 대가를 받고 고객을 접대하는 것은 정상적 거래 제공으로서 접대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상 또는 특혜가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접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광고선전(advertising) 목적으로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행위로 보지 않는다.[543]

54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75005, 검색일자: 2019.12.1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4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5010, 검색일자: 2019.12.13.).

○ 증여성 비용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는 접대비의 경우와 유사하게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목적상 증여(gift)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즉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는 대가를 원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에 납품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호텔업자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그 차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상 증여행위가 대중에 대한 일반적인 광고선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이 인정될 수 있다.[544]

한편 자선단체(charity) 등 특정 기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의 경우 위와 같은 사업상 증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용 인정 기준인 사업목적 관련성('wholly and exclusively' rule)을 충족한다면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545]

5)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자본공제의 기본 목적은 납세자가 소유한 자산의 가치 감소에 상응하여 납세자에게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546] 이러한 자본공제의 세부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547]

-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AIA)
- 감가상각공제(writing down allowance: WDA)
- 조정공제(balancing allowance: BA)
- 최초연도공제(first-year allowance: FYA)

54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5030, 검색일자: 2019.12.13.).
54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5065, 검색일자: 2019.12.13.).
54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5072, 검색일자: 2019.12.13.).
54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5000, 검색일자: 2019.12.13.).
54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11101, 검색일자: 2019.12.13.).

가)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AIA)[548]

연간투자공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법소정의 적격활동(qualifying activities)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549] 이와 관련하여 '적격활동'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상거래활동(trade)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사업(a business involving income from land)
- 인적용역(profession or vocation)
- 자산관리 및 투자 회사의 사업활동(activities of management and investment companies)
- 기계장치류의 특정한 리스 활동(special leasing of plant and machinery)
- 근로 또는 특정 직위에서 수행하는 활동(an employment or office)

한편 연간투자공제의 연도별 한도액은 2016.1.1.부터 20만파운드가 적용되어 왔으며, 2019.1.1.~2020.12.31. 기간에는 한정적으로 100만파운드의 높은 한도가 적용되며, 2021.1.1.부터는 다시 20만파운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나) 감가상각공제(writing-down allowance: WDA)

이는 기계장치 등의 소정의 자산 그룹(pool)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 자산들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중 기말 미공제잔액(tax written-down value)의 일정 비율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적용대상 자산 그룹 및 해당 그룹별 공제비율은 다음과 같다.[550]

54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및 "Corporate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 August 2019), IBFD.

54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0006, 검색일자: 2019.12.13.).

55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4.1. Business income, IBFD.

〈표 Ⅱ-2〉 적용대상 자산 그룹 및 해당 그룹별 공제비율

자산 그룹	공제비율
일반적인 기계장치류(plant and machinery) (*)	18%
광물자원(mineral assets) 추출과 관련된 특정 지출	10%
광물 추출과 관련된 소정의 비용으로서 특정한 자산과 관련된 경우	25%
연구개발(R&D)	100%
노하우 및 특허권	25%
준설(dredging)	4%

출처: HMRC manuals

(*) 기계장치류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고정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 건물 및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551]

즉 위와 같은 자산 그룹별로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공제분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며, WDA는 해당 기간말 잔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552] 한편 해당 자산에 대한 지출총액에서 당기 중 처분한 자산이 있을 경우 동 자산처분가액(disposal values)을 차감하여 해당 자산그룹에 대한 지출액 잔액이 결정된다. 만약 처분가액이 지출총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은 조정가산액(balancing charge)으로서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553]

다) 조정공제(balancing allowance: BA)

이는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WDA 대신 적용되는 자본공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광물 추출 등 관련 자산에 대한 적격지출이 사업개시전에 이루어지거나 과세기간 중 해당 사업활동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554]

라) 최초연도공제(first-year allowance: FYA)

이는 주로 친환경자산을 대상으로 취득 첫해에 관련 지출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555]

55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0006, 검색일자: 2019.12.13.).
55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0006, 검색일자: 2019.12.13.).
553) CAA01/S55(3) 및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210, 검색일자: 2019.12.13.).
554)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p. 411~412.

〈표 Ⅱ-3〉 최초연도공제 대상 자산

구분	비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기계장치류(plant and machinery)	2020.4.1.부터 폐지 예정
연료 재활용 주유소 용도의 기계장치류	2021.3.31.까지 지출된 것
탄소배기가스가 없는 차량에 대한 지출	2010.4.1.부터 2021.3.31.까지 지출된 것
전기자동차 충전소	2016.11.23.부터 2019.3.31.까지 지출분 (2023.3.31.까지 연장 예정)
북해 연안무역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류에 대한 지출	
특정 지정구역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류에 대한 지출	

출처: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4.1. Business income, IBFD.

FYA는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WDA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만약 어떤 지출액이 FYA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후 WDA 요건에 해당된다면 WDA를 적용받을 수 있다.[556]

마) 자본공제 예시[557]

Bennett & Darcy Ltd은 운송업을 영위하며 매년 12월말이 결산일이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공제 목적상 인정된 지출총액이 32,000파운드이며, 2018.12.31.자로 종료되는 연도에 FYA 적용 대상이 되는 친환경트럭을 대당 100,000파운드씩 7대를 새로 구매하고 중고로 1대를 50,000파운드에 취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AIA 한도액은 200,000파운드이며, 동 연도에 트럭 1대를 4,000파운드에 처분하였다.

2018.12.31.일로 종료하는 연도의 자본공제 가능 금액:
- 친환경트럭 신규 구매액: £700,000
- 최초연도공제(FYA) = £700,000 ×100%
- 중고 트럭 취득가: £50,000 --〉 AIA 적용 가능액: £50,000
- WDA 대상액 = 미공제지출액 £32,000 - 처분액 £4,000 = £28,000
- WDA 적용액 = £28,000 ×18% = £5,040
- 미공제지출 잔액 이월액 (2019.1.1. 현재)= £28,000 - £5,040 = £22,960

55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4.1. Business income, IBFD.
55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0006, 검색일자: 2019.12.13.).
55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0006, 검색일자: 2019.12.13.).

바) 자본공제 적용 방법

자본공제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자본공제 신청 기한은 소득세 신고서 신고 또는 경정에 대한 기한과 일치한다.[558]

자본공제를 반영한 소득신고 예시[559]

> 영국 거주자 Jim은 호텔업을 영위하며, 매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다. 2018.12.31.일로 종료하는 연도의 순이익은 £48,000이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2,000이다. 자본공제 가능액은 £5,000이며, 조정액(balancing charge)는 £10,000이다.
>
> 2018.1.1. ~ 2018.12.31.까지의 과세소득:
> £48,000(순이익) + £2,000(감가상각계상액) + £10,000(balancing charge) - £5,000(자본공제) = £55,000

6) 소액사업소득 공제(trading allowance)[560]

일반적 상거래활동(trade) 및 인적용역(profession or vocation)의 경우 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간편화된 비용공제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공제액은 납세자의 관련소득(relevant income)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관련소득'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의 합계이다.

a)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으로서 비용 공제 이전의 총수입금액
b) 당해 과세연도 중 기타소득(miscellaneous income)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비용 공제 이전의 금액

소액사업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이 최대 1,000파운드까지 가능하다.

- 완전공제(Full relief): '관련소득' 합계가 1,000파운드 미만일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0이 된다.
- 부분공제(Partial relief): '관련소득' 합계가 1,000파운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이때 '관련소득'이 사업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을 포

558)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11130, 검색일자: 2019.12.13.).
55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11110, 검색일자: 2019.12.13.).
560)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796.

함할 경우 각 원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만약 납세자가 이러한 소액사업소득 부분공제를 적용할 것을 선택할 경우 해당 소득으로부터 다른 비용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소액사업소득 공제 관련 예시:

Jennifer는 연간 25,000파운드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며, 한편으로 최근 몇 년간 DVD를 온라인으로 매매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해당 DVD 매매활동은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을 신고하려 한다. 2020년 4월 5일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Jennifer의 온라인 매매활동으로부터의 판매액은 2,100파운드이며, 구매원가는 500파운드, 기타사업비용은 100파운드이다.

a) 일반적인 사업소득 신고 방법을 선택할 경우:

매출액			2,100
공제:	**구매원가**	500	
	기타비용	100	
			600
과세대상소득			**1,500**

b) 소액사업소득 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총수입		2,100
공제:	**소액사업공제**	1,000
과세대상소득		**1,100**

다. 사업소득 산출 기준기간 및 수입시기

1) 사업소득 산출 기준기간(basis periods)[561]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 개시연도 및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기준기간이 결정된다.

가) 사업개시연도의 경우

개인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첫 기준기간은 해당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4월 5일까지이다.[562]

561)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803.

나) 후속연도의 경우

만약 해당 연도에 별도의 회계기간 종료일(accounting date)이 있다면 해당 종료일까지의 12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만약 기준기간 시작일로부터 당해 회계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은 동 사업 시작일 후 12개월까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만약 2차연도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지 않는다면 4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5일까지의 실제 발생소득을 바탕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한다.[563] 한편, 이러한 과세연도별 소득계산 시 기준기간 중복으로 인해 이중으로 포함되는 소득분은 별도로 공제한다(overlap relief).

기준기간 결정 관련 예시[564]:

(*1) 2차연도에 속한 회계기간 종료일이 사업시작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시작일은 2012년 1월 6일이며, 첫 회계기간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이고 이후 매년 회계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임

과세연도	연차	기준기간
2011/12	Year1	2012.1.6. - 2012.4.5.
2012/13	Year2	2012.1.6. - 2013.1.5.
2013/14	Year3	2013.1.1. - 2013.12.31.

(*2) 2차연도에 속한 회계기간 종료일이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 시작일은 2012년 7월 6일이며, 첫 회계기간 종료일은 2013년 9월 30일이고 이후 매년 9월 30일에 회계기간이 종료함

과세연도	연차	기준기간
2012/13	Year1	2012.7.6. - 2013.4.5.
2013/14	Year2	2012.10.1. - 2013.9.30.
2014/15	Year3	2013.10.1. - 2014.9.30.

562) ITTOIA 2005, s199.
563) ITTOIA 2005, s200.
56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81015, 검색일자: 2019.12.13.).

(*3) 2차연도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작일은 2012년 1월 6일이며, 첫 회계기간 종료일은 2013년 6월 30일이고 이후 매년 6월 30일에 회계기간이 종료함

과세연도	연차	기준기간
2011/12	Year1	2012.1.6. - 2012.4.5.
2012/13	Year2	2012.4.6. - 2013.4.5.
2013/14	Year3	2012.7.1. - 2013.6.30.

2) 사업소득 귀속시기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따라 소득 귀속시기가 결정된다.[565] 즉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인식된 시점에 세법상으로도 사업수입금액을 구성한다고 본다.[566] 이에 따라 수입액을 실제로 수취하거나 수취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는 시점은 세무상 사업수입액 인식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며, 해당 시점에 수익이 가득되었는지(earned)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567] 이에 비춰볼 때, 업무 수행 이전에 수취한 금전이나 거래 보증 목적상 받은 예치금 등은 아직 수익이 가득되었다고(earned)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수입금액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회계원칙상 장기계약이나 건설계약과 같이 대금 수취 이전에 수익이 가득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568]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예: 2017/18연도의 경우 150,000파운드)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발생주의에 근거한 소득 대신에 현금주의 방식에 따른 소득 산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569]

56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4.1. Business income, IBFD.
56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0070, 검색일자: 2019.12.13.).
567) Symons v Lord Llewelyn-Davies' Personal Representative and Others [1982] 56TC630.
568)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0070, 검색일자: 2019.12.16.).
569) ITTOIA 2005, s25A(1)-(3) 및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823.

라.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1) 공동사업 소득금액 산출 원칙

공동사업체(partnership) 형태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체 자체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공동사업체 단계에서의 소득을 계산한 뒤 이를 공동사업자(partner) 간에 배분한 뒤 각 사업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들 중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자신의 사업소득 배분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570]

공동사업체 단계에서의 소득 계산은 해당 공동사업체를 영국 거주자 개인으로 간주하였을 경우 산출될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동사업체가 비거주자나 법인, 또다른 파트너십 등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계산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역시 공동사업체 단계에서 산출하며 이를 해당 공동사업체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처럼 공제한다. 따라서 각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사업소득은 이러한 자본공제가 차감된 순이익을 바탕으로 한다.[571]

공동사업체 단계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allocation)된다. 소득금액 배분은 각 당사자 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로 이루어진다. 만약 공동사업체가 2개 이상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소득의 원천별로 공동사업자들에게 관련 소득금액을 배분한다.[572]

2) 공동사업 소득금액 배분 특칙

이와 같이 공동사업체 소득의 배분은 당사자간의 이익배분계약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만 의존할 경우 소득 배분이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업자가 공동사업체 전체의 순소득보다 더 많이 배분받는 한편 다른 사업자는 손실을 떠안게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영국의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체의 실제 순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이 특정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배분을 재계산하도록 한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 소득배분의 결과 특정 사업자에게 손실이 분배되었다면

570)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artnership-manual/pm163010, 검색일자: 2019.12.16.).
571) S849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57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artnership-manual/pm163040, 검색일자: 2019.12.16.).

당해 손실액을 다른 공동사업자들 간에 재배분한다. 이러한 소득재배분은 손실을 재분배받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1차적으로 배분받은 손익 규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573]

[공동사업자들 간의 소득재배분 예시][574]

영국 거주자 A, B, C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8,900파운드의 소득을 수취하였다. 당사자 간의 약정상 A와 B는 급여 명목으로 5,200파운드를 받으며 잔여 소득은 공동사업자들 간에 동일하게 분배한다. 이 경우 최초 소득 배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거주자 A	거주자 B	거주자 C	합계
공동사업체 소득				8,900
급여 지급	5,200	5,200	0	10,400
잔여소득	(500)	(500)	(500)	(1,500)
순소득 배분액	4,700	4,700	(500)	8,900

1차 소득배분의 결과 거주자 C에게만 손실이 배분되었으므로, 동 손실액을 다른 공동사업자들 간에 재배분한다. 이에 따른 소득재배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거주자 A	거주자 B	거주자 C	합계
1차 배분액	4,700	4,700	(500)	8,900
C의 손실 재배분	(250)	(250)	500	
배분된 소득	4,450	4,450	0	8,900

마. 결손금 공제

1) 결손금 공제 종류

상거래활동 및 인적용역 (trade, profession or vocation)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장래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다.[575] 결손금을 계산하는

57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artnership-manual/pm163050, 검색일자: 2019.12.16.).

57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artnership-manual/pm163060, 검색일자: 2019.12.16.) 및 영국 정부(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0443/sa850-notes-2018.pdf, 검색일자: 2019.12.16.).

575) ITTOIA 2005, s26 및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85000, 검색일자: 2019.12.16.).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을 산출하는 과정과 동일하다.[576] 이러한 결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 가능하다.[577]

- 일반소득과 통산
- 결손금 소급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 사업종료 결손금 소급공제
- 자본이득과 통산

가) 일반소득과 통산[578]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일반소득(general income)과 통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결손금은 당해 과세연도 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소득과 통산할 수 있으며 양쪽 연도에서 모두 통산할 수도 있다. 만약 두 과세연도에 걸쳐 통산할 경우 납세자는 당해 및 직전 연도 중 하나를 택해서 우선통산연도(priority year)를 지정해야 한다. 양쪽 연도에서 공제하더라도 납세자 임의대로 통산대상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우선통산연도에서 최대한 공제한 후 나머지 연도에 남은 결손금을 해당 연도의 일반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579]

[결손금 통산 관련 예시][580]

Mark는 지난 수년간 사업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매년 9월 30일에 회계기간이 종료된다. 2012.9.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12/13연도)에 20,000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Mark는 해당 결손금에 대해 2012/13연도의 다른 일반소득과 통산하거나 2011/12연도의 일반소득과도 통산할 수 있다. 또는 2011/12 및 2012/13연도 모두를 통산 대상 연도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손금 공제는 2015.1.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만약 결손금 공제를 양 과세연도에 걸쳐 신청하게 될 경우 어떤 연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임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Mark가 2012/13연도의 일반소득이 22,000파운드이고 2011/12연도 일반소득은 5,000파운드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57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85005, 검색일자: 2019.12.16.).
577)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1.9 Losses (Last Reviewed: 1 May 2019), 1.9. Losses, IBFD.
578) S64 Income Tax Act 2007.
579)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535.
580)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85015, 검색일자: 2019.12.16.).

- 2012/13연도 일반소득에서 20,000파운드의 결손금을 통산하거나
- 2011/12연도 일반소득에서 5,000파운드의 결손금을 통산하고 나머지 15,000파운드의 결손금은 2012/13연도 일반소득에서 통산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부분적 공제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 2011/12연도 일반소득에서 2,000파운드의 결손금을 통산하고 2012/13연도 일반소득에서 18,000파운드의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

나) 사업초기 결손금 소급공제[581]

이는 납세자가 사업을 시작한 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서의 결손금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납세자는 동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3개년도의 총소득(total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된 연도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된다.

다) 결손금 이월공제[582]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다른 조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장래로 이월되어 공제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장래 이익에 대해서만 이월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당해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사업 성격 및 소유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장래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583] 한편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의 경우 사업활동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사업수입금액(trade receipt)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584] 만약 사업결손금 이월공제 시 장래 사업소득에서 전부 다 공제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업수입금액으로 간주되는 이자 및 배당수입금과 통산하여 공제 가능하다.

또한 이월된 결손금은 장래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바로 공제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은 그 다음해로 이월된다. 이월가능한 후속 과세연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585]

581) S72 Income Tax Act 2007.
582) S83 Income Tax Act 2007.
583) Rolls-Royce Motors Ltd v Bamford [1976] 51TC319 및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85060, 검색일자: 2019.12.16.).
58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0805, 검색일자: 2019.12.16.).
58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1.9 Losses (Last Reviewed: 1 May 2019), IBFD.

라) 사업종료 결손금 소급공제[586]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사업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전 3개 연도 중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해당 결손금 공제는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부터 우선적으로 통산한다.

마) 자본이득과 통산[587]

납세자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고 관련 법령[588]에 따라 다른 일반소득과 통산하더라도 남은 미공제손실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하에 자본이익과 통산이 가능하다. 통산 가능한 자본이익은 자본소득(capital gains)에서 자본손실(capital losses)을 차감한 이익(capital gains)을 의미하며, 자본이득면제액(capital gains annual exempt amount)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589]

2) 결손금 공제 관련 기타 특칙

가) 결손금 공제 한도

상기 1)에서 설명한 결손금 공제 종류 중 가) 일반소득 통산, 나) 사업초기 결손금 소급공제, 라) 사업종료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 일정한 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종류들로 구성된 결손금은 아래 두 가지 중 큰 것을 한도로 하여 그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590]

- 50,000파운드
- 납세자의 당해 연도 조정소득금액(adjusted total income)의 25%

586) S89 Income Tax Act 2007.
587) S64 Income Tax Act 2007, S261B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TCGA 1992).
588) S64 ITA 2007.
58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85025, 검색일자: 2019.12.16.).
59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1.9 Losses (Last Reviewed: 1 May 2019), 1.9. Losses, IBFD.

나) 근로소득 결손금 공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만약 어떤 과세연도의 근로관계에서 부(-)의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고 이것이 동 근로활동으로부터의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른 일반소득(general income)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591]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기 어렵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발생 가능할 수도 있다.[592]

2.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영국의 소득세 관련 법령[593]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크게 일반근로소득(general earnings)과 특정근로소득(specific employment income)으로 구성된다. 일반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며, 특정근로소득은 해당 법령상 근로소득으로 별도 지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퇴직에 따른 소득, 특정 연금상품(pension schemes) 관련 소득, 기타 주식관련 소득 등이 포함된다.[594] 영국 거주자 또는 영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일반근로소득에 대해 전반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특정근로소득은 거주자 관련 특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595] 따라서 이러한 소득 종류의 구분은 비거주자 또는 영국 내 주소가 없는 근로자(non-domiciled employees)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596]

591) section 128 ITA 2007 및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32866, 검색일자: 2019.12.16.).
59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00805, 검색일자: 2019.12.16.).
593) the Income Tax(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 "ITEPA."
594)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29.
59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00512, 검색일자: 2019.12.16.).
596)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1) 일반근로소득(earnings)의 의미

가) 기본 개념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earnings)'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597]

> "급여, 임금, 수수료, 기타 사례 또는 이익금 등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의 혜택으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
> ("any salary, wages, or fee, ... any gratuity or other profit or incidental benefit of any kind obtained by the employee if it is money or money's worth, or ... anything else that constitutes an emolument of the employment")

이에 따르면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598]

- 해당 급여 등이 금전적 가치가 있을 것("represent money or money's worth") and
- 해당 급여 등이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발생하였을 것("come from" the office or employment)

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

여기서 '금전적 가치(money's value)'란 금전으로 전환 가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급여 등은 소득의 지급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발생한 것에 한한다.[599] 통상적으로 현금 형태로 주어지는 각종 급여, 임금, 수당 등은 동 요건을 자동적으로 충족한다.[600] 한편 스톡옵션(share option)을 부여받은 경우, 부여 당시의 옵션 그 자체를 일반근로소득으로 보며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601]

다) '고용'관계의 의미

고용(employment)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exhaustively) 규정해 놓고

597) section 62 of ITEPA.
59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599)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52.
60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01)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52.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제공(service), 도제(apprenticeship) 등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근로제공 관계를 포괄한다.[602] 또한 이러한 고용관계하에서의 근로 제공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종업원(employee)뿐만 아니라 특정 직위(office)를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603]

이와 관련하여 '직위(office)'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604]

> "영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위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해당 직위에 있는 인물 그 자체와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임자에 의해 승계되어 이어나가는 것"
> ("permanent, substantive position which had an existence independent from the person who filled it, which went on and was filled in succession by successive holders."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예로는 유한회사(limited company)의 이사(directors)나 사무총장(secretary)과 같은 법인의 관리자(officers)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종교단체장(ministers of religion), 왕실(Crown offices) 및 판사 등의 사법부 임명직(judicial appointment)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라)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은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복잡할 수도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일례로 소득 지급사유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중 피고용인 입장에서의 근로에 해당하는 원인으로부터의 소득만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다양한 소득원천이 함께 존재할 경우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605]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형태로 급여 등을 받을 경우, 이 또한 '금전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입장이다.[606]

602)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29.
60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00515, 검색일자: 2019.12.16.).
60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status-manual/esm2502, 검색일자: 2019.12.16.).
605)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52.
606)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on-cryptoassets, 검색일자: 2019.12.16.).

2) 현물성 급여 (benefits)

기본적으로 현물보조 형태의 급여(benefits in kind) 또한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된다.[607] 이러한 현물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검토한다.[608]

- '금전적 가치' 관련 일반 요건 (the "money's worth" rule) 충족 여부
- 현물성 급여로 특정된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현물성 급여의 기본 요건

만약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음과 같은 혜택 중 하나를 제공받았다면 '금전적 가치' 요건에 해당하여 현물성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실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받은 경우(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선물한 물품)
- 근로자가 부담한 금전적 채무(예: 상품구입대가, 주택임차료 및 기타 지출로 인한 채무 등)를 고용주가 대신 이행하는 경우
- 급여를 받는 대신 기타 혜택을 부여받은 경우

동 요건과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609]

- 금전적 환산가능물의 제공의 경우: 해당 물품을 당해 납세자가 재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치(resale value)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기계장비나 의복과 같이 즉시 감가상각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 이하로 재판매가치가 산정될 수도 있다.
- 근로자 채무의 대신 이행: 해당 부담채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급여를 대신한 혜택 부여: 현물혜택의 대가로 포기한 급여액(salary sacrifice)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0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00513, 검색일자: 2019.12.16.).
60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09)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 관계하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혜택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가족에게 제공된 혜택 또한 당해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과세대상 혜택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고용주가 부담한 원가(cost)에서 당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나) 특정 현물급여(Benefit Code)

아래와 같은 현물성 급여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610] 만약 해당 특정 현물급여의 귀속시기가 관련 계약 등에서 명시되지 않을 경우 동 혜택이 제공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고용인이 지출한 각종 비용(expenses)

고용 관계에 의거하여 고용인이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지출 가능하도록 한 금액 포함)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단, 다른 소득세 항목으로 과세되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현물급여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611]

〈표 Ⅱ-4〉 고용인이 지출한 비용 중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예시

구분	내용	과세대상 소득 / 비고
바우처 (Vouchers)	금전, 상품 및 서비스 등과 교환할 수 있는 토큰, 스탬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서류 등(여행 티켓, 수표, 신용카드 등도 포함)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cost)에서 근로자가 자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주거관련 지원 (Living accommodation)	아래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제공받는 주거관련지원 혜택은 과세대상에 포함됨 - 해당 주거지원이 근로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예: 사무실 건물 내에 있는 시설) - 해당 근로자의 근로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된 경우(예: 농장 근로자의 cottage) - 해당 직종의 관례상 고용주가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예: 경찰, 교도소장, 성직자 등을 위한 관사) - 해당 근로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계약의 일환으로 주거가 제공된 경우	개인인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주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과세되는 부분은 고용주가 부담한 비용(cost)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급한 대가를 차감한 금액임 근로자를 위해 제공된 주거 중 일부가 고용주의 사업상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해당 주거가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자에게 제공된 등의 경우, 관련 목적이나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비례 산출함

610) ITEPA 2003, Pt3, Ch3-7, 10 및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72.
61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20601, 검색일자: 2019.12.16.).

○ 차량 제공 혜택:

고용관계하에서 고용주가 소유한 차량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적용도(private use)로 사용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혜택에 상응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612][613]

과세대상 금액은 해당 차량 기준가격(list of price)에 일정률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동 요율은 해당 차량으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_2)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614]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95g/km에 달하면 23% 요율이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방출량이 5 g/km씩 증가하는 만큼 1%p만큼 요율이 증가하여 최대 37%까지 적용된다. 한편 공인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배기량 규모에 따라 23~37%까지의 요율이 적용된다.[615]

○ 승합차(Van) 사용으로 인한 혜택

승합차는 통상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사륜차량으로서 설계중량 3,500kg 이하인 것으로 규정된다.[616]

고용주가 제공한 승합차를 근로자가 업무 목적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대상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동 혜택에 대한 법 소정의 금전환산가액(2019/20과세연도의 경우 3,430파운드)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단, 동 승합차가 이산화탄소 방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전환산가액의 60%(2019/20과세연도의 경우)만큼만 과세대상으로 본다.[617]

○ 저율의 이자가 적용되는 대여금: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른 금전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할 경우 해당 차익에 상응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현물급여로 간주된다. 여기서 '고용관계에 따른 금전 차입(employment-reated loan)'이란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지배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612)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92.
61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23100, 검색일자: 2019.12.16.).
614) sections 120-121 of ITEPA.
61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1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22725, 검색일자: 2019.12.16.).
617)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해당 근로자나 그의 관계자에게 제공된 대여금을 의미한다.[618]이러한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차입한 금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정이자율(official rate)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액을 과세대상 benefit으로 간주한다.[619]

지정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수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액 -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이자액

○ 기타 혜택(Residual liability to charge)

관련 법령[620]상 현물급여로 개별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고용관계로 인해 주어진 혜택(employment-related benefits)이 있을 경우 그 금전적 상응가치(cash equivalent of the benefits)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621] 이러한 예로는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 혜택들이 포함될 수 있다.[622]

비과세 현물급여[623]

일부 현물성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624]

- 이사 비용(8,000파운드 한도 내)
- 작업장 내 주차장소 제공
- 작업장 내 숙소, 물품 및 기타 서비스 지원
- 종업원 자녀에 대한 특정 보육 지원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에 대한 일시 위로금
-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사
- 직장내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 특정 상담서비스 제공
- 업무상 손해배상책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납입금 등

618)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011.
619)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011.
620) Benefit code, ITEPA 2003.
62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20020, 검색일자: 2019. 12. 16.).
622)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IBFD.
623)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IBFD.
624) section 227 et seq. of ITEPA.

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 및 마일리지 공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등을 차감하여 계산된다.[625]

1) 총급여액[626]

과세대상 총급여액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으로서 상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각 항목들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임금 등 금전으로 지급된 보수액
- 현물로 지급된 각종 혜택 (benefits in kind)

이외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될 수 있다.

- 근로관계에 따라 부여된 주식이 있을 경우
- 근로자가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적용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정과세소득 (balancing charge)

2) 비용 공제

근로자가 고용관계하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627] 다만, 여러 판례나 사례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러한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출퇴근 관련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특정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이 명확한 출장비용 등은 공제 가능하다.[628] 특정 직업군(농업, 운수업, 건설업, 의류직물업 등)[629] 같은 경우 작업복이나 공기구 등의 소모품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연간 일정

625) ITEPA 2003, s315 및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066.
626)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27) sections 328-338 of ITEPA.
62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2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32712, 검색일자: 2019.12.16.).

금액(flat rate deduction)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630] 근로자는 이러한 일정금액 공제 대신 실제로 입증되는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631]

3) 마일리지 공제(Mileage allowances)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차량이용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는 비과세한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첫 10,000마일까지는 1마일당 0.45파운드, 이후 추가분에 대해서는 1마일당 0.25파운드를 적용한다. 모터사이클의 경우는 1마일당 0.24파운드, 자전거의 경우에는 1마일당 0.20파운드가 적용되며 이 두 가지 경우에 최초 10,000마일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632]

4)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류(plant and machinery)를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할 경우(예: 자동차 등) 사업소득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633]

다. 근로소득 수입시기

소득세 과세대상인 급여(현물급여 혜택 등 포함)는 해당 소득을 수취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634] 이와 관련하여 소득의 '수취(received)'시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635]

i)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

ii)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entitled to such payment)

630)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32700, 검색일자: 2019.12.16.).

631)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049.

632)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travel-mileage-and-fuel-allowances/travel-mileage-and-fuel-rates-and-allowances, 검색일자: 2019.12.16.).

633)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34) sections 18 and 31 of ITEPA 및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35)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42.

iii)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기업의 임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일 경우 아래와 같은 시점들 중 가장 빠른 때
- 해당 소득이 당해 기업의 장부에서 비용계상된 시점
- 당해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확정된 시점(그 이전에 이미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
- 당해 기업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시점(그 이전에 이미 사업연도 소득이 확정된 경우)

라. 근로소득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

1) 기본원칙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은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시스템에 따라 고용주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대부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social security income)을 포함한다.[636] 해당 과세연도에 PAYE로 인해 소득신고가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서면의 신청서를 통해(다음연도 10월 31일부터 3년이 도래하는 기간 이전까지 제출) PAYE 신고양식을 제공받고 이를 직접 완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637]

2) PAYE code

PAYE 원천징수제도는 대상 소득 및 납세자 특성 등에 따라 개별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PAYE code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PAYE code 시스템에 기반하여 납세자의 인적공제 및 전년도 납세부족액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PAYE code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정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638]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PAYE code는 숫자+Letter의 형태로 구성되며, 해당 Letter별로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639] 일례로 Letter 'L'은 표준적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된다는

636) ITEPA 2003, s683 및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773.
637)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772.
63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39) 영국 정부 (https://www.gov.uk/tax-codes, 검색일자: 2019.12.16.).

의미이며, 단일의 직업 또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부분 적용되는 PAYE code는 '1250L'이다.

〈표 Ⅱ-5〉 PAYE code Letter 구분 및 의미

Letter 기호	기호별 의미(영문 원문)
L	You're entitled to the standard tax-free Personal Allowance
M	Marriage Allowance: you've received a transfer of 10% of your partner's Personal Allowance
N	Marriage Allowance: you've transferred 10% of your Personal Allowance to your partner
T	Your tax code includes other calculations to work out your Personal Allowance
0T	Your Personal Allowance has been used up, or you've started a new job and your employer does not have the details they need to give you a tax code
BR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basic rate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D0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higher rate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D1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additional rate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NT	You're not paying any tax on this income
S	Your income or pension is taxed using the rates in Scotland
S0T	Your Personal Allowance has been used up, or you've started a new job and your employer does not have the details they need to give you a tax code
SBR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basic rate in Scotland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SD0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intermediate rate in Scotland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SD1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higher rate in Scotland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SD2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top rate in Scotland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C	Your income or pension is taxed using the rates in Wales
C0T	Your Personal Allowance has been used up, or you've started a new job and your employer does not have the details they need to give you a tax code
CBR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basic rate in Wales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CD0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higher rate in Wales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CD1	All your income from this job or pension is taxed at the additional rate in Wales (usually used if you've got more than one job or pension)

출처: 영국 정부 (https://www.gov.uk/tax-codes, 검색일자: 2019.12.16.).

고용주는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통지한 PAYE code를 바탕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종업원에 부여된 PAYE code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원천징수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는 시점과 동일하다. 소득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은 금전으로 지급되는 소득 및 금전바우처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현물성 급여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640]

3) 원천징수세액 납부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4일 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소규모에 그치는 등의 예외적인 일부 경우에는 분기별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641] 또한 과세연도가 종료된 이후 고용주는 각 종업원들에 대해 각종 공제내역들이 포함된 과세신고서류를 HMRC에 제출하여야 한다.[642]

한편 고용주가 영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PAYE시스템에 의한 원천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스스로 PAYE시스템에 따라 원천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용주 자체는 영국에 없더라도 실제로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거나 납세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영국에 있는 경우 세무서는 그 상대방에게 PAYE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643]

마.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

영국에서 종교적 직책을 맡고 있는 성직자(minister of religion)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644] 다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비용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성직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성직자에 대한 주거 지원과 관련된 소득 일부를 비과세한다.[645]

---

64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41)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799.
642)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804.
643)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 Employment Income, IBFD.
64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60005, 검색일자: 2019.12.16.).
64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60007, 검색일자: 2019.12.16.).

- 성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거(residence)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임(full-time office)으로 근무하는 경우
- 단, 해당 주거에 대한 법적 지분 일부를 자선단체(charity)나 교회법인(ecclesiastical corporation)이 갖고 있어야 함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성직자의 교구(premise)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council tax 및 수도료 등)을 보전(reimbursement) 또는 공제(deductions)해 준 것[646]
- 성직자의 교구 내에 주거시설(living accomodation)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것: 여기에는 주택보험료,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포함되며, 난방, 광열, 청소 등 성직자의 주거 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보전받은 금액도 포함된다.[647] 다만 이러한 비용 보전액에 대한 비과세는 해당 성직자가 저임금 근로(low-paid employment)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648]

또한 성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wholly and exclusively) 관련된 비용들은 성직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부터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는 우편, 전화 등의 통신료,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649]

3. 연금소득

가. 연금소득의 범위

특정 해외연금 이외의 대부분의 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된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달리 '수취' 기준이 아니라 '발생(accrual)' 기준에 따라 연금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한다.[650] 또한 공적 및 사적연금 등의 연금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으로 규

64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60013, 검색일자: 2019.12.16.).
64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60011, 검색일자: 2019.12.16.).
648)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3829.
649)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3829.

정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651]

〈표 Ⅱ-6〉 과세대상 주요 연금 항목

구분		내용
a	영국 내 연금 (UK pension)	영국 내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아래 c~h에 해당되지 않는 것
b	해외 연금(foreign pension)	영국 이외의 지급자가 영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아래 c~h에 해당되지 않는 것
c	영국 사회보장연금 (UK social security pension)	사회보장 및 국가보험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국가(State)연금 및 이와 유사한 연금
d	소정의 등록연금 (registered pension scheme)	고령자 사후 유족 연금, 질병 연금 등
e	고용 관련 연금 (employment-related pensions)	기업연금체계(occupational pension scheme)로부터 받은 연금액 등
f	해외정부연금 (overseas government pension)	해외에서 정부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영국 거주자에게 영국에서 지급되는 연금
g	의회펀드관련 연금	하원의원 펀드(House of Commons Memebrs' Fund)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h	Pre-1973 pensions	영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s)에 의해 과거 Overseas Pensions Act 1973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
i	종전 직장에서의 연금	이전 고용주 또는 그 승계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출처: LexisNexis, 2007.

나. 연금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당 연금을 받거나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가 납세자가 된다.[652] 영국 「소득세법」상 연금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일부로 취급하므로 과세방법 또한 근로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즉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PAYE code를 바탕으로 연금 지급자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650) sections 569-572 of ITEPA 및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IBFD.
651)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007.
652)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006.

4. 퇴직소득

가. 기본 과세원칙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받는 일시금(lump sums paid on termination of an office or employment)은 그 퇴직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소득(general earnings)으로 과세되거나 특별규정의 적용에 따라 완전 또는 부분 비과세될 수 있다.[653]

원칙적으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든 근로서비스의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퇴직금을 받거나 근로의 대가로 퇴직급여를 받게 될 것이 예상 가능한 경우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받는 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654]

나. 특정 퇴직지급금(Termination payment)에 대한 특칙

1) 기본 개념

일반적으로 퇴직에 따른 보상금 등이 지급될 경우 이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 그러나 해고보상금 등 특정한 종류의 퇴직 지급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655]이 적용되어 해당 지급액의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 비과세된다. 이러한 특별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656]

- 부당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보상금(compensation payment):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하였을 경우(예: 정당한 통지 없이 해고)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
- 순수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에 따른 지급금: 정리해고는 영국 「노동법」상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은 특별규정 적용 대상이 됨. 또한 법정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정리해고(non-statutory redundancy scheme)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 이것이 「노동법」에 부합하는 정리해고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보상금일 경우에 한해 특별규정이 적용된다.[657]

---

653)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678.
654)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679.
655) special provisions in ITEPA 2003, ss401-416.
656)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3.5.2. Termination payments, IBFD.

특별규정 적용 여부 관련 판례:

> Clinton v HMRC FTT(TC 278), 2010 STI487
>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근로자 퇴직에 따라 지급된 case:
> 해당 금전이 추가적인 배려에 따른 지급금(ex gratia basis)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이의제기 해결을 위한 것인지에 무관하게, 이는 정당한 통지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30,000파운드까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특별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658]

영국 과세당국은 실제로 퇴직금이 특별규정을 적용받는 해고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판단의 문제이며, 영국 국세청은 해고안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권고하고 있다.[659]

2) 비과세 범위[660]

일반적인 해고보상금의 경우 처음 30,000파운드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3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점과는 무관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을 구성한다.[661] 한편 근로자의 부상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657) HMRC SoP SP 1/9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ement-of-practice-1-1994/statement-of-practice-1-1994).
658)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689.
659) HMRC SoP SP 1/9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ement-of-practice-1-1994/statement-of-practice-1-1994).
66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IBFD.
661) sections 401-416 of ITEPA.

5. 기타소득

가. 기타소득의 범위

1) 기본 개념

기타소득(miscellaneous income)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총칭하는(sweep-up provisions) 성격을 가진다.[662] 즉, 아래와 같은 소득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을 말한다.[663]

-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property income)
- 이자 및 투자소득(savings and investment income)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회보장소득(social security income)

위와 같은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세부 사례는 다양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성격의 소득을 포함한다.

-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대가로 받는 소득
-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1)
- 금전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만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

(*1)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예시[664]

> 배우 A는 자영업을 포기하고 B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영화 및 TV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출연계약은 이후 C회사로 이전되었다. C회사는 당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하기만 할 뿐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거래 사업활동(trading)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 C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으로부터의 소득은 사업소득조항에 따라 과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계약으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66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01, 검색일자: 2019.12.16.).
663)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638.
66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25, 검색일자: 2019.12.16.); Black Nominees Ltd v Nicol [1975] 50TC229.

(*2) 금전 사용의 대가 관련 예시[665]

회사 A는 건축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며, 동 건축업자는 해당 건축물로부터의 임대료를 회사 A에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하였다. 본 사안에서는 금전대여금과 임대료 이전액의 가치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금액은 금전대여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666] (다만 해당 목록은 예시적인 것으로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표 Ⅱ-7〉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 예시

주요 기타소득 항목
우발적인 부수입, 프리랜서 수입, 일시적 서비스 제공 대가 등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및 부동산투자펀드(Property Authorised Investment Funds; PAIFs)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분배액(Property Income Distributions)
질병이나 장애 보장을 위한 개인보험상품으로부터의 수령액
비인가 유닛트러스트(unauthorised unit trusts)로부터의 소득
CD(certificates of deposit) 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예전 직장과 관련되어 받은 현물혜택(non-cash benefits)
해외연금소득 중 특정한 종류의 소득

2) 기타소득 제외 대상

위와 같이 기타소득이 보충적으로 소득을 망라하는 특징이 있으나, 모든 종류의 잔여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과세대상 소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이른바 '나머지 소득에 대한 과세조항(sweep-up provisions)'은 특정 종류의 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두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profit) 추구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같은 특정된 종류의 소득과 유사한 것만을 과세한다는 뜻이다.[667] 이와

66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225, 검색일자: 2019.12.16.) Ruskin Investments Ltd v Copeman [1943] 25TC187.

666) 영국 정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7630/SA150_2019.pdf, 검색일자: 2019.12.16.).

관련하여 특정 소득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타소득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소득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668]

- 사업활동과는 무관한 자산 판매로 인한 자본 증가[669]
- 선물이나 답례품 등 자발적인 금전 제공으로 인한 소득
- 내기나 베팅 등의 도박 상금
-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과세되었을 성격이지만 해당 소득의 원천이 종료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정해진 것

나. 기타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방법

1)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납세자가 수취하는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money or money's worth)를 바탕으로 산정하며,[670] 해당 기타소득이 발생한(arising)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671]

2) 필요경비산입액

기타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해당 소득 수취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상 구체적인 비용 공제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다.[672]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

667) Barker, W. B., "Comparative Approach to Income Tax Law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ath. UL Rev.,* 46, 7. 1996, p. 19.
668)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01, 검색일자: 2019.12.17.).
66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35, 검색일자: 2019.12.17.).
670)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50, 검색일자: 2019.12.17.).
67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50, 검색일자: 2019.12.17.).
67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100155, 검색일자: 2019.12.17.).

〈표 Ⅱ-8〉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한 항목

구분	내용
자본공제	기타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지급이자	일시적 · 우발적 성격을 지닌 기타소득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되는 것은 비용 공제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은 공제 가능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함께 납세자의 종합소득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다만 자영업(self-employment)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의 합계가 1,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면제되므로 종합소득신고서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 해당 소득이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제 발생경비와 1,000파운드 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1,000파운드 한도 중 일부를 자영업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액으로 사용하였다면, 미사용된 부분만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673]

만약 기타소득보다 공제대상 비용이 더 커서 기타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의 특정 종류 내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즉,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과 필요경비를 별도로 기록하여야 하며, 어느 과세연도에 특정 기타소득 종류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같은 종류의 기타소득금액과 통산하고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후속 연도로 이월되어 차기에 같은 종류에서의 기타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674]

673)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her-taxable-income-hs325-self-assessment-helpsheet/hs325-other-taxable-income-2018, 검색일자: 2019.12.17.).
674)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her-taxable-income-hs325-self-assessment-helpsheet/hs325-other-taxable-income-2018, 검색일자: 2019.12.17.).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국은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항목의 공제(personal reliefs) 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소득공제(deductions or allowances) 형태 및 세액공제(credits)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 소득공제

가. 특정 비용 공제(deductions)

이는 납세자가 특정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들 중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개별적인 소득금액 단위에서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합산된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성격을 가진다.[675] 이에는 이자비용, 연금납부금, 사업손실, 특정단체 납부금, 특허권 비용,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된다.[676] 이러한 소득공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의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taxable net income)이 산출된다.[677]

1) 이자비용 공제

가) 공제 대상 기본범위[678]

개인이 지출한 이자비용이 아래와 같은 성격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하다. 다만 해당 이자비용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부분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679]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680]의 차입금 이자. 다만 당좌차월(bank overdraft) 및 신용카드 이자 등의 이자비용은 제외됨

- 파트너십 또는 고용관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류를 취득

675)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75.
67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영국 편-』, 2019, p. 255.
677)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76.
67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IBFD.
679) Chapter 1 of Part. 8 of ITA.
680) Sections 383 et seq. of ITA.

- 비공개회사(close trading company)의 주식을 5% 이상 취득
- 비공개회사 주식 취득을 위한 대여금
- 종업원지주회사 지분 취득
- 파트너십 지분 취득
- 협동조합(cooperative) 지분 취득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나) 소득공제 세부요건[681]

만약 해당 차입금이 상기 요건들 중 일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차입금 부분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복합적 차입금(mixed loan) 중 일부가 상환되었을 경우 안분계산을 통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 상환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한편 차입금 이자가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개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반영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공제로 추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해당 차입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i) '세후소득 감소 결과(post-tax advantage)'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구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ii) 당해 거래약정이 없었을 경우 차입자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루어진 차입거래일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이 종업원지주회사 등의 차입금으로서 해당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수행하는 사업이 상업적 초지(commercial woodlands) 취득에 대한 것이라면 이자비용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비공개회사 지분 매입을 위한 차입금
- 종업원지주회사 지분 취득을 위한 차입금
- 파트너십 투자를 위한 차입금

681)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 Personal reliefs, IBFD.

2)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682]

납세자의 의료비 지출액이나 의료보험 납입액 등의 의료비용은 종합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연금보험료 납부금(insurance premiums)

소정의 등록연금(registered pension scheme) 납부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영국 내 관련 소득(relevant UK earnings)의 100%에 상응하는 만큼 소득공제가 허용된다.[683] 즉,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84]

(a) 영국 관련 개인납세자일 것

(b) 등록연금(registered pension scheme)에 실제 가입한 멤버일 것

가) 영국 관련 개인납세자 요건[685]

영국 관련 개인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영국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특정 기간에 영국내 거주자인 경우
- 직전 5개 과세연도 중 특정 기간에 영국 거주자였으며 당해 연금상품 가입시점에도 영국 거주자였던 경우
- 해외에서의 왕실 관련 근무(Crown employment)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서 영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 또는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자의 배우자인 경우

나) 등록연금상품(registered pension scheme) 요건

이는 Finance Act 2004의 part 4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금상품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682)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 Personal reliefs, IBFD.

68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영국 편-』, 2019, p. 256.

68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44100, 검색일자: 2019.12.19.).

68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44100, 검색일자: 2019.12.19.).

경로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진다.[686]

-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고 HMRC가 등록결정을 내린 것 또는
- Finance Act 2004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이러한 등록연금상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금에 대한 세액 혜택, 해당 상품과 관련된 투자소득 및 자본이득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전제 조건이 된다.[687]

다) 소득공제 기본금액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 과세대상인 '영국 내 관련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688] '영국 내 관련소득'은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한다.[689]

- 근로소득(급여, 임금, 보너스, 초과근로수당, 과세대상 현물급여, 이익연계보상 등을 포함)
- 사업소득(상거래활동, 전문적 인적 용역 등을 모두 포함)
- 특허권 관련 소득(로열티, 지적재산권 사용소득, 특허권 양도소득 등)

한편 납세자의 영국 내 관련소득이 3,600파운드 미만일 경우에는 3,600파운드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690] 다만, 한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소급되거나 차기로 이월되지 아니한다.[691]

라) 소득공제 적용 방법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원천공제(relief at source)방식을 따른다. 즉, 영국에서는 고용주를 통해 연금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불입액의 80%만큼을 고용주가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입한다. 한편 연금사업자는 연금불입액의 20%만큼을 해당 근로자의 연금재원에

686) Section 150(2) Finance Act 2004.
68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31100, 검색일자: 2019.12.19.).
688) Section 190 Finance Act 2004.
689) Section 189(2)-(7) Finance Act 2004 및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44100, 검색일자: 2019.12.19.).
690) 다만 이 경우 해당 연금상품이 후술하는 "relief at source"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69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44100, 검색일자: 2019.12.19.).

가산한 뒤 HMRC에 신청하여 동 금액을 보전받는다.[692] 이와 같이 연금불입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이에 기본세율 20%를 곱한 만큼을 HMRC가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종업원 입장에서 별도로 신고할 내용은 없다(automatic tax relief). 그러나 당해 납세자가 40%나 45%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진신고(self-assessment tax return)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tax relief)를 신청해야 한다.[69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관련 예시][694]

납세자 A는 2019/20 과세연도에 60,000파운드의 소득을 수취하였고 이 중 10,000파운드에 대해 4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납세자 A의 사적연금불입액은 15,000파운드이다. - 납세자 A의 연금불입액 15,000파운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tax relief at source.) - 또한 40% 세율로 과세된 10,000파운드 상당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20%에 대한 소득공제(tax relief)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5,000파운드에 대해서는 추가 20% 상당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연간한도(annual allowance)

이는 개인납세자가 연금저축(pension savings)에 대하여 소득공제(tax relief)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 등이 보조해 준 연금불입액도 포함된다.

이러한 연간한도(annual allowance)는 개념상으로는 연금관련 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저축납입액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과세하는 방식(annual allowance charge)으로 운용된다. 즉 당해 연도에 연금저축 증가액에 대해 주어진 소득공제 혜택 중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연불입액만큼은 해당 세액절감 혜택을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695]

692) https://www.which.co.uk/money/pensions-and-retirement/personal-pensions/contributing-to-a-private-pension-explained/tax-relief-on-pension-contributions-explained-a27f53z7qg3f, 검색일자: 2019.12.19.
693) 영국 정부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pension-tax-relief, 검색일자: 2019.12.19.).
694) 영국 정부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pension-tax-relief, 검색일자: 2019.12.19.).
69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51100.

[연간한도 적용 관련 예시][696]

> 영국 개인납세자 S는 연간 소득에서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s)를 차감한 순소득이 140,000파운드이며, 당해 과세연도 중 연금불입액은 60,000파운드로서 연간한도 40,000파운드보다 20,000파운드 더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S의 총과세소득은 160,000파운드에 해당한다.
>
> S의 총과세소득 중 40% 세율구간한도(150,000파운드)를 초과한 것은 10,000파운드이며, 이 부분은 45% 세율이 적용되어 해당 구간 세액은 4,500파운드이다. 연금불입 초과액 20,000파운드 중 10,000파운드는 40% 적용세율 구간(37,500파운드-150,000파운드)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세액은 4,000파운드이다.
>
> 따라서 S의 annual allowance tax charge는 총 8,500파운드(4,500파운드 + 4,000파운드)이다.

연간한도와 비교하는 연금저축 증가액의 개념은 연금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금전적립계약(money purchase arrangement)'[697] 및 그와 관련된 '혼성계약(hybrid arrangements)'의 경우 실제 연금불입액(actual amount of contributions)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종류의 연금상품(예: defined benefits)의 경우에는 실제 불입액이 아니라 연금수령가치(benefit rights)의 증가분과 비교하게 된다.[698]

한편 연간한도 금액은 기본적으로 40,000파운드가 적용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150,000파운드를 초과한다면 차감 연간공제한도(tapered annual allowance)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연간한도 금액이 결정된다.[699]

> Max(a,b)
> a. 40,000파운드 - (1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금액 부분의 매 2파운드마다 1파운드씩)
> b. 10,000파운드

696) https://www.which.co.uk/money/pensions-and-retirement/personal-pensions/contributing-to-a-private-pension-explained/how-the-pensions-annual-allowance-works-ac8d33u9v9ch, 검색일자: 2019.12.19.

697) 일정 금전을 연금상품에 적립하고 해당 불입액의 투자성과에 따라 향후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상품(defined contribution 등),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money-purchase-annual-allowance, 검색일자: 2019.12.19.

698)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51100, 검색일자: 2019.12.19.).

69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51100, 검색일자: 2019.12.19.).

다만 당해 납세자가 금전적립계약(money purchase arrangement)을 유동적으로 사용(flexibly accessed)해온 경우에는 연간한도 금액이 금전적립계약과 기타 연금상품용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된다.

참고로, 연간한도 금액은 2010년대부터 급격하게 줄어 2016/17 과세연도부터 40,000파운드가 기본금액으로 적용되고 있다.

〈표 Ⅲ-1〉 연간한도 기본금액의 변천

(단위: 파운드)

과세연도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allowance	215,000	225,000	235,000	245,000	255,000	
과세연도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allowance	50,000	50,000	50,000	40,000	80,000	40,000

한편 납세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간한도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로 이월이 가능하다. 과거 어떤 연도의 미사용 한도(allowance) 이월액 해당 과세연도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는 각 과세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700]

[미사용 한도 이월액 관련 예시][701]

Bob은 2011/12 과세연도에 85,000파운드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을 하였으며 이는 연간한도 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전 3개년도에 Bob의 연금저축은 해당 연간한도보다 매년 30,000파운드만큼 낮았다. 이에 따라 Bob은 90,000파운드의 미사용 allowance 이월액을 보유하고 있다. 즉 2011/12 과세연도에 Bob은 연금저축에 대해 총 140,000파운드(50,000파운드 + 이월액 90,000파운드)만큼의 annual allowance의 여유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액 85,000파운드는 140,000파운드에 미달하므로 annual allowance charge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 평생한도(Lifetime allowance)

납세자가 평생 불입한 연금상품총액(pension pot)이 일정금액(현행은 1,055,000파운드)을

700)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51100, 검색일자: 2019.12.19.).

70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51100, 검색일자: 2019.12.19.).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납세자의 연금총액이 평생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금사업자가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세액을 연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납세자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과세신고서(self-assessment tax return)에 포함해서 신고하여야 한다.[702] 또한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연금상품으로부터 납세자가 50세가 되기 이전에 연금수령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감평생한도액(reduced lifetime allowance)이 적용된다.[703]

4) 기부금 공제

가) 기부금보조 제도의 개념

영국은 기부금보조(Gift Aid)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법 소정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법」상 혜택을 부여한다. 즉 기부금보조 제도하에서 기부자가 교회 등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해당 자선단체에 추가적인 지원(해당 기부금의 25% 상당)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0파운드만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정부에서 25파운드를 추가지원하여 총 125파운드 만큼의 기부금을 동 자선단체가 수령하게 된다.[704] 이는 마치 기부자가 125파운드의 소득에서 기본세율(20%)를 적용하여 세금 25파운드를 납부한뒤 세후 이익 100파운드를 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정하고 동 25파운드만큼을 정부가 자선단체로 이전한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나) 기부금보조 제도에 따른 세액절감 혜택

기부금보조 제도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한 개인납세자는 기부금에 상응하는 소득금액에는 기본세율(20%)을 적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납세자가 기부한 금원에 정부의 추가보조액을 합한 금액만큼 해당 납세자의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한도(2019/20연도의 경우 37,500파운드) 및 상위세율(higher tax rate) 적용 과세표준 한도((2019/20연도의 경우 150,000파운드)를 각각 증가시킨다.[705] 예를 들어, 100파운드를 기부한 개인납세자가 소득금액 크기로 볼 때 한계세율이 상위세율 40% 적용을 받을

702) 영국 정부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lifetime-allowance, 검색일자: 2019.12.19.).
70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82000, 검색일자: 2019.12.19.).
704) 영국 정부 (https://www.gov.uk/donating-to-charity/gift-aid, 검색일자: 2019.12.19.).
705)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590.

경우 125파운드(100파운드 + 정부보조 25파운드)에 세율 차이 20%p(=40% - 20%)를 곱한 만큼 절세혜택을 받게 되며, 45%의 추가세율(additional tax rate)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125파운드에 25%p(45% - 20%)를 곱한 만큼 세액 절감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기부금 공제 혜택은 세전이익의 일부를 차감하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들에게 기부금 상응 부분만큼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부금보조 제도에 따른 세액절감 효과 예시][706]

① 한계세율이 상위세율(higher tax rate)에 해당하는 납세자인 경우

Peter는 2019/20 과세연도에 총과세소득이 51,425파운드이며 이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과세연도에 Peter는 자선단체에 600파운드를 기부하였으며,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는 12,500파운드가 적용된다.

(단위: 파운드)

구분	기부금보조 없을 경우		기부금보조를 적용한 경우	
총과세소득		51,425		51,425
인적공제		(12,500)		(12,500)
과세표준		38,925		38,925
산출세액				
- 기본세율 적용	37,500×20%=	7,500	38,250[1)]×20%=	7,650
- 상위세율 적용	1,425×40%=	570	675×40%=	270
소계		8,070		7,920
세액 절감액	150 (=8,070 - 7,920)			

주: 1) 기부금 지출액 600파운드 및 정부의 추가보조액 150파운드(=600×25%)를 더한만큼 기본세율 적용 구간 한도를 높임(37,500 + 600 + 150 = 38,250)

② 한계세율이 추가세율(additional tax rate)에 해당하는 납세자인 경우

Catherine은 2019/20 과세연도에 총과세소득이 175,000파운드이며 이중에 배당소득은

706)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593.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 과세연도에 Catherine은 자선단체에 2,400파운드를 기부하였으며,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는 적용가능액은 없다.

(단위: 파운드)

구분	기부금보조가 없을 경우		기부금보조를 적용한 경우	
총과세소득		175,000		175,000
인적공제		-		-
과세표준		175,000		175,000
산출세액				
- 기본세율 적용	37,500×20%=	7,500	40,500[1)]×20%=	8,100
- 상위세율 적용	112,500×40%=	45,000	112,500×40%=	45,000
- 추가세율 적용	25,000×45%=	11,250	22,000×45%=	9,900
소계		63,750		63,000
세액 절감액	750 (=63,750 - 63,000)			

주: 1) 기부금 지출액 2,400파운드 및 정부의 추가보조액 600파운드(=2,400×25%)를 더한만큼 기본세율 적용 구간 한도를 높임(37,500 + 2,400 + 600 = 40,500)

다만 개인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세금(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이 당해 기부금보조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납세자가 추가적인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한규정도 함께 운영한다.

[기부금보조 제도 관련 추가과세 사례 예시][707)]

Mr. Green은 소득 수준이 낮은 관계로 매년 낮은 소득세만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2015/16 과세연도에 Mr. Green은 어느 행사에서 상금(비과세 대상) 10,000파운드를 받게 되었으며, 이 중 800파운드를 자선단체 A에, 1,600파운드를 자선단체 B에 각각 기부하였다.
자선단체 A 및 B는 모두 기부금보조(Gift Aid)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파운드(=800×25%) 및 400파운드(=1,600×25%)를 각각 기부금보조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당해 과세연도에 Mr. Green은 소득세로 단지 250파운드만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기부금보조로 지원된 총액 600파운드에서 Mr. Green이 납부한 소득세 250파운드를 초과하는 350파운드에 대해서는 Mr. Green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70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chapter-3-gift-aid, "Chapter 3.5 Tax to cover", 검색일자: 2019.12.19.).

나. 일반적 소득공제(allowances)

1) 기본인적공제(basic personal allowance)

기본인적공제는 성별이나 기혼 여부 등 개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본인적공제 금액은 매년 결정되며 2019/20과세연도에는 납세자당 12,500파운드를 적용한다.

(단위: 파운드)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기본인적공제액	10,600	11,000	11,500	11,850	12,500

다만 납세자의 조정순소득(adjusted net income)이 100,0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로 감액한 금액으로 기본인적공제를 적용한다. 조정순소득은 기본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금액(total taxable income before personal allowances)을 바탕으로 산출하되 아래와 같은 특정 비용공제액(reliefs)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708]

- 사업소득결손금(trading losses)
- 기부금보조(Gift-Aid)제도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서 추가가산(grossed-up)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
- 연금납입금(pension contributions) 등

[납세자의 조정순소득 계산 예시]

Clara의 총과세소득은 60,000파운드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근로소득: 55,000파운드
- 은행이자: 5,000파운드

Clara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적연금에 4,750파운드를 납입하였다. 또한 Clara는 1,000파운드만큼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으며, 이는 기부금보조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Clara의 조정순소득:
60,000 - 4,750(연금납입액) - 1,250(기부금 1,000 + 기부금보조 250) = 54,000

조정순소득이 100,0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2파운드당 1파운드의 비율로 기본

708)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adjusted-net-income, 검색일자: 2019.12.19.).

인적공제 금액을 감액(reduced personal allowance)한다. 예를 들어 2019/20과세연도의 경우 조정순소득이 아래와 같이 100,000파운드를 초과함에 따라 일정비율로 줄어들어 조정순소득이 125,000파운드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금액이 0이 된다.[709]

(단위: 파운드)

조정순소득	100,000	10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기본인적공제액	12,500	10,000	7,500	5,000	2,500	0

2) 배우자 등에 대한 기본인적공제 이전(marriage allowance)[710]

배우자 또는 법정파트너(civil partner)가 있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납세자 본인의 기본인적공제 금액 중 일부를 배우자 등에게 이전할 수 있다.

- 당해 납세자가 혼인관계에 있거나 법정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관계가 있을 것
-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소득이 기본인적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납세자의 배우자 등의 과세표준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이전가능 금액은 기본인적공제금액의 10%에 해당한다(즉 2019/20 과세연도의 경우 12,500 ×10% =1,250파운드를 이전 가능).

3) 시각장애인공제 (blind person's allowance)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본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711]

- 시력을 상실했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blind or severely sight impaired) 사실이 지방정부에 등록(registered)되어 있을 것
- 시력 상실 또는 심각한 손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 증명서류를 갖출 것

시각장애인공제금액은 2019/20 과세연도의 경우 2,450파운드에 달한다.[712] 한편 납세자

709) 영국 정부 (https://www.gov.uk/income-tax-rates/income-over-100000, 검색일자: 2019.12.19.).
710) 영국 정부 (https://www.gov.uk/marriage-allowance, 검색일자: 2019.12.19.).
711) 영국 정부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eligibility, 검색일자: 2019.12.20.).
712) 영국 정부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what-youll-get, 검색일자: 2019.12.20.).

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시각장애인공제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동거 중인 배우자 또는 법정파트너에게 이전(transfer)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배우자 등이 시각장애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전 가능하다.[713]

2. 세액공제

가. 기업투자기구(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EIS는 기본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신주 발행에 투자한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EIS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배당 등에 대한 우선적 권리(preferential right)가 부여된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ordinary shares)에 해당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신주 발행 시 대금이 완납된 것이어야 한다.[714] 또한 해당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액은 일반적으로는 연속된 12개월 동안(rolling basis 12-months) 500만파운드까지만 인정되며, 지식집약적(knowledge intensive)기업인 경우에는 1,000만파운드까지 인정된다.[715] 이외에도 EIS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다소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격 사업활동(qualifying business activity)', '적격 투자자(qualifying investor)', '적격 기업(qualifying company)'의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적격 사업활동

신주 발행이 해당 피투자회사가 적격 사업활동(qualifying business activity)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주를 발행하는 피투자회사 또는 그 회사가 90% 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소정의 적격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90% 이상 자회사'는 피투자회사가 통제하는 자회사로서 해당 자회사의 지분율 및 의결권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청산 시 90% 이상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적격 사업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해당된다.

713) 영국 정부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transfer-allowance, 검색일자: 2019.12.20.).
71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2020, 검색일자: 2019.12.20.).
71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2030, 검색일자: 2019.12.20.).

Activity A (qualifying trade):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716][717]

- 토지, 상품, 선물, 증권 기타 금융상품 취급
- 일반적인 도소매업 이외의 상품 취급업
- 은행, 보험, 대부업, 팩토링 등의 금융활동
- 리스,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 취득
- 법률 또는 회계서비스업
- 부동산 개발
- 농업 또는 정원업(market gardening)
- 산림 관리, 목재 생산 등의 사업
- 조선업
- 석탄 채굴 또는 제철업
- 호텔업 및 이에 준하는 숙박 관련업
- 요양원 또는 주거형 케어하우스
- 전기 발전, 열에너지 등의 에너지 생산, 가스 및 연료 생산 관련 업종 등

당해 피투자회사 또는 그의 90% 이상 자회사는 해당 주식의 발행 시점에 상기의 적격 사업을 영국 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wholly or mainly) 수행하여야 하며 '적격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해당 주식 발행 시점에 적격 사업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적격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718]

Activity B (research and development):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날에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 직후부터 연구개발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당해 주식발행 시점부터 ① 연구개발활동으로부터 상기의 '적격사업(qualifying trade)'이 유도(derive)되거나, ② 연구개발활동이 당해 적격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719]

7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영국 편-』, 2019, p. 262.
717)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p. 1181~1182.
718)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4. Investment reliefs, IBFD.
719)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2) 적격 투자자 (qualifying investor)

개인납세자인 투자자는 해당 피투자회사와 일정기간 동안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no connection)하여야 한다. 당해 '일정기간'은 주식발행일 2년 전부터 '종료일(termination date)'까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료일은 주식발행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로 본다.[720] 특수관계 존재 유무는 피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본다.

a) 당해 피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 보통주 또는 의결권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또는

b) 납세자가 당해 피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종업원, 임원, 파트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그러한 지위에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성격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721][722]

- 근로관계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등을 보전한 금액
-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것
- 통상적인 투자 수익에 준하여 받는 배당 및 기타 수익금
- 재화의 공급 대가로서 해당 재화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대가
- 당해 피투자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로서 적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 관련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는 적정 수준의 대가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3) 적격 기업(qualifying company)

EIS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당해 피투자회사(즉, 주식발행회사)는 주식발행일부터 종료일(termination date)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723]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4. Investment reliefs, IBFD.

720)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0540, 검색일자: 2019.12.20.).

721)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4. Investment reliefs, IBFD.

7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영국 편-』, 2019, p. 263.

72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3010, 검색일자: 2019.12.20.).

가) 사업(trade) 요건

피투자회사는 '적격 사업(qualifying trade)'에 해당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존속하여야 한다. 또는 피투자회사가 적격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자회사집단의 모회사(parent company)에 해당하여야 한다.[724]

나) 비상장(unquoted) 요건

피투자회사는 비상장기업이어야 하며, 상장기업은 공인된 주식거래소에 등록되거나 HMRC가 지정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또는 영국 이외의 곳으로서 HMRC가 지정한 곳에서 상장된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당해 피투자회사가 주식발행 당시 상장이 예정되거나 상기 비상장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자회사가 될 것으로 예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725]

다) 통제권 및 독립성 요건[726]

통제 여부(the control test): 해당 피투자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적격 자회사(qualifying subsidiary) 이외에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독립성 여부(the independence test): 해당 피투자회사는 다른 기업 또는 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의해 통제(control)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다른 기업이 해당 피투자회사의 보통주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동 피투자회사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라) 총자산 요건[727]

해당 피투자회사의 총자산은 주식발행 직전시점 기준으로 1,500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고

72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3050, 검색일자: 2019.12.20.).
72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3090, 검색일자: 2019.12.20.).
72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3100, 검색일자: 2019.12.20.).
72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3110, 검색일자: 2019.12.20.).

주식발행 이후에는 1,600만파운드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2.4.6.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경우 해당 한도는 각각 주식발행 직전시점 700만파운드 및 이후 800만파운드가 적용되며, 2006.4.6일 이전 발행 주식의 경우에는 각각 1,500만파운드 및 1,600만파운드가 적용된다. 만약 피투자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회사의 자산까지 합한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마) 종업원 수[728]

해당 피투자회사는 당해 주식발행 시점 당시 전일제(full-time) 근로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250명 미만이어야 한다. 2012.4.6일 이전에는 종업원 수 한도가 50명으로서 2007.7.19일 이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해 적용되었다. 종업원 수 한도는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그룹일 경우 해당 그룹 전체 기준으로 적용된다.

바) 적격 자회사(qualifying subsidiaries)[729]

해당 피투자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동 자회사는 아래와 같은 '적격 자회사'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해당 피투자회사는 그 자회사 보통주를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것
- 해당 피투자회사 및 그의 다른 자회사 이외의 자에 의해 통제되는 자회사가 아닐 것

EIS 세액공제는 해당 피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연도에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주식발행가액에 해당 연도의 EIS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액을 산출한다. 2019/20과세연도의 EIS 요율은 30%가 적용된다.[730] EIS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2018/19과세연도부터는 100만파운드의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1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이 지식집약적 기업에 투자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한도를 200만파운드까지 인정한다. 한편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동 발행 주식 일부가 과거 연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급공제(carry-back)를 적용할 수도 있다.[731]

728)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3120, 검색일자: 2019.12.20.).
72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3130, 검색일자: 2019.12.20.).
730)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1126.
731)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1

나. 초기기업투자기구(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SEIS 세액공제는 EIS 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지만 보다 소규모의 초창기 기업에 대한 투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제도(ITA 2007, s257A)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732]

- 적격 사업(qualifying business)을 신규로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적용됨
- 개인납세자별로 연간 주식발행가액 10만파운드까지 적용 가능하며 직전 연도에 소급 적용 가능
- 주식발행가액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
- 해당 주식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이외에도 EIS와 유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즉 이는 EIS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소규모 기업에 투자하는 납세자에 대해 EIS보다 높은 요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초창기 기업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733]

SEIS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주식발행가액에 SEIS 요율(현행 50%)을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연도에 SEIS 세액공제 산출액이 공제대상 소득세액보다 클 경우 소득세 납부세액은 0으로 적용한다. 또한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SEIS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식발행가액의 최대 한도는 10만파운드로 한다. 납세자는 당해 연도에 취득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직전 연도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른바 소급공제(carry-back)를 적용할 수도 있다. 직전 연도로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SEIS 요율이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734]

SEIS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반 요건들을 소정의 기간 동안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가 있다.[735]

0530, 검색일자: 2019.12.20.).

732)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421.

73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30100, 검색일자: 2019.12.20.).

73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31130, 검색일자: 2019.12.20.).

735)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31140, 검색일자: 2019.12.20.).

- Period A: 해당 피투자회사의 설립 시점부터 종료일(termination date) 직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종료일'은 당해 주식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을 지칭함
- Period B: 당해 주식발행일로부터 상기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SEIS 세액공제의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요건은 상기의 Period A 또는 Period B 중 지정된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한다.

1) 투자자 (qualifying investor)

종업원 여부(no employee investor): 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는 Period B 기간 동안 해당 피투자회사(적격 자회사 포함)의 직원(employee)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개인이 동 회사의 임원이란 이유로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736]

상당한 이해관계 여부(substantial interest): 투자자는 Period A 기간 동안 피투자회사에 대해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보통주 또는 의결권 등을 3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737]

기타: 이외에도 투자자는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정상적인 목적으로 해당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no tax avoidance' 요건), 소정의 연계 차입거래('no linked loans' 요건) 및 연관 투자약정('no related investment'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738]

2) 투자주식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일반적인 보통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배당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에 우선적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739] 또한 당해 주식은 해당 피투자회사 또는 그의 적격 자회사가 '적격 사업(qualifying business activity)에 사용하기

736)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32020, 검색일자: 2019.12.20.).
737)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32030, 검색일자: 2019.12.20.).
738)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2453.
739)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33020, 검색일자: 2019.12.20.).

위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동 주식발행으로부터 취득한 재원을 Period B 기간 종료 이전까지 해당 '적격 사업'을 위해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740]

3) 피투자회사(qualifying company)

해당 피투자회사는 Period B 기간 동안 '적격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의 적격 자회사를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투자회사는 영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Period B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 파산임박, 채무지불능력 상실 등의 문제가 없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피투자회사는 '비상장요건(unquoted status)', '통제 및 독립성 요건(control and independence)', 총자산요건(gross assets)', '종업원 수 요건(number of employees)' 등의 소정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741]

다. 벤처자본신탁(venture capital trust) 세액공제

벤처자본신탁(Venture Capital Trust.'VCT')은 HMRC에 의해 승인된 투자신탁의 일종으로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VCT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그 일환으로 VCT에 투자하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742] 즉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VCT가 발행하는 신주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당 최대 200,000파운드까지의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투자자는 당해 발행 주식을 최소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VCT의 배당이나 자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743] 세액공제액은 주식발행가액의 30%로 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744]

740)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4. Investment reliefs, IBFD.
741)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p. 2455~2460.
742)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0010, 검색일자: 2019.12.20.).
743)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1020, 검색일자: 2019.12.20.).
744) HMRC manua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1030, 검색일자: 2019.12.20.).

라. 지역개발 투자 관련 세액공제(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이는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으로 인증(accredited)된 기관에 투자하는 개인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투자액의 5%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745]

마. 사회적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social investment tax relief)

이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서, 동 기업에 주식 또는 채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정의 적격 투자금액(qualifying investment)의 30%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단, 상기의 EIS 세액공제 또는 SEIS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746]

바. 혼인커플세액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

납세자 그의 배우자 등(법정 파트너 포함)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 등 중 1인은 혼인커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747]

- 당해 납세자 및 배우자 등이 혼인관계에 있거나 법정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관계가 있을 것
- 당해 납세자 및 배우자 등이 동거 상태에 있을 것
- 당해 납세자 및 배우자 등 중 최소 1935년 4월 6일 이전에 출생했을 것
- 배우자 등에 대한 기본인적공제 이전(marriage allowance)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것

혼인커플세액공제 금액은 2019/20과세연도의 경우 3,450파운드에 달한다.[748]

---

745)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4. Investment reliefs, IBFD.
746)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1.8.4. Investment reliefs, IBFD.
747) 영국 정부 (https://www.gov.uk/married-couples-allowance, 검색일자: 2019.12.20.).
748)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p. 98.

Ⅳ 시사점

1. 과세대상 소득 측면

영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소득세 종합과세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불문법 국가인 영국의 법 체계상 명문의 규정 이외에 판례법상 해석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국 간의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

과세대상 소득 중 사업소득의 전체적인 구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편이나, 감가상각비의 경우 일괄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방식을 통해 별도로 소득공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복잡한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하지 않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특정한 형태의 자본적지출에 공제 혜택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장래 공제연도에 제한이 없다는 것과 다른소득과의 통산, 소급공제 가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의 일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현물급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항과 과세지침을 두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성 항목을 근로소득으로 포착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 또한 과세체계를 간명하게 하는 목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아우르는(sweep-up provisions)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포괄적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판례 해석 등에 따라 과세범위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측면

영국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은 주로 기본인적공제에 더하여 특정 비용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로 구성되는데,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특정 비용항목은 그 종류가 다소 제한적이다. 한편 연금 관련 소득공제의 경우 고용주가 연금불입액의 일부를 HMRC에 신청하여 보전받는 형식의 원천공제(relief at source)방식을 적용하며, 기부금의 경우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해당 자선단체에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즉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기부금수령자 등의 기타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세정책 효율

을 높이려는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 관련 정책 수립 시에도 참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액공제의 경우 주로 특정 목적의 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대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 목표에 명확히 부합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Barker, W. B., "Comparative Approach to Income Tax Law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ath. UL Rev.,* 46, 7., 1996.

UK Parliament, "Capital gains tax : background history," SN860, 2 June, 2010.

LexisNexis, "Tolleys Income Tax 2019/20-Main Annual".

B.R. Obuoforibo,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Tax Guides-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19), IBFD.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영국 편-』, 2019.

영국 국세청(HMRC)이 발간한 조세제도 설명서(manuals).

: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

영국 정부에서 발간한 조세 관련 설명 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https://www.gov.uk/guidance/.

https://www.gov.uk/income-tax-rates/income-over-100000.

https://www.gov.uk/marriage-allowance.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eligibility.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what-youll-get.

https://www.gov.uk/blind-persons-allowance/transfer-allowance.

부록: 영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영국 과세체계상 소득세 제도는 단일의 법체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문 법령 및 판례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성문법 또한 다양한 법령(Acts)이 관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Income Tax Act 2007(ITA), 사업소득 및 부동산·투자소득에 관한 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ITTOIA), 급여 및 연금 소득에 대한 Income Tax (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 (ITEPA)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749]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소득세 기본 체계를 규정하는 Income Tax Act 2007(ITA)의 주요 조문을 참고로 예시한다.

1. Income Tax Act 2007 개요[750]

Income Tax Act 2007은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 세율, 세액계산 방법, 인적공제 및 소득세 관련 기본정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당해 법령은 각종 투자세액공제, 특정소득공제, 손실공제, 기부금보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며, 신탁관계 및 원천과세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소득세 규정들도 포함한다.

2. Income Tax Act 2007의 주요 구성[751]

Income Tax Act 2007은 17개의 부분(Parts)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총 1,035개의 조항(Sections)을 담고 있으며 이에 더해 4개의 부칙(Schedule)이 추가된다. 해당 법령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Part 1: 개요(Overview)
Part 2: 기본규정(Basic provisions)
Part 3: 인적공제(Personal reliefs)

7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영국 편-』, 2019, p. 234.
75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7/3/notes/division/1/3
75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7/3/contents

Part 4: 손실공제(Loss relief)
Part 5: 기업투자기구(Enterprise investment scheme_
Part 6: 벤처자본신탁(Venture capital trusts)
Part 7: 지역개발투자세액공제(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Part 8: 기타 공제(Other reliefs)
Part 9: 정산 및 수탁인 관련 특별조항(Special rules about settlements and trustees)
Part 10: 자선신탁 등에 대한 특별조항(Special rules about charitable trusts etc)
Part 11: 환매조건부거래 관련 조항(Manufactured payments and repos)
Part 12: 발생주의이익(Accrued income profits)
Part 13: 조세회피(Tax avoidance)
Part 14: 납세의무 관련 기타 규정(Income tax liability: miscellaneous rules)
Part 15: 원천과세(Deduction of income tax at source)
Part 16: 소득세법 정의 규정 등(Income Tax Acts definitions etc)
Part 17: 당해 법령 및 규정 관련 정의 조항(Definitions for purposes of Act and final provisions)

부칙:
Schedule 1: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2: Transitionals and savings
Schedule 3: Repeals and revocations
Schedule 4: Index of defined expressions

제5장 독일

Ⅰ. 소득세제 개관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독일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5장 | 독일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 구성체계 개관

독일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Einkommensteuer)와 법인에 대한 법인세(Körperschaftsteuer)로 이원화되어 있다.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이다. 독일은 16개의 주(Land)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법률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으로 구분된다. 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은 연방의회(Bundestag)가 제정·개정하는 연방법이다.

연방의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독일에서 소득세가 연방과 주의 공동세로 활용되고 있는 관계로[752]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증감효과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의 재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방상원의 동의절차는 이러한 소득세법의 개정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2020년 1월 현재 독일 「소득세법」 전은 총 10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체계는 아래와 같다.

I. 납세의무(Steuerpflicht)
II. 소득(Einkommen)
  1. 과세를 위한 물적 전제들(Sachliche Voraussetzungen für die Besteuerung)
  2. 비과세 수입(Steuerfreie Einnahmen)
  3. 소득(Gewinn)

752) 독일의 공동세 제도에 대해서는 이동식,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 31 이하 참조.

4.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
(Überschuss der Einnahmen über die Werbungskosten)
4a.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Umsatzsteuerrechtlicher Vorsteuerabzug)
5. 특별공제(Sonderausgaben)
6. 수취와 지출(Vereinnahmung und Verausgabung)
7. 공제되지 않는 지출(Nicht abzugsfähige Ausgaben)
8. 개별적인 소득종류들(Die einzelnen Einkunftsarten)
a) 농림업소득(Einkünfte aus Land-und Forstwirtschaft)
b)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
c)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 Arbeit)
d) 근로소득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 Arbeit)
e) 자본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
f) 임대소득(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
g) 기타소득(Einkünfte aus Sonstige Einkünfte)
h) 공동의 규정들(Gemeinsame Vorschriften)
III. 부과(Veranlagung)
IV. 세율(Tarif)
V. 조세경감(Steuerermäßigungen)
VI. 징수(Steuererhebung)
1. 소득세 징수(Erhebung der Einkommensteuer)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Steuerabzug vom Arbeitslohn[Lohnsteuer])
3.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Steuerabzug vom Kapitalertrag[Kapitalertragsteuer])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Veranlagung von Steuerpflichtigen mit steuerabzugspflichtigen Einkünften)
VII. 건축업과 관련한 원천징수(Steuerabzug bei Bauleistungen)
VIII. 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Besteuerung beschränkt Steuerpflichtiger)
IX. 그 밖의 규정들, 과태료, 처분규정들 그리고 종결규정들(Sonstige Vorschriften, Bußgeld-, Ermächtigungs- und Schlussvorschriften)
X. 아동수당(Kindergeld)
XI. 노령수당(Alterssvorsorgezulage)
XII. 사업장노인복지지원금(Förderbetrag zu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자료: 독일 소득세법전을 기초로 저자가 작성.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소득의 종류'(Arten von Einkünften)를 열거하고 있다.

① 농림업소득(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
②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
③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
④ 근로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⑤ 자본소득(Einfünfte aus Kapitalvermögen)
⑥ 임대소득(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
⑦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

다시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2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Einkünfte)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일 소득세법상 '소득'은 이익소득(Gewinneinkünfte)과 잉여소득(Ueberschusseinkünfte)으로 나누어 진다.

이익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는 농림업소득(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 그리고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이다.[753] 나머지 4가지 소득의 종류, 즉 근로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자본소득(Einfünfte aus Kapitalvermögen), 임대소득(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과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이 잉여소득에 해당한다.[754]

3. 종합소득 과세 시 특칙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7가지 소득 종류가 유형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7가지 유형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모든 소득유형을 합산과세함에도 소득의 종류를 7가지로 나누어 둔 이유는 '소득세제의 복합성(Komplexität)'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755]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경우 소득의 종류별로 당해 소득유형에만 인정해야 할 고유한 소득세 경감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소득유형별로 다양한 특례규정을 입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소득세법에서도 특정 소득유형에 대해서만 특별한 소득세 경감규정,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세율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753)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2항 제1호.
754) 독일「소득세법」제2조 제2항 제2호.
755) Grashoff, Grundzüge des Steuerrechts 14. Auflage, C.H.Beck, 2018, p. 14.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7개 소득유형은 다시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익소득유형'과 '잉여소득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문헌에서는 소득유형의 이원주의(Dualismus der Einkunftsarten)라고 부른다.[756] 개별적인 소득 종류를 다시 이렇게 이원화하는 이유는 각각의 소득유형이 서로 다른 이론적 과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이원주의는 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이익소득유형은 기본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소득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고, 잉여소득유형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소득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757] 독일에서는 소득의 개념에 대해 소득원천설이나 순자산증가설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소득원천설(Quellentheorie)에 입각하여 소득개념을 이해하였다가 그 이후 순자산증가설(Reinvermögenszugangstheorie)에 의하여 소득개념이 발전하였고 그리고 다시 근래에는 순자산증가설이 시장소득이론(Markteinkommenstheorie)에 의해 더욱 발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758]

이익소득유형과 잉여소득유형이 과세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득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개별적 소득유형 과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파생된다. 그 중 주로 거론되고 있는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759] 첫째,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가치상승이 발생한 경우 그 가치상승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이해할 것인지 여부이다.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소득유형의 경우에는 장부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이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든 '확인되면'(Aufdeckung) 그 시점에 자산가치의 변동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소득원천설에 입각하고 있는 소득유형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그러한 가치상승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둘째, 수입(Einnahmen)과 지출(Ausgaben)의 귀속시기에 있어서 위 두 유형은 차이가 있다. 수입과 지출의 귀속시기에 대해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문(수입의 귀속시기), 제2항 제1문(지출의 귀속시기)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거래 정황상 경제적 처분권한이 유입(수입의 경우) 혹은 유출(지출의 경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Zufluss- und Abflussprinzip). 하지만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몇 가지 소득금액 계산방법(Ermittlungsarten)이 여러 개 있는데[760] 그 중 자산비교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성이 발생한다. 이 방법은 이익소득유형(Gewinneinkünfte)

756) Birk/Desens/Tappe, Steuerrecht 21. Auflage, 2018/2019, C.F.Mueller, p. 183.
757) Birk/Desens/Tappe, a.a.O, p. 184.
758) Hey, in: Tipke/Lang Steuerrecht 23. Auflage, 2018, § 8 Rn. 50 ff.
759) Dillberger/Fest, Einkommensteuer und Abgabenordnung 4. Auflage, 2019, C.H.Beck, p. 39.
760) 다양한 소득금액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3, p. 314 이하 참고.

에만 적용된다.[761] 자산비교법은 과세연도 말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전연도 말 해당 가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납세의무자 가운데 기장의무가 세법이 아니라 상법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면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수익을 비과세로 규정하든지,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성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대로 「소득세법」에서도 수익과 지출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취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어느 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762] 반면, 자산비교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할 수 없는 잉여소득유형(Überschußeinkfünfte)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문과 제2항 제1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Zufluss- und Abflussprinzip)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익소득유형의 경우에는 그 유형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잉여소득유형의 경우에는 그 유형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다시 전체로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을 계산한다.[763]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분류과세를 하는 소득유형은 없다. 다만,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2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는 않는다.

761) 구체적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3, 31, p. 5. 참고,
762) 기장의무가 세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비교법을 취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문과 제2항 제1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Zufluss- und Abflussprinzip)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763)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영업소득

가. 영업소득의 개념

1) 영업소득의 개념

독일 소득세법상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으로 과세하는 소득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조부터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제15조이다. 독일문헌에서는 「소득세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본래 의미의 영업활동"(Originär gewerbliche Tätigkeit)으로 인한 영업소득으로 이해하고,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영업활동으로 간주되어"(Als gewerblich fingiert)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로 이해하기도 한다.[764]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이익창출행위가 '영업'(Gewerbebetrieb)의 형태로 이해되는 경우이어야 함이 원칙이다.[765] 이때 '영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업'이라 함은 우선 납세자의 행위가 계속적이고 독립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위가 보편적인 시장거래에의 참여행위로 이해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Gewerbebetrieb) 개념에 대한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의 개념정의는 단지 영업소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익소득(Gewinneinkünfte)유형의 기본요건(Grundtatbestand)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766] 즉, 영업소득 이외에도 이익소득유형에 속하는 농림업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의 경우에도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다른 소득과의 구분

독일 「소득세법」상 영업소득은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납세

764) Birk/Desens/Tappe, a.a.O, p. 213.
765) 소득창출행위가 '영업'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법률에 의하여 영업적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766) Dillberger/Fest, a.a.O, p. 92.

자의 경제활동이 영업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림업소득(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으로 과세하지 않는다.[767] 따라서 영업적으로 행해지는 경제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 농림업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그러한 소득유형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영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영업소득은 농림업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과 달리 지방세인 영업세(Gewerbesteuer)의 과세대상도 된다. 그래서 영업소득은 소득세와 영업세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영업세로 과세된 금액의 일부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영업소득에 속하는 경제활동행위와 공통되는 측면이 있지만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영업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나. 비과세영업소득

독일 소득세법상 비과세 범주는 「소득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중 영업소득과 관련한 부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예, 「소득세법」 제3조 제40호). 이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소득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다. 영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영업소득은 다른 6개의 소득유형과 종합하여 합산과세를 한다. 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소득은 이익소득(Gewinneinkünfte)의 일종이므로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Ermittlungsarten)으로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768] 이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독일 「조세통칙법

767)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제1문.

768) 독일 소득세법상 이익소득유형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첫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비교법, 둘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른 계산방법, 셋째 「소득세법」 제13a조 제1항에 따른 표준율(Durchschnittssätze)에 의한 계산방법, 넷째 「소득세법」 제5a조에 따른 선박의 톤수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첫째 방법은, 회계학에서의 재산법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연도말의 자산가액에서 전년도말의 자산가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회계학에서의

(Abgabenordnung, AO)」 제162조에 따라 추계과세를 한다.

라. 영업소득의 과세범위

1) 「소득세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은 2가지 유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769] 첫째 유형은 "영업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Einkünfte aus gewerblichen Unternehmen)이다. 이는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제활동이 이에 해당하여 영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경제활동이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Gewerbebetrieb)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활동의 독립성'(Selbständige Tätigkeit)이다. 활동의 독립성은 기업가적인 자발성(Unternehmerinitiative)과 위험부담(Unternehmerrisiko)을 수반할 것을 요구한다. 즉, 스스로 경제활동에 따른 성과와 위험을 부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 경제활동을 한다면 거래행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행위의 독립성은 거래행위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방법'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770] 두 번째 요건은 '활동의 지속성'(Nachhaltige Tätigkeit)이다. 활동의 지속성은 경제활동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시 소득획득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771] 활동의 지속성을 인정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반복성은 실제로 그러한 경제활동이 반복될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1회만 행해진 행위라도 반복할 의사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것이다.[772] 세 번째 요건은 이익획득의사(Gewinnerzielungsabsicht)의 존재이다. 이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은 납세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행위를 할 당시의 객관적 정황들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이익획득의사 없이 외형상 영업의 형태를 취하여

손익법과 유사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수입창출에 투입된 총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셋째 방법은, 수입금액에 평균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농림업소득에서만 인정한다. 넷째 방법은, 국제선박을 이용하여 해운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유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법인세법상 톤세와 유사). 각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 315 이하 참조.

769)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3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2호와 3호는 동일한 유형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다.

770) Dillberger/Fest, a.a.O, p. 92.

771) Dillberger/Fest, a.a.O, S. 92.

772) BFH IV R 34/15, BFH/NV 2018, 24.

손실만 발생시켜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독일 세법에서는 'Liebhaberei'(취미)라고 표현한다. 네 번째 요건은 그러한 거래행위가 보편적인 시장거래에의 참여행위(Beteiligung am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Verkehr)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납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시장에 내놓아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단순히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조달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행정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그 외 공적인 성격의 서비스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그러한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서 영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유형은, 동업자(Mitunternehmer)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이다. 독일「회사법」상 회사이지만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예: 인적회사)의 사원인 납세자가 동업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지분에 따른 이익과 회사를 위해 납세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 및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 또는 경제재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금원 역시도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소득세법」제16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조는 '영업의 양도'(Veräußerung des Betriebs)와 '영업종료'(Betriebsaufgabe)로 인한 소득을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의 양도'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해 영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때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의 '전부양도'뿐만 아니라 '부분양도'도 포함되고,[773] 또한 인적회사의 지분권을 양도하는 것도 포함한다. 영업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분양도도 포함되지만 지분권 양도의 경우에는 지분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로 인한 소득을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774]

'영업의 전부양도'(Die Veräußerung des gesamten Gewerbebetriebs)라 함은 영업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향후 더 이상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한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대신에 양수인은 양도받은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한다.[775]

'영업의 부분양도'(Die Veräußerung des Teilbetriebs)라 함은 전체 영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인데 그 양도대상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모든 특징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부분양도된 영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양

773) 독일「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774) 지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독일「소득세법」제16조 제3항에 의해 과세된다.
775) Dillberger/Fest, a.a.O, p. 96.

도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제15조의 적용대상인 일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다.[776]

「소득세법」 제16조 제3항은 '영업종료'(Betriebsaufgabe)를 영업의 양도와 동일하게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업종료'는 영업의 중요한 자산들을 하나의 거래에 의해 여러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사적인 재산으로 귀속시켜서 종래 독자적인 경제활동단위로서의 기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777] 영업종료는 일시적인 영업중지와는 다르다. 일시적인 영업중지는 영업종료가 아니다. 영업종료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영업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거나,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영업종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해외로 전체 영업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3a항에 의하여 영업종료로 간주한다. 이는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독일 과세당국은 더 이상 이전한 영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3)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는 원래 성격상 영업소득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자가 영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과거 5년 이내에 하루 이상 물적회사의 지분을 1% 이상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그 지분이 영업용 재산이 아니어도[778]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원래 소득세법상 물적회사의 지분(주식)양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본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적회사의 지분양도가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결과 회사의 형태가 인적회사인지 물적회사인지에 따라 지분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입법자는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인적회사의 지분과 물적회사의 지분을 양도차익과세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7조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게 된 것이다.[779] 물적회사의 지분양도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예: 1% 미만 보유지분) 자본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면 1주를 양도해도 영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776) 독일 「소득세법」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세상 특례가 부여되므로 동일하게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어느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777) Dillberger/Fest, a.a.O, p. 97.
778) 영업용 재산인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779) Grashoff, Grundzüge des Steuerrechts 14. Auflage, C.H.Beck, 2018, p. 58.

마. 영업소득과세시 필요경비의 인정

1) 일반적인 필요경비 인식방법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든,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든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소득금액 계산방법(Ermittlungsarten) 중 한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그 중 영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Gewinnermittlung durch Betriebsvermögensvergleich)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Gewinnermittlung durch Überschussrechnung)이 실제적으로 대부분 적용된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Betriebsvermögensvergleich)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계학에서의 재산법과 유사하다. 이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납세자는 법률규정에 의해 기장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규칙적으로 기장을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영업소득자와, 법률상 그러한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실제 기장을 하고 있는 영업소득자이다.[780] 이 방법은 다시 기장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세법인지 상법(HBG)인지에 따라 순수한 자산비교법(Der einfache Betriebsvermögensvergleich)과 적격 자산비교법(Der qualifizierte Betriebsvermögensvergleich)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기장의무가 「조세통칙법(AO)」 제141조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세법 이외 다른 법률, 특히 「상법」 제238조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이다. 「조세통칙법」 제140조는 세법 이외 다른 법률에 의해 기장의무가 부과된 자의 경우 세금계산을 위해서도 기장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 모두 1회계연도의 창출 부가가치가 600,000유로를 초과하거나 순수익이 6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순수한 자산비교법은 소득금액 계산을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한 사업용 자산(Betriebsvermögen)의 당해 사업연도 말 가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그것을 공제한 금액에 자본유출(Entnahmen)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증가시키고, 자본유입(Einlagen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세법은 상법상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 중 다수를 준용하고 있다.[781]

780) 독일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적격 자산비교법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회계장부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에서 수익과 비용의 인정에 대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은 소득세계산에 있어서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782]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수입은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회계장부에 등장하는 이익이 된다. 그리고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상 수익을 차감하는 항목은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불산입규정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된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관련한 규정은[783] 손금불산입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윤계산방법(Überschussrechnung)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대로 된 기장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추계과세가 아니라 자산비교법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총수입(Betriebseinnahmen)에서 그 사업을 위해 투입한 경비(Betriebsausgabe)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자산가치의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 방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영업소득자로서 법률에 의해 기장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자발적으로 기장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결산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적어도 수입과 지출은 기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오로지 「소득세법」 제4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실제 대부분의 영업소득자는 기장의무가 법률에 의해 부과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Gewinnermittlung durch Betriebsvermögensvergleich)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따라서 필요경비도 그 방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와 관련한 논의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은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인정하는 필요경비(Betriebsausgaben)에 대해 "영업에 의하여 야기된 경비"(Aufwendungen, die durch den Betrieb veranlasst

781) 독일 「조세통칙법」 제141조 제1항 제2문.
782) Dillberger/Fest, a.a.O, p. 106.
783)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에 대해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을 들 수 있다.

sind)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지출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업에 의해 야기되었을 것'(Eine betriebliche Veranlassung)이 필요하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동기주의(Veranlassungsprinzip)라고 한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지출이 영업과 관련되어 있고 '주관적으로' 영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784] 문헌에서는 경비지출이 사업과 연관되어 지출되었다는 것은 필요경비 인정의 필수적 전제조건이지만, 주관적으로 영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비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785] 납세자가 경비지출을 하게 된 계기가 소득창출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그러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전 및 사후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이다. 영업과 관련한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관련성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보통 인정이 된다. 그런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과 사업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자를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중의 필요경비와 달리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것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Vorweggenommene Betriebsausgaben) 그 지출이 현실적으로 곧 개시할 사업창출활동의 준비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사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결정은 최종적으로(endgültig) 내려진 상태에서 이러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786] 영업을 종료한 후에 지출한 것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Nachträgliche Betriebsausgaben) 영업활동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출이 사업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한다.

둘째, 개인적 지출과의 구분이다. 응능과세원칙에 따라 영업을 운영하는 것과 연계하여 지출된 경비는 수익에서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출이 사업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일상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경우(Kosten der Lebensführung) 그러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설혹 그러한 지출이 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더라도 결정적으로(ausschlaggebend) 개인적 일상의 필요성에 기초한 경우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

784) BFH VI R 193/77, BStBl II 1981, 368(369).
785) Birk/Desens/Tappe, a.a.O, S.286.
786) BFH III R 96/88, BStBl II 1992, 819 (821).

면서 동시에 그 일부가 개인적 일상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혼합된 지출'(gemischte Aufwendungen)이라고 한다. 현재 법원은 이러한 지출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전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787] 사업적 필요성과 개인적 필요성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788]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는 개인적 일상을 위한 지출의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러한 성격의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예외적으로 특별지출(Sonderausgaben)이나 비통상적인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으로 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론 예외에 해당한다.

3) 영업소득 과세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인정관련 특례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유형 중 「소득세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소득금액 계산방법,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필요경비의 인정범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개념에 대한 일반이론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되는 '영업의 양도'(Veräußerung des Betriebs)와 '영업종료'(Betriebsaufgabe)는 다른 소득에 비해 과세상 두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첫째, 영업양도와 영업종료의 경우 납세자가 55세가 넘었거나 「사회보험법」상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직업수행 불능상태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4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789] 다만, 양도차익이 13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액수만큼 공제액수는 줄어든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평생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혹은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4조 제3항에 따른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이처럼 '영업의 양도' 및 '영업종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한 번의 거래로 평생 누적된 자산가치가 누진적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다.[790] 이러한 과세특례는 납세자가 자신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종

787) BFH GrS 1/06, BStBl II 2010, 672.
788) BFH GrS 1/06, BStBl II 2010, 672.
789) 독일 「소득세법」 제16조 제4항.

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물적회사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지분양도로 받은 금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다시 납세자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지분양도로 받은 금원의 60%만 소득세를 과세하고,[791] 대신 필요경비도 60%까지만 경비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792]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법」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처럼 특수한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연령이나 직업수행 불능을 그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신 금액은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소액이다. 하나의 회사의 전체 지분에 대해 9,060유로를 공제하므로 그 지분이 적은 경우에는 그만큼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아주 소액이 공제되게 된다. 지분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은 다른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필요경비 불공제항목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Gewinnermittlung durch Betriebsvermögen svergleich)이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Gewinnermittlung durch Überschussrechnung)이든 그 각각의 방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에서 특별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결정된다.

그러한 규정으로는 우선 「소득세법」 제12조를 들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와 제2호는 개인적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규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제3호는 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 공과금 등에 대한 공제 부인규정이고 제4호는 벌금이나 그 외의 금전적 형사제재로서 그것이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회복시키는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규정이다.

그 외에 「소득세법」 제4조 제4a항은 자본유출(Entnahmen)이 소득금액(Gewinn)과 자본유입(Einlagen)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지급이자(Schuldzinsen)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이 소득세법에서 크게 문제되는데 「소득세법」

790) Birk/Desens/Tappe, a.a.O, p. 219.
791)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40호.
792) 독일 「소득세법」 제3c조 제2항.

제4조 제4a항 이외에 제4h조에서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5항은 총 13개의 필요경비 산입 금지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개인적 일상 영위와 관련한 것들과 가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8호부터 13호까지이다.

우선 개인적 일상 영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 중 우리나라 법제에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1호는 선물(Geschenke)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선물은 사업상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상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과 직접적 관련성도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출의 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의 피고용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출은 세법상 선물(Geschenke)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동안 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선물의 취득가액이 35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하다.[793]

둘째,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2호는 접대비(Bewirtungskosten)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적인 동기에 의하여(aus geschäftlichem Anlass) 사람을 접대하는데 소요된 지출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그 한도 이하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접대비의 세법상 취급과 관련해서는 접대비 인정 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 금액은 우선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인식에 따를 때 적절한 수준의 지출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그 금액의 정도와 해당 지출이 사업적인 동기에 의한 것임이 소위 접대비 증빙서류(Bewirtungsbeleg)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그 기준금액의 70%까지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못한다.[794] 접대비 증빙서류에는 장소, 일자, 참석자 그리고 접대의 이유 및 지출의 액수가 건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795] 그러나 접대장소가 음식점(Gaststätte)인 경우에는 접대증빙서류가 조금 더 간소화되어 접대이유와 참석자를 밝히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796]

셋째,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b호까지 열거된 항목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따를 때 '적절하지 않은'(unangemessen) 것으로 판단되는 지출 역시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출의 적절성은 질서를 잘 지키는 양심적

793)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1호.
794)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2호.
795)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2호 제2문.
796)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2호 제3문.

인 납세자의 행동과의 비교(제3자비교법)에 의하여 판단한다.[797]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4조 제5항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가치충돌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째,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8호는 독일이나 EU의 사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Geldbußen)나 질서부과금(Ordnungsgelder), 경고금(Verwarnungsgelder)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798]

둘째,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10호는 뇌물(Bestechungsgelder) 및 그와 관련한 지출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뇌물사건이 있으면 법원과 검찰은 세무서에 통지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역시도 검찰에 통지의무가 있다.[799]

바.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독일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여러 사람의 집합체가 그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지만 집합체 자체가 민사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집합체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집합체 자체에 대해 비록 민사법적으로 법인격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법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인정해 주는 방안과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별 자연인에게 그 집합체의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납세자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배분된 사업자의 이익배당분과 그가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및 경제재의 양도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die Gewinnanteile der Gesellschafter einer Offenen Handelsgesellschaft, einer Kommanditgesellschaft und einer anderen Gesellschaft, bei der der Gesellschafter als Unternehmer(Mitunternehmer) des Betriebs anzusehen ist, und die Vergütungen, die der Gesellschafter von der Gesellschaft für seine Tätigkeit im

797) Dillberger/Fest, a.a.O,, p. 34.
798) 벌금(Geldstrafen)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불공제된다.
799)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5항 제10호.

Dienst der Gesellschaft oder für die Hingabe von Darlehen oder für die Überlassung von Wirtschaftsgütern bezogen hat)를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소득세법상 제15조가 적용되는 경우 합명회사 등은 세법적으로 도관으로 취급되어 과세된다(transparent besteuert).[800]

2) 공동사업에 있어서 소득세 과세특례적용요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여러 사람의 집합체가 그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이 구성원의 영업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영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집합체(Gesellschaft)가 합명회사(Eine offene Handelsgesellschaft), 합자회사(Eine Kommanditgesellschaft) 그리고 '다른 형태의 회사'(Eine andere Gesellschaft)이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형태의 회사'의 포섭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독일에서도 인적회사로 구분되는데[801] '다른 형태의 회사'의 경우 그 두 회사 이외에 「상법」상 인정되는 인적회사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인적회사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자연인의 결합체로 확대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체적으로 후자의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802] 그래서 상속공동체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둘째, 이러한 회사에 납세자가 공동사업자(Mitunternehmer)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사업자'(Mitunternehmer)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세법상 용어이다.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문헌과 판례는 독립된 사업가로서의 독자적 의사결정(Mitunternehmerinitiative)과 위험부담(Mitunternehmerrisiko)을 그 요건으로 이해한다.

셋째, 회사의 수익획득활동이 영업소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익소득유형에 속하는 소득종류 중 영업소득을 제외한 농림업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15조의 과세내용과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제15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소득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득에 제15조가 준용되고 있다. 잉여소득유형의 경우에는 이러한 준용규정마저도 없어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803]

800) Dillberger/Fest, a.a.O, p. 141.
801) 이 두 회사는 독일 상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802) Dillberger/Fest, a.a.O, p. 142.
803) 잉여소득유형에 있어서 동업자과세 내용은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3) 공동사업에 있어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내용

이러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회사의 소득(Gewinn)을 계산한 뒤 그 소득 중 납세자의 몫(Gewinnanteil)을 개별 사업자에게 귀속시켜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804] 특이한 점은 위에서 설명한 공동사업에 있어서 소득과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의 소득배분 몫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금전대차거래나 자산양도거래로 인한 이익(Sondervergütungen)도 전부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법제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독일「민법」상 비록 인적회사는 법인격이 없지만 이 경우 사업자는 자신이 관여하는 인적회사와 금전대차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다.[805] 하지만,「소득세법」상으로 인적회사는 권리의무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그러한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세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금전대차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이 소득세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금전대차거래로 인한 사업자의 이익은「소득세법」제20조에 의하여 자본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한 이익은 제21조에 의하여 임대소득(Er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으로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세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그러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소득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는 그러한 이익(Sondervergütungen)을 동업자인 사업자에게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소득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영업소득으로 전환하는(Umqualifizierung)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자유직업소득

가. 자유직업소득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가운데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독일에서는 비록 이러한 유형의 직업수행활동도 일종의 '영업'에 속하지만 영업소득과 구분하여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이라는 별도의 소득유형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는「소득세법」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804) 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805) 인적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법인격이 인정된다.

있는 '영업'(Gewerbebetrieb)의 4가지 개념요소, 즉 계속성, 독립성, 수익창출 의사의 존재 그리고 그러한 소득창출활동이 보편적인 시장거래에의 참여행위로 이해될 것을 요구한다.[806] 다만,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은 영업소득과 달리 그러한 소득창출활동을 단지 일시적으로(vorübergehend)으로 행한 경우에도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직업소득과 영업소득은 동일하게 이익소득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추가적인 영업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결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의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업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독일에서는 영업소득의 경우 자본의 투입을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자유직업소득의 경우에는 직업수행자의 개인적인 노동력 투입이 소득 발생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807]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자유직업소득은 근로소득과의 구분도 문제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노동력 투입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자유직업소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속성이 본질인 점에서 독립성을 요하는 자유직업소득과 구분이 된다.

나. 비과세 자유직업소득

독일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3조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는 많지는 않다. 현행법상 자유직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는 우선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Wagniskapital) 투자자에 대해 그 투자로 인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그 수입의 40%는 비과세해준다.[808] 헬스 트레이너, 예술가 등이 부수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수입은 1년에 2,400유로까지 비과세한다.[809] 전문가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공익적 목적의 봉사활동을 하고 획득한 수입의 경우 1년에 720유로까지는 비과세한다.[810] 수입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비과세소득과 관련한) 수입활동과 관련한 경비지출은 「소득세법」 제3c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811]

806) Birk/Desens/Tappe, a.a.O, p. 222.
807) Dillberger/Fest, a.a.O, p. 101.
808)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40a호.
809)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26호.
810)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26a호.
811)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26a호 제3문.

다.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자유직업소득은 다른 모든 소득유형과 종합하여 합산과세를 한다.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직업소득도 이익소득유형에 속하므로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인정하는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영업소득과 달리 자유직업소득의 경우에는 제4조 제3항과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라.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과세범위[812]

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범위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이다. 이 규정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① 자유직업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813]
② 국가에서 관장하는 복권 당첨자의 소득. 단, 그 소득이 영업소득이 아닐 것[814]
③ 그 밖의 독립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815]
④ 벤처캐피털(Wagnis Kapital)에 투자한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받게 되는 이익(carried interest)[816]

위 4개 유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직업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입법자는 어떤 경우가 "자유직업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직업유형(Katalogberufen)을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직업유형은 3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독립적인 학문적, 예술적, 저술적, 수업적, 교육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자유로운 정신적 창작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817]

812) 아래 부분은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307 이하를 인용한 것이다.
813) 독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814) 독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815) 독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816) 독일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817) 따라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이 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증인, 특허변호사, 측량기사, 기술자, 건축가, 화학의 생산과 거래를 자문하는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국가 및 기업경제에 대한 상담사, 선서한 회계장부검사인, 1980년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 세무대리인(Steuerbevollmächtigten), 민간요법치료사, 치과의사제도가 마련되기 전 치과진료를 할 수 있었던 치과전문가(Dentist), 물리치료사, 언론인, 사진기자, 통역사, 번역사, 수로(水路) 안내사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셋째, 이러한 직업들과 '유사한 직업들'이다. 이 유형은 어떤 전문가의 활동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직업과 유사한 직업에 해당하면 해당 직업 역시도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을 때 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이 아니라 영업소득(Einkunfte aus Gewerbebetrieb)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복권 당첨자의 소득의 경우 그것이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직업소득은 영업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에는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범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나 제2호에 의해 포섭되는 경우 이외에 '그 밖의 자유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규정의 모호한 포섭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률은 유언집행자가 받는 이익을 그러한 이익으로 예시하고 있다. 문헌들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독기능이 그러한 자산관리에 내포되어 있다면 그러한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고 있다.[818]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벤처 캐피털(Wagniskapital)을 통한 벤처회사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2004년에 도입한 것이다. 벤처 캐피털에 투자한 납세자가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받게 되는 이익(carried interest)을 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중 일부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819]

818) Dillberger/Fest, a.a.O, p. 104.
819)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40a호.

2)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과세범위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은 자유직업활동을 위해 이용하던 자산 자체나 자산의 독립적 일부분 혹은 자산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이익도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함을 규정하고 있다.

마. 자유직업소득 과세시 필요경비 인정

자유직업소득도 이익소득의 일종이므로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필요경비가 계산된다.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실제적으로 대부분 적용된다.

다만 영업소득자와 달리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나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 없이 기장을 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지, 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한 번 행사하면 그 후 3년 동안은 그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

바. 자유직업소득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1) 개요

변호사나 의사처럼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전문자영업자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혹은 조합의 형태로 그러한 직업을 공동수행하여 소득획득행위를 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내용은 영업소득에서 설명한 공동사업에 따른 과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왜냐하면 영업소득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8조 제4항 제2문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합명회사 등은 세법적으로 도관으로 취급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은 회사단계에서 소득금액이 계산되면 해당 소득(Gewinn)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지분비율로 분할하여 그 개별 사업자의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자유직업소득에 있어서 공동사업 소득과세의 특징

여러 자유직업소득자가 조합이나 인적회사처럼 사법상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동업 형태로 그러한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소득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 중에 한 명의 동업자라도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한명이라도 자본참여만 하는 형태이면, 전체 동업자가 해당 조합 등을 통해 획득한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이 아니고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820]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 인정받기만 하면 되고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분야(Branche)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유직업소득자의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이 점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MDP)이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다.

3. 농림업소득

가. 농림업소득의 개념

어떤 소득이 농림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소득세법」 제13조부터 제14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림업소득도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소득의 적극적 요건, 즉 계속성, 독립성, 수익창출의사의 존재 그리고 그러한 소득창출활동이 보편적인 시장거래에의 참여행위로 이해될 것을 요구한다.[821]

농림업소득 과세대상으로서의 '농림업'(Land- und Forstwirtschaft)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직접 규정한 바는 없다. 문헌들은 토지의 자연력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소득창출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용을 통해 '직접'(selbst) 수확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행위(Verwertung)를 하는 경우를 농림업으로 이해한다.[822] 이때의 생산물은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다.[823]

농림업소득의 경우 특히 영업소득과의 구분이 실무적으로 문제된다.[824] 왜냐하면 수확물

820) BFH VIII R 254/80 BStBl 1985, 584; BFH VIII R 69/06, BStBl II 2009, 642.
821) Birk/Desens/Tappe, a.a.O, p. 225.
822) Birk/Desens/Tappe, a.a.O, p. 225.
823) Hey, in Tipke/Lang Steuerrecht 23. Auflage, § 8 Rn. 404.
824) 실제로 어느 소득으로 과세되는지에 따라 「소득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여부, 영업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표준소득률제도(「소득세법」 제13a조)

을 판매하는 행위도 일정한 범위까지는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소득세법」상 영업소득은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825] 연방재정법원은 '농장직매장사건'(Hofladenurteil)에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그 농장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판매하는 물건의 일부가 다른 농장에서 생산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 또는 51,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업소득과 별개로 영업소득을 구성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26]

나. 비과세 농림업소득

독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소득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비과세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3조 제17호는「농민 노후보장법(Gesetz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제32조에 의하여 농민이 농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보조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호는「소득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과세되는 영농포기연금의 기본금액 등을 18,407유로까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총소득금액합산에서 특례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비과세와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농림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 농림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농림업소득도 다른 모든 소득유형과 종합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 다만,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 7개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림업소득에 의한 소득금액이 9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단, 총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한다.[827]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금액들이 모두 2배가 된다. 총소득금액

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825) 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826) BFH IV R 21/06, BStBl II 2010, 113.

827) 독일「소득세법」제13조 제3항.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유로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업소득 전액을 총소득금액계산에 합산한다. 소규모의 농림업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배제해 주는 과세특례라고 할 수 있다.

라. 농림업소득의 과세범위[828]

1) 「소득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

농림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법률 조문 중에는 특히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이 중요하다. 제1항은 다시 4개의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에 따르면 농업, 임업, 포도재배, 원예, 기타 자연의 힘의 도움을 받아 식물을 재배하는 일체의 영업으로부터의 소득이 농림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문은 동물사육의 경우에도 한 회계연도에 사육하는 동물의 수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하인 경우 그 역시도 농림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사육으로 인한 소득에는 동물 자체의 처분에 따른 소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유나 계란처럼 동물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물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한다.

독일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농림업소득이 되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여 작물 자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처럼 자연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3조 제2항은 그러한 농림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수적인 사업도 농림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재를 벌목하여 그 목재 자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농림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 목재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소(Sägewerk)을 운영한다면 그 운영에 따른 소득도 「소득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자연에서 생산한 농림업관련 제품이 50% 이상 해당 사업장에 투입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

「소득세법」 제14조도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농림업용 자산이나 농림업사업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28) 아래 부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 제1권, 2019, p. 305를 인용한 것이다.

마. 농림업소득과세에 있어서 필요경비 인정

농림업소득도 이익소득유형에 속하므로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소득 등 다른 이익소득유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이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a조에 따른 소득평균율(Durchschnittssätze)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모두 농림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 기장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고, 매년 5월 15일 현재 직접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토지면적이 50헥타를 초과하지 않으며, 동물의 경우에는 합계 50마리를 초과하지 않으며 농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특별이용면적'(Sondernutzung)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829]

농림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산비교법이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윤계산방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 그리고 「소득세법」 제13a조에 따른 소득평균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평균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다른 두 방법보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830] 납세자는 이러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한번 선택한 방법은 최소 4년간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외 구체적인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영업소득에서 설명한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바. 농림업소득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농림업소득자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혹은 조합의 형태로 그러한 직업을 공동수행하여 소득획득행위를 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내용은 영업소득 및 자유직업소득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영업소득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농림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합명회사 등은 세법적으로 도관으로 취급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단 회사단계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소득(Gewinn)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지분비율로 분할하여 그 개별 사업자의 농림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829) 독일 「소득세법」 제13a조 제1항.
830) Hey, in Tipke/Lang Steuerrecht 23. Auflage, § 8 Rn. 408.

4.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의 개념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과 대비하여 '비독립적 노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Einkunfte aus nichtselbstandiger Arbei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Einkunfte aus nichtselbstandiger Arbeit'를 근로소득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은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소득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고 따라서 생존을 위한 경제적 기초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 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떤 경우가 근로소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문헌들은 영업소득에 있어서 영업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제1문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독립적'(selbständig)이지 않게 노동을 하고 대가를 획득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831]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공하는 노동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노동을 제공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근로소득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시행령」(Lohn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LStDV)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시행령(LStDV) 제1조 1항 제1문에서는 공법적 혹은 사법적 고용관계(Dienstverhältnis)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자'(Arbeitnehmer)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시행령(LStDV) 제1조 2항 제1문에서는 근로소득 발생의 법적 원천이 되는 '고용관계'(Dienstverhältnis)는 고용된 자가 고용한 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시행령(LStDV) 제1조 2항 제2문은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의사의 결정에 있어서 자신을 고용한 자의 지시를 따르거나 사업주의 사업조직에 편성되어 그의 지시를 받도록 의무가 주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헌들은 이러한 지시 의존성이 어떤 경제활동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해한다. 다만, 그 외에 경

831) Dillberger/Fest, a.a.O, p. 40.

제적 의존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832] 이러한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서 독일에서는 신부나 수녀 등 종교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이해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나. 비과세근로소득

독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3조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다수의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급여 이외에 사업장과 주거지 간의 교통비를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면 그 금원을 비과세하고,[833] 여행경비와 이사비용을 사업자(공공사업자 제외)로부터 지원받고 그 지원금액이 「소득세법」 제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Werbungskosten)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비과세하며[834] 작업복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경우 그 금전가치는 비과세하며,[835]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교통편을 무상 혹은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그 금전가치도 비과세한다.[836]

「소득세법」 제3조 이외에도 제3b조에서는 휴일, 공휴일, 야간근무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과거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휴직급여, 퇴직연금, 미망인과 고아보조금 그리고 그 외의 이익과 혜택"(Versorgungsbezüge)과 관련하여 2039년까지 그 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1년에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공제(Versorgungsfreibetrag)하고 그러한 이익에 대한 추가금(Zuschlag)은 비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2019년의 경우 과세대상 이익의 17.6%, 최고한도는 1,320유로, 2020년에는 16%, 최고한도 1,200유로이다. 2040년에는 이러한 공제는 완전히 폐지한다.

832) Dillberger/Fest, a.a.O, p. 41.
833)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15호.
834)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16호.
835)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31호.
836)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32호.

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837]

근로소득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6개의 소득과 종합하여 합산과세를 한다. 근로소득은 지급자인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한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독일「소득세법」제3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산으로(www.elster.de) 그러한 정보들이 관리되고 더 이상 카드는 발급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전산망을 통하여 개별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받고 해당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러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자에게 별도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해지지 않는다. 물론,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838]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독일 소득세법은 근로자를 6개 등급(Steuerklasse)으로 나누고 있다.[839]

〈표 II-1〉 독일 소득세법의 납세자 등급

조세등급 구분	내용
Steuerklasse	1. 무제한 납세의무자 중, ① 미혼자(ledig) ② 기혼자(verheiratet), 배우자와 사별한 납세자(verwitwet), 이혼한 납세자(geschieden)로서 Steuerklasse III과 Steuerklasse IV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자 2. 제한적 납세의무자
Steuerklasse II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미혼자 중「소득세법」제24b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대한 조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자
Steuerklasse III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기혼자(verheiratet), 배우자와 사별한 납세자(verwitwet), 이혼한 납세자(geschieden)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Steuerklasse IV	기혼자(verheiratet)로 부부 양쪽이 모두 무제한 납세의무자이고 과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별거생활을 하지 않는 납세자
Steuerklasse V	Steuerklasse IV에 속하는 납세자가 신청으로 Steuerklasse III에 편성되게 된 경우
Steuerklasse VI	동시에 여러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납세자

837) 아래 설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요국의 소득세제』제1권, 2019, p. 329 이하를 인용한 것이다.
838) 독일「소득세법」제38b조 제1항.
839) 독일「소득세법」제46조 제2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결정은 근로자의 여러 사정(예, 납세자의 조세등급, 자녀공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동정책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단기근로소득자, 저임금근로소득자,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조하는 인력들에 대한 근로소득과세는 다른 근로소득과 다른 부과징수절차상 그리고 세부담에 있어서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주에게 연속해서 18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근무기간 동안 급여가 1일 평균 72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근로에의 투입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요구되는 형태로 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소득세법에서는 단기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카드의 발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급여의 20%만을 세금으로 징수한다.[840] 월급여가 4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450-EURO-Jobs)의 경우에도 월급여의 30%를 확정세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부과징수(Veranlagung)의 특례도 여기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Einkommen)[841]은 7개의 소득 종류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에서 일정한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한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unfte)에서 특별공제(Sonderausgaben)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구성되고 그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안 된 다른 소득이 410유로를 초과해야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부과주의 조세로 운영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부과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 부수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과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이 규정의 기본취지이다.

라. 근로소득의 과세범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다음 4가지 경우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40) 독일 「소득세법」 제40a조 제1항.
841) 독일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① 공적인 혹은 사적인 고용관계에 종사한 것에 대해 지불하는 급료, 임금, 상여금, 특별상여금 그리고 그 외 다른 수입과 혜택들(andere Bezüge und Vorteile)
② 회사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교적 차원의 행사를 통해 사용자가 피용자와 피용자의 동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익
③ 과거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휴직급여, 퇴직연금, 미망인과 고아보조금 그리고 그 외의 이익과 혜택
④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퇴직금펀드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부담금 등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 중 주목할 부분으로는 우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중 '공적인 혹은 사적인 고용관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급여 이외의 다른 수입과 혜택'(andere Bezüge und Vorteile)에 대한 과세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의 형태를 불문하고, 즉 명목이 급여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또 수령형태가 금전의 형태로 수령하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이든 이를 불문하고, 법률에서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한 혜택 등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러한 혜택 제공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Veranlassungsprinzip). 둘째 그러한 혜택 제공이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이어야 한다. 뇌물의 수령이나, 횡령이나 배임에 의한 혜택 등 사용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첫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해 다른 소득유형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842]

급여나 급여가 아닌 경제적 혜택을 현금이 아닌 물건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평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평가법(Bewertungsgesetz)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이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서 평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로 독일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차량을 제공하면서 그 차량을 업무용뿐만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하게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율(차량가격의 1%)에 의하여 사적 사용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작성해 둔 믿을 만한 차량운행장

842)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22조 제3호 등이 그러한 별도의 규정에 해당한다.

부(Fahrtenbuch)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증빙된 부분을 제외한 사용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 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차량운행장부에 의하여 차량이용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시 및 업무주행의 시작 및 종료시의 주행계기표, 여행목적지 및 여행경로, 여행목적 및 방문상담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범위 중 주목할 부분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a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교적 차원의 행사를 통해 사용자가 피용자와 피용자의 동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익'부분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2015. 1. 1. 법개정으로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a호는 야유회처럼 회사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이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이익은 하나의 행사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가 향유하는 이익이 11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한 번의 행사에서 개별 근로자가 수령하는 이익이 11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1년에 2회의 행사까지는 근로자에게 그 행사로 인해 제공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843]

마. 근로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 인정

독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다른 소득유형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Arbeitslohn)에서 필요경비(Werbungskosten)를 공제하여 근로소득의 소득금액(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잉여소득유형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우선 그 개념정의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4조 제4항은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의 필요경비(Betriebsausgaben)를 "영업에 의하여 야기된 경비"(Aufwendungen, die durch den Betrieb veranlasst sind)로 정의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잉여소득유형에 있어서의 필요경비(Werbungskosten)를 "수입의 획득, 보장 그리고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경비"(Aufwendungen zur Erwerbung, Sicherung und Erhaltung der Einnahmen)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는 지출의 '원인'이 사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듯이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843) 독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a호.

지출의 '목적'이 수입의 획득 등인지 여부가 기준인 듯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양자를 그 문언대로 이해하면 이익소득유형과 잉여소득유형에 있어서 필요경비 개념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판례와 문헌에서는 그러한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개념을 동기주의(Veranlassungsprinzip)에 입각하여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844] 즉, 이익소득유형이든 잉여소득유형이든 소득활동이 원인이 되어 지출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일반론적으로는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근로소득의 획득·보장·유지를 위한 동기가 된 지출(Veranlassungsprinzip)에 대해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그 외에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소득자(Arbeitnehmer)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 특례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소득창출 관련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영위를 위한 지출의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소위 '혼합된 지출'(gemischte Aufwendungen)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특별규율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경비지출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비항목 중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하는 주택에서 근무하는 주된 사업장(erste Tätigkeitsstätte)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공제(Pendlerpauschale)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무하는 주된 사업장'은 사용자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장 혹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동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업자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를 하게 한 장소를 말한다.[845] 이 비용은 1일 1㎞에 0.3유로, 1년에 최고 4,500유로를 공제한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차량이나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부여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500유로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에 0.3유로를 공제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불한 비용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846] 장애인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70% 이상 장애가 있거나 50~70%의 장애가 있지만 이동에 현격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된다.

844) Hey, in Tipke/Lang Steuerrecht 23. Auflage, 2018, Verlag Dr. Otto Schmidt, § 8 Rn. 230.
845) 독일 「소득세법」 제9조 제4항.
846) 독일 「소득세법」 제9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

둘째, 직업적인 이유에 의해 야기된 교통관련 경비의 공제이다.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조 제1항 제4a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업적인 이유에 의해 야기된 여행경비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공제되는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이동과 제5호에 의해 공제되는 가족방문여행(Familienheimfahrten)의 경우[847]에는 제4a호에 의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제9조 제1항 제4a호에 의한 교통관련 경비의 공제는 납세자가 실제 소요된 비용 전체를 증빙에 의해 공제받는 방법과「연방여행경비법」(Bundesreisekostengesetz)이라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표준비용으로 공제받는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직업적인 이유에 의하여 야기된 여행에서의 숙박비용을 특별히 공제해 주는 특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조 제1항 제5a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업적인 이유에 의한 여행에 있어서 차량관련 경비는 제4a호에 의해 공제되고 숙박비는 제5a호에 의하여 공제된다.

넷째, 직업적인 이유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떠나 근무지에 별도의 거주장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일정부분 근로소득의 필요경비(Doppelte Haushaltsführung)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요건충족이 된 경우 근로자는 근무지에서의 숙소확보를 위한 임대료, 전기요금등 각종 부대요금 등을 월 1,000유로 한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1주일에 1회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까지의 교통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이때의 교통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표준율에 따라 결정된다. 근무지에서의 식사 해결을 위한 추가비용(Verpflegungsmehraufwand)도 근무지에 숙소를 확보한 최초 3개월간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근로자가 지출하는 식사비용은 원래 사적인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지만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출한 식사비용(Mehraufwandungen für Verpflegung)은 부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조 제4a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실경비를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율에 의한 표준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경비를 표준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도 있다. 이 경우는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1,000유로(특수한 경우에는 102유로)까지는 표준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준다.[848]

847) 이 경우(Familienheimfahrten)는 직업적인 이유로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한 여행을 말한다.
848) 독일「소득세법」제9a조.

5. 임대소득

가. 임대소득의 개념

1) 임대소득의 개념

독일 소득세법상 '임대소득'(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으로 과세하는 소득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소득은 개인적인 재산, 즉 영업용 재산이 아닌 것을 타인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사용케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Vermietung'과 'Verpachtung'은 우리「민법」상으로는 모두 '임대차'에 해당하는 데 전자는 사용임대차를, 후자는 용익임대차를 의미한다. 단순히 빌린 물건을 원형 그대로 사용할 권한만을 임차인이 가지면 사용임대차이고,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용익임대차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독일에서는 용익임대차인 'Verpachtung'에 해당한다. 사용임대차에 해당하는'Vermietung'의 경우 독일「민법전(BGB)」제535조 이하에서, 용익임대차에 해당하는 'Verpachtung'의 경우 제58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위 '차용개념'에 해당한다. 독일「소득세법」제21조에서는 'Vermietung'과 'Verpachtung'에 대해 세법적으로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문헌과 판례는「소득세법」제21조에서 임대소득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들의 해석상 이 개념은 민법에서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849] 어떠한 소득을「소득세법」상 임대소득으로 과세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상 거래행위방식 또는 표현이 민법적으로 '임대'(Vermietung 또는 Verpachtung)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거래의 경제적 내용(der wirtschafltiche Gehalt)이 중요하다고 본다.[850]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임대소득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타소득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임대소득을 사업소득 성격이 아니라 자본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851] 그래서「소득세법」조문의 편재도 자본소득 아래쪽에 임대소득관련 조문이 위치하고 있다.

849) Birk/Desens/Tappe, a.a.O, p. 236.
850) Korsmeier, in Lippross Basis Kommentar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1999, § 21 Rn. 2.
851) Grashoff, Grundzüge des Steuerrechts 14. Auflage, 2018, C.H.Beck, p. 65.

2) 다른 소득 종류와의 구분

독일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유형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충적이다.[852] 그래서 영업용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은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으로 과세하지 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동이 가능한 기업용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폐업을 선언한 후 그러한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853]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영업을 계속하면서 일부 영업용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임대행위 자체가 영업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임대행위 자체가 영업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임대소득이 아니고 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임대행위가 영업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임대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숫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임대행위를 위해 임대인이 사업가처럼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호텔방의 임대나 주차장 또는 테니스장의 임대처럼 단순히 자산을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854] 단순히 주택을 임대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영업소득이 아니고 임대소득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과 기타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소득이 기타소득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대소득을 반복적으로 수령하더라도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임대소득이 된다.[855]

나. 비과세 임대소득

독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특별히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조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등과 함께 잉여소득유형에 속한다. 임대소득은 나머지 다른 6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종합적으로 합산과세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제도를 두지는 않고 있다.

852)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853)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854) Birk/Desens/Tappe, a.a.O, p. 237.
855)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1호 제1문.

라. 임대소득의 과세범위

1)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임대소득의 과세범위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소득의 범위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이다.[856] '움직일 수 없는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 이외에도 등록한 선박 및 광산개발권처럼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가 포함된다.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임차료가 그 지역 평균임대료의 66% 이상이 되어야 한다.[857] 66%가 되지 못하면 그 비율만큼만 유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상의 제공으로 본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일에서는 주로 친족 간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이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둘째는, 집합물(Sachinbegriff),[858] 특히 이동이 가능한 기업용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이다.[859]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전제로 하고 동산의 임대로 인한 소득은 기본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860] 예외적으로 동산이 집합물로 거래가 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셋째, 문학적, 예술적, 영업적 저작권이나 인허가권 등을 시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위임'(Überlassung)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다.[861]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예술가나 문학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도 임대소득이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저작권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타인에게 저작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862]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아야 임대소득으로 과세

856)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857)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858) 이는 동산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합되어 경제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서 독립적 가치가 있으며, 거래상으로도 일체로서 취급되는 것을 칭한다. 예를 들어, 폐업한 공장의 모든 기계장치를 들 수 있다. 이는 「민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집합물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판례는 집합물 개념을 인정하여 하나의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8.12.27.선고 87누1043판결.
859)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860)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호.
861)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862) Dillberger/Fest, a.a.O, p. 68.

하고, 영구히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863]

넷째, 임차료채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다.[864] 이 경우는 위 세 개 유형과 달리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양도(Veräußerung)하는 것이어서 다른 유형과 구분된다. 이 유형에 따라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거의 임차료채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원 중 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영업소득 등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유형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차료채권을 승계해주는 대가로 수령한 것은 영업소득 등이 아니고 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승계한 임차료채권이 추후 회수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865]

2) 임대소득의 과세범위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원칙(Zuflussprinzip)에 의해 결정한다. 임차료를 선불방식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선불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선불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수령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선불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이 익금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866] 예를 들어 10년 임차료를 선불로 10,000유로를 수령하였다면 매년 1,000유로의 임대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다.

총액주의원칙(das Brutto-Prinzip)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이외에 별도로 수도·전기요금 등을 수령한 경우 일단 수도·전기요금 등도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추후 실제로 수도·전기요금을 지불한 경우 해당 금원 상당액을 필요경비(Werbungskosten)로 공제한다. 보증금(Kaution)의 경우 보증금 수령만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구성하지 않고, 실제로 계약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인이 획득하게 된 경우에만 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된다.

임대주택처럼 임대물건에 있어서 사용에 필요한 불가피한 수선이 아닌 소위 미적인 차원의 수선(Schönheits-Reparaturen)의 경우 수선을 수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863)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864) 독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865) Korsmeier, in Lippross Basis Kommentar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1999, § 21 Rn. 43.
866) 독일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3문.

종국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임대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결정된다. 임대인이 그러한 수선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징구한 경우 그 금액은 임대소득을 구성한다. 임대인이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한 경우 임대소득으로 과세할 여지는 없고 지출한 금액은 즉시 공제가능한 유지·수선비가 된다.[867] 임차인이 그러한 수선을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한 경우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으로 과세할 여지는 발생하지 않고, 또 임대인, 임차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수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여지도 발생하지 않는다.[868]

임차인이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건물을 수선하는 경우(Mietereinbauten)에도 부분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임차인이 수선한 물건이 '경제적으로'(wirtschaftlich) 임대인의 물건으로 바뀐 경우 수선으로 증가한 가치를 「소득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임대인의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된다.

마. 임대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인정

다른 잉여소득유형의 소득과 동일하게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임대행위로 야기된 지출(Ausgaben)은 필요경비(Werbungskosten)로 임대소득의 수입금액(Einnahmen)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원칙(Abflussprinzip)에 의해 결정한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설치원가'(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와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누어야 한다. 후자에는 유지 및 수선비(Erhaltungsaufwand)가 대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전자는 감가상각률(AfA)에 따라 허용되는 일정 금액만을 연도마다 분할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지 않지만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양자는 분리되어야 하고 건물분 취득가격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취득·제조원가 이외의 필요경비는 그 경비가 귀속되는 당해 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869]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어떠한 지출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가격을 구성하게 되는지, 즉시 전액 공제 가능한 경비가 되는지의 구분이 독일에서도 '설치원가'(Herstellungskosten)라는 개념에서 '설치'(Herstellung)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이해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다.[870]

867) 독일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문.
868) Dillberger/Fest, a.a.O, p. 69.
869) 독일 「소득세법」 제11조 제2항.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독일「소득세법」상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택의 임차료가 그 지역 평균임대료의 66% 이상이 되어야만 주택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871] 주택임차료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만 유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상의 제공으로 보므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그 지역 평균임대료의 50%로 주택을 임대 제공한다면 원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50%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취득·설치원가'(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이외의 기타의 필요경비로는 건물에 대한 공적 부담금(예, 하수도부담금), 보험료(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등)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을 하고 그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이자 상당의 금원도 필요경비로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즉시 전액 공제하게 된다.

바. 임대소득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단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을 각 동업자에게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동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과세는 독일「소득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는데 이 규정은 직접적으로 영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영업소득 이외에 이익소득유형에 속하는 농림업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의 경우에는 준용하는 조문이 있지만[872] 잉여소득유형의 경우에는 준용하는 조문이 없다. 그래서 잉여소득유형에 속하는 소득유형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과세를 어떻게 할지가 법률적으로 문제된다. 특히, 잉여소득유형 중에도 임대소득의 경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민법」등 사법적으로 인적 회사는 부분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인적회사 자체도 관리 차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세법적으로 인적 회사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법인도 아니고,「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자연인(Natürliche Personen)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적 회사

870) 이에 대해서는 Dillberger/Fest, a.a.O, p. 73. 참고
871) 독일「소득세법」제21조 제2항.
872) 농림업소득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조 제7항, 자유직업소득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8조 제4항 제2문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다.

자체에 그러한 임대행위로 발생한 소득을 귀속시켜 소득세 과세를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 경우에도 과세 내용은 이익소득유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법적 근거가 문제되는데 「조세통칙법」 제39조 제2항 제2호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조세통칙법」 제39조 제2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이 공유한 재산은, 과세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유자에게 귀속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소득유형에 있어서 공동사업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잉여소득유형에 있어서도 유사한 과세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조세통칙법」 제39조 제2항 제2호에서의 '과세상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잉여소득유형인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영업소득 공동과세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잉여소득유형인 임대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소득과 같은 이익소득유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를 하지만 차이점은 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하는 지분의 몫(Gewinnanteil)과 동업자가 인적 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동업자의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Sondervergütungen)은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873] 동업자들이 인적 회사를 구성한 경우 이익소득유형의 경우에는 회사자산(Betriebsvermögen)과 개인재산(Privatvermögen)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잉여소득유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으므로 개인재산이 회사 자산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은 임대소득과 같은 잉여소득유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6. 기타소득

가. 기타소득의 개념

1) 기타소득의 개념

독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유형 중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관계

873) Dillberger/Fest, a.a.O, p. 147.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은 특정 소득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른 6개의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의 소득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 중 법률에서 규정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독일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874]

독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소득세 이론상 과세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거의 한계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독일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875]

나. 비과세 기타소득

독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기본적으로「소득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소득세법」제3조가 아니라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를 설명하면서 언급하기로 한다.

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기타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유형과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한도(Freigrenze)를 정해두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수익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소득과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기 한다.

라. 기타소득의 과세범위

1)「소득세법」제22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주

독일「소득세법」제22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들을 크게 유형화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876]

874) Dillberger/Fest, a.a.O, p. 79.
875) Birk/Desens/Tappe, a.a.O, p. 240.

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Einkünfte aus wiederkehrden Bezügen)[877]
② 개인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Einkünfte aus privaten Veräußerungsgeschäften)[878]
③ 기타의 역무제공으로 인한 소득(Einkünfte aus sonstigen Leistungen)[879]
④ 의원법 등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소득(Abgeordnetenbezüge)[880]

2)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첫째 유형인,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Einkünfte aus wiederkehrden Bezügen)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중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이 경우는 법률적 규정이나 수여자의 단일한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급부를 제공하는 자가 그러한 지급을 결정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급할 의사로 지급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횟수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또는 동일한 시간적 간격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금원은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이 유형의 소득(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다시 세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노령자를 위한 종신연금(Leibrente zur Altersversorgung)이고(기본연금),[881] 둘째는, 노령자를 위한 개인연금이며(추가연금),[882] 셋째는, 부양의무 이행을 위한 급부제공(Unterhalts-und Versorgungsleistungen) 이다.[883]

노령자를 위한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연금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또 근로자도 일정 비율을 분담하여 그 금원을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소득세법」상 취급을 위해 다시 두 유형

876) Dillberger/Fest, a.a.O, p. 79.
877)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1호, 제1a호, 제5호.
878)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2호, 제23조.
879)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3호, 제23조.
880)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4호.
881)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1호 제3문.
882)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5호.
883)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1a호.

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법률에 근거한 종신연금과 직업별로 지급되는 종신연금과 같은 경우이다. 이 연금의 경우 연금부담분을 저축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 분담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있지만 비과세규정에 의해 전액 비과세를 하고[884] 근로자 분담분은 특별지출공제(Sonderausgaben)로 2018년에는 23,712유로(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47,424유로)까지 2025년부터는 전액 공제받는다. 이 연금은 이처럼 연금을 적립하는 단계에서는 큰 틀에서 비과세하고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한다. 현재는 수령하는 금액 중 일부를(2018년의 경우 24%가 비과세) 비과세하고 있지만(「소득세법」 제22조 제1호 a) aa) 표상의 과세부분[Besteuerungsanteil]만이 과세됨) 2040년부터는 전액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른 하나는 그 외의 개인적 연금과 생명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호 a) bb) 표상의 수익부분(Ertragsanteil)만이 과세된다.

추가연금이라고 불리는 노령자를 위한 별도의 개인연금은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분을 연금펀드 등에 불입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금분담분을 펀드 등에 불입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고(최고한도가 기본연금보다 많이 낮은 2,250유로임),[885] 수령 시 과세한다. 수령 시 과세내용이 기본연금과 다른 점은 전액을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금분담분에 대해 비과세한도 초과로 인해 적립 시 일부 과세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한다.

부양의무 이행을 위한 급부제공(Unterhalts- und Versorgungsleistungen)의 경우 우선 독일 소득세법 이론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처럼 부양의무 이행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에게 그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이 아니고,[886] 제공자에게는 개인적 지출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당국이 그러한 급부를 제공한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특별지출공제(Sonderausgaben)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도록 수령자에게 해당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누진세인 소득세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제공자에게 특별지출공제를 허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혜택이 수령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보다는 더 크다.

3) 개인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둘째 유형은 '개인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Einkünfte aus privaten

884)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62호.
885)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63호.
886) 이러한 금원은 납세자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획득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에 대한 학설인 시장소득이론(Markteinkommenstheorie)에 입각한 것이다.

Veräußerungsgeschäften)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이다. 독일에서 개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영업소득 등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22조 제2호와 제23조는 다른 소득유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한다.[887]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적 용도로 보유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이 일정한 기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투기거래(Spekulationsgeschäft)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기간이 부동산과, 부동산과 유사한 권리(예, 지상권[Erbbaurecht])의 경우에는 10년, 그 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이다. 이 기간은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과하는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제적으로는 공증인이 공증한 계약서상의 날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서를 공증한 공증인은 그 서류를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888] 이러한 신고에 따라 세무서는 해당 거래날짜를 파악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서류상 날짜와 다른 날짜에 실제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입증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한다.

주택의 경우 10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후 양도 때까지 오로지(ausschließlich)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양도하는 당해 연도와 그 이전 2개 연도에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889] 이는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그 주택 내에 사무실(Arbeitszimmer)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무실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업에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주택 내에 위치하는 사무실(Arbeitszimmer)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법적 분쟁이 있다.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그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890]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범주를 어

887)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888) 독일 「부동산취득세법」 제18조.
889)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문 제1호 제3문.
890)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경우 영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는 과세하지 않게 된다.

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만일 이를 긍정한다면 이러한 물건은 그 사용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여 항상 거래 시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을 다른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입법당국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매일 사용하는 물건의 양도는 제외한다"(Ausgenommen sind Veräußerungen von Gegenständen des täglichen Gebrauchs)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포섭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문헌에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물건'(예, 예술작품, 골동품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891]

4) 기타의 역무제공으로 인한 소득

셋째 유형인 '기타의 역무제공으로 인한 소득'(Einkünfte aus sonstigen Leistungen)은 '기타의 역무제공'(sonstige Leistungen)이라는 법문언 자체만 보면 다른 항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구성요건(Auffangstatbestand)을 규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다.[892]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역무제공'(Leistungen)은 유상의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반대급부를 유발하게 되는 '모든 작위, 부작위, 수인행위'를 의미한다.[893]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역무제공을 '우연하게 행해지는 중재행위'(gelegentliche Vermittlung) 그리고 '우연하게 행해지는 동산의 임대행위'(gelegentliche Vermietung beweglicher Gegenstände)로 예시하고 있다.[894] 양자는 모두 우연하게(gelegentlich), 즉 지속적이지 않게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중재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자유직업소득(Einkünfte aus selbständiger Arbeit)이 될 수 있다. 동산의 임대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영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이 된다.

---

891) Dillberger/Fest, a.a.O, p. 88.
892) Grote/Kaup, in Lippross Basis Kommentar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1999, § 22 Rn. 204.
893) Dillberger/Fest, a.a.O, p. 90.
894) 독일에서는 뇌물(Schmiergeld)도 '우연하게 행해지는 중재행위'(gelegentliche Vermittlung)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는 기타소득 이외 다른 6가지 소득유형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른 과세는 기타소득 내에서도 다른 조항에 의해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 되는 보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895]

5)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

넷째 유형은 연방의회나 주의회의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과거 독일에서는 이러한 의원의 급여를 경비보상적 급여로 이해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그런데 연방헌법재판소가 의원의 급여를 이처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독일「소득세법」 제3조 제12호를 1975. 11. 5. 판결에 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896] 그 이후 연방의회는 1977. 2. 18. 법률을 개정하여「소득세법」 제22조 제4호를 신설하고 의원의 급여(Bezüge)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도 의원들이「의회법」에 따라 실비변상조로 수령하는 금원은 비과세하고 있다. 즉,「의회법」은 의원들에게 주는 금전을 크게 급여와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나누고 있고,「소득세법」은 전자는 기타소득으로, 후자는 비과세하고 있다.

6)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중 개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의 경우 1역년 동안 전체 양도순이익(Gewinn)이 600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Freigrenze).[897] 양도순이익이 600유로 이상이 되면 그 전체를 과세한다.[898]

'기타의 역무제공으로 인한 소득'(Einkünfte aus sonstigen Leistungen)은 1역년 동안 전체 순이익(Gewinn)이 256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Freigrenze).[899] 순이익이 256유로 이상이 되면 그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개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와 동일하다.

895) 독일「소득세법」 제22조 제3호.
896) BVerfG v. 5.11.1975 -2 BvR 193/74, BVerfGE 40, 296=BB 1975, 1465.
897) 독일「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5문.
898)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Freigrenze'와 'Freibetrag'을 구분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899) 독일「소득세법」 제22조 제3호 제2문.

마. 기타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인정

기타소득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출(Ausgaben)은 필요경비(Werbungskosten)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Einnahmen)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다른 소득유형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원칙(Abflussprinzip)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에는 특수성이 있다. 우선 납세자는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모든 경비를 입증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기타소득 중 연금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Einkünfte aus wiederkehrden Bezügen)의 경우에[900] 납세자는 실제 경비를 입증하지 않고 법률에 따른 필요경비 표준공제(Werbungskostenpauschbetrag)로 102유로를 공제한다.[901]

개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감가상각금액만큼 축소된 금액으로 한다.[902] 그리고 개인자산 양도로 인한 손실은 기타소득 이외 다른 6개 소득유형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지 못한다.[903]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간에는 통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손실은 이전 과세연도 혹은 그다음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개인자산 양도로 인한 이익하고만 상계할 수 있다.[904]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Werbungskosten)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러한 경비지출에 대해 「의회법」에 따라 실비변상조로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원은 비과세로 하되 해당 경비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투입한 선거비용도 마찬가지로 선거비용이 공적 자금에 의해 보전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905]

900)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1호, 제1a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01) 독일 「소득세법」 제9a조 제1문 제3호.
902)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903)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7문.
904)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8문.
905)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4호.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독일의 소득세 계산체계 개관

독일의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라도 독일의 소득세 계산체계를 다시 소개할 필요가 있다.[906]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처럼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제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시 그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즉 하나의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공제를 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소득세 계산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독일 「소득세법」에 따를 때 우선 7개의 소득유형별로 각각 총수입(Einnahmen)에서 필요경비(Betriebsausgaben, Werbungskosten)를 공제하여 소득금액(Einkünfte)을 산출한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7개의 소득금액(Einkünfte)을 합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을 도출하고 여기에서 1차로 노령자(65세 이상) 감면공제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 그리고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를 하여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을 계산한다. 다시 2차로 여기에서 특별공제, 손실공제, 일정한 보험가입에 따른 지출공제, 비통상적 부담에 따른 공제, 자가주택에 대한 특별공제를 하여 '소득'(Einkommen)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다시 3차로 자녀소득공제와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공제(Härteausgleichsbetrag)를 하여 마침내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 Einkommen, Bemessungsgrundlage)을 산출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독일 「소득세법」은 이때 그 적용세율에서 납세자 본인(자녀 등 다른 부양의무자는 가족관련 다른 공제항목의 적용대상이고 기본공제의 적용대상은 아님)의 최저생계비를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기본공제(Grundfreibetrag) 항목을 공제하고 있다.

제1단계: 각 개별 소득종류 내에서의 소득의 조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 농림업소득: 제13조~제14a조
- 영업소득: 제15조~제17조
- 자유직업소득: 제18조
- 근로소득: 제19조, 제19a조
- 자본소득: 제20조

906) 아래의 표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p. 313 이하를 인용한 것이다.

- 임대소득: 제21조
- 기타소득: 제22조~제23조
  ※ 소득의 종류별로 필요경비 공제.

제2단계: 소득금액 합계액의 형성: 제2조 제3항
※ 7개 소득종류의 소득금액을 합산
소득금액의 합계액
- 노령자(65세 이상)감면공제: 제24a조
-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 제24b조
-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 제13조 제3항
=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 제2조 제3항

제3단계: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의 조사

총소득금액
- 특별공제: 제10조~제10c조
- 손실공제: 제10d조
- 비통상적인 부담: 제33조~제33b조
- 자가주택에 대한 조세혜택: 제10e조~제10i조, 구「동독지역지원법(FördergebietsG)」제7조
= 소득(Einkommen): 제2조 제4항
- 자녀소득공제: 제31조, 제32조 제6항
- 부담형평성을 위한 공제(Härteausgleichsbetrag): 제46조 제3항
= 과세대상소득=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

제4단계: 세율적용

과세표준(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 X 세율(*기본공제[Grundfreibetrag] 규정)

제5단계: 세액공제 · 감면 및 추가
- 외국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감면
- 세액추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액(제32d조 제3항과 제4항, 제10조 제5항,「산림피해보상법」제3조 제4항 제2절에 의한 추가액 등)

이러한 독일의 소득세 계산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항목과 비교하면 독일은 총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1유형은 7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하는 항목이고, 제2유형은 그러한 총소득금액에서 '소득'(Einkommen)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하는 항목이며, 제3유형은 소득(Einkommen)에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소득'(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항목이며, 제4유형은 세율 적용단계에 등장하는 기본공제(Grundfreibetrag)이다.

2. 제1유형 공제항목

가. 개관

제1유형 공제항목은 7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하는 항목이다. 여기에는 노령자에 대한 공제(Altersentlastungsbetrag)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 그리고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가 있다. 이 중 농림업종사자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농림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하면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노령자에 대한 공제(Altersentlastungsbetrag)

노령자에 대한 공제는 「소득세법」 제24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공제는 65세 이상이 되는 노령자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일정한 최고한도금액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에는 소득금액의 17.6%를 공제해주고 최고한도액은 836유로이며, 2020년에는 16%를 공제해주고 최고한도액은 760유로이다. 2040년부터는 이러한 공제는 폐지된다. 이 공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인정하는 부양가족공제(Versorgungsfreibetrag)와 연동이 된 제도이다.

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공제는 「소득세법」 제24b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공제는 한부모가정을 꾸리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소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로 인해 「소득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 또는 아동수당(Kindergeld)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의 합계액(Summe der Einkünfte)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공제는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 또는 아동수당(Kindergeld)과는 별개로 부모 한 명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능부담원칙상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공제금액은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년에 1,908유로이고, 둘째부터는 한 아이당 1년에 240유로가 추가된다.

3. 제2유형 공제항목

가. 개관

제2유형 공제항목은 7개의 개별 소득 종류별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유형 공제항목들을 공제한 후 총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일정한 공제를 하여 「소득세법」상 '소득'(Einkommen)을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이를 위해 공제하는 항목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제항목들에는 「소득세법」 제10조부터 제10c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제(Sonderausgabe), 「소득세법」 제10d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공제(Verlustabzug), 「소득세법」 제33조부터 제33b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통상적인 부담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10e조~제10i조에 의한 자가주택에 대한 조세혜택제도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와의 제도 비교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특별공제(Sonderausgabe)와 손실공제(Verlustabzug) 그리고 비통상적인 부담에 대한 공제제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항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나. 특별공제(Sonderausgaben)

1) 의의

특별공제는 원래 납세자의 개인적 소득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를 때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별도의 법률규정을 입법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비용지출이 납세자의 주관적 담세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907]

특별공제항목으로 인정되는 것은 크게 보장적 지출(Vorsorgeaufwendungen)에 대한 공제와[908] 그 외의 지출에 대한 공제로[909] 이원화할 수 있다.

907)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908)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a호, 제2항부터 제5항, 제10a조.
909)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1a항, 제10b조.

2) 보장적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

보장적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납세자의 그러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출비용을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다시 노후대비를 위한 보장적 지출과 그 외의 보장적 지출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노후대비를 위한 보장적 지출(Altersvorsorge)의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후대비를 위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불한 금원에 대한 특별공제이다. 이러한 연금의 경우 그 부담금의 일부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 특별공제가 되는 부분은 전자의 경우이다. 이러한 지출은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a)에 의해 특별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부담한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이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견해가 나뉘어짐) 「소득세법」 제3조 제62호는 이러한 금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도 근로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910]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가 아니고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자금으로 종신연금을 가입하고 그 연금의 지급이 62세 이전에 개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연금을 위해 지불한 금원도 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b) aa)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득규모가 영세한 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소득세법」 제10a조는 추가적인 노후보장보험에 대해서도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제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다.

노후대비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한 보장적 지출(Altersvorsorge)의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3a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질병, 실업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1년 최고한도가 2,800유로로 제한되어 있다.[911] 단, 납세자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조금(Zuschuss)을 지급받는 경우 1,900유로로 감액된다.

910)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6문.
911)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4항.

3) 그 외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

보장적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특별공제가 존재한다. 그 중 비교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자녀의 학교(대학은 불포함)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Schulgeld)의 경우 최고한도 5,000유로 내에서 지출비용의 30%를 특별공제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912] 그러나 숙박과 숙식 그리고 돌봄비용 등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학교는 굳이 독일 내의 학교일 필요는 없지만 EU 내에는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정부에 의해 인가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의 대상이 된다.

둘째, 자녀의 돌봄에 소요된 비용은 최고한도를 자녀 1명당 1년 4,000유로로 하여 지출비용의 3분의 2에 대해 특별공제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자녀는 공제받으려는 납세자의 가정에 거주하는 14세까지의 자녀(i)와 25세가 되기 전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든 자녀(ii)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공제에는 수업비용이나 스포츠나 기타 여가활동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913]

셋째,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지급에 대한 특별공제이다. 독일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급한 자는 지급한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없고, 대신 수령자는 해당 금원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로 과세를 받지 않는다. 단, 수령자가 수령금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지급자는 지급한 부분을 특별공제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914] 이 경우 수령자는 수령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받게 된다.[915] 공제금액은 1년에 13,805유로까지이다. 이 금액은 수령자가 독일「소득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자일 경우 수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후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되는 금액으로 상향되게 된다.

넷째,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공제이다(Spendenabzug). 공공복리,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의 업무수행을 업으로 하는 공법상 국내법인, 국내사무소, 정치, 사회단체, 재단 등에 제공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지출이므로 소득세 과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소득세법」은 이러한 활동이 결국 지원받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결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지출을 특별공제항목으로

912) 독일「소득세법」제10조 제1항 제9호.
913) 독일「소득세법」제10조 제1항 제5호.
914) 독일「소득세법」제10조 제1a항 제1호.
915) 독일「소득세법」제22조 제1a호.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b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으로는 금원뿐만 아니라 물건을 기부할 수도 있다.[916] 이 경우에는 기부받은 물건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기부금에는 회원들의 분담금(Mitgliedsbeiträge)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의 20% 또는 총부가가치와 당해 연도 급여 합계액의 0.4%까지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917]

공법상의 재단기금 또는 사법상의 재단 가운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면제단체로 지정된 재단기금에 제공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위 공제한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총 100만유로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918]

이러한 기부금공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령단체가 「조세통칙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부금수령단체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조세통칙법이다. 「조세통칙법」 제52조에서 제54조까지를 보게 되면 공익단체란 물질적, 정신적, 윤리적 영역에서 공중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는 제공자와 수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수혜자가 공간적으로나 업무상 특정 소규모집단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수령단체가 정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금공제의 증빙이 된 영수증이 기부금수령단체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경우에 기부금수령단체는 이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손실은 잘못된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된 기부금액의 30%로 간주한다.[919] 기부금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수령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200유로까지의 기부금은 이러한 영수증 없이 단순히 수령단체가 명시된 송금확인서만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i)과 정치적 색채가 없는 단체로서 오로지 연방과 주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선거에서 입후보자 추천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ii)에 대한 기부금은 특별하게 취급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g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정당(i)과 그 외 공제가능 단체(ii) 각각에 대해(jeweils) 825유로이고,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1,650유로이다.[920] 이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 제

916) 독일 「소득세법」 제10b조 제3항.
917) 독일 「소득세법」 제10b조 제1항 제9문.
918) 독일 「소득세법」 제10b조 제1a항.
919) 독일 「소득세법」 제10b조 제4항.

10b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제가능금액은 동일하게, 정당(i)과 그 외 공제가능 단체(ii) 각각에 대해(jeweils) 825유로이고,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1,650유로가 된다.

4) 특별지출 표준공제(Sonderausgaben-Pauschbetrag)

법률에서 지정된 특별지출항목의 경우[921] 납세자가 증빙을 하여 최고한도까지 공제받는 방법 이외에 36유로를 표준공제로 공제받는 방법도 허용된다. 물론,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2배가 된다.

다. 손실공제(Verlustabzug)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우선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한다. 먼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같은 소득 종류에서 발생한 다른 수익에서 상계한다. 이를 독일에서는 수평적 손실상계(Der horizontale Verlusausgleich)라고 한다. 이러한 수평적 손실상계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손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로 같은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를 수직적 손실상계(Der vertikale Verlusausgleich)라고 한다.

소득세를 연단위로 부과하는 체제에 의할 경우 그 이후에도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응능과세원칙에 따를 때 이러한 손실을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 논거로는 연단위 과세(Annuitätsprinzip, Abschnittsbesteuerung)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과세절차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922]

그래서 독일「소득세법」제10d조는 당해 연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종류에서의 수익으로 상계되지 않는 결손금을 그 이전 과세연도 혹은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총소득금액(Gesamtbetrag der Einkünfte)에서 최고 100만유로까지 공제할 수 있다(Verlustrücktrag). 그런데 납세자는 그러한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신

920) 독일「소득세법」제10b조 제4항.
921) 독일「소득세법」제1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그리고 제9호 및 제1a항과 제10b조.
922) Dillberger/Fest, a.a.O, p. 124.

청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의 결손금을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의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결손금은 100만유로까지는 무제한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금액의 60%까지를 특별공제(Sonderausgabe), 비통상적인 부담에 따른 공제 그리고 그 외 공제보다 우선적으로 공제하게 된다.[923] 부부합산과세를 신청한 배우자의 경우 그 금액은 2배가 된다.

라. 비통상적인 부담을 위한 공제(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1) 의의

비통상적인 부담을 위한 공제는 「소득세법」 제33조부터 제33b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통상적인 부담이란, 특별공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필요경비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응능과세원칙에 따를 때 이러한 지출은 납세자의 주관적 담세력을 줄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독일 「소득세법」은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그러한 지출 중 일정한 경우를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비통상적인 부담을 위한 공제로 실제 공제되는 경우는 보충적이어서(subsidiär) 해당 지출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거나 특별공제로 공제되는 경우에는 비통상적인 부담을 위한 공제로는 공제할 수 없다.[924]

특별공제(Sonderausgabe)와 달리 비통상적인 부담을 위한 공제는 공제항목을 확정적으로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단 「소득세법」 제33조에서 추상적으로 어떤 경우가 세법상 비통상적인 부담이 되어 그러한 지출이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33a조와 제33b조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해 보여주고 있다.[925] 즉, 독일 「소득세법」상 어떠한 지출이 비통상적인 부담에 해당하여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33a조와 제33b조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들에 따른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통상적인 부담에 대한 집합구성요건(Auffangstatbestand)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33조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923) 독일 「소득세법」 제10d조 제2항.
924) 독일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제2문.
925) Dillberger/Fest, a.a.O, p. 130.

2)「소득세법」제33조

「소득세법」제33조에 따르면 특정 납세자에게 그와 소득 및 자산관계가 비슷한 다른 다수의 납세자와 비교했을 때 훨씬 큰 지출이 납세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관계 없이(zwangsläufig) 발생한 경우 그 지출은「소득세법」상 비통상적인 부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으로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소득지출' 부분을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비통상적'(außergewöhnlich)이라는 것은 납세자와 소득 및 재산상태 그리고 가족상황이 유사한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통상적으로'(typischerweise)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926] 이러한 지출은 개인적 삶을 위한 소득의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지출이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지출은 아니므로 개인적 삶을 위한 소득의 지출을「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본공제(Grundfreibetrag)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비통상적인 부담은 보통의 납세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납세자에게 특별히 발생한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을 기본공제와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이 납세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피할 수 없는(zwangsläufig)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그러한 지출을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sittlich) 피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지출이 적절한 수준일 때 인정이 된다.[927]

이러한 비통상적 부담을 위한 소득공제의 요건이 충족된 지출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출 전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die zumutbare Belastung)'를 초과하는 지출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어느 정도가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소득세법」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Ⅲ-1〉을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결국 비통상적 부담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대로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926) Dillberger/Fest, a.a.O, p. 130.
927) 독일「소득세법」제33조 제2항.

〈표 Ⅲ-1〉 비통상적 부담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단위: %)

총소득금액의 규모		15,340유로까지	15,340유로 초과 51,130유로까지	51,13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X	「소득세법」 제32a조 제1항에 따른 세율적용을 하는경우	5	6	7
	「소득세법」 제32a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경우)	4	5	6
자녀 O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2	3	4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	1	2

주: 표 안의 수치는 총소득금액에 대한 비율

3) 「소득세법」 제33a조와 제33b조

「소득세법」 제33a조와 제33b조는 비통상적 부담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제33a조에서는 납세의무자 본인 혹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법률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의 부양을 위해서 혹은 직업교육을 위해 비용이 증가한 경우 2019년까지는 9,168유로, 2020년부터는 9,408유로를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3b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하여 받게 되는 보조와 돌봄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제33조에 의하여 공제받는 대신에 법률에 정하는 표준금액(Pauschbetrag)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제3유형 공제항목

가. 개관

제3유형 공제항목은 총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 등 제2유형 공제항목들을 공제하여 소득세법상 '소득'(Einkommen)을 산출한 상태에서 다시 일정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소득'(das zu versteuerndes Einkommen)을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이를 위해 공제하는 항목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제항목에는 「소득세법」 제31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와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공제(Härteausgleich)가 있다.

나.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는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돌봄과 양육 및 교육을 포함)를 부양자의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928] 자녀소득공제는 아동수당(Kindergeld)과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929]

자녀의 최저생계비를 부양자의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 중인 소득공제(Kinderfreibetrag)와 아동수당(Kindergeld) 중 기본은 후자이다. 특이하게 독일은 아동수당제도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930] 아동수당은 법률에 의하여 수당신청권이 부여된 모든 자에게 그들의 소득규모와 관계 없이 부여한다. 수당신청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3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8세까지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18세를 초과했더라도 25세를 넘기지 않았으면 일정한 조건하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아동이 직업이 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여전히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아동수당 대신에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는 「소득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공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자녀의 물질적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제는 공제대상 자녀[931] 1인당 연간 2,490유로를 공제해 준다. 둘째는, 자녀의 양육, 돌봄, 교육을 위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 공제로는 자녀 1인당 연간 1,320유로를 공제할 수 있다.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에게 해당 자녀가 친자녀인 경우에는 위 금액은 2배가 된다.

다.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공제(Härteausgleich)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공제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과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다.[932]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은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인 근로자가 410유로 이하의 다른 소득이

928) 독일 「소득세법」 제31조.
929) 독일 「소득세법」 제31조.
930) 독일 「소득세법」 제62조부터 제78조까지.
931) 그 요건은 아동수당의 경우와 동일하다.
932) 독일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부 존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외에 별도로 소득세 부과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금액이 410유로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이외에 부수적으로 획득한 다른 소득(Nebeneinkünfte)을 합산하여 소득세 부과절차(Veranlagunsverfahren)를 진행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은 이처럼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과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즉 근로소득이 주 소득인 납세자가 부수적인 다른 소득(물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안 된 추가적 소득이어야 함)이 있고 그 소득금액이 41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일자라도 410유로는 공제해준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금액은 부부합산과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5. 제4유형 공제항목

제4유형 공제항목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공제이다. 독일의 소득세 세율의 첫째 단계는 특이하게 개인자산 양도로 인한 손실은 기타소득 이외 다른 6개 소득유형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지 못한다.[933]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간에는 통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손실은 이전 과세연도 혹은 그다음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개인자산 양도로 인한 이익하고만 상계할 수 있다.[934] 세금이 0이 되는 구간이다.[935] 이 구간을 독일에서는 '기본공제'(Grundfreibetrag)라고 한다. 이 공제는 납세자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독일 「소득세법」의 경우 납세자 본인의 최저생계비는 기본공제를 통해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를 통해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본공제금액은 2019년의 경우 9,168유로이고 2020년에는 9,408유로이다.[936] 부부합산과세의 경우에는 2배가 된다.

933)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7문.
934) 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8문.
935) 독일의 소득세 세율체계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 제1권, p. 321 이하를 참조하기 바란다.
936) 독일 「소득세법」 제32a조 제1항.

Ⅳ 시사점

독일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7개 소득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 중 본 보고서에서는 제3권에서 다루게 될 자산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소득유형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우리나라처럼 분류과세를 하는 소득유형은 없다. 하지만, 합산과세를 하더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유형은 7가지로 나누고 있다.

소득유형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영업소득과 농림업소득 그리고 자유직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자유직업소득도 일반적인 영업소득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본이득의 일종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영업소득 등으로 과세하고, 단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별 소득유형별로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업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영업의 양도나 종료로 인한 소득도 영업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다만, 납세자의 연령이 5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에 한하여 소득금액이 4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세율도 일반세율이 아니고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감경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직업소득의 경우 예술가나 작가들도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함께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MDP)이 허용되어 그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자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농림업소득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유형과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여러 가지 과세특례는 인정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부가급여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과세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의 임차료가 그 지역 평균임대료의 66% 이상이 되어야만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무상 제공으로 간주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임대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주택구입비용의 경비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처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과 개인적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Einkünfte aus

privaten Veräußerungsgeschäften), 의원들의 세비가 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적 용도로 보유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이 일정한 기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투기거래(Spekulationsgeschäft)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기간이 부동산과, 부동산과 유사한 권리(예, 지상권[Erbbaurecht])의 경우에는 10년, 그 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이다. 주택의 경우 10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후 양도 때까지 오로지(ausschließlich)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양도하는 당해 연도와 그 이전 2개 연도에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술품이나 골동품의 양도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개인자산 양도로 인한 손실은 기타소득 이외 다른 6개 소득유형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지 못하며,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간에는 통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익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손실은 이전 과세연도 혹은 그다음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개인자산 양도로 인한 이익하고만 상계할 수 있다. 연방의회나 주의회의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과거 독일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의원의 급여를 비과세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규정을 연방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현재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시사점은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모든 소득유형에 있어서 필요경비공제개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근로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공제를 인정하며, 다양한 필요경비공제 특례가 있음)을 들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하여 실경비를 전액 공제받은 방법 이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금액을 공제받는 제도도 있다. 그 외의 경우 납세자는 자신의 필요경비공제를 위해 모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경비를 입증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단계로 나누어 공제가 되고 있으며 그 중 특별공제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금전기부 이외에 실물기부도 공제를 해주는 점,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한 경비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소득세법」에 규정하여 자녀소득공제와 연동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이동식,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1권, 2019.

Birk/Desens/Tappe, Steuerrecht 21. Auflage, 2018/2019, C.F.Mueller.
Dillberger/Fest, Einkommensteuer und Abgabenordnung 4. Auflage, 2019, C.H.Beck.
Grashoff, Grundzüge des Steuerrechts 14. Auflage, C.H.Beck, 2018.
Lippross Basis Kommentar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1999.
Tipke/Lang Steuerrecht 2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2018.

부록: 독일 소득세법 주요 조문

Ⅰ. 납세의무(Steuerpflicht)
제1조 납세의무
제1a조 EU와 EWR 가족구성원의 무제한 납세의무자 간주
Ⅱ. 소득(Einkommen)
1. 과세를 위한 물적 전제들(Sachliche Voraussetzungen für die Besteuerung)
제2조 과세의 범위, 개념정의
제2a조 제3국과 관련한 소극소득
2. 비과세 수입(Steuerfreie Einnahmen)
제3조 비과세수입
제3a조 회생절차를 위한 채무면제에서 발생한 수익
제3b조 일요일, 공유일 또는 야간근무에 대한 비과세
제3c조 비과세관련 수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공제(지분공제)
3. 소득(Gewinn)
제4조 일반적인 소득개념
제4a조 과세기간, 회계연도
제4b조 직접보험
제4c조 연금계좌에의 무상제공
제4d조 연금지원계좌에의 무상제공
제4e조 연금펀드에의 분담금
제4f조 채무인수, 채무참여 그리고 이행인수
제4g조 제4조 제1항 제3문에 따른 자본감소에 대응한 상계항목의 신설
제4h조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공제(이자에 대한 제한)
제4i조 외국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특별지출공제
제4j조 권리양도를 위한 경비
제5조 상인이나 다른 특별한 영업형태에 있어서 수입
제5a조 국제거래를 하는 선박에 대한 수입금액
제5b조 회계장부등의 전자적 전달

제6조 평가
제6a조 연금준비금
제6b조 특정 투자자산의 양도시 미배당 이익의 양도
제6c조 제4조제3항이나 소득평균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6b조 특칙
제6d조 유로환산을 위한 예비비
제7조 감가상각 또는 자산가치감소
제7a조 특별상각 등을 위한 공동의 규정들
제7b~7f 삭제
제7g조 투자공제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상각
제7h조 재건지역과 도시건축적 개발지역에서의 건물에 대한 특별상각
제7i조 문화재에 대한 특별상각
4.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Überschuss der Einnahmen über die Werbungskosten)
제8조 수입
제9조 필요경비
제9a조 필요경비 표준공제액
4a.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Umsatzsteuerrechtlicher Vorsteuerabzug)
제9b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공제
5. 특별공제(Sonderausgaben)
제10조 특별공제
제10a조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보장적 지출에 대한 공제
제10b조 조세감면이 가능한 공익목적
제10c조 특별공제-표준공제액
제10d조 손실공제
제10e조 거주목적에 사용하는 자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제10f조 재건지역 및 도시건축적 개발지역 소재 문화재를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
제10g조 소득획득 의사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건물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6. 수취와 지출(Vereinnahmung und Verausgabung)
제11조 수취와 지출
제11a조 재건지역 및 도시건축적 개발지역 소재 건축물 유지비용의 특별취급
제11b조 문화재인 건축물의 유지비용의 특별취급
7. 공제되지 않는 지출(Nicht abzugsfähige Ausgaben)
제12조 공제할 수 없는 지출
8. 개별적인 소득종류들(Die einzelnen Einkunftsarten)
a) 농림업소득(Land-und Forstwirtschaft)
제13조 농림업에서 발생한 소득
제13a조 소득평균율에 의한 농림업소득 소득금액 조사
제14조 사업의 양도
제14a조 특별한 농림업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감면
b) 영업소득(Gewerbebetrieb)
제15조 영업소득
제15a조 인적회사에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손실의 처리
제15b조 조세유예와 관련한 손실
제16조 사업의 양도
제17조 물적회사의 지분의 양도
c) 자유직업소득(Selbständige Arbeit)
제18조 자유직업소득
d) 근로소득(Nichtselbständige Arbeit)
제19조 근로소득
제19a조 근로자에게 회사에 대한 자산관여의 양도
e) 자본소득(Kapitalvermögen)
제20조 자본소득
f) 임대소득(Vermietung und Verpachtung)
제21조 임대소득
g) 기타소득(Sonstige Einkünfte)
제22조 기타소득의 종류
제22a조 중앙처리소에의 연금지급금의 통지

제23조 개인적인 자산양도거래
h) 공동의 규정들(Gemeinsame Vorschriften)
제24조 손해배상 등
제24a조 노령자감면공제
제24b조 한부모가정에 대한 공제
Ⅲ. 부과(Veranlagung)
제25조 부과기간, 신고의무
제26조 부부에 대한 부과
제26a조 부부의 별도 부과
제26b조 부부의 합산과세
제27조 삭제
제28조 연속된 부부재산공동제에 대한 과세
제29조~제30조 삭제
Ⅳ. 세율(Tarif)
제31조 가정의 부담조정
제32조 자녀, 자녀소득공제
제32a조 소득세 세율
제32b조 누진유보
제32c조 농림업소득에 대한 세율 특례
제32d조 자본소득에 대한 분리된 세율
제33조 비통상적 부담
제33a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비통상적 부담
제33b조 장애인등에 대한 표준공제액
제34조 비통상적 소득
제34a조 이익소득유형에서 유보한 소득에 대한 특례
제34b조 비통상적인 목재이용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율
Ⅴ. 조세경감(Steuerermäßigungen)
제34c조~제35b조
Ⅵ. 징수(Steuererhebung)
1. 소득세 징수(Erhebung der Einkommensteuer)

제36조 소득세의 발생과 소멸
제36a조 자본이득세 산입의 제한
제37조 소득세의 예납제도
제37a조 제3자를 통한 소득세의 일반화
제37b조 물건기부에 있어서 소득세의 일반화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Steuerabzug vom Arbeitslohn[Lohnsteuer]
제38조~제42g조
3.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Steuerabzug vom Kapitalertrag[Kapitalertragsteuer])
제43조~제45e조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Veranlagung von Steuerpflichtigen mit steuerabzugspflichtigen Einkünften)
제46조~제47조
Ⅶ. 건축업과 관련한 원천징수(Steuerabzug bei Bauleistungen)
제48조~제48d조
Ⅷ. 제한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Besteuerung beschränkt Steuerpflichtiger)
제49조~제50a조
Ⅸ. 그 밖의 규정들, 과태료, 처분규정들 그리고 종결규정들(Sonstige Vorschriften, Bußgeld-, Ermächtigungs- und Schlussvorschriften)
제50b조~제61조
Ⅹ. 아동수당(Kindergeld)
제62조 청구권자
제63조 아동
제64조 여러 청구권의 동시발생
제65조 아동을 위한 다른 서비스
제66조 아동수당의 액수, 지급시기
제67조 신청
제68조 특별한 협력의무
제69조 가족센터에의 정보전달
제70조 아동수당의 확정과 지급
제71조 삭제

제72조 공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확정과 지급
제73조 삭제
제74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아동수당의 지급
제75조 상쇄
제76조 압류
제76a조 삭제
제77조 준비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
제78조 경과규정
XI. 노령수당(Alterssvorsorgezulage)
제79조~제99조
XII. 사업장노인복지지원금(Förderbetrag zu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제100조 사업장노인복지지원금

제6장 프랑스

Ⅰ. 소득세제 개관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Ⅳ. 기타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약어표
• 부록: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소득세 관련 주요 조문

제6장 | 프랑스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 특징

프랑스 소득세는 1872년 6월 29일 법률에 따라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1914년 7월 15일 법률에 따라 누진세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1948년 12월 9일 법규명령에 따라 가족단위 과세제도(foyer fiscal)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937]

가족단위 과세제도란 우리나라처럼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을 1과세단위로 보고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가족의 수(part)로 나눈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가족의 수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퇴직·연금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자본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이사소득, 농업소득 및 비상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하되, 비상업소득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세대상소득

프랑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아래 표와 같이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과세한다.[938]

※ 이 보고서는 Frédéric DOUET가 쓴 『Précis de Droit Fiscal de la Famille』(LexisNexis, 2018)의 pp. 15~327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의 내용과 중첩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글의 전개상 일부는 반복되는 내용도 있음을 밝혀둔다.

937)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1권) -프랑스 편-』, 2019, pp. 334~338 참조.

938) Frédéric DOUET, 「Précis de Droit Fiscal de la Famille」, LexisNexis, 2018, pp. 21-52.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프랑스 편-』, 2019, p. 356.

〈표 Ⅰ-1〉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구분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비교
1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Traitements, Salaires, Indemnités, Emolument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2	양도소득(Plus-values de Cession à Titre Onéreux de Biens ou de Droits de Toute Nature)	양도소득
3	부동산 임대소득(Revenus Fonciers)	사업소득
4	자본소득(Revenus de Capitaux Mobiliers)	이자소득, 배당소득
5	산업 및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사업소득
6	이사 소득(Les Gérants Majoritaires des 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근로소득, 배당소득
7	농업소득(Bénéfices de l'Exploitation Agricole)	사업소득
8	비상업소득(Bénéfices des Professions non Commerciales)	기타소득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우리나라는 소득을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3. 기타 특징

프랑스 근로소득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 근로소득공제방식과 실제 발생경비공제방식 중 본인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절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초고소득자(독신의 경우 과세표준이 250만유로 이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0만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소득세 이외에 공평부담의 원칙과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연대(solidarité)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표 Ⅰ-1〉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득의 과세체계에 관해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각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 산출과정을 설명한다(제Ⅱ장). 그러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양도소득 등 자본소득은 추후 발간할 제3권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이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규정을 분석하였으며(제Ⅲ장), 기타 사항(제Ⅳ장)과 및 프랑스 소득세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제Ⅴ장)을 이 글의 결론으로 삼아 제시하였다.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소득에는 8가지 소득이 있으나, 제Ⅱ장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농업소득, 근로·연금·퇴직소득, 비상업소득의 순서대로 소득별 총수입금액과 비과세소득 및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입에 대해 설명한다.

1. 부동산 임대소득

가. 개요

부동산 임대소득(revenus fonciers: RF)이란 가족단위(foyer fiscal) 납세의무자 구성원[939]이 소유(propriétaires) 또는 용익권(usufruitiers)이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모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이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받은 이자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ⅰ) 사업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계상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산업 및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BIC)으로 분류한다.[940]

ⅱ) 가구가 딸린 거주용 주택(immeubles d'habitation loués méublés), 산업 및 상업용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임대로부터 얻은 소득은 BIC로 분류한다.[941]

ⅲ) 비상업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가구가 딸리지 않는(non meublés) 부동산 임대(재임대 포함)소득은 비상업소득(Bénéfices des Professions non Commerciales: BNC)으로 분류한다.

ⅳ) 농업소득(bénéfices de l'exploitation Agricole: BA)을 얻기 위해 사용한 토지·산림·숲의 임대(재임대 포함)소득은 농업소득(BA)으로 분류한다.

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창고의 임대는 BIC로 분류한다.[942]

939) 이는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BIC 소득(우리나라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940) CGI, 제14조. 이는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941) 재임대를 포함한다.
942) 예를 들면, 자동차의 주유소, 수리장소, 세차장소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이란 ⅰ) 가구가 딸리지 않은 거주용 주택 ⅱ) 산업 및 상업용 소득과 관련하여 비필수적인 부동산 임대 ⅲ) 농업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는 소작농에 대한 부동산 임대 ⅳ)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창고 등의 임대로부터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비과세

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이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943] 이 경우 주택이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주된 주택(résidence principale)과 이에 부수하는 주택(résidence secondaires) 및 부속건물[944]을 포함한다.[945] 아울러 비과세대상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에 부여하고 있는 수렵권(droit de chasse)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946]

한편,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경비는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가치(monuments historiques)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가 계상할 수 있다.[947]

다. 총수입금액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ⅰ) 받은 금액 및 ⅱ) 받아야 할 금액의 합계액이다.[948]

1) 받은 금액

받은 금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propriétaire)가 ⅰ) 임대 명목으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recette brute) 및 ⅱ) 임대계약에 따라 세입자로부터 받은 수리비 등의 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949]

---

943) CGI, 제15조 제2항. Les revenus des logements dont le propriétaire se réserve la jouissance ne sont pas soumis à l'impôt sur le revenu. Cette exonération s'applique également aux locaux compris dan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ffectés à l'habitation des propriétaires exploitants.

944) 예를 들면, 차고, 지하저장고, 정원 등이 있다.

945)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비사업자인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판단된다.

946) CGI, 제30조.

947) CGI, 제15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948)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비교를 위해,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지출금액은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949) 예를 들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리비가 100만원인데 실제 80만원만 지출한 경우 그 차액 20만원은 부동산임대

그러나 지급받은 보조금(subventions)이나 보상금(indemnités)의 원인인 금융비용이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경우[950]에는 이들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부담한 관리비는 소유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현금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즉, 소득세 과세기간(année d'imposition) 동안, 소유자가 받은(perçu) 모든 집세(loyer)를 포함한다. 즉, 지난해 집세나 선수 집세를 불문하고 받은 연도에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받은 부수입(les revenu accessoires)[951] 및 예외적 수입(revenus exceptionnels)[952]도 포함된다.

2) 받지 못한 금액 (Loyers non recouvrés)

받지 못한 임대료 중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는 여부는 그 사유가 임대인(bailleur)에 귀착되는지에 달려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기 위한 절차[953]를 밟았어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지급능력이 부족해서)[954]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임차인이 미지급 임차료에 대해 징수방안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해당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955]

라. 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ⅰ) 일반적인 경우(régime général)와 ⅱ) 소규모사업자의 경우(régime micro-foncier)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으로 본다는 의미다.

950) 예를 들면, 도난 방지용 보험료를 지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했는데 실제 도둑이 들어와서 손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51) 예를 들면, 해당 토지에 부여된 수렵권의 임대에 따른 수입을 들 수 있다.

952) 예를 들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금(pas-de-porte) 수입을 들 수 있다.

953) 예를 들면, 독촉장 발송이나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954) 예를 들면,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

955) CE, n° 365765, 2015. 10. 1. 이에 따라 임대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로 징수하는 사회보장세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연말정산의 경우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지급했다고 하고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과 유사하다.

1) 일반적인 경우

「조세일반법」상 2005년 과세기간까지는 필요경비는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의 14%를 '추계공제'(déduction forfaitaire)를 한 뒤, 일부 경비는 실제 지급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산입하였다. 그러나 2006년 과세기간부터는 추계공제제도가 폐지되었고, 그 대신 실제 지출(montant réel)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도시지역(urbaine)[956]과 그 밖의 지역(시골지역, rulale)[957]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958]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 부동산 필요경비 주요 항목

도시지역	시골지역
소유주가 부담한 수리비 또는 유지비용	옆과 같음
보험료	
임차한 연도의 12월 31일에 소유주가 환불받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지원한 수리 비용 등의 금액	
준비금	
주거 지역 거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단, 신규건축 공사, 재건축이나 확장 공사 등을 제외)	
석면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장애인의 접근을 쉽게 하는 비용(단, 신규건축 공사, 재건축이나 확장 공사 등을 제외)	
제세공과금	
임대물의 보존, 취득, 건설, 수리 또는 개선하기 위한 대출에 대한 이자	
임대인이 부담한 관리비(frais de gestion), 경비원이나 관리원 급여, 건물의 관리를 위해 제삼자에게 지출되는 절차 비용, 부동산 수수료 등.	

956) CGI, 제31조 제1항: (원문) Les charges de la propriété déductibles pour la détermination du revenu net comprennent: 1° Pour les propriétés urbaines : a) Les dépenses de réparation et d'entretien effectivement supportées par le propriétaire ; a bis) les primes d'assurance ; (이하 생략).

957) CGI, 제31조 제2항: (원문) 2° Pour les propriétés rurales : a) Les dépenses énumérées aux a à e du 1° ; c) Les dépenses d'amélioration non rentables afférentes aux propriétés bâties autres que les locaux d'habitation, effectivement supportées par le propriétaire. Sont considérées comme des dépenses d'amélioration non rentables les dépenses qui ne sont pas susceptibles d'entraîner une augmentation du fermage; (이하 생략).

958) CGI, 제13조 제1항.

〈표 Ⅱ-1〉의 계속

도시지역	시골지역
해당 없음	실제로 소유자가 지원(支援)한, 주거용으로 건축한 것 이외의 건물에 관련된 수익성 없는 개량작업에 대한 지출[959]
	농장 건물에 통합된,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 및 건설하는 비용.
	현대 농업 기술에 적합하지 않거나 낡은 같은 목적의 기존 건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업용 건물에 대한 지출
	「Natura 2000」[960] 의 구현을 위해 복원 작업, 유지보수 및 관련 행정 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은 조경 공사 비용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2) 소규모 임대의 경우

「소규모 부동산 임대 규정(régime micro-foncier)」은 임대업자의 소득세 신고 의무의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임대란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1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961] 이 경우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은 추계로 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의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962]

그러나 만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에 따라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경비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계속하여 적어도 3과세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959) 소작료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출이 수익성 없는 개량작업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960) Natura 2000은 유럽연합 영토의 자연 보호 구역 네트워크이다.
961) 만일 1년 내내 부동산 임대수입이 없으면, 즉, 3월부터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기준금액 15,000유로에 미치는지를 판단한다.
962) CGI, 제32조.

2. 산업 및 상업소득

가. 개요

산업 및 상업소득(BIC)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한다. 「조세일반법」에는 BIC에 해당하는 업종 8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가내수공업, 산업활동업, 서비스업, 운송업, 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중개업, 은행업, 음식·숙박업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와는 달리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입법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963]

BIC 소득금액 산출과정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산출과정과 유사하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BIC 적용대상자는 ⅰ) 프랑스 내에 주된 거소가 있는 자 ⅱ) 프랑스 밖에 주된 거소가 있지만, 사업 활동의 중심지가 프랑스 내에 있는 자 중 산업 및 상업활동을 하는 개인 ⅲ) 법인세를 적용받지 않은 법인격 없는 법인이 포함된다. 한편,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된다.

나. 개념 및 유형 분류

「조세일반법」에서는 산업 및 상업소득을 "상업적,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직업의 수행에서 오는 이익(les bénéfices réalisés par des personnes physiques et provenant de l'exercice d'une profession commerciale, industrielle ou artisanal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964]

한편, 상업활동이란 「상법 (code de commerce)」 제 L.110-1조[965] 및 제 L.110-2조[966]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일반법」의 BIC 적용 범위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활동에다

963) CGI, 제35조. (원문): I. Présentent également le caractère de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pour l'application de l'impôt sur le revenu, les bénéfices réalisés par les personnes physiques désignées ci-après: 1° Personnes qui, habituellement, achètent en leur nom, en vue de les revendre, des immeubles, des fonds de commerce, des actions ou parts de sociétés immobilières ou qui, habituellement, souscrivent, en vue de les revendre, des actions ou parts créées ou émises par les mêmes sociétés. (이하 생략).

964) CGI, 제34조.

965) 「상법(code de commerce)」 제 L.110-1조. (원문): La loi répute actes de commerce: 1° Tout achat de biens meubles pour les revendre, soit en nature, soit après les avoir travaillés et mis en oeuvre. (이하 생략).

966) 「상법(code de commerce)」 제 L.110-1조. (원문): La loi répute pareillement actes de commerce: 1° Toute entreprise de construction, et tous achats, ventes et reventes de bâtiments pour la navigation intérieure et extérieure. (이하 생략).

가 제조업, 수공업 등 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를 포함한다.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BIC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익이 '산업 및 상업활동의 실행(exercice d'une profession)'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967]

한편, 산업 또는 상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이익이 농업소득(BA)이나 비상업소득(BNC)의 이익을 얻는 거래까지 확장될 경우, 농업소득 또는 비상업소득은 BIC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68] 이를 위해서는 두 활동은 보완적이어야 하며, BA 또는 BNC의 활동은 BIC 활동에 대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산업 및 상업소득의 유형을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Ⅱ-2〉 산업 및 상업소득의 유형

본질상 BIC 유형	상업활동
	재판매 목적으로 재화나 상품의 구입
	임대목적으로 목적물(objets)의 구입
	음식 숙박업
	상업대리인(여행 알선업 등)
	하도급업
	상업중개업
	금융업, 보험업
	산업활동
	제조업
	탄광업
	운송업
	판매업

967) 2016년까지는 가구가 딸린 집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RF로 분류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BIC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한편, 어떤 납세의무자가 바이올린 교사 활동과 동시에 예술품이나 골동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BIC로 분류한다. 즉, 거래의 중요성, 거래 횟수 및 빈도 구매와 판매까지의 길이의 장단 등으로 보아 상업적 활동인지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CAA Lyon, n° 982, 2006. 3. 2.).

968) CGI, 제155조 제1항 제1호. (원문) Lorsqu'une entreprise industrielle ou commerciale étend son activité à des opérations dont les résultats entrent dans la catégorie des bénéfices de l'exploitation agricole ou dans celle des bénéfices des professions non commerciales, il est tenu compte de ces résultats pour la détermination des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à comprendre dans les bases de l'impôt sur le revenu.

〈표 Ⅱ-2〉의 계속

BIC 유형으로 간주	탄광개발의 인가를 받은 자의 광물 판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 판매
	산업 및 상업 활동 관련 장비의 임대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의 이익
	경매인, 전매권자, 소작인의 이익
임대	동산임대
	차고, 세차장
	가구가 딸린 주택(비과세 대상은 제외)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BIC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은 우선 「회계법」(droit comptable)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세일반법」(droit fiscal)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반영(이른바 '세무조정'을 하여)하여 산출한다.[969]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970]

회계법의 원천은 다양하다. 그 중 첫 번째는 「상법(Code de commerce)」 제 L.123-12조부터 제 L.123-28조의 규정인데, 여기에서는 상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회계의무(obligations comptables)사항을 규정하고 있다.[971] 두 번째는 회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세법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규정 중 상당 부분은 같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amortissement)의 의미나 준비금(provision) 등의 의미 등이 그러하다.[972] 그러나 특정의 비용이나 준비금의 설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973]

969) 프랑스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산출은 BIC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CGI, 제221조 제1항). (원문). L'impôt sur les sociétés est établi dans les mêmes conditions et sous les mêmes sanctions que l'impôt sur le revenu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régime d'imposition d'après le bénéfice réel ou d'après le régime simplifié). 참고자료 : M. Chadefaux, F. Deboissy et M. Chadefaux, 「*Précis de fiscalité des entreprises*」, Paris, LexisNexis, 41ème, 2017, n° 120; D. Gutmann, 「Droit fiscal des affaires」, Paris, LGDJ, 8ème, 2017, n° 360.

970) 그러나 「조세일반법」상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과 같은 규정은 없다.

971) 프랑스 「상법(code de commerce)」 제123조 제12항. (원문) Tout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ayant la qualité de commerçant doit procéder à l'enregistrement comptable des mouvements affectant le patrimoine de son entreprise. Ces mouvements sont enregistrés chronologiquement.

972) CE, n° 46770, 1980. 3. 14.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

973) CE, n° 95015, 1975. 11. 5.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세법의 규정에

「조세일반법」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은 기업회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소득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규정[974]하고 있고, 이어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순자산에서 시작일의 순자산과의 차이[975]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BIC 과세대상 소득은 기업회계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세무조정(rectifications)을 거쳐 얻어진다. 비과세대상은 회계상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세법상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정은 세무신고서식 n°2058-A(과세 이익의 결정(détermination du resultat fiscal: 별첨 1 참조, 우리나라의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에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의 결정

BIC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ⅰ) 경상수입(produits d´exploitations) ⅱ) 부수적인 수입(produits accessoires) 및 ⅲ) 예외적인 수입(produits exceptionnels)으로 대별한다.[976]

1) 경상수입

기업회계기준의 경상수입은 〈70 제품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상품의 판매〉 계정과목과 〈75 기타 수입〉 및 〈78 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환입〉으로 구성된다.[977]

그러나 「조세일반법」에서는 BIC 과세대상 소득에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경상수입뿐만 아니라, '순자산 증가분(variation de l'actif net)'을 포함한다. 순자산 증가분의 계산은 ⅰ)

따라 결정한다.

974) CGI, 제38조 제1항. (원문) le bénéfice imposable est le bénéfice net, déterminé d'après les résultats d'ensemble des opérations de toute natur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y compris notamment les cessions d'éléments quelconques de l'actif, soit en cours, soit en fin d'exploitation.

975) CGI, 제38조 제2항. (원문). Le bénéfice net est constitué par la différence entre les valeurs de l'actif net à la clôture et à l'ouverture de la période dont les résultats doivent servir de base à l'impôt diminuée des suppléments d'apport et augmentée des prélèvements effectués au cours de cette période par l'exploitant ou par les associés. L'actif net s'entend de l'excédent des valeurs d'actif sur le total formé au passif par les créances des tiers, les amortissements et les provisions justifiés.

976)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으로 보면 매출, 영업외수익, 특별이익과 비교할 수 있다. 예외적인 소득의 경우, 자산재평가 등 자본이익과 재난을 당한 기업이 받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977) 프랑스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매계정과목(comptes de produits)은 대분류로 숫자 〈7〉을 사용하고, 그 하부 규정으로 제품 및 상품 판매와 용역매출은 〈70〉, 기말재고는 〈71〉, 부동산 판매〈72〉, 보조금은 〈74〉, 영업권 판매 등 무형자산의 판매는 〈75〉, 금융수입은 〈76〉, 예외적인 수입은 〈77〉, 감가상각비 환입 등은 〈78〉을 사용한다(〈73〉은 없다).

채권과 채무에 대한 규칙 ii) 기말재고에 대한 규칙 iii) 채권과 채무의 평가에 대한 규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규칙

경상수입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현된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으로 결정된다.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는 '현금회계기준(comptabilité de caisse)'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품과 비용, 즉 채권과 채무로부터 결정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comptabilité d'engagement)'를 기반으로 한다.[978]

나) 기말재고에 대한 규칙

기말재고는 원칙적으로 '원가(原價), prix de revient'로 하되,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재가치가 원가보다 낮으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979] 기말 종료일의 현재가치란 기업이 해당 재고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판매할 경우 그때 실현되는 가격을 의미한다.[980]

기말재고 평가는 「상법」 제 L.123-18조 제3항에서 '이동평균법(coût moyen pondéré)'과 '선입선출법(premier entrée premier sorti)'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후입선출 방법(dernier entrée premier sorti)'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981]

다) 채권과 채무의 평가에 대한 규칙

채권 및 채무는 「민법(code civil)」 제1895조[982]에 따라 유로로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통

978) 법인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조세일반법」 제38-2bis조에 따르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과세소득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i) 판매 및 이와 유사한 거래는 상품 인도가 발생한 회계 연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ii)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채권은 그 용역이 완성되는 활동에 연결되어야 한다. iii) 지속적인 용역 및 일정기간 연속하는 기간 중의 비지속적인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채권은 급부(prestation)가 집행되는 활동에 연결되어야 한다. iii) 판매 및 이 판매에 관계된 서비스 제공에 동시에 관련되는 채권은, 비록 관련된 서비스는 활동이 끝나고 사후적으로 수행되더라도, 물품이 배달되는 활동에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이들 규칙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대금지불이 배달에 앞서고 채권의 회수가 의심되더라도 이 규칙들은 적용되어야 한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회사는 이러한 채권의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상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979) CGI, 제38-3조. (원문) Pour l'application des 1 et 2, les stocks sont évalués au prix de revient ou au cours du jour de la clôture de l'exercice, si ce cours est inférieur au prix de revient.

980) CE, n°57456, 1989. 2. 3.

981) 「상법 (code de commerce)」 제 L. 123-18조. (원문) Les biens fongibles sont évalués soit à leur coût moyen pondéré d'acquisition ou de production, soit en considérant que le premier bien sorti est le premier bien entré.

화의 가치하락 위험에 상관없이, 명목가치로 표시되어야 한다.[983] 외화 표시 채권과 채무는 기장 처리한 날의 유로화 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된다.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외화채권 및 채무는 평가하여 외화평가 차익 또는 외화평가 차손이 있을 때 이를 과세대상 소득에 반영한다.[984]

2) 부수적인 수입

부수적인 수입은 주로 ⅰ) 금융 상품 ⅱ) 보상금 ⅲ) 보조금 ⅳ) 환급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 금융 상품

금융 상품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금융이자, 모든 종류의 국채, 사채, 출자증권, 채권, 예치금,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은 분리과세(prélèvement libératoire)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세일반법」은 특별한 경우 개인에게만 분리과세를 허용한다.[985]

경영자는 자신의 소유인 증권을 자신의 회사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다. 회사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기록된 유가증권 배당금은 BIC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경영자의 배당소득(RM)으로 과세한다.

나) 보상금(indemnités)

회사가 받는 모든 보상금은 성격에 상관없이, BIC로 보아 과세한다. 보상금의 지급목적은 손실된 가치의 소멸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의 소멸과 관련된 보상금은 양도소득 과세(Imposition des plus et moins-values professionnelles) 제도에 따라 과세한다.

---

982) 「민법」 제1985조. (원문) L'obligation qui résulte d'un prêt en argent n'est toujours que de la somme énoncée au contrat. S'il y a eu augmentation ou diminution d'espèces avant l'époque du paiement, le débiteur doit rendre la somme prêtée, et ne doit rendre que cette somme dans les espèces ayant cours au moment du paiement.

983)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상각도 금지된다.

984) CGI, 제38 bis A조. 반면, 2001년 1월 1일 후 「조세일반법」 제38 bis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회사나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외화평가 차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985) CGI, 제125 A조. (원문) Les personnes physiques fiscalement domiciliées en France (중략) sont assujetties à un prélèvement lorsque la personne qui assure le paiement de ces revenus est établie en France, qu'il s'agisse ou non du débiteur, ce dernier étant établi en France ou hors de France.

한편,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지출에 따른 보상금 수입은 같은 논리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가 경영진의 대표 또는 주요 인물에 대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그들이 사망한 경우 회사가 겪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받은 연도와 다음 4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986]

다) 보조금(subventions)

기업이 받는 모든 보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해당 보조금이 추후 상환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정지 조건부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실현되는 회계연도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반대로, 해지 조건부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업이 운영보조금(les subvention d'exploitation)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는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영업 이익의 부족 또는 특정 영업비용의 막대함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이 부채를 탕감받았거나 또는 받을 채권(créances)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기업이 장비 보조금(les subventions d'équipement)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받기로 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는 해당 기업이 보조금으로 고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화(immobilisations)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세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반면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비 보조금은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987]

해당 장비 보조금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연수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10만유로 상당의 장비 보조금을 받아 내용연수 5년의 장비를 구입한 경우, 2020년도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10만유로이고

986) CGI, 제38 quarter조.

987) CGI, 제42조 제7항. Les subventions d'équipement accordées à une entreprise par l'Union européenne, l'Etat,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ou tout autre organisme public à raison de la création ou de l'acquisition d'immobilisations déterminées ne sont pas comprises, sur option de l'entreprise, dans les résultats de l'exercice en cours à la date de leur attribution ; dans ce cas, elles sont imposables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au présent article.

동시에 2020년도에 감가강각비로 계상하는 금액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마다 20,000유로를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라) 세금 환급금(dégrèvements d'impôt)

기업이 부담한 세금이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이라면, 이후 해당 세금이 환급되었을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세금이 환급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세를 환급받았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다.

3) 예외적인 소득

예외적인 소득에는 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한 이익과 재난을 당한 기업이 받는 기부금이 있다. 이러한 기부금 중 「보험법(code de l'insurance)」 제 L.125-1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해에 이어서 닥친 재해를 입거나 재정부 장관이 해당 법령에 따라 재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받으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988]하여 산출한다.[989]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필요경비 산입 항목은 ⅰ) 일반관리비(les frais généraux) ⅱ) 감가상각비(amortissements) ⅲ) 가치하락에 따른 평가손실(dépréciations) 및 ⅳ) 준비금(provisions)이 있다.

1) 일반관리비

「조세일반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일반관리비는 ⅰ) 비용과 자산의 구분 ⅱ) 통제성(contrôle) ⅲ) 다양성(variété)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가) 비용과 자산의 구분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자산처리 여부는 해당 비용이 지출한 연도에 모두 세법상 필요경비

988) CGI, 제39조 제1항.
989) CGI, 제38조.

로 공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해당 비용이 일반적인 경비(frais généraux)인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고정자산(immobilisations)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조세일반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념상 기업의 활동에 일정 기간 지속해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 적어도 1년 이상을 의미한다.[990]

국사원(conseil d'Etat)의 판례를 보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고정자산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눈에 띄게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지출은 고정자산에 더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991]

이 경우 해당 비용이 유지보수(entretien)인지, 수리비용(réparation)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자산의 요소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들이다. 이 지출은 즉시 공제할 수 있다. 그들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한편, 수리비용이 오래된 자산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 해당 비용의 지출은 고정자산의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고정자산의 유효 수명을 눈에 띄게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년간의 대형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처리를 하거나 대수선 충당금(provision pour grosses réparations)[992]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개보수, 시설확대, 시설 보강 등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비용이 있으면 이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지출한 연도의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무형 고정자산(예: 소프트웨어)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이 500유로 미만 (세금 제외)인 경우 일반경비로 분류하여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993]

나) 통제성

개인기업의 경우 지출된 비용이 회사 자체의 이익보다는 경영진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순자산의 감소(비용 지출)는 기업에 대한 어떤 보상(수입 창출)도 수반하지 않는다.

990) 그러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광고 필름의 경우 12월 이상 지속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작아 제작비용은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경비로 구분하여 해당 경비를 지출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991) CE, n° 312058, 2009. 5. 7. 판결.
992) 수선충당금 등이 좋은 예이다.
993) 그러나 해당 재화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이 금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일반법」에서는 일반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ⅰ) 실질적인 조건(les conditions de fond)과 ⅱ) 정형화된 조건(les conditions de forme)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실질적인 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된 금액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쓰였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ⅰ) 법적 제한(limites legales)과 ⅱ)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limites jurisprudentielles)이 있다.

(가) 법적 제한

「조세일반법」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하지 않다고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994]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상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즉, 회사가 경영자를 위해 지출한 아래 비용은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든 보조금 또는 비용 환급 형태로 주든, 그 지급방식에 상관없이 일단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표 Ⅱ-3〉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

• 사냥 및 낚시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비용(단, 이들이 사업자로서 행한 경우는 제외)
• 여가용 주택의 취득 및 유지 비용(단, 역사적 유적인 거주지를 구입하여 임대 또는 유지 관리하는 경우, 역사적 또는 공인된 기념물의 목록에 등록되어 회사의 본사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생산시설의 필수 부분을 형성하고 고객의 수용을 위해 제공되는 거주지 등은 제외)
•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 돛이나 엔진으로 가는 요트 또는 유람선의 취득 및 유지하는 비용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994) CGI, 제39조 제4항: 4°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53, les impôts à la charge de l'entreprise, mis en recouvrement au cours de l'exercice, à l'exception des impôts prélevés par un Etat ou territoire conformément aux stipulations d'une convention fiscale d'élimination des doubles impositions en matière d'impôt sur les revenus conclue par cet Etat ou territoire avec la France, des taxes prévues aux articles 231 ter, 235 ter X, 235 ter ZE bis et 990 G et, pour les rappels de taxe sur la valeur ajoutée afférents à des opérations au titre desquelles la taxe due peut être totalement ou partiellement déduite par le redevable lui-même, du montant de la taxe déductible.

〈표 Ⅱ-4〉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차량 취득 또는 임차연도	필요경비 산입 상한액	
	18,300유로	9,900유로
2019	Km당 이산화탄소 60g에서 155g 이하 배출	Km당 이산화탄소 156g 이상 배출
2020	Km당 이산화탄소 60g에서 135g 이하 배출	Km당 이산화탄소 136g 이상 배출
2021	Km당 이산화탄소 60g에서 130g 이하 배출	Km당 이산화탄소 131g 이상 배출

자료 :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한편, 「조세일반법」에서는 회사가 계상한 필요경비가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위와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는 이유는 해당 비용이 본질에서 호화롭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995]

따라서, 해당 비용이 「조세일반법」 제39-4조의 범위에 열거하고 있지만, 사업상 필요한 것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구급대원, 운전학원 또는 택시 운전사에 의해 사용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상은 제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영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하면 사치스러운 지출도 사업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사원은 전문 사무소로 개조된 요트의 유지보수[996] 및 사냥 비용 등의 공제[997]를 인정했다.

한편,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으로 쾌락 또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산시설의 필수 부분이며 고객의 접대를 제공하는 거주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사원 판례상의 제한 (Les limites jurisprudentielles)

국사원의 판례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조건을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경영행위와 관련된 비용 및 벌금을 들고 있다.

비정상적인 경영행위에 대한 비용의 일부는 필요경비 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 주된 내용은 ⅰ) 직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비용 ⅱ) 정당하지 않은 이윤 포기 ⅲ)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위험을 명백히 초과

995) CGI, 제39조 제4항.
996) CE, n° 33132, 1985. 7. 26.
997) CE, n° 4233, 1978. 11. 8.

한 행위[998] ⅳ) 기업을 해치는 직원의 횡령[999]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사원은 최근 '매우 과도한 위험'이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2016년부터 국사원은 "원칙적으로 세무 당국은 회사의 경영진이 선택한 것이, 특히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취한 위험의 정도가 적절한가를 결정하지 않으나, 관리자의 고의적인 행동이나 명백한 실패로 인해 횡령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르다."[1000]고 결정하였다.

비정상적인 경영행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은 「조세일반법」 제38조[1001]와 제39조[1002]에 근거한다.

국사원은 "「조세일반법」 제38조와 제209조가 결합된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로 과세되는 이익은 회사가 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opérations,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며, 그들의 목적이나 방법상, 일반적인 상업적 관리에 이질적인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조세일반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에 이질적인 이유로 실현하게 되어 있는 이익을 포기한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를 의미하며, 제39조는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의지가 없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세일반법」 제38조에 따르면 "… 과세소득은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운영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순이익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회사가 수행하지 않은 거래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세당국에 제공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둘째, 「조세일반법」 제39조는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창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은 회사의 이익 또는 비용의 정상적인 성격임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

998) TA Canne, n° 941740, 1996. 10. 22.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현금 관리를 위해 회사가 선택한 선택의 적절성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금융 투자는 비정상적인 관리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목표를 고려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의 사업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가 자신의 가진 정보를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하게 초과했을 때이다. 이 추론에 따르면, 세금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가입자들에게 세계 시장에 예술품과 귀중품을 투자했으니 연간 최소배당률 25%를 배당한다고 약속하는 회사로부터 457,347.05유로를 주고 '지연된 구매 바우처'를 취득한 것은 회사 재산 투자로 이익을 개선하려고 감당할 만한 위험을 명백하게 초과했다.

999) CE, n° 375801, 2016. 7. 13. (판결 요약) 프랑스 은행에서 딜러의 무능력으로 난리가 났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듯이, 직원에게 통제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여 연속적으로 손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기업가의 의도적인 행동,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조직 및 제어 장치의 구현의 명백한 결함 등이 직간접적으로 이들 횡령이나 손실의 원인이다.

1000) CE, n° 291710, 2008. 6. 30.

1001) CGI, 제38조 제1항. (원문)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3 ter, 40 à 43 bis et 151 sexies, le bénéfice imposable est le bénéfice net, déterminé d'après les résultats d'ensemble des opérations de toute natur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y compris notamment les cessions d'éléments quelconques de l'actif, soit en cours, soit en fin d'exploitation.

1002) CGI, 제29조 제1항. (원문) Le bénéfice net est établi sous déduction de toutes charges, celles-ci comprenan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5, notamment.

아울러 형벌의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 벌금은 기업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것은 직업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형식적인 조건

납세의무자가 회계 장부에 비용을 기장하는 것만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필요충분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빙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ⅰ) 접대비에 대한 명세서 및 ⅱ) 수수료 및 수임료에 대한 자료 제출이 규정이 있다.

(가) 접대비에 대한 명세서 제출

개별 사업자는 손익 계산서 양식 n° 2031에 ⅰ) 접대비 해당 금액이 회계 연도당 3,000유로를 초과하는 회사가 제공한 모든 종류의 선물(단, 연간 및 수혜자당, 세금을 포함하여 69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가의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식당 및 접대비용을 포함한 리셉션 비용은 회계 연도당 6,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한 명세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은 물론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amende)이 부과된다.

(나) 수임료(사례금, 보수)와 수수료의 신고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포함한 중개료, 수수료, 보수 등을 사업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우리나라의 지급 조서 제출과 유사).[1003]

만일 미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1004] 그러나 현 과세기간 및 최근 3년까지 처음으로 위반한 자는 현 과세기간의 연말이 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세무 당국의 첫 번째 요청으로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003) CGI, 제240조 제1항.
1004) CGI, 제1736조.

다) 다양성

위에서 언급한 항목 이외에 조세일반법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인건비(frais de personnel)

(가) 경영자 본인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그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그 지급금액이 과도(excessifs)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기준은 보상금, 수당, 현물 급여, 이익분배 및 기타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체와 종속관계가 아니고 다른 법적 성격(personnalité juridique)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기업의 종업원이 고용주와 종속관계가 아닌 것과는 달리, 경영자가 스스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지급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사회보장제도에 지출한 기여금(cotisations)은 물론 강제적 및 보충적 노후수당제도에 및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제도에 의해 지출된 기여금[1005]도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다.[1006]

반면,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호보험회사(mutuelle)에 지급하는 보충보험(assurance complémentaire)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나) 경영자의 배우자 또는 협력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규칙

「조세일반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인건비 중 경영자의 배우자(conjoint) 또는 경영자의 협력 파트너(partenaire collaborateur)[1007]와 소속 직원(salarié)의 배우자 또는 협력파트너는

1005) 그 대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수당과 받은 연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즉, 연금 불입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를 지급받을 시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006) CGI, 제39조 제1항 제4호. (원문) Par exception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lorsque, en application du huitième alinéa de l'article 1679 quinquies, un redevable réduit le montant du solde de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du montant du dégrèvement attendu du plafonnement de la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due au titre de la même année, le montant de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déductible du bénéfice net est réduit dans les mêmes proportions. Corrélativement, le montant du dégrèvement ainsi déduit ne constitue pas un produit imposable, lorsqu'il est accordé ultérieurement.

1007) 프랑스는 정상적인 결혼제도뿐만 아니라 계약 결혼제도(PACS)를 이용하는 예도 있어서, 후자의 경우 배우자라는 용어 대신 협력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수공업 및 상업 활동을 하는 기업 경영자의 배우자 또는 협력파트너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경영관리센터(centre de gestion agrée)'에서 그들의 세법상 지위(ststut), 즉, '경영인 자격'인지 아니면 '종업원 자격'으로 근무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경영인 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들이 받은 급여는,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와 같은 논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근무함으로써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기여금은 협업이 효과적이거나, 배우자 또는 협력파트너가 다른 직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반대로, 종업원 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경영관리센터(centre de gestion agrée)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1008] 만일 해당 기업이 위 관리 센터에 가입되어 있으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내는 급여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배우자 또는 협력파트너에게 내는 급여 중 연간 17,500유로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기타의 경우

경영자는 배우자나 협력파트너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파트너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들이 실제 업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과도하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009] 그러나 이들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로 간주하여 초과한 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

(2) 세금 및 벌금

(가) 공제 가능한 세금

수익 자체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는 사업 자체와 관련된 세금은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건물이 소득세 납세의무자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산에 계상된 경우, 등록세, 임금에 대한 세금(급여세), 관세 및 비업무용자동차에 대한 차량세 등이 있다.

1008) CGI, 제154-1조 제1항. (원문) Pour la détermination des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et des bénéfices des professions non commerciales, le salaire du conjoint participant effectivement à l'exercice de la profession peut, à la demande du contribuable, être déduit du bénéfice imposable, à la condition que ce salaire ait donné lieu au versement des cotisations prévues pour la sécurité soci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et autres prélèvements sociaux en vigueur. Ce salaire est rattaché, à ce titre, à la catégorie des traitements et salaires visés au V de la présente sous-section.

1009) CE, n° 312058, 2009. 5. 7.

(다) 공제 불가능한 세금 비용 및 벌금

공제 불가능한 세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개인적 성격의 세금 및 회사에 부과된 벌금이 그것이다.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 사업체에서는 소득세, 자본회사에서는 법인세가 그러하며, 법인세에 부수하여 3.3%를 부담하는 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벌금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조세일반법」에 따르면 법적 의무를 위반한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금전적 제재에 따른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1010] 특히 회사에 부과된 제재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보험 분야, 세금의 평가 및 징수와 관련된 규칙 위반 등이 있다.

한편, 문서 또는 신고서 작성의 실패 또는 지연, 비록 선의였다 하더라도 문서나 신고서에서 누락, 부정확성 또는 부적절에 따른 벌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납부 불이행, 부분적인 납부 또는 연체 시 적용되는 제재금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3) 지급이자(les frais financiers)

기업의 부채와 관련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가 아니라 사업주의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우리나라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

(4) 보험료(les frais d′assurance)

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난, 화재, 홍수, 민사 책임, 채무자의 파산 위험 등과 관련된 보험료 등이 있다. 반면, 재난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따라서 지급 여부 및 기한은 무관하다.

위험 보상 기간이 사업 수행 기간(회계연도)과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는 모두 해당 회계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보험료는 위험 보상 전체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10) CGI, 제39조 제2항. (원문) Les sanctions pécuniaires et pénalités de toute nature mises à la charge des contrevenants à des obligations légales ne sont pas admises en déduction des bénéfices soumis à l'impôt.

한편, 회사는 '주요 인물(homme-clé)'[1011]의 사망 또는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할 수는 있으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아니다.

(5) 기부금, 보조금 및 기업 후원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회사 내부 구성원 또는 회사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영행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중 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를 구분하면 ⅰ) 회사직원에 대한 기부금과 보조금 ⅱ) 메세나 기업(mécénat d'entreprise)에 대한 후원금으로 구분한다.[1012]

(가) 회사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가 회사직원에 대해 무상으로 기부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나, 직원의 생일이나 퇴직의 경우 지출하는 소정의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회사직원의 응집력과 경영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시설(installations sportives)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방학캠프 운영비용(colonies de vacances)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제삼자에게 지급한 경우

「조세일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권의 포기는 회사의 '회생계획(plan de sauvegarde ou de redressement)'에 따를 때에 한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1013]

고객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안의 범위(disproportionné par rapport aux intérêts en jeu)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11) 주요 인물이란 기업의 경영진을 의미한다.
1012) 기부금 공제는 후술한다.
1013) CGI, 제39조 제1항 제8호.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스포츠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광고선전비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일정한 한도가 있다. 그 한도는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되, 해당 기업의 외형금액의 5% 이내여야 한다. 광고선전비 중 해당 연도에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은 5년 이내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메세나 기업(mécénat d′entreprise)에 대한 후원금

경제 및 재정부가 규정하는 메세나 기업에서 예술품 등을 사들일 경우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의 40%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014]

이때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이란 ⅰ) 구입하여 국가에 제공하는 목적이 아닐 것(offre d′achat de l′Etat) ⅱ) 구입한 품목을 역사기념물(monument historique)로 구분할 것 ⅲ) 구입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것 ⅳ) 구입 후 10년 동안 박물관(musée)이나 도서관 등에 전시할 것 등이 있다.

사업자는 해당 예술품 취득한 해와 그 뒤 4년 동안 구입가격을 균등하게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1015]

2) 감가상각비

프랑스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감가상각비 계상 방법이 '분리 방법(méthode par composants)'으로 변경되었다. 즉,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여러 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모터와 타이어를 분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ⅰ) 감가상각을 별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ⅱ) 해당 자산을 이용하는 기간 이전에 이미 자산이 교체[1016]가 되어 있어야 한다.[1017]

이를 위해서는 각 구성자산은 취득 때 또는 교체 때 별도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야 한다.

1014) CGI, 제238 bis조 제O항 제A호.
1015) CGI, 제238 bis조 제AB항. 하지만 해당 기업의 매출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016) 즉, 사용 기간에 교체할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기존의 것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17) CGI, annexe Ⅱ, 제15 bis조.

그러나 분리하여 감가상각을 하려면 해당 자산은 적어도 5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가격은 전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원가(prix de revient) 총액의 15% 이상이어야 한다.[1018]

가) 감가상각비 계상 요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ⅰ) 해당 자산이 해당 기업에 속한 자산이어야 하고 ⅱ)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어야 하며 ⅲ)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여야 한다.[1019] 또한 결산조정사항으로 일단 기업에서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신고 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1020]

나)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amortissement linéaire)을 사용하나, 조세정책상 정률법(amortissement dégressif)이나 특별상각(amortissement exceptionnel)도 가능하다. 감가상각 대상자산 금액은 취득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는데, 금융비용은 제외하고 즉시상각을 한다.

(1)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내용연수 산정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사용 목적(usages professionnels)'에 따라 정했고, 산업용 건물은 25년으로 5%, 상업용 건물은 25년부터 50년 사이로 2~4%, 운반용 차량은 4년부터 5년으로 20~25%의 상각률을 적용하였다. 이 결과 실제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기간의 차이가 존재하여, 사용하고 있어도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내용연수를 사업자가 미리 '추정(escompte)'하는 연수로 하도록 개정하였다.[1021] 회계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사용한 날을 달로 나누어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1022]

1018) 과세관청 예규 BOI-BIC-CHG-20-10-10-20141013, § 90.
1019) CE, n° 4718, 1977. 10. 5.
1020) CGI, 제39조 제1항 제2호.
1021) 기업회계기준(plan comptable général) 제214조 제1항 및 제13항.

〈표 Ⅱ-5〉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

(단위: %)

감가상각 기간	3년	4년	5년	N년
감가상각률	(1/3) × 100	(1/4) × 100	(1/5) × 100	(1/n) × 100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2) 정률법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비율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 자산 금액이 많은 초기 연도에 비교적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은 아래 표와 같다.[1023]

〈표 Ⅱ-6〉 정률법에 따른 배수

(단위: 배)

감가상각 기간	3~4년	5~6년	6년 초과
감가상각률	1.75	2.25	2.75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만일 내용연수가 10년인 자산을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각 연도의 감가상각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7〉 정률법에 따른 상각률

내용 연수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	정률법에 따른 배수	정율법에 따른 상각률
3	33.33%	1.75	58.32%
4	25%	1.75	43.75%
5	20%	2.25	45%
6	16.67%	2.25	37.51%
8	12.5%	2.75	34.37%
9	11.1%	2.75	30.52%
10	10%	2.75	27.5%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1022) 기업회계기준 (plan comptable général) 제214조 제11항.

1023) CGI, 제39A조. (원문) L'amortissement des biens d'équipement, (중간 생략)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modalités de l'amortissement dégressif. Les taux d'amortissement dégressif sont obtenus en multipliant les taux d'amortissement linéaire par un coefficient fixé à : a. 1,25 lorsque la durée normale d'utilisation est de trois ou quatre ans ; b. 75 lorsque cette durée normale est de cinq ou six ans ; c. 2,25 lorsque cette durée normale est supérieure à six ans.

(3) 특별상각

사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투자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1024]

반면, 사치성 재화(biens somptuaires)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계상이 제한된다.

3) 평가손실

프랑스는 2005년 1월 1일부터 IFRS 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 시행 중이던 손실 및 비용 준비금(provisions pour pertes et charges), 규제성 준비금(provisions réglementées) 및 평가성 충당금(provisions pour dépreciation)이 평가손실(dépréciations)로 대체되어 시행 중이다.[1025]

재고자산평가손실(dépréciations des stocks)은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액이 구매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1026] 이 경우 평가손실 계산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1027]

채권평가손실(dépréciations des créances)은 제삼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 계상 방법은, 우리나라 대손충당금 계상 방법과 유사하게,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주식평가손실(dépréciations des titres)은 사업자가 보유하는 지분(titres de participation), 상장법인 주식(titres de placement cotés)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titres de placement non-cotés)을 대상으로 평가손실을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지분의 경우에는 당초 구매금액(valeur d′origine)에서 법령이 정하는 수익가치(valeur économique d′usage)를 차감하고,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애초 구매금액에서 최종월 거래평균금액(cours boursier moyen du dernier mois)을 차감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애초 구매금액에서 법령이 정하는 매매추산가액(valeur probable de négociation)을 차감하여 평가손실액을 산정한다.

1024) CGI, 제39조 제AI항.
1025) CGI, 제38조 내지 제39조. 그러나 「조세일반법」에서는 평가손실 대신 평가성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CGI, ann Ⅲ, 제38 sexies조).
1026) CGI, 제39조 제1항 제5호 제11목.
1027) CGI, annexe Ⅲ, 제38조.

4) 충당금

충당금(provisions)이란 아직 지출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연도의 부담이 될 금액에 대한 준비로서 추정한 금액을 불특정 형태의 자산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1028] 그러나 회계상 모든 충당금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 요건(conditions de fond)과 형식요건(conditions de forme)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1029]

가) 법령 요건

충당금은 ⅰ) 세무회계상 공제가 가능한 손실 (pertes)이나 비용 (charges)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ⅱ) 위 손실이나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상관이 있어야 하며 이전 과세연도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지 않고 ⅲ) 설정 시 손실이나 비용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1030]

나) 형식요건

충당금 설정액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1031] 아울러 세무신고 시 서식 n° 2056 N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1032]

다) 환입

충당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계하며, 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나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만일 충당금 설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환입하든지 아니면 다음 과세 연도 충당금 설정에서 반영한다.[1033]

1028) CGI, 제39조 제1항 제5호. (원문) Les provisions constituées en vue de faire face à des pertes ou charges nettement précisées et que des événements en cours rendent probables, à condition qu'elles aient été effectivement constatées dans les écritures de l'exercice.(이하 생략).

1029) 주된 충당금 설정 과목을 보면 인건비 충당금(provisions pour frais de personnel), 세금충당금(provisions pour impôts), 보증충당금(provisions pour garantie), 건설충당금(provisions pour travaux), 가격급등충당금(provisions pour hausse des prix, CGI, 제39조 제1항 제5호), 외국투자충당금(provisions pour implantation à l′étranger, CGI, 제39 octies조 제A항), 투자충당금(provisions pour investissement, CGI, 제39 octies조 제E항) 등이 있다.

1030) PCG, 제112조 제2항, 제323조 제7항 및 제323조 제8항.

1031)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하면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1032) CGI, 제1763조.

바.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산업 및 상업소득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회계 측면에서 우선 기업회계에서 시작하여 세무조정 즉, 총수입금액 산입과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과 불산입 과정을 거쳐서 산출한다(이는 앞 제5절에서 설명하였다).

제도적인 면에서 '경영관리센터(centre de gestion agrée)'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세일반법」에서 정한 특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외형금액에 따라 규정된 사업자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1) 경영관리센터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가) 경영관리센터 개요

경영관리센터는 1973년 12월 27일 관련 「무역 및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과 1974년 12월 24일 관련 「재정법률」에 따라 창설되었고, 중앙경영관리소 가입 회원에게 경영 및 세금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조합 형태로, 공인회계사(experts-comptables),[1034] 상공회의소 자문가(chambres consulaires) 기타 전문조직(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등 자연인과 법인에 의해 설립된다.[1035] 위 조합은 산업 및 상업 분야, 수공업 분야 및 농업 분야의 사업자를 중점적인 가입대상으로 하며 그들에게 경영, 기술, 교육 분야의 관리 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6년 이후부터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및 재정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관리센터는 공인경영센터(Fédération des centres de gestion agréés: FCGA)의 회원이 된다. 2018년 현재 FCGA는 100여 개의 중앙경영관리조합경영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이들에 속한 회원은 30만개 사업장에 이른다.[1036]

1033) CGI, 제38-4조 제bis항. 회계상 환입법과 보충법을 의미한다.
1034) 2009년 이후부터는 공인회계사 강제규정이 삭제되었다.
1035) 우리나라의 납세조합 기능과 유사하나 조합에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
1036) https://fr.wikipedia.org/wiki/Centre_de_gestion_agr%C3%A9%C3%A9_(France) (2020년 1월 30일 접속).

나) 세금혜택

위 경영관리센터에 가입한 자는 ⅰ) 기업 경영자의 배우자 또는 협력파트너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ⅱ) 간편 신고 대상자(régime réel d′imposition)로 분류하며[1037] ⅲ) 회계처리 비용 및 조합가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1038] ⅳ) 세무신고 때 과소신고 등의 경우 벌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한다.[1039].

2)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납세의무 유형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

「조세일반법」상 산업 및 상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의무자는 '정상 사업자(régime du bénéfice réel)', '간편사업자(régime du réel simplifié)' 및 '소규모사업자(régime des micro-entreprises)'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가) 정상사업자

(1) 적용대상자

정상사업자는 판매업이나 임대사업자의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789,000유로, 기타업종은 238,000유로를 초과(세금 제외)하는 자와 간편사업자[1040] 및 소규모사업자 중 정상사업자 규정을 적용받기 원하는 자로 구성한다.

(2)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정상사업자는 우리나라 소득세 신고 때 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처럼, 실제 장부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한다.

이들은 서식 n° 2031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며 관련 서류[1041]를 첨부하고 납세의무자의 서명을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하는 회계 분야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충당금 조정명세서, 자산 및 부채명세서가 있다. 세무 분야의 서류에는

1037) 2005년도까지는 위 조합의 가입자들은 과세대상 소득의 20%를 공제받았다.
1038) CGI, 제199 quarter조 제B항.
1039) CGI, 제1755조.
1040) 이 경우 간편사업자는 정상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한 연도의 2월 1일 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선택 적용은 2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041) 이를 'liasse fiscale'이라고 부른다.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명세서, 결손금 및 충당금 미공제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도소득명세서 등이 있다.

정상사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위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10%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추계결정(évalué d′office)을 할 수 있다.

나) 간편사업자

(1) 적용대상자

간편사업자는 판매업이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170,000유로를 초과하면서 789,000유로 이하인 경우, 기타업종은 70,000유로를 초과하면서 238,000유로 이하인 자나 소규모사업자 중 간편사업자 규정을 적용받기 원하는 자로 구성한다.[1042]

(2)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정상사업자와 유사하나 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상은 현금주의 방식에 따를 수 있고 ⅱ) 재고자산의 평가는 추계방식(forfaitaire)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ⅲ) 일반관리비 중 외형금액의 1%와 건당 150유로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경비(예: 팁, 선물비, 접대비 등)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ⅳ) 대차대조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회계 장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super-simplifiée) 기준에 의한다.

다) 소규모사업자

(1) 적용대상자

위에서 언급한 정상사업자와 간편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포함된다.[1043] 그러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1042) CGI, 제302 septies조 제A bis항.
1043) CGI, 제50조 제0항.

(2)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소규모사업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복식부기 장부가 아니라 단식부기에 따른 일일장부(livre-journal)에서 산출하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과세관청에 의해 결정한다. 판매업이나 숙소 제공업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71%를, 기타업종은 5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1044]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Ⅱ-8〉 납세의무자 유형

구분		정상사업자	간편사업자	소규모사업자
해당 기업		소득세 적용을 받는 BIC 소득이 있는 자, 선택에 따라 적용받기를 원하는 자	소득세 적용을 받는 BIC 소득이 있는 자, 선택에 따라 적용받기를 원하는 자	개인기업
외형 금액	판매업 · 숙소제공업	789,000유로 초과	170,000유로 초과 789,000유로 이하	170,000유로 이하
	기타업	238,000유로 초과	70,000유로 초과 238,000유로 이하	70,000유로 이하
의무 사항	회계 측면	기업회계기준 및 조세일반법의 규정에 따른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간편장부	일일장부
	세무 측면	n° 2031 양식 및 첨부 서류를 늦어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과세관청에서 만든 간편 양식에 따라 매연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함	과세관청에서 과세소득을 결정함. 판매업은 외형금액의 71%를 공제함
선택 가능 여부		—	정상사업자	정상사업자/간편사업자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1044) 최소공제액은 305유로이다.

3. 농업소득

가. 개요

농업소득(bénéfices de l′exploitation agricole: BA)은 농업, 축산, 임업 등의 경영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1045] 과세물건으로는 농업경영과 관련한 생산물[1046] 및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토지 등의 임대소득[1047]을 포함한다.

농업 활동은 채소 또는 동물의 생산과정(cycle de production)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버섯 농장 및 양봉, 가금류, 생선, 굴이나 홍합 농장의 제품, 농산물 또는 부산물을 통한 건식 또는 습식 동·식물 판매 수입과 주로 농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부산물로 생산한 에너지로 인한 수입을 포함한다.

반면, 전통적인 어업 활동에 따른 어부(artisan pêcheur)의 수산물 수입은 산업 및 상업소득(BIC)으로 과세한다.[1048]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소득이나 토지의 소작료는 부동산 임대소득(RF)으로 과세한다.

한편, 농민들은 자신들의 상업 및 비상업 활동의 수입이 농업소득으로 분류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ⅰ) 상업 및 비상업 활동이 농업소득과 비교해 부수적(accessoire)이어야 하고 ⅱ) 농업소득이 정상사업자(régime réel d′imposition)가 수행하여야 하며 ⅲ) 과세연도 시작일 이전 3년 동안, 연간 상업 및 비상업 부수입 소득은 평균적으로 농업 활동 수입의 50%를 넘지 않거나 1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049]

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농업소득을 얻은 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산업 및 상업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사업자(régime du bénéfice réel)', '간편사업자(régime du réel simplifié)' 및 '소규모사업자(régime des micro-entreprises)'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045) CGI, 제63조.
1046) CGI, 제63조.
1047) CGI, 제65조.
1048) CE, n° 119300, 1996. 12. 18.
1049) CGI, 제75조. 이 조항은 2017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 소규모사업자

가) 적용대상

이 제도는 연속하는 3년간 농업소득 관련 평균 수입금액이 82,800유로(세금 제외) 이하인 자에게 적용된다.[1050] 그러나 고정자산 양도 관련 수입금액,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금, 보조금 및 장비 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농업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편사업자 또는 정상사업자 제도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1051] 선택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연도의 2월 1일 이전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현금회계방식을 통해 산출하며, 과세소득은 ⅰ) 해당연도의 수입금액과 ⅱ) 이전 2개 연도의 수입금액 중 87%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3(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공제하는 금액은 305유로 이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자의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산업 및 상업소득의 결정 방법에 따른다.[1052]

이 제도를 적용받는 농업사업자는 ⅰ) 수입과 지출 내용이 포함된 일일장부를 기록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ⅱ)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과 앞선 2년간의 수입금액을 관련 신고서(양식 n° 2042-C)에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간편사업자

가) 적용대상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소규모사업자의 계산방식으로 지난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세금을 제외하고, 82,800유로를 초과하고 352,000유로를 넘지 않은 농업사업자이다.

1050) CGI, 제69조 내지 제64 bis조.
1051)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시행.
1052) CGI, 제38-1조.

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간편사업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산업 및 상업소득(BIC)의 간편사업자와 같다.

3) 정상사업자

가) 적용대상

이 제도를 적용받는 농업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나 간편사업자를 제외한 자이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52,000유로를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소규모사업자나 간편사업자 중 이 제도의 적용받기를 선택한 자도 포함한다.

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정상사업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산업 및 상업소득(BIC)의 정상사업자의 산출 방법과 같다. 한편, 농업소득자가 농업경영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은 그 특성(par nature)에 따라 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가. 개요

「조세일반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catégorie)[1053]에는 봉급, 급여,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종신 주택연금(rentes viagères) 등이 있다.[1054] 이 소득의 신고자 수는 프랑스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4분의 3 정도가 된다.

한편, 근로소득금액 산출과정에서 근로수입금액의 10%(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 또는 실제 발생비용을 근로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식 중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053) 프랑스 근로소득 규정은, 우리나라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근로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소득과 제삼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종신 주택연금(rentes viagères)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이라고 표현하여야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054) CGI, 제79조 전반절 : Les traitements, indemnités, émoluments, salaire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concourent à la formation du revenu global servant de base à l'impôt sur le revenu.

나. 근로소득

1)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고용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공연 예술가, 언론인, 영업 담당자, 수습생, 임시 파견 회사의 직원, 아동 보호 및 직업 훈련 연수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가 사망하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계약에 따라 임금을 계속 지출하는 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상업소득(BNC)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1055]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비상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근로소득금액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활동의 결과로 받은 모든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주요 보수(rémunération principale), 해당 부수입(accessoires) 및 활동 종료 시 받는 금액도 마찬가지이다. 스톡옵션(options souscription d′actions) 역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요 보수의 명칭은 임금, 급여, 보수, 급료, 봉급 등이 있고, 이들의 지급 형태는 현금 보상 또는 현물 보수 등이 있으며, 계산 방법으로는 고정 금액, 이익 분배나 수수료 등의 형식이 있다. 지불방법은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거나 제삼자가 지급할 수도 있다.

주요 보수에 수반(accessoires)하여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에는 성과 보너스, 연차 보너스, 출석 보너스, 위험수당, 결혼 수당, 임대료 또는 난방과 같은 개인 비용 보상 등이 있다.

3) 비과세 근로소득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1055) CGI, 제92조 제2항 제1호.

〈표 Ⅱ-9〉 비과세 근로소득 내용

내용	근거 규정
• 산업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휴업 수당 중 50% 상당액	CGI, 제81조 제8항
• 고용주 또는 직장협의회가 직원에게 제공한 선물(단, 166유로 이하. 그러나 성탄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166유로 및 자녀 1인당 166유로 이하의 금액)	행정지침(BOI-RSA-CHAMP-20-30-10-10-20170217, 제60조
• 온라인 전자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보기기를 고용주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단, 전액 감가상각되었고 취득 시 원가가 2,000유로 이하)	CGI, 제81조 제31 bis항
• 고용수당(allocations pour frais d'emploi) 단, 근로소득 계산 때 근로자가 근로 소득공제액 방식(총급여액의 10%)을 택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실제 비용방식을 택한 경우는 제외	CGI, 제81조 제1항
• 2001년의 「사회보장금융법」 제53조에 따른 석면 피해자 보상 기금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면 피해자 또는 그 부양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CGI, 제81조 제33 bis항
• 과세연도 1월 1일 전에 학생(25세 미만)에게 중등 또는 대학 이상의 학업 중에, 또는 방학 동안 이루어진 활동을 보상하는, 최저생계비(SMIC)의 3배 이하로 지급된 급여	CGI, 제81조 제36항
• 직장 공제회(comités d' enterprise) 또는 직장 공제회가 없는 경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	CGI, 제81조 제37항
• 연간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수습생에게 지급되는 임금.[1056] 그리고 인턴십 또는 훈련기간 동안 수습생에게 최저생계비(SMIC)의 3배 이하로 지급된 상여금(gratification)[1057]	CGI, 제81 bis조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4)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근로소득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필요경비는 순차적으로 ⅰ) 사회보장기여금(cotisations sociales)을 공제하고 ⅱ) 특정 대출에 따른 지급이자를 공제한 뒤 ⅲ) 표준 공제액이나 실제 발생경비 중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필요경비 공제액을 산출한다.[1058]

1056) 2018년도의 경우 연간 최저 임금은 17,982유로이다.
1057) 2018년도의 경우 해당 금액은 4,495유로이다.
105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1권)』, 2019, pp. 368~373 참조.

가) 사회보장기여금

퇴직 또는 법령에 강제된 보험에 대한 기여금 지출액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개인의 필요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나) 특정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근로소득자가 산업, 상업, 수공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1059]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그러나 총급여액의 50%를 초과하거나 연간 15,25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주식은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총근로소득금액에 추가한다.

다) 표준 공제

근로소득자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보장기여금과 특정 대출에 따른 지급이자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급여액 중 10%를 '표준 공제(déduction forfaitaire)'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1060] 다만, 기자, 편집자, 사진가, 신문 감독 및 연극 및 음악 비평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들 보수 중 7,650유로를 한도로 비과세되는 고용수당으로 간주한다.[1061]

라) 실제 발생 비용 공제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위 다)의 표준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는 실제 발생비용(frais professionnels)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히 직업상의 여행 비용, 납세자의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출퇴근 비용, 추가 식사 비용, 특정 의류 비용, 직업상의 문서 비용 또는 작업용 도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을 공제하는 유일한 기본 조건은 이러한 비용이 직업 수행에 필요하냐는 것이다.[1062]

1059) CGI, 제83조 제2항 제quatre호.
1060) 2017년의 경우, 표준 공제액의 공제 한도는 최소 430유로 이상 최대 12,305유로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소 947유로이다.
1061) CGI, 제81조 제1항.
1062) CGI, 제83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계산서(factures), 식당 전표(notes de restaurant), 호텔 전표(notes d' hôtel), 통행영수증(tickets de péage), 주차영수증((tickets de parking) 등이 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고용수당은 위 (다)의 경우와 같이 총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반대로 포함한다.

다. 연금소득

1) 과세원칙

「조세일반법」상 연금 및 주택 종신 연금(rentes viagères)[1063] 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연금 및 종신 주택연금 수령액의 10%는 일단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며, 2017년 기준으로 가족단위(foyer fiscal)당 최소 383유로 최대 3,752유로의 범위 안에서 공제한다.

프랑스 본토(France métropolitaine)에 등록된 또는 거주하는 채무자가 해외 영토(territoires d'outre-mer)에 재정 거주지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 및 종신 연금을 지급하면 지급금액의 40%를 먼저 공제하고 그 뒤 1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혼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부양료도 연금과 같은 과세제도를 따른다(받는 사람으로서는 연금과 유사한 금품이기 때문으로 추정한다).[1064]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prestation compensatoire)은 그 지급기간이 12개월 이상 8년 이하면 해당 지급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이 기간은 재판을 통해 판사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예외

성인 자녀(enfants majeurs) 또는 보호기관에 있는 부모가 부양료(pension alimentaire)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예외를 두고 있다.[1065] 2017년 기준으로 1인

1063)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과 유사하다.
1064) CGI, 제80 quater조.
1065) CGI, 제80 septies조. (원문) Les pensions alimentaires versées à un enfant majeur sont soumises à l'impôt sur le revenu dans les limites admises pour leur déduction. Les pensions alimentaires versées

당 5,795유로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조세일반법」 제80조 7항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는 '실제 공제금액 한도 내'가 아니라 '공제 허용 한도 내'에 소득세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1066]

한편, 과세 관행상 일시적이든 아니든 양로원에 들어가 있는 부모님이 자식들로부터 부양료를 받으면 비과세하는 관용(tolérance)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ⅰ) 부모님 수입 및 재산(ressources)은 매우 낮아야 하고 ⅱ) 부모님은 일시적으로 또는 영속적으로 양로원에 거주하여야 하며 ⅲ) 양로원 비용은 자녀나 손자 손녀가 직접 내야 한다.[1067]

라. 퇴직소득

고용계약 해지 시 보상에 대한 세금 제도는 세무 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수많은 분쟁을 일으켰다. 2000년 「재정법」은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수당에 대한 세금 처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6년 「사회보장금융법」은 IR로부터 이러한 수당이 면제되는 한도를 실질적으로 낮췄다.

1) 고용계약 해지

고용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매겨진다.[1068] 계약 종료가 해고, 퇴직 또는 사임의 결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ⅰ) 불규칙하거나 불공정한 해고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 ⅱ) 차별적인 이유로 해고 때 지급되는 보상 ⅲ) 자발적 퇴직 보상금을 포함, 고용 보호 방법의 하나로 지급되는 해고 또는 자발적 퇴직의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고용 보호 계획의 틀 밖에서 내는 해고 보상금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

pour un enfant mineur résidant en alternance chez ses parents et pris en compte pour la détermination du quotient familial de chacun d'eux ne sont pas imposables entre les mains de celui qui les reçoit (1).

1066) 위 조와 같음.

1067) BOI-RSA-PENS-10-3--20120912 제80조.

1068) CGI, 제80 duodecies조 제1항. (원문) Toute indemnité versée à l'occasion de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constitue une rémunération imposabl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suivantes. Ne constituent pas une rémunération imposable :1° Les indemnités mentionnées aux articles L. 1235-1, L. 1235-2, L. 1235-3, L. 1235-3-1, L. 1235-11 à L. 1235-13, au 7° de l'article L. 1237-18-2 et au 5° de l'article L. 1237-19-1 du code du travail ainsi que celles versées dans le cadre des mesures prévues au 7° du même article L. 1237-19-1 ; (이하 생략).

첫째, 고용계약 종료 전년도 1년 동안 직원이 받은 연간 총보수의 두 배까지이나 이보다 많을 경우 해당 보상 금액의 50%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2018년도에 지급된 보상의 경우 238,392유로를 한도로 한다.

둘째, 직종 내에서 또는 직종 간에 합의된 부문 단체협약의 금액은 비과세하지만, 만약에 이런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법령에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2018년에 지급된 보상액에 대해 238,392유로를 한도로 한다.

2) 강제해고

조세일반법상 기업 임원, 이사 및 기타 사람에게 직무 종료 때 지급되는 모든 보상은 과세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강제해고, 특히 파면의 경우 연간 사회보장 한도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이 매겨진다.[1069]

마. 원천징수

프랑스 소득세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 과세제도(foyer fiscal)를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인적공제나 물적공제를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단위의 각 가족 수(parts) 계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part의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두고 상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1070]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9년도에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의 중간예납제도처럼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의 3분의 1을 해당 연도에 매 4개월마다 납부하고 해당 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2017년도 세법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2017년 「재정법률(loi de finance)」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기도 하였으나,[1071] 2017년 9월 22일 법령에 따라 그 실시 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1072]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 계산 규칙 및 납세자가 N년도의 소득 신고서를 N+1년도

1069) CGI, 제80 duodecies조 제2항.
1070)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프랑스 편-』, 2019, p. 388 참조.
1071) CGI, 제204 A조.
1072) 관련 법령 n° 2017-1390, 2017. 9. 22.

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원천징수 적용 분야 이외의 소득, 총소득에 따른 적자 및 비용, 그리고 소득세 감면 및 세액 공제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신고서 접수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 보고서 검토 결과 세금을 초과해서 낸 것으로 인정되면 초과 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며, 반대의 경우, 내야 할 소득세 잔액을 징수한다.

1) 적용 범위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107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임금, 양육비나 부양비를 제외한 연금, 노인 연금, 생명 연금, BIC, BA, BNC 및 RF 등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하는 소득이 해당한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임금, 연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노인연금 등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하는 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급여소득과 퇴직연금을 내는 사람은 원천 공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지불자는(débiteurs,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사회 명목 신고 제도(déclaration sociale nominative)에 따라 세무당국과 정보 교환을 진행한다.

3) 원천징수 제외소득

동산 자본소득과 부동산 가치 상승(자본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소득은 실현될 때 즉시 납부대상이다. 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가치 상승)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도의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지급된 배상금, 주식의 무상 배분이나 우리사주에 관련된 특혜적인 조건에 따른 특정 이익은 원천징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배제 대상이 되는 소득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1074]

1073) CGI, 제204조 제 I 항.
1074) CGI, 제204조 제 I 항.

4) 적용세율

적용세율은 과세관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프랑스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특성상 가족단위 구성원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세율이 적용된다.[1075]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가족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 상황이 발생한 알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다.[1076]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1077]

〈표 Ⅱ-10〉 근로소득세 간이세율표

(단위: 유로)

원천징수세율	매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본토 납세자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트니크 납세자	귀얀 및 마요트 납세자
0%	1,367유로 이하	1,568유로까지	1,679유로까지
0.5%	1,368 ~ 1,419	1,569 ~ 1,662	1,680 ~ 1,785
1.5%	1,420 ~ 1,510	1,663 ~ 1,789	1,786 ~ 1,923
2.5%	1,511 ~ 1,612	1,790 ~ 1,897	1,924 ~ 2,111
3.5%	1,614 ~ 1,726	1,898 ~ 2,062	2,112 ~ 2,340
4.5%	1,724 ~ 1,815	2,063 ~ 2,315	2,341 ~ 2,579
6%	1,816 ~ 1,936	2,316 ~ 2,712	2,580 ~ 2,988
7.5%	1,937 ~ 2,511	2,713 ~ 3,094	2,989 ~ 3,553
9%	2,512 ~ 2,725	3,095 ~ 3,601	3,554 ~ 4,379
10.5%	2,726 ~ 2,988	3,602 ~ 4,307	4,380 ~ 5,706
12%	2,989 ~ 3,363	4,308 ~ 5,586	5,707 ~ 7,063
14%	3,364 ~ 3,925	5,587 ~ 7,099	7,064 ~ 7,708
16%	3,926 ~ 4,706	7,100 ~ 7,813	7,709 ~ 8,483
18%	4.707 ~ 5,888	7,814 ~ 8,686	8,484 ~ 9,431
20%	5,889 ~ 7,581	8,687 ~ 10,374	9,432 ~ 11,075
24%	7,582 ~ 10,292	10,375 ~ 13,140	11,076 ~ 13,960
28%	10,293 ~ 14,417	13,141 ~ 17,374	13,961 ~ 18,293
33%	14,418 ~ 22,042	17,375 ~ 26,518	18,294 ~ 27,922
38%	22,043 ~ 46,500	26,519 ~ 55985	27,923 ~ 58,947
43%	46,501유로 이상	55,986유로 이상	58,948유로 이상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1075) 이 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8년도에 미리 낸 중간예납분과의 복잡한 상계과정이 있었으나, 본 보고서가 2020년도에 발간될 예정이므로 이 과정은 작성을 생략하였다.

1076) CGI, 제204조 제D항.

1077) CGI, 제204조 제H항 제Ⅳ호.

5. 비상업소득

가. 개요

비상업소득(Bénéfices non Commerciaux: BNC)은 개인 또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이 행한 상업적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자유직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1078] 이 소득은 자유직업소득 이외에 자유직업소득에 부수되는 소득 및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포함한다.

1) 일반적인 경우

프랑스의 BNC는 우리나라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및 자유직업소득과 그 성격과 성질이 유사하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변호사, 중개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입금액은 비상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1079] 지적 또는 예술적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은 비상업소득의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화가, 조각가 등이 특히 그렇다.[1080]

예외적으로, 일반 보험 대리인과 그 하위 대리인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다.[1081] 법령이 정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보험대리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제3자가 지급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보험대리인은 중개 및 직업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타 보조 보수를 제외하고 관련 다른 직업적 소득이 없거나 낮아야 하며, 적어도 수수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이 제도의 적용을 요청하는 납세자는 세무신고서에 지급 당사자에 의해 검토된 금액의 내역을 알려주는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1078) CGI, 제92조 제1항. (원문) Sont considérés comme provenant de l'exercice d'une profession non commerciale ou comme revenus assimilés aux bénéfices non commerciaux, les bénéfic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des charges et offices dont les titulaires n'ont pas la qualité de commerçants et de toutes occupations, exploitations lucratives et sources de profits ne se rattachant pas à une autre catégorie de bénéfices ou de revenus.

1079) CGI, 제156-I조 제2항.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080) CE, n° 15-945, 1992. 12. 9.

1081) CGI, 제93조 제1항. (원문) Le bénéfice à retenir dans les bases de l'impôt sur le revenu est constitué par l'excédent des recettes totales sur les dépenses nécessitées par l'exercice de la profession.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51 sexies, il tient compte des gains ou des pertes provenant soit de la réalisation des éléments d'actif affectés à l'exercice de la profession, soit des cessions de charges ou d'offices, ainsi que de toutes indemnités reçues en contrepartie de la cessation de l'exercice de la profession ou du transfert d'une clientèle.

2) 부수되는 소득

「조세일반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해 "BNC 소득이 있는 자가 농업소득 또는 산업 및 상업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이 수익은 BNC의 결정에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82] 이 조항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ⅰ) 두 활동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ⅱ) 농업, 산업 또는 상업활동은 비상업적 활동과 비교해 부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다른 소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득

BNC 과세범위는 일명 '잡동사니(fourre-tout,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 것)'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BNC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타소득은 포괄주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이 직업적인 협업을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1083] 작가나 작곡가가 받는 인세,[1084] 건물이나 공간의 재임대 등에서 나오는 수입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민간요법이나 주술치료사, 자력(磁力) 치료사, 접골사, 점쟁이, 전문 또는 준전문 포커 플레이어,[1085] 횡령금, 뇌물, 종교인 소득을 포함한다.[1086]

4) 비과세소득

소규모 도시나 마을에서 의사 또는 대체 의료진이 받는 보수는 매년 최대 60근무일까지 비과세 대상이다.[1087]

1082) CGI, 제155조 제1항 제2호. (원문) 2. Lorsqu'un titulaire de bénéfices non commerciaux étend son activité à des opérations dont les résultats entrent dans la catégorie des bénéfices de l'exploitation agricole ou dans celle des 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il est tenu compte de ces résultats pour la détermination des bénéfices non commerciaux à comprendre dans les bases de l'impôt sur le revenu.

1083) CGI, 제92조 제2항 제1호.

1084) CGI, 제92조 제2항 제2호.

1085) TA Paris, n° 1428971, 2015. 11. 25.

1086) 참고자료: http://bofip.impots.gouv.fr/bofip/2 (2019. 12. 3. 접속) 및 BOI-BNC-CHAMP-10-10-20-40-20190902.

1087) L. n° 2005-157, 2005. 2. 23.

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

비상업소득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연간 외형 금액에 따라 '소규모사업자(micro-BNC)'와 '조정신고제도(régime de la déclaration contrôlée)'로 구별된다.

1) 소규모사업자

가)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70,000유로(세금 제외) 이하인 자이다.

나) 소득금액 산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연도 중 실현된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plus-values)과 양도차손(moins-values)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088] 이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 결정한다. 비용은 추계방식으로 수입금액의 34%를 공제하며 최소 305유로이다.[1089]

한편, 소규모사업자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통제신고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적어도 2년 동안은 통제신고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은 2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한편, 이 제도의 적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선택하였거나 자동 갱신된 해의 2월 1일 이전에 자신의 선택을 세무당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조정신고제도

가) 적용대상

조정신고제도 적용대상은 위 1)의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BNC 소득이 있는 자[1090] 및 공무

1088) CGI, 제102 ter조 제2항. 이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BNC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된다.

1089) CGI, 제102 ter조 제1항. (원문) Le bénéfice imposable des contribuables qui perçoivent des revenus non commerciaux dont le montant hors taxes de l'année civile précédente ou de la pénultième année, ajusté s'il y a lieu au prorata du temps d'activité au cours de l'année de référence, n'excède pas 70 000 € est égal au montant brut des recettes annuelles diminué d'un abattement forfaitaire de 34 %. Cet abattement ne peut être inférieur à 305 €.

1090) CGI, 제96조 제1항.

원(officiers publics)과 장관(ministériels)에게 적용한다.[1091] 또한, 소규모사업자 중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1092]

나) 수입과 비용의 회계처리

이 제도의 회계처리 기준은 현금주의 회계(comptabilité de caisse)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comptabilité d'engagement)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현금주의 회계의 경우 과세연도 중 받은 수익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이 과세 수입의 결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받은 날이거나 지급한 날이다.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실제 지급 거래 날짜, 즉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날짜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날짜, 해당 금액이 한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날짜 등을 기준으로 하되, 수표 제시일이 입금일보다 우선한다.

또한, 수표로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연도는 수표 금액이 이 납세자에게 그의 은행 계좌로 전송된 해가 아니라 수표 실물이 납세자에게 제시된 해이다. 수표로 내는 경우, 지급한 비용은 수표를 채권자에게 양도한 날에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지출액이 다음 해 첫날까지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지급한 비용은 신용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승인하는 때에 실효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본다. 비록 이러한 결제 행위가 채무자(신용카드로 지급한 소유자)의 계좌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에 반영된다고 해도 그렇다.

다) 공제 가능한 비용

BNC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1093] 그러나 수익보다 비용이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1094]

과세당국은 BNC 소득이 있는 자들이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자전거나 스쿠터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비용(barèmes forfaitaires) 계산표를 적용할 수 있도

1091) CGI, 제100조. 공무원이 이 범주에 포함된 것은 그들의 업무 사무실로부터 경비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092)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이유는 발생경비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표준 공제(수입금액의 34%)를 초과하거나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93) CGI, 제93조 제1항. 이른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1094) CE, n° 350075, 2013. 12. 23.

록 하고 있다.[1095]

병원에서 자발적인 수업 강의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는 이 경우 발생하는 여행 경비의 공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1096] 비록 자원해서 나선 것이긴 하지만, 이들 강의로 인해 당사자가 이 직업 활동에서 인정되는 대학병원과의 유대관계를 맺게 해주므로 이 강의는 치과의사라는 직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1097]

일터에 가깝게 머무르기보다 한곳과 다른 곳 사이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주 거주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 비상업적 직업을 수행하는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이 이중 거주가 순수한 개인의 편의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1098]

이와는 반대로, 한 경매인이 외국 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그 여행이 전국경매인협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적 성격의 방문이라고 해도, 이 납세자가 자신의 직업 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수한 관심과 충분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보이지 않으므로, 직업 활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1099]

감가상각비는 BIC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1100] 그러나 준비금이나 충당금은 현금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다.[1101]

라) 신고 의무

이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는 일일장부(livre-journal)를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며,[1102]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일과 금액 및 감가상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1103] 신고 서식 n° 2035 및 그 부속서류인 n° 2035A 및 n° 2035B를 작성하여 늦어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104]

1095) BOI-BNC-BASE-40-20-20160803 제20조.
1096) CGI, 제93조 제1항.
1097) CAA Bordeaux, n° 03BX01736, 2006. 3. 30.
1098) CE, n° 281951, 2007 3. 12.
1099) CAA Nantes, n° 94NT00381, 1997. 4. 22.
1100) CGI, 제93조 제1항 제2호.
1101) CE, n°57666, 1990. 6. 8.
1102) CGI, 제99조.
1103) CGI, 제99조 제3항.
1104) 그러나 실무상 5월 1일이 노동절 휴일이므로 5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임대목적 부동산 투자비 공제

「조세일반법」은 프랑스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1105]

가. 적용대상자

프랑스 거주자 중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을 직접 인수하거나, 부동산 투자회사인 SCPI(Société Civil en Placement Immobilier) 지분에 자본 참여를 하든가 또는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 중 SCPI를 제외한 곳을 통해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이다.

나. 임대주택의 성격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ⅰ) 투자 성격 ⅱ) 해당 부동산의 위치 및 ⅲ) 에너지 절감 시설 확보 등을 적용요건으로 한다.

첫째, 해당 임대주택의 투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직접 또는 SCPI 또는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회사를 통해 유상으로 획득한 새 주택 또는 향후 완료 상태인 주택이든지 납세자가 건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축 허가를 득한 지 30개월 이내에 완공된 주택을 의미한다.[1106]

둘째, 해당 주택의 소재지는 주택 공급과 수요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어서 임차인 측이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법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1105) CGI, 제199 novovicies조. 이 조항을 일명 「Pinel」 규정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내용으로 2012년 이전에는 「Robien」규정과 「Borloo」규정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Scellier」 규정과 「Duflot」 규정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Pinel」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1106) 여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되었으며 새 건물의 건축에 이바지하거나 이바지했던 공사의 대상이었던 주택,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는 주택인데 특정 품질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축 공사의 대상이 되거나 되었거나 하여 새 주택에 가까운 기술적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이나 납세자가 취득한 거주 이외의 용도에 할당되었던 것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행한 건물을 포함한다.

셋째, 해당 주택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에너지 성능 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수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다. 임대차 계약의 조건

주택 소유자는 가구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6년이나 9년의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자연인의 주된 주거지로 임대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한편, 2018년에 계약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연간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임차인의 연간 소득 상한

(단위: 유로)

임차인의 가족 구성	주택의 위치			
	ZONE A BIS	ZONE A 나머지 부분	ZONE B1	ZONE B2 또는 C
1인 가족	37,508	37,508	30,572	27,515
커플	56,058	56,058	40,826	36,743
부양가족이 1인 있는 단독 가족이나 커플	73,486	67,386	49,097	44,187
부양가족이 2인 있는 단독 가족이나 커플	87,737	80,716	59,270	53,344
부양가족이 3인 있는 단독 가족이나 커플	104,390	95,553	69,725	62,753
부양가족이 4인 있는 단독 가족이나 커플	117,466	107,527	78,579	70,721
부양가족이 5인 이상 있는 단독 가족이나 커플의 경우 1인당 가산 금액	+ 13,087	+ 11,981	+ 8,766	+ 7,888

주: Zone A는 파리지역, Zone A bis 지역은 파리 외곽지역, Zone B1 지역은 인구 25만 이상 지역, Zone B2 또는 C는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라. 임대차 계약의 조건

세금감면은 주택 취득 연도, 또는 완공 연도, 또는 주택 완공 연도나 가입이 실현된 연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며, 과세연도 및 납세의무자당 300,000유로를 한도로 한다. SCPI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세금감면은 지분을 사들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한 지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금감면율은 임대 약정이 6년이고 6년 임대 약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에 사용될 자금의 지분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12%(해외영토는 23%), 9년일 경우에는 18%(해외영토는 29%)를 적용한다.

만일 최초의 6년 약정을 갱신하면 첫 3년 동안은 주택 원가의 6%, 두 번째 3년 동안은 3%를 적용하며, 최초의 9년 약정을 갱신하면 주택 원가의 3%를 적용한다.

2. 기부금 공제

프랑스 납세의무자들은 공익사업 및 단체, 공공적 유용성을 인정받은 단체, 선거 후보자, 정당 및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무료 밥을 제공하고, 숙박시설을 제공하거나, 무료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은 그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하되 연간 537유로를 한도로 한다.

공익적임이 증명된 재단이나 협회, 공익 목적의 사업이나 조직, 고등 교육 또는 예술 교육 기관이나 문화 및 자선 단체, 문화 작품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단체, 선거 후보자, 기부 기금 및 정당 등에 기부한 기부금은 과세소득의 20% 한도 내에서 총기부금액의 66%에 해당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당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금감면은 가족단위당 연간 15,000유로를 한도로 하며, 정당에 대한 기부금 상한선은 한 해에 정당별로 7,500유로를 한도로 한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후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조세일반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별 필요경비 산입내용은 아래와 같다(우리나라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제도와 유사함).

〈표 Ⅲ-2〉 기부금 항목별 필요경비 산입

기부처	필요경비 산입 기준
• 공공기관 (CGI, 제200조 제1항 제a호)	기부금 지출금액의 66%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함
• 정치단체 (CGI, 제200조 제3항)	매년 15,000유로를 한도로 함
• 노동조합 (CGI, 제199 quarter조 제c항)	기부금 지출금액의 66%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근로수입금액의 1%를 한도로 함
• 빈민구호단체 (CGI, 제199조 제1항 제ter호)	기부금 지출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되 연간 536유로를 한도로 하거나(2018년 기준) 402유로를 한도로 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음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

3. 장애인 부양료 공제

부양가족 중 장기 치료나 요양비 지출이 있으면 지출금액의 25%까지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이는 1인당 10,000유로를 한도로 한다.[1107]

여기에는 ⅰ) 노인들을 받아들이거나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 간호, 또는 사회에의 진출을 돕는 시설 또는 서비스 ⅱ) 항시적인 의료적 돌봄과 유지 관리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여) 생활의 자율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 및 입원(숙박)을 제공하는 시설 사용료 ⅲ) 위 ⅰ) ⅱ)와 유사한 성격과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위치하였거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협약에 참여하여 프랑스와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긴밀한 행정 지원 조항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 있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4. 학비 공제

과세연도의 12월 31일에 현재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학업을 받는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가 학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1108] 이 경우 교육시설은 프랑스 내 또는 해외에 있을 수 있다. 중학생 자녀는 1인당 61유로, 일반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1인당 153유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업을 하는 자녀 1인당 183유로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반면, 해당 학생이 부모 양쪽 집에서 번갈아 거주하는 경우 학비 감면 금액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1인당 31유로, 일반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1인당 77유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업을 하는 자녀 1인당 92유로로 줄어든다.

한편, 학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성 및 이름, 학교 이름 및 학년 또는 자녀가 등록한 고등교육시설 이름이 소득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생명 연금 및 장애인 저축 보험료 공제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생명연금보험 (rente-survie)'또는 '장애인 저축(épargne handicap)'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1109]

1107) CGI, 제199 quindecies조.
1108) CGI, 제199 quarter조 제F항.

생명연금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3촌까지의 직계 또는 방계 친척, 또는 「조세일반법」에 규정된 자[1110] 또는 정상적으로 수익이 나는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취약성이 있거나 18세 미만인 자 및 정상적인 수준의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목돈 또는 생명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장애저축보험은 유효 기간이 6년 이상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의 이행은 사람의 수명에 달려 있으며 이 계약의 가입 날짜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수익이 나는 조건으로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는 없지만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목돈 또는 최소 6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연금을 지급하기로 보장하는 계약이다.

이는 프랑스 거주자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료의 25%를 소득세에서 감면하며 연간 1,525유로를 한도로 하되, 부양 자녀 1인당 300유로가 증가한다.

6. 위자료 공제

「조세일반법」은 납세의무자가 이혼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prestation compensatoire)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11]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위자료가 목돈으로 지급되며 이혼 판결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지급된 금액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2004년 5월 26일의 법률」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세금감면의 적용 범위에 사용 또는 주거를 위한 현물 재산인 가구 또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또는 용익권 재산의 포기 및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자본 납부가 포함되었다.

가. 세금감면 적용 조건

전(前)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이나 권리의 배분은 i)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하고 변호사가 그에 대해 서명하여 공증인 회의록에 제출된 날 ii) 이혼 판결[1112]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1109) CGI, 제199 septies조.

1110) 「조세일반법」 제196 A bis조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즉, 피보험자의 가구 구성원이며 「사회행동 및 가족법」 제 L.241-3 조에 규정된 장애인 카드 소지자를 의미함.

1111) CGI, 제199 octodecies조.

1112) 공동 신청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혼 판결은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나 재산이나 권리를 배분하여 주는 것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하고 변호사가 그에 대해 서명하여 공증인 회의록에 제출된 이혼 계약이나 판사가 승인한 이혼 합의 또는 이혼 판결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2개월 시간 제한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즉각적인 유동성을 갖지 못한 경우 판사는 최장 8년 이내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위자료 일부는 일시금(목돈)의 형태로 그리고 일부는 연금의 형태로 확정되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은 없어진다.[1113]

한편, 금전의 지급은 「조세일반법」 제4B조에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즉, 프랑스에 가정이나 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 유급이든 그렇지 않든 프랑스에서 부수적이 아닌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나. 세금감면 금액

위자료를 지급하는 전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세금 감면액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하고 변호사가 그에 대해 서명하여 공증인 회의록에 제출된 이혼 계약이나 판사가 승인한 이혼 합의 또는 이혼 판결 협약서에 명시되어 전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이나 재산 또는 권리를 분배한 금액의 25%이며 30,500유로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30,500유로의 25%인 7,625유로가 세금감면 대상이 된다.

(계산 사례)
프랑스 거주자인 A는 그 배우자와 2017년 9월 1일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고 10회에 걸쳐 160,000유로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세금감면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2017년의 경우
- 2017년 총 지급액: 64,000유로 (4개월 × 160,000/10개월)
- 2017년 한도액: 12,200유로 (30,500유로 × 64,000유로/160,000유로)
- 2017년 세금 감면액: 3,050유로 (12,200유로 × 25%)

(2) 2018년의 경우
- 2018년 총 지급액: 96,000유로 (6개월 × 160,000/10개월)
- 2018년 한도액: 18,300유로 (30,500유로 × 96,000유로/160,000유로)
- 2017년 세금 감면액: 4,575유로 (18,300유로 × 25%)

(3) 총세금공제액: 7,625유로 (2017년 3,050유로 + 2018년 4,575유로)

1113) CGI, 제199 octodecies조 제2항.

7. 장애인 거주 시설교체 비용

프랑스 거주자가 주된 거주지의 노인 또는 장애인[1114]의 주택 접근성을 위해 시설교체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2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1115] 해당 지출금액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속된 5년간 i) 독신, 미망인 또는 이혼녀였으면 5,000유로 ii) 공동으로 소득세를 내는 부부에 대해서는 10,000유로를 한도로 하며, 부양가족 1인당 400유로가 추가된다.

한편, 2005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 제 L.515-16조 제4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이나 임차인에게 5년 동안 주 거주지로서 임대하거나 임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의 시설교체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위 지출금액의 40%이며,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납세자가 소유한 경우 이 공제 금액은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만큼씩 납세자에게 분배된다.

세액공제 시기는 해당 비용을 지급한 연도 또는 주택 완공연도 또는 완공 전이었을 경우 취득연도이다.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주택을 판매한 회사의 영수증이나 개인 또는 건축한 자의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내야 할 세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반환된다.

8. 어린 자녀 돌봄 비용

프랑스 거주자는 6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는 「사회활동 및 가족에 관한 법률(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 L. 421-3조에 따른 보모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 L. 2324-1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는 보육시설이나 (프랑스와) 동등한 규정을 충족하는 다른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사람이나 시설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1116]

1114) 납세자나 그의 가구 구성원 중 하나가 최소 40% 이상의 산업 재해 장애연금을 받거나, 군인 장애 및 전쟁 피해자 연금법이 규정한 장애연금의 최소 40% 이상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 주차' 항목이 표시된 '이동권 카드'(mobilité inclusion) 소지자를 의미한다.

1115) CGI, 제200 quater조 제A항.

1116) CGI, 제200 quater조 제 B항.

과세관청의 지침은 자신의 어린이를 위해 조부모가 지출하는 보육 비용도 어린 자녀의 보육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1117]

세금감면 한도는 부양 아동 1인당 2,300유로를 공제하거나 세액으로 1,150유로(2,300유로×50%)를 한도로 하며, 부모의 부담이 동등할 경우 1인당 1,150유로를 공제하거나 세액으로 575유로(1,150유로×50%)를 공제한다. 만일 세액공제액이 낼 세금을 초과하면 환급대상이 된다.

9. 기업인 교육비용

기업은 기업인 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상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은 기업에 한정한다. 훈련은 한 해에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기업인이 이수한 교육 시간에 SMIC를 곱한 값이다. 기업인 교육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인이 교육을 받았던 연도에 내야 할 소득세에서 계산된다. 세액공제액이 해당 연도의 세금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환급된다.

10. 노동조합 회비

직원이나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 조직에 낸 기여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공제 혜택은 표준 공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된다. 세액공제는 낸 기여금의 66%를 공제하나 총과세소득의 1%를 한도로 한다.[1118] 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금액과 지급 날짜가 명시된 노동조합 영수증을 소득신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1117) BOI-IR-RICI-300-20140425, 제20조.
1118) CGI, 제199 quater조 제C항.

Ⅳ 기타

1. 납부면제

「조세일반법」은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 가족단위 기준 납부면제

소득세 적용세율이 0%가 적용되는 구간인 10.064유로 이하의 소득을 얻은 자는 소득세 납부가 면제된다.[1119] 이 면제 대상 금액은 가족단위 과세제도의 특성상 가족 수(parts)가 변경되면 높아진다. 이 경우 면제 한도는 각 part 수에 10,064유로를 곱하여 결정한다.

〈표 Ⅳ-1〉 가족단위 part당 소득세 면제 한도

Part 수	소득세 면제 한도
1 part	10,063유로
1.5 part	15,096유로
2 part	20,128유로
2.5 part	25,160유로
3 part	30,192유로
3.5 part	35,224유로
4 part	40,256유로
4 part 초과	10,063유로 × part 수

자료: 법령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납부할 소득세 납부면제

소득세 납부할 총액이 1,569유로 미만인 미혼자, 이혼자, 동반자 관계를 청산한 자(séparés와 dépacsés) 및 미망인은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총소득세액이 2,585

1119) CGI, 제197조 제Ⅰ항 제1호. 2019년 12월 28일 관련 법(n° 2019-1479)에 따라 종전 9,807유로가 10,064유로로 상향 조정되었다. (원문) : L'impôt est calculé en appliquant à la fraction de chaque part de revenu qui excède 10,064€ (이하 생략).

유로 미만이며 공동으로 소득세를 내는 배우자와 동반자(pacsés)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우리나라 소액부징수제도와 유사하다.

3. 소득세 추가공제

2017년 「재정법」에 따라 과세기준 소득이 법령에서 규정한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낼 세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1120]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ⅰ) 프랑스 거주자[1121]이어야 하고 ⅱ) 가족단위 과세제도상 기준소득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야 한다.[1122]

4. 소액부징수

납부할 세액이 61유로 이하면 징수하지 않는다.[1123]

5. 이월공제와 후월공제

이월공제[1124]는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하고 적용 기한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없다. 후월공제[1125]는 소규모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1120) CGI, 제197조 제Ⅰ항 제4호 제b목.

1121) CGI, 제4조 제B항. 예외적으로,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고 주 수입이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즉 'Schumackers'로 알려진 비거주자)는 특정 조건에서 프랑스의 세금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22) 독신, 이혼, 동반자 관계를 청산한 자나 미망인의 경우 20,705유로이고 소득세를 공동으로 내는 배우자 및 파트너(pacsés)의 경우 41,410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1123) CGI, 제1657조 제Ⅰ항 제bis호.

1124) CGI, 제156조 제1항. (원문) L'impôt sur le revenu est établi d'après le montant total du revenu net annuel dont dispose chaque foyer fiscal. Ce revenu net est déterminé eu égard aux propriétés et aux capitaux que possèdent les membres du foyer fiscal désignés aux 1 et 3 de l'article 6, aux professions qu'ils exercent, aux traitements, salaires, pensions et rentes viagères dont ils jouissent ainsi qu'aux bénéfices de toutes opérations lucratives auxquelles ils se livrent, sous déduction : I. - Du déficit constaté pour une année dans une catégorie de revenus ; si le revenu global n'est pas suffisant pour que l'imputation puisse être intégralement opérée, l'excédent du déficit est reporté successivement sur le revenu global des années suivantes jusqu'à la sixième année inclusivement.

1125) CGI, 제220 quinquies조 제1항. (원문).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troisième alinéa du I de l'article 209, le déficit constaté au titre d'un exercice ouvert à compter du 1er janvier 1984 par une entreprise soumise à l'impôt sur les sociétés peut, sur option, être considéré comme une charge déductible du bénéfice de l'exercice précédent, dans la limite de la fraction non distribuée de ce bénéfice et à l'exclusion du bénéfice exonéré en application des articles 44 sexies, 44 sexies A,

V 시사점

프랑스의 주된 주택(résidence principale)에 대한 과세제도는 그 소득이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비과세를 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 제도가 같이 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세제가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프랑스의 비과세 정책을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임대소득자의 필요경비 계산 시 도시지역과 기타의 지역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일괄적인 규정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 및 상업소득의 경우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센터'의 경우는 우리나라 납세조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수평적 납세 협력 구조의 하나로, 해당 센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물론 전문인들이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센터에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조세 마찰 방지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납세의무자를 외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서로 다른 회계 및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도와 같은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 수준이 세무 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낮은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 프랑스는 근로소득자에게 세법에서 정한 추계방식과 실제 발생경비를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라는 하나의 제도만을 운용하고 있어서 경직되어 있으며 실질

---

44 septies, 44 octies, 44 octies A, 44 terdecies, 44 quaterdecies, 44 quindecies, 44 sexdecies, 44 septdecies et 207 à 208 sexies ou qui a bénéficié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u f du I de l'article 219 ou qui a ouvert droit au crédit d'impôt prévu aux articles 220 quater et 220 quater A ou qui a donné lieu à un impôt payé au moyen de crédits d'impôts. Le déficit impu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cesse d'être reportable sur les résultats des exercices suivant celui au titre duquel il a été constaté. L'option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n'est admise qu'à la condition qu'elle porte sur le déficit constaté au titre de l'exercice, dans la limite du montant le plus faible entre le bénéfice déclaré au titre de l'exercice précédent et un montant de 1 000 000 €. L'excédent d'impôt sur les sociétés résultant de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fait naître au profit de l'entreprise une créance non imposable d'égal montant.

과세원칙에도 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세부담에 대한 조세마찰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비상업소득 과세대상은 법령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유형별 포괄주의 입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소득금액을 산업 및 사업소득(우리나라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비상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직업의 특성(공공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인 소득도 비상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반면, 고위직 공무원이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조정신고제도를 통해, 다시 말해 기장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정부패의 소지를 막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리고 프랑스 소득자가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해체 현상과 이에 대한 치유과정을 세법에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프랑스 세액공제 중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사전적으로 체납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세금감면제도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제1권) - 프랑스 편-』, 2019.

André NEURRISSE, 「Histoire de la Fiscalité en France」, Economica, 1996.

Bruno Gouthière, 「Les Impôts dans les Affaires Internationales(12édition)」, Francis Lefebvre, 2018.

Frédéric DOUET, 「Précis de Droit Fiscal de la Famille」, LexisNexis, 2018.

Gervais Morel, 「Fiscalité, Placements & Réductions d'impôt(30e édition)」, EYROLLES, 2019.

Jean-Jacques Bienvenu & Thierry Lambert, 「Droit fiscal」, puf, 2018.

Jean Lamarque, Oliver Négrin, Ludouic Ayrault, 「Droit Fiscal Général」, LexisNexis, 2016.

Martin Collet, 「Droit fiscal」, puf, 2017.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Précis de Fiscalité 2014(Tome 1)」, 2015.

[웹사이트]

www.conseil-etat.fr/Decisions-Avis-Publications/Decision.

www.legifrance.gouv.fr.

약어표

약어	원래 단어
RF	부동산 임대소득(revenus fonciers)
BIC	산업 및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CGI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BNC	비상업소득(Bénéfices des Professions non Commerciales)
BA	농업소득(bénéfices de l ' exploitation Agricole)
CE	국사원 판례(conseil d'Etat)
TA	행정고등법원(tribunal administratif)
CAA	행정지방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부록: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소득세 관련 주요 조문

구분	상세 규정	조문
총칙 규정 (Dispositions générales)	• 과세대상 종합소득	제1 A조
	• 납세의무자	제4 A조 내지 제8 quinquies조
	• 과세장소	제10조, 제11조
과세대상소득 (Revenus imposables)	• 일반 정의 규정	제12조, 제13조
	• 부동산 소득	제14조 내지 제33 quinquies조
	• 산업 및 상업소득	제34조 내지 제61A조
	• 공동사업자	제62조
	• 농업소득	제63조 내지 제78조
	• 근로 퇴직 연금소득	제79조 내지 제90조
	• 비상업소득	제92조 내지 제103조
	• 자본소득	제103조 내지 제146 quater조
	• 투자기구 펀드 규정	제150 ter조 내지 제150 duodecies조
	• 양도소득	제150-0 A조 내지 제150 VH bis조
	• 귀금속 · 골동품양도	제150 VI조 내지 제150 VM조
	• 기타 공통사항	제151-0조 내지 제155 B조
종합소득 (Revenu global)	• 소득금액 산출	제156조 내지 제163 quatervicies조
비거주자 과세 (personnes n'ayant pas leur domicile fiscal en France)	• 국내원천소득	제164 A조 내지 165 bis조
	• 거주자 해당 연도	제166조
	• 국외전출세	제167조 내지 제167 bis조
	• 과세대상 물건 평가	제168조
신고 (Déclarations des contribuables)	• 종합소득	제170조 내지 제175 A조
세액산출 (Calcul de l'impôt)	• 원천징수	제182 A조 내지 제187조
	• 소득세	제193조 내지 제200 C조
	• 양도 특별 규정	제201조 내지 제204조
	• 원천징수 특별규정	제204 A조 내지 제204 N조

| 저자 약력 |

최정희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법학박사(SJD)
- 현,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중호
-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 박사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현, 요코하마시립대학 국제상학부 교수

안종석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 박사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현
- 한양대학교 회계학 박사
- 공인회계사
- 현,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이동식
- 독일 Passau대학 법학박사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창남
- 프랑스 제2대학 법학박사
- 세무사회 연구위원
-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 전공교수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 제2권 -

발 행	2020년 3월
발 행 인	김유찬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TEL: (044)414-2114(代)
홈 페 이 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 가	17,000원
조판및인쇄	디자인 범신
I S B N	978-89-8191-704-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 | www.kipf.re.kr

93320
9 788981 917043
ISBN 978-89-8191-704-3